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295-01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8.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용 진

연구책임자 : 임 정 빈 (서울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홍 성 수 (한국사료협회 부장)
연 구 원 : 홍 현 진 (한국사료협회 팀장)
연구보조원 : 김 미 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I. 서 론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9
II. 국내·외 펫사료 산업 동향 분석	13
1. 글로벌 펫사료 산업과 시장	13
2. 국내 펫사료 산업과 시장	32
3. 기타 펫 연관 산업과 시장	46
4. 요약 및 시사점	50
III. 펫사료 산업 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57
1. 정부부문 공식 통계	57
2. 민간부문 작성 통계	147
3. 수출입 통계 및 관세체계	154
4. 요약 및 시사점	163
IV.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현황 분석	183
1.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183
2. 일본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195
3. 미국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08
4. 유럽연합(EU)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19
5. 요약 및 시사점	229
V. 펫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39
1. 펫사료 관리 조직·체계 개선	239
2. 펫사료 추적(Traceability) 관리체계 제도개선	255
3. 국내산 원료수급을 위한 제도개선	262
4.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 구축	267
5. 요약 및 시사점	270
부록 I. 국가별 펫사료 관련 규정 현황(요약)	283
부록 II. 펫사료 첨가물 관련 Q&A	288
부록 III. 일본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번역	298
부록 IV. 일본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	303
부록 V. 국가별 펫사료 관련 조직 구분	323
부록 VI. 국가별 특수목적사료의 유통 관련 제도 비교	326

〈 표 목 차 〉

<표 II-1> 미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18)	16
<표 II-2> EU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17
<표 II-3> 일본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18
<표 II-4> 중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19
<표 II-5> 주요 국가별 펫사료 시장 규모(2017) 및 연평균 펫사료 시장 성장률(2013-2017)	23
<표 II-6> 글로벌 펫사료 및 펫케어 상품 시장 매출액 및 성장전망	24
<표 II-7> 글로벌 펫사료 수출 동향	25
<표 II-8> 펫사료 교역 동향(2010-2018)	26
<표 II-9>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글로벌 소매시장 판매동향(2013-2017)	27
<표 II-10> 기능성 및 질병 치유를 강조한 펫사료 출시 사례(2017-2018)	30
<표 II-1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마릿 수 추정치	32
<표 II-12> 우리나라 펫사료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33
<표 II-13> 국내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소매시장 판매동향	34
<표 II-14> 국내 펫사료 신제품 출시 시 제품 특성별 홍보 사례	35
<표 II-15>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주요브랜드 별 매출동향	37
<표 II-16> 유통채널별 펫사료 판매 동향	39
<표 II-17> 국내 펫테크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47
<표 II-18> 국내 펫금융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47
<표 II-19> 국내 펫플레이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48
<표 II-20> 국내 펫리빙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48
<표 III-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사료제조 업종 구분	57
<표 III-2>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의 사료제조업 항목별 정의	58
<표 III-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59
<표 III-4> 우리나라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61
<표 III-5> 광업·제조업조사 조사항목	62
<표 III-6> 전국편 통계 제공 내역(2019)	63
<표 III-7> 지역편 통계 제공내역(2019)	64
<표 III-8> 광업·제조업조사의 펫사료관련 업종/품목분류(2018년 조사기준)	65
<표 III-9> 애완동물사료(배합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3-2018)	66
<표 III-10> 동물용조제식품(단미 및 기타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7-2018)	66
<표 III-1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67
<표 III-12>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69
<표 III-13> 경제총조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항목 통계	71
<표 III-14> 배합사료의 구분	73
<표 III-15>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 제공내역	73
<표 III-16> 펫사료 관련 배합사료생산실적통계(2019)	74
<표 III-17> 펫사료 관련 시도별 배합사료 생산실적(2019.12)	74
<표 III-18> 표본추출률	76

<표 III-19> 생산자물가 조사항목	76
<표 III-20> 생산자물가지수 측정시 사료유형별 가중치	77
<표 III-21>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항목	80
<표 III-2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제공 내역	80
<표 III-23>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2
<표 III-24> 서비스업조사 표본추출구조	84
<표 III-25> 서비스업조사 조사항목	84
<표 III-26> 서비스업조사 통계제공내역	85
<표 III-27> 도매 및 소매업 주요 통계정보	86
<표 III-28> 도소매업 부문: 총괄 통계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6
<표 III-29>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7
<표 III-30> 산업 및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7
<표 III-31> 가계동향조사(지출) 조사항목	89
<표 III-32> 가계동향조사(지출) 지출항목 구분	90
<표 III-33> 가계동향조사(지출) 통계제공 내역	91
<표 III-34>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항목분류 내역	92
<표 III-35> 가구당 월평균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전국, 2인 이상)	92
<표 III-36>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당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	92
<표 III-37> 소비자 물가조사 통계제공 목록	94
<표 III-38> 연도별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물가조사 항목 및 가중치	96
<표 III-39>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사료제조 업종 구분	99
<표 III-40>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의 사료제조업 관련 구분	99
<표 III-41>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유통부문 업종 구분	100
<표 III-42>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101
<표 III-43> 공업통계 조사항목 구분	103
<표 III-44> 산업별 통계(2018)	104
<표 III-45> 품목별 통계(2018)	104
<표 III-46> 지역별 통계(2018)	105
<표 III-47> 산업별 통계(종업원 4인 이상) (2018)	106
<표 III-48> 공업통계의 품목분류체계	106
<표 III-49>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 (2018)	107
<표 III-50> 산업 및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 (2018)	107
<표 III-51>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조사항목	109
<표 III-52>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제외업종	110
<표 III-53>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항목	111
<표 III-54>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표 구분	111
<표 III-55> 경제센서스-활동조사 통계제공내역	112
<표 III-56>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 『산업편』 통계(2016)	113
<표 III-57>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 『품목편』 통계(2016)	114
<표 III-58> 경제센서스-활동조사(제조업) 『산업편』 통계 (전 사업소 기준)(2016)	114
<표 III-59> 『품목편』 통계의 애완동물용 사료 통계제공항목	115

<표 III-60> 품목별 출하액(2016)	115
<표 III-61> 업종-제조품목별 출하액(2016)	115
<표 III-62> 도소매업동태조사 조사항목	117
<표 III-63> 가정용품전문점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118
<표 III-64> 드럭스토어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118
<표 III-65> 전국 소비실태조사 조사항목	120
<표 III-66> 일본의 펫사료 관련 소비실태 통계정보 제공 내역	121
<표 III-67> 일본의 2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펫 관련 지출(2015년)	121
<표 III-68>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 (인구 규모별)	123
<표 III-69>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 (소비유형 및 가격 차이별)	123
<표 III-70> 펫사료(개사료, 고양이사료) 조사항목 구분	124
<표 III-71> 미국 산업분류(NAICS)의 사료제조업 구분	126
<표 III-72> 미국 산업분류(NAICS)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127
<표 III-73>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128
<표 III-74> 미국의 연간제조업조사의 표본 선택기준	130
<표 III-75> 미국의 연간 제조업조사 발간물 목록	130
<표 III-76> 미국의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통계 추정치 및 상대표준 오차(2016)	132
<표 III-77>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품목별 출하액 추정치 (2015-2016)	133
<표 III-78> 미국 표준산업분류(NAICS) 6단위 부류별 사업체 동향(미국 전역) (2017)	135
<표 III-79> 미국의 주 및 카운티별 반려동물 사료제조업 사업체 동향(California)(2017)	138
<표 III-80> 미국의 펫사료 관련 생산자물가지수 작성 산업 및 품목 범위	141
<표 III-81> 미국의 연령대별 연간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2018)	143
<표 III-82>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품목	146
<표 III-83>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주요 조사항목	148
<표 III-84>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조사개요	149
<표 III-85> 일본의 반려동물 및 펫사료 유형별 출하동향 (2018년)	150
<표 III-86> 펫사료 유형별 구매경험(2017-2018)	152
<표 III-87> 우리나라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55
<표 III-88> 일본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56
<표 III-89> 미국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58
<표 III-90> 유럽연합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59
<표 III-91>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162
<표 III-92> 주요국 애완동물사료(펫사료) 통계 기반 및 정보제공내역 비교	164
<표 III-93>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내역 요약	166
<표 III-94>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167
<표 III-95>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169
<표 III-96>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171
<표 III-97>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173
<표 III-98>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174
<표 III-99> 펫사료 생산부문 통계 개선(안)	175
<표 III-100> 펫사료 유통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177

<표 III-101> 펫사료 소비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178
<표 III-102>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HS세번 분류체계 개선안	179
<표 IV-1> 사료관리법 법령체계	183
<표 IV-2> 동물보호법의 구성	184
<표 IV-3> 사료공정서의 주요 내용	188
<표 IV-4> 한국의 사료 표시사항 관련 규정	189
<표 IV-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89
<표 IV-6> 사료검사기준의 주요 검사항목	190
<표 IV-7> 산업동물용 사료 및 펫사료 법령·제도 비교	192
<표 IV-8>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195
<표 IV-9> 1999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197
<표 IV-10> 2005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198
<표 IV-11> 동물 취급업자의 구분	199
<표 IV-12> 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에 관한 책무	200
<표 IV-13>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법률 체계	200
<표 IV-14> 일본 펫사료 라벨링 규정	204
<표 IV-15> 일본 펫사료의 성분규격	204
<표 IV-16> 펫사료 제조업자 신고 내용	205
<표 IV-17> 펫사료 제조 장부 기록 내용	206
<표 IV-18>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비교	207
<표 IV-19> 21CFR Volume6 목차(발췌)	211
<표 IV-20> 미국의 일반적 펫사료 표시사항	212
<표 IV-21> 수입업자의 FSVP 수행을 위한 필요요건 및 내용	217
<표 IV-22> 커뮤니티 가이드 작성을 위한 권장사항	225
<표 IV-23> 구성성분의 표기 항목	227
<표 IV-24> 사료관리법 제정목적	231
<표 IV-25>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232
<표 V-1>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240
<표 V-2>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장	240
<표 V-3> 일본의 반려동물사료 관련 조직별 담당업무 및 인원	249
<표 V-4>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256
<표 V-5>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펫사료의 주된 원료	262

〈 그림 목차 〉

[그림 II-1]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및 권역별 양육 비중(2016)	13
[그림 II-2]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전망	14
[그림 II-3]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현황(2016)	15
[그림 II-4] 글로벌 펫케어 산업 전망 (소매가격 기준)	20
[그림 II-5] 글로벌 펫케어 산업 구성(2019)	21
[그림 II-6] 권역별 펫사료 시장 규모(2017) 및 연평균 펫사료 시장 성장률(2013-2017)	22
[그림 II-7] 프리미엄 펫사료 출시 사례	28
[그림 II-8] 반려동물 영양제·건강보조제 판매 사례	31
[그림 II-9] 제품 특성(기능성)을 강조한 홍보사례	36
[그림 II-10] 수제 펫사료 및 간식 (예시)	38
[그림 II-11] 수제간식 제조 교육제공 사례	38
[그림 II-12] 브랜드 원산지별 펫사료 구매 동향 (반려견용)	40
[그림 II-13] 브랜드 원산지별 펫사료 구매 동향 (반려묘용)	41
[그림 II-14] 수입산 펫사료 이용 원인(반려견용)	41
[그림 II-15] 수입산 펫사료 이용 원인(반려묘용)	42
[그림 II-16] 펫사료 구매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	43
[그림 II-17] 펫사료 첨가물 논란 사례	45
[그림 II-18]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46
[그림 II-19] 반려동물 관련산업 성장전망	49
[그림 III-1] 애완동물 사료 생산자 물가지수(2015=100)	78
[그림 III-2] 애완동물용품 소비자 물가지수(전국, 분기별)	96
[그림 III-3] 애완동물 관리비 소비자 물가지수(전국, 분기별)	97
[그림 III-4]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관한 질문	98
[그림 III-5] 펫사료(개 및 고양이 사료) 연간 물가지수	125
[그림 III-6]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개 사료), 계절미조정	141
[그림 III-7] 미국의 펫사료 소비자물가지수(CPI-U), 계절미조정	146
[그림 III-8]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이 제공하는 통계정보	153
[그림 IV-1]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199
[그림 IV-2]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203
[그림 IV-3] 미국 사료원료 승인 과정	213
[그림 IV-4] FSMA의 Title과 세부 조항(Section)	216
[그림 IV-5] RASFF의 전달체계	222
[그림 IV-6] EFSA의 운영체계	223
[그림 V-1]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직 및 역할	243
[그림 V-2]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의 업무개요	244
[그림 V-3] 일본의 펫사료 검정 체계	246
[그림 V-4] 요법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평가과정	248
[그림 V-5] FDA 조직도	250

[그림 V-6] 미국의 펫사료 정책 거버넌스	252
[그림 V-7] EU의 식품·사료 안전 체계 - 위해성 분석·평가·관리	254
[그림 V-8] 동애등에의 활용	26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¹⁾을 키우는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²⁾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12년 359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로 증가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17.9%에서 26.4%로 확대²⁾.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와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 가족 사이의 책임감과 유대감 강화 등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향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펫팸(Pet-Fam)은 각각 '애완동물'과 '가족'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가족인 패밀리(Family)의 합성어.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용 사료(펫사료) 및 영양보충제, 용품 및 미용제품, 장난감, 펫-테크, 병원, 보험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 과거에는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장난감처럼 애용하는 물건처럼 '애완동물(pet)' 이라 불렀으나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자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이라 칭함.

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는 2015년 1조 8,994억원³⁾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2조 3,322억원, 2027년에는 약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⁴⁾.

○ 특히 반려동물의 생존을 위한 기초 식량인 사료는 최근 인간이 먹는 식품(food)에 버금갈 정도로 고급화되면서 기존의 사료업체뿐 아니라 국내외 유명 식품기업들이 펫사료 산업에 뛰어들면서 애완동물 사료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음.

-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펫사료 시장의 규모는 2014년 7,323억 원에서 2016년 9,696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1조 원대 시장 규모로 예측⁵⁾.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펫사료부터 용품,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펫 관련 산업의 영역과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펫케어(사료·간식·반려동물용품)시장이 최근 5년 동안(2013년~2018년) 31% 성장⁶⁾.

○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지출액이 2010년 483억 달러⁷⁾(약 55조 9천억원)에서 2019년 957억 달러(약 111조 5천억원)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990억 달러(약 11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⁸⁾⁹⁾

- 미국에서 2019년 기준 반려동물을 위한 전체 소비지출액 중 약 38.6%에 해당하는 369억 달러(약 43조 원) 가량을 펫사료 구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펫 용품과 액세서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은 293억 달러 규모(약 27조 8천억원) 로 약 30.6%를 차지하고 있음.¹⁰⁾

3) 산업 매출액 기준

4)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이코노미조선. 2018. “반려동물 입맛 잡아라” …1조원 한국 펫푸드 시장. 2020. 4.17 접속.

6) Euromonitor 2019a. The Changing Face of Global Pet Care 발표자료

7) Market and Markets. Pet Food Ingredients Market by Ingredient, Source, Pet, Form, and Region. 2020.8.12. 접속

8) APPA. 2020 Pet Industry Market Size & Ownership Statistics. 2020.8.12. 접속

9)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0년 1,156.26원, 2019년 1,165.65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9년 기준 전국 591만 가구가 약 856만 마리(반려견 598만마리, 반려묘 258만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¹¹⁾될 만큼 펫팸족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

- 유로모니터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펫케어 시장 규모는 16억3300만 달러(1조 9,440억원)이며, 2020년에는 17억 2,900만달러 (2조 58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처음으로 2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¹²⁾

- 또한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가맹점(동물병원·펫호텔·펫미용실 등) 이용 건수는 2015년 대비 지난해 14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오픈한 가맹점도 무려 181% 증가하였음¹³⁾.

- 여러 업종 중에서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진 곳은 펫미용실로 2019년에만 전국에서 214곳의 반려동물 전문 미용실이 개점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료를 ‘식품(Pet Food)’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고급화, 프리미엄화와 함께 건강 보충제, 치유용 처방식 등 다양한 펫사료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 구매 트렌트는 ① 고품질 사료 소비증가, ② 영양이 풍부하고 질병이 있을경우 치료도 할 수 있는 처방식 사료 구매의향 증가, ③ 단백질과 수분함량이 높은 습식사료 수요 증가(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습식사료의 인기에 주요 역할)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펫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산업동물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펫사료 시장에서 효과적 관리와 대응이 미흡한 상황.

10)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9년 1,165.65원)을 적용하여 환산.

11)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4.29

12) 해피펫, 잘먹는 명냥이들...“펫케어 시장 2조 예상...70%는 펫푸드”. 2020.8.12. 접속.

13) 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 펫코노미시대,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다. 2020.3.8. 접속.

- 최근 펫사료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른 식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향후 글로벌 펫사료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외연 확대가 필요.
-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의 약 65%(2016년 기준 6,366억 원)¹⁴⁾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습식사료, 처방식 사료 등 고가의 프리미엄급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계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음.
- 수입산 펫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국산 수입대체나 국내산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국내 업계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한국펫사료협회¹⁵⁾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에 수입산 브랜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각각 40.3%, 51.3%로 나타나 여전히 시장에서 수입산 사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펫사료 산업의 가격, 품질, 안전성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
 - 국내 펫사료 업체들의 제품 기술력이 해외 주요브랜드 대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법,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국내 펫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

(2)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려동물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관련 통계 및 정보 수집 및 분석 플랫폼, 법령 및 제도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
-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양육 등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미비.
 -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마릿수는 2016년에 107만 마리에서 2019년말 기준 209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4) 이코노미조선. 2018. “반려동물 입맛 잡아라” …1조원 한국 펫푸드 시장. 2020. 4.17 접속.

15) 푸드투데이. 2019.12.18. [이슈점검] 펫푸드 키우겠다는 정부, “이미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 2019.12.27 접속

-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민간에서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
 - 반려동물 미용, 카페, 호텔, 유치원 등 신규 업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관리기준이 미흡.
- 특히,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펫사료를 일반 산업 산업동물용 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
 - 현재 펫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산업 동물용 사료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펫사료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 동물용 사료와는 달리 제품의 품질,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하는 특성이 있어 사료관리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
 - 동물용 사료 및 식품제조업은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펫사료 제조업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펫사료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과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펫사료 무역 관련 HS세번은 개 사료, 고양이 사료의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운영 중으로 제품의 유형, 성분함량 및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가 미흡하여 정확히 어떤 유형의 펫사료가 수출입 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한 펫사료 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국내외 시장정보 체계구축,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
-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식품과 건강보조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

면서 펫사료 제품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 공정한 가격, 표준 및 인증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자연식’, ‘유기농’, ‘홀리스틱(Holistic)’, ‘휴먼그레이드’, ‘슈퍼프리미엄’ 등 다양한 용어가 펫사료의 등급과 특성을 광고하는 데 활용되나, 대부분 용어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¹⁶⁾

○ 이에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하여 유기사료 표시 및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용 펫사료 등급과 인증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프리미엄급 펫사료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수입산 소비 비중(약 65%)이 높은 실정.

- 유기사료 인증제가 2017년 6월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¹⁷⁾, 유기원료 함량(제품 중량의 95% 및 70%)을 기준¹⁸⁾으로 유기사료 인증로고 및 관련 문자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제품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산업동물용 사료와 독립된 펫사료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정확한 통계 및 정보 수집 체계구축, 신뢰할만한 품질인증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펫사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

16) 중앙일보. 2017.6.25. 반려인이 맹신하는 사료등급의 비밀

17) 전면시행은 ‘19.1일.

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자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반려동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펫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의 펫사료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펫사료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통계정보 수집 및 법령, 제도 기반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 국내외 펫사료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 규모, 주요국별 산업 동향, 수출입 동향, 시장 트렌드에 대해 살펴봄.
- 펫사료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계정보 및 법령, 제도기반의 현황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펫사료 산업과 관련된 통계정보 및 법령, 제도기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펫사료 산업의 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통계기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국내외 펫사료 산업의 관리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안(단기, 중장기)을 마련.
 - 펫사료 산업 관련 조직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

II. 국내·외 펫사료 산업 동향 분석

1. 글로벌 펫사료 산업과 시장
2. 국내 펫사료 산업과 시장
3. 기타 펫 연관 산업과 시장
4. 요약 및 시사점

II. 국내·외 펫사료 산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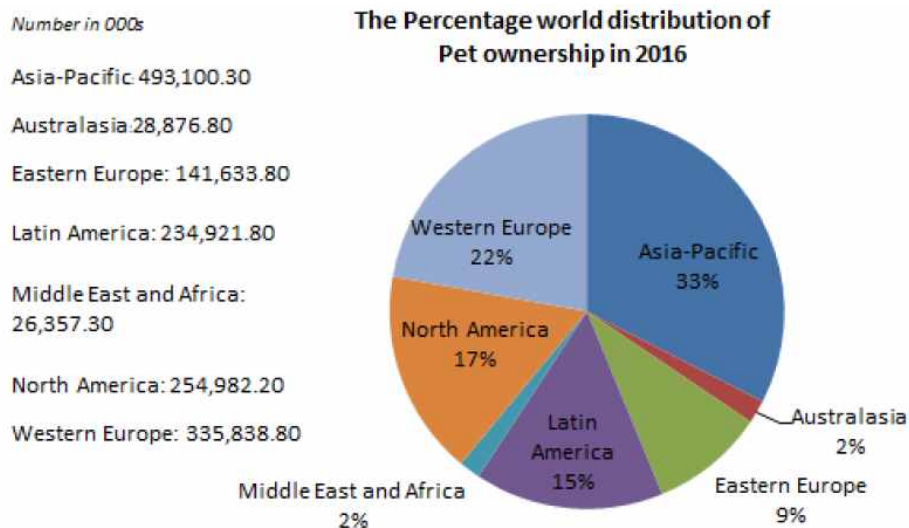
1. 글로벌 펫사료 산업과 시장

(1) 반려동물 양육현황

- 2016년 기준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는 15억 마리 규모로 추정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다음으로 서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4억 9,310만 마리로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의 33%를 차지하며, 서유럽 3억 3,584만 마리(22%), 북아메리카 2억 5,498만 마리(17%), 라틴아메리카 2억 3,492만 마리(15%) 순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가 많음.

[그림 II-1]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및 권역별 양육 비중(2016)

단위: 천 마리, %



주. 반려 동물소유(pet ownership)는 소유자가 반려동물로 소유한 동물의 개체 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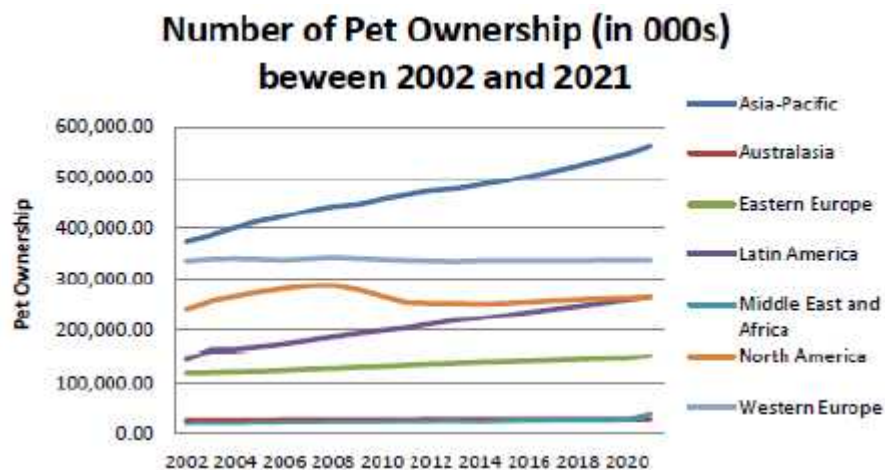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Pet ownership, Market size of Pet Care, Expenditure per Pet, Number of Vets. Retrieved from <https://www.portal.euromonitor.com> 재인용,
Pet Care Industry: Business Overview and Opportunities, Wing Chi NG (2017), 석사학위 논문

□ 반려동물 개체 수는 주로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16년 4억 9천만 마리에서 '21년 5억 5천만 마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16년 2억 3천만 마리에서 '21년 2억 7천만 마리 수준으로 증가하여 북미와 유사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북미 지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16년 2억 5천만 마리에서 '21년 약 2억 7천만 마리로, 동유럽은 '16년 1억 4천만 마리에서 '21년 약 1억 6천만 마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유럽 지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뚜렷한 증감을 보이지 않고 '21년에도 '16년과 유사한 3억 3천만 마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1년에도 여전히 반려동물 개체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일 것으로 예상.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은 향후에도 반려동물 양육 비중이 가장 낮은 권역일 것으로 예상.

[그림 II-2]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전망

단위: 천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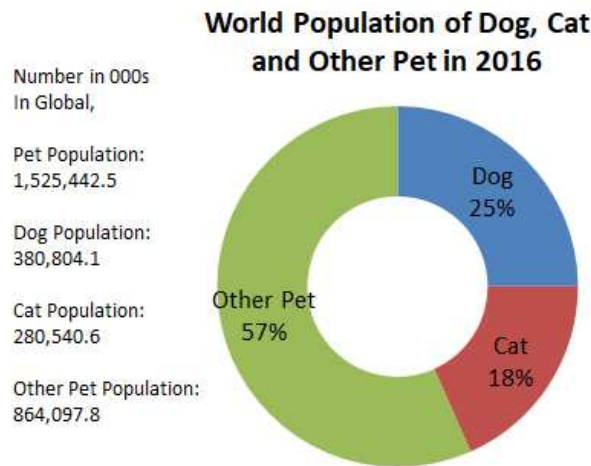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Pet ownership, Market size of Pet Care, Expenditure per Pet, Number of Vets. Retrieved from <https://www.portal.euromonitor.com/> 재인용, Pet Care Industry: Business Overview and Opportunities, Wing Chi NG (2017), 석사학위 논문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 비중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반려동물이 57%를 차지.
- 2016년 기준 전 세계 반려견 개체 수는 총 3억 8천만 마리(25%)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반려동물이며, 반려묘 개체 수는 총 2억 8천만 마리(18%)로 두 번째로 개체 수가 많은 반려동물.
 - 2018년 반려견 및 반려묘 개체 수는 각각 4억 7,100만 마리, 3억 7,300만 마리¹⁹⁾로 증가.
- 그 외의 반려동물로는 소형 포유류, 조류, 파충류, 관상어 등이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의 57%를 차지.
-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 기준으로 관상어가 가장 많으나, 사육 형태의 특성상 관상어 개체 수와 기타 반려동물의 개체 수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II-3]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 현황(2016)

단위: 천 마리, %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Pet ownership, Market size of Pet Care, Expenditure per Pet, Number of Vets. Retrieved from <https://www.portal.euromonitor.com/> 재인용,
Pet Care Industry: Business Overview and Opportunities, Wing Chi NG (2017), 석사학위 논문

19) Statista. 2019.5. Number of dogs and cats kept as pets worldwide in 2018. 2020.4.1 접속.

□ 전체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 개체 수가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반려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 주요 국가별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 개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²⁰(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는 다소 감소 추세이며, 2017~2018년 기준 반려묘 개체 수가 9,420만 마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반려견이 8,970만 마리가 양육되고 있음.
 - 미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7~2018년 총 3억 9,330마리로 전년 (2015~2016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음.
 - 미국은 반려묘와 반려견을 가장 많이 기르고 있으며, 반려견 개체 수는 2013~2014년 8,330만 마리에서 2017~2018년 8,97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나, 반려묘 개체 수는 동 기간 9,560만 마리에서 9,420만 마리로 감소.

<표 II-1> 미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18)

단위: 백만 마리

구분	2013-2014	2015-2016	2017-2018
합계	396	312.1	393.3
관상어(답수)	145	95.5	139.3
반려묘	95.6	85.8	94.2
반려견	83.3	77.8	89.7
조류	20.6	14.3	20.3
관상어(해수)	13.6	9.5	18.8
소형동물	18.1	12.4	14
파충류	11.5	9.3	9.4
말	8.3	7.5	7.6

자료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s National Pet Owners Survey (각 년도)

- (EU) 유럽연합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8년 기준 3억 5천 9백만 마리 이고, 그중 반려묘가 7,430만 마리, 반려견이 6,340만 마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묘 개체 수가 반려견에 비해 많음.

20)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는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1300개 이상의 반려동물 용품업체, 수입업체, 가축 판매업체(livestock suppliers)등을 대표하는 단체로, 반려동물 돌봄 산업(펫케어) 및 반려동물 용품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협회는 1988년부터 격년주기로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를 발간하여, 반려동물(개, 고양이, 조류, 파충류, 소형동물 및 말 등) 양육 인구의 특성, 소비습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3년 3억5,330만 마리에서 2017년에는 3억 5,810만 마리로 연 0.4%씩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0.1%로 개체 수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려묘의 개체 수는 2018년 7,430만 마리에서 2022년 7,590만 마리로 연평균 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동안 반려견은 6,340만 마리에서 6,400만 마리로 연평균 0.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반려묘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

<표 II-2> EU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단위: 백만 마리, %

구분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18-‘22)
합계	353.3	358.1	0.4	357.9	358.7	0.1
관상어	153.7	151.7	△0.3	150.7	148.9	△0.3
반려묘	68.4	73.8	1.9	74.3	75.9	0.6
반려견	61.5	63.3	0.7	63.4	64.0	0.2
소형포유류 및 파충류	59.5	59.7	0.1	59.9	61.3	0.6
조류	40.0	39.5	△0.3	39.5	39.3	△0.1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European Unio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캐나다 농업부)

- (일본) 일본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3년 5,980만 마리에서 2017년 5,790만 마리로 연 △0.8%씩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5,590만 마리 규모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2018년 기준 일본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5,750만 마리고, 그중 반려묘가 960만 마리, 반려견이 890만 마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묘 개체 수가 반려견에 비해 많음.
- 2013년까지는 반려견 개체 수가 반려묘 개체 수 대비 많았으나, 반려견 개체 수 감소율(‘13년 - ‘17년, 연 △4.9%)이 반려묘 개체 수 감소율(동 기간, 연 △0.5%)보다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반려묘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

<표 II-3> 일본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단위: 백만 마리, %

구분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18-‘22)
합계	59.8	57.9	△0.8	57.5	55.9	△0.7
반려견 및 반려묘	20.6*	18.4*	△1.5	18.5*	18.3	△1.2
반려견	10.9*	8.9*	△4.9	8.9*	-	-
반려묘	9.7*	9.5*	△0.5	9.6*	-	-
기타 반려동물	39.1	38.4	△0.4	38.3	37.6	△0.5

* 해당 수치는 일본 펫푸드 협회²¹⁾(Japan Pet Food Association)의 각 연도별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European Unio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캐나다 농업부)

○ (중국) 중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8년 기준 5억 5천 1백만 마리가
 고, 그중 반려견이 9,360만 마리, 반려묘가 8,700만 마리로 반려견 개체
 수가 반려묘에 비해 많으나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반려묘 개체 수
 증가율(18.5%)이 반려견 개체 수 증가율(9.8%)의 2배에 달할것으로 보여
 반려묘가 가장 선호되는 반려동물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7%씩 성장하였
 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가율은 연 8.2%로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8년에는 반려견 개체 수(9,360만 마리)가 반려묘 개체 수(8,700만 마
 리)보다 많으나, 2022년 반려묘 개체 수는 1억 7,120만 마리까지 증가
 하여 중국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될 것으로 예측.

21) 일본펫푸드협회는 1969년 일본 펫푸드산업협회로 설립되어 200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펫푸드협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펫푸드 제조,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 일
 본의 전국 개 및 고양이 사육 실태조사와 펫푸드 유통 조사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펫푸드에 관한 자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펫푸드의 품질을 제고 및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음.

<표 II-4> 중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단위: 백만 마리, %

구분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18-‘22)
합계	389.2	509.7	7	551.0	755.3	8.2
관상어	168.2	184.3	2.3	188.5	220.5	4
반려견	55.4	84.6	11.1	93.6	136.1	9.8
반려묘	21.9	68.5	33	87.0	171.2	18.5
조류	74.1	73.5	△0.2	74.0	76.8	0.9
파충류	4.9	4.9	0.2	4.9	5.0	0.3
소형 포유류	2.1	2.2	0.5	2.2	2.3	1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재인용,
<https://www.chinapetmarket.com/china-pet-population-and-ownership-2019/>

(2) 펫사료 시장 동향

□ 펫사료는 반려동물 돌봄 산업(펫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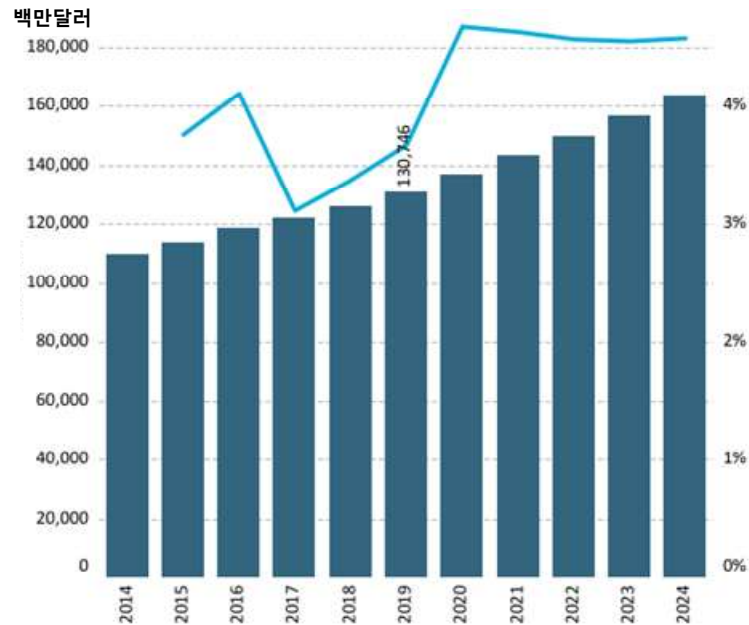
○ 유로모니터(2019)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펫케어 산업은 1,310억 달러(152조 4천억원)로 전년(2018년, 1,230억 달러, 원화기준 135조 3천억원) 대비 6.5% 성장하였음.²²⁾

- 전 세계 펫케어 산업은 2011년 1,100억 달러(121조 8,900억원)에서 2019년 1,310억 달러(152조 4천억원)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1,600억 달러(186조 5천억원)를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²³⁾

22)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8년 1,100.30원, 2019년 1,165.65원)을 적용하여 환산.

23)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0년 1,108.11원, 2019년 1,165.65원, 2024년의 경우 2019년의 환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환산.

[그림 II-4] 글로벌 펫케어 산업 전망 (소매가격 기준)



자료: The world market for pet care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 펫케어 산업은 펫사료²⁴⁾ 산업과 펫용품(Pet products)산업으로 구성되며, 펫사료 산업은 전체 펫케어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분야.
 - 2019년 글로벌 펫사료(반려견, 반려묘 및 기타반려동물 사료) 산업은 940억 달러(109조 5,700억원)로 전체 펫케어 시장의 71.8%를 차지하고 있음.²⁵⁾
 - 특히, 반려견 사료 시장이 560억 달러(65조 2,800억원), 반려묘 사료 시장이 340억 달러(39조 6,300억원)로 전체 펫사료 산업(940억 달러)의 95.7%를 차지하고 있음.²⁶⁾

24) 원 자료에는 펫푸드(Pet Food)로 표기하고 있음.

25)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9년 1,165.65원)을 적용하여 환산.

26) 상동

[그림 II-5] 글로벌 펫케어 산업 구성(2019)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b. The world market for pet care

※ 기타 반려동물 사료는 조류, 소형포유류 및 파충류, 관상어 사료로 구성되며, 반려동물용품은 고양이 모래, 펫 건강보조제, 펫 헬스케어 및 기타 펫 용품으로 구성.

□ 펫사료 산업은 전통적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는 북미 및 서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펫사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펫사료 산업은 2017년 기준 북미 시장 약 328억 달러(37조원), 서유럽 시장 약 230억 달러(26조원) 규모로 북미와 서유럽 시장이 전 세계 펫사료 시장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²⁷⁾

- 기타 지역의 펫사료 시장 규모는 라틴아메리카 (108억 달러, 12조 2천 억원), 아시아-태평양(86억 달러, 9조 7,200억원), 동유럽(57억 달러, 6조 4,500억원), 오스트랄라시아(28억 달러, 3조 1,700억원), 중동 및 아프리카(8억 달러, 9천억원) 순으로 나타남.²⁸⁾

○ 하지만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펫사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연 12.5%), 동유럽(연 10.3%), 아시아-태평양(연 9.1%) 및 중동 및 아프리카 (연 9.1%)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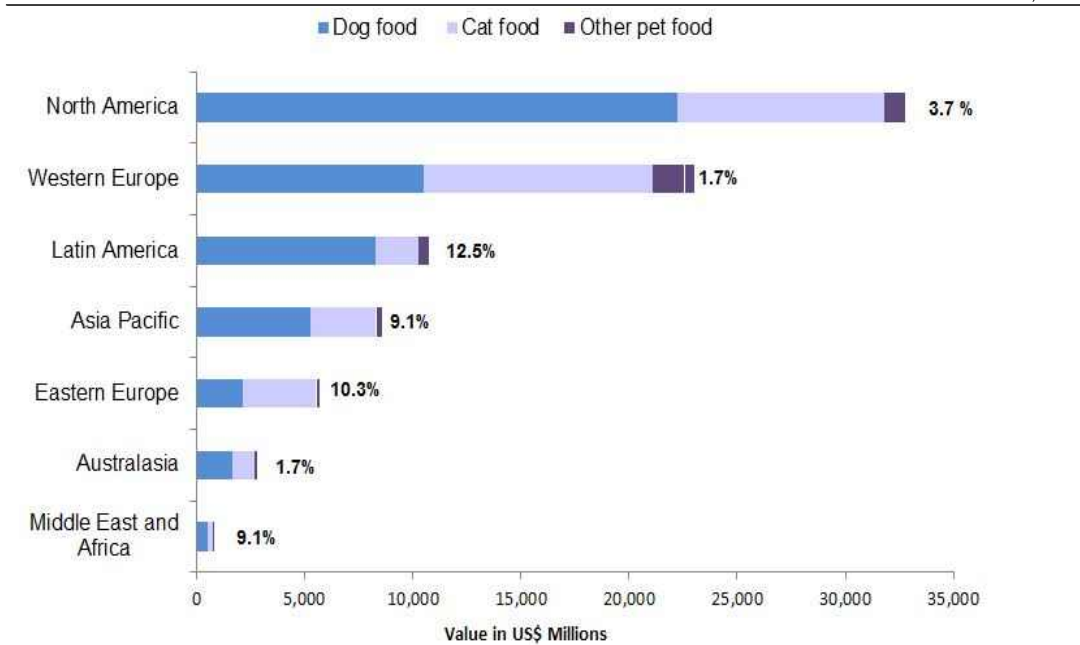
27)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7년 1,130.84원)을 적용하여 환산.

28) 상동

- 반면, 이미 펫사료 시장이 크게 발달한 서유럽과 북미 지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1.7%와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시현.

[그림 II-6] 권역별 펫사료 시장 규모(2017) 및 연평균 펫사료 시장 성장률(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캐나다 농업부)

□ 펫사료 시장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2013년~2017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

○ 2017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이 약 311억 달러(35조 1,700억원) 규모로 전 세계 펫사료 시장의 36.8%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52억 달러, 5조 8,800억원), 영국(48억 달러, 5조 4,300억원), 독일(42억 달러, 4조 7,500억원), 프랑스(41억 달러, 4조 6,400억원), 일본(37억 달러, 4조 1,800억원) 등의 순이었음.²⁹⁾

- 우리나라의 펫사료 시장은 세계 19위권으로 2017년 기준 7억 9,600만 달러(9천억원) 수준으로 전 세계 펫사료 시장에서 0.9%를 차지.³⁰⁾

29)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7년 1,130.84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30) 상동

- 연평균 성장률('13- '17)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펫사료 시장 성장률이 연 35%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연 23.5%), 인도(연 21.8%), 콜롬비아(연 17.8%), 한국(16.5%)의 순으로 높았음.
- 우리나라의 펫사료 시장은 연평균 16.5%씩 성장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표 II-5> 주요 국가별 펫사료 시장 규모(2017) 및 연평균 펫사료 시장 성장률(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13-'17)	Share % in 2017	연평균 증가율 ('18-'22)
미국	26,842	31,084	3.7	36.8	4.4
브라질	3,408	5,194	11.1	6.2	10.6
영국	4,541	4,809	1.4	5.7	2.6
독일	3,785	4,206	2.7	5	2.4
프랑스	3,882	4,085	1.3	4.8	2.8
일본	3,534	3,717	1.3	4.4	1.7
러시아	1,752	2,942	13.8	3.5	7.9
이탈리아	2,703	2,926	2	3.5	3.6
호주	2,289	2,432	1.5	2.9	3.5
멕시코	1,480	2,079	8.9	2.5	8.3
중국	502	1,668	35	2	28.9
캐나다	1,468	1,696	3.7	2	4.4
스페인	1,227	1,340	2.2	1.6	4.2
네덜란드	981	1,073	2.2	1.3	2.4
아르헨티나	403	946	23.8	1.1	17.9
콜롬비아	495	953	17.8	1.1	14.7
칠레	528	917	14.8	1.1	12.4
태국	552	859	11.7	1	11.5
한국	432	796	16.5	0.9	6.6
벨기에	615	697	3.2	0.8	4.6
오스트리아	538	626	3.9	0.7	2.7
루마니아	292	453	11.6	0.5	13
인도	109	240	21.8	0.3	15.3
우크라이나	156	248	12.3	0.3	8.6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재구성,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 한편 글로벌 펫사료 시장에서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5.8%씩(2018년~2022년) 전 세계 펫사료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기준 펫사료 시장 규모는 반려견용 사료 499억 달러(56조 4,300억 원), 반려묘용 사료 289억 달러(32조 6,800억 원)로 글로벌 펫사료 전체 매출액(844억 달러, 95조 4,400억 원)의 93%를 차지하고 있음.³¹⁾

- 반려견 및 반려묘 사료 시장은 과거 5년간(2013년~2017년) 각각 연 1.4%, 0.6%씩 성장하였으나, 2018년~2022년 동안에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 시장이 모두 연간 5.8%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글로벌 펫사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

○ 그 외 반려동물 헬스케어,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은 아직 전체 펫사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불과하지만, 이 분야들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5.1%, 5.6%씩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II-6> 글로벌 펫사료 및 펫케어 상품 시장 매출액 및 성장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18-‘22)
합계	81,083	84,416	1.0	92,554	115,891	5.8
반려견 사료	47,205	49,913	1.4	55,193	69,172	5.8
반려묘 사료	28,282	28,960	0.6	31,420	39,437	5.8
기타 반려동물 사료	4,431	3,954	△2.8	4,166	4,643	2.7
조류	1,368	1,179	△3.7	1,234	1,382	2.9
관상어	1,257	1,086	△3.6	1,149	1,278	2.7
소형포유류 및 파충류	1,806	1,689	△1.7	1,783	1,983	2.7
반려동물 헬스케어	4,298	4,147	△0.9	4,424	5,399	5.1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1,298	1,396	2	1,517	1,883	5.6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재구성,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31)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7년 1,130.84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 펫사료는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세계시장에서 펫사료 교역(수출 기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반려견 및 반려묘용 사료(소매용)는 HS 2309.10³²⁾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출 기준 교역액은 2000년 34억 2,900달러(3조 8,800억원)에서 2018년 143억 2,300달러(15조 7,600억원)로 연평균 8.3%씩 증가하였음.³³⁾

-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2000년 401만 톤에서 2018년 760만 톤까지 교역량이 증가.

○ 특히 펫사료 무역은 점점 고부가 제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예컨대 펫사료 단위당 평균 수출단가는 2000년 kg당 0.85달러에서 2018년 1.89 달러로 약 2.2배 상승하여, 점점 고가의 펫사료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7> 글로벌 펫사료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CAGR
수출액(A)	3,429	5,648	8,835	11,471	14,323	8.3%
수출량(B)	4,015	5,029	5,810	7,034	7,591	-
수출단가(A/B)	0.85	1.12	1.52	1.63	1.89	-

자료: UNcomtrade

□ 2018년 기준으로 펫사료의 상위 5개 수출국은 독일, 프랑스, 미국, 태국, 네덜란드 순이며, 상기 5개국의 수출액은 총 72억 7,700만 달러(8조원)로 전 세계 펫사료 수출액(143억 달러, 15조 7,600억원)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펫사료 주요 수출국인 동시에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펫사료 제품의 산업 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2)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used in animal feeding, 참고로 HS 세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무역의 기준이 되는 부호.

33)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00년 1,130.61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

- 2018년 기준 펫사료 수출 1위(17억 6,300만 달러, 1조 9,4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입을 기준으로도 1위(14억 5,900만 달러, 1조 6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수출 기준 2위, 수입 기준 4위), 미국(수출 기준 3위, 수입 기준 2위) 등도 펫사료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많이 하고 있음.³⁴⁾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 세계 펫사료 무역에서 수입은 세계 15위권(2억 3,900만 달러, 2,630억원), 수출은 37위권(1,400만 달러, 150억원)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무역적자(2억 2,500만 달러, 2,480억원)를 보이고 있음.³⁵⁾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펫사료 수입 증가율(연 5.9%)이 수출 증가율(연 0.8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펫사료 무역적자는 7,300만 달러(844억)였으나, 2018년의 무역적자는 2억 2,500만 달러(2,480억원)³⁶⁾ 규모로 무역적자 폭이 약 3배 확대되었음.

<표 II-8> 펫사료 교역 동향(2010-2018)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2010	2015	2018			2010	2015	2018
1	독일	810	1,282	1,763	1	독일	845	1,069	1,459
2	프랑스	1,400	1,506	1,521	2	미국	529	765	988
3	미국	1,138	1,287	1,467	3	영국	699	779	878
4	태국	624	966	1,328	4	프랑스	445	578	700
5	네덜란드	702	896	1,198	5	캐나다	498	631	689
6	폴란드	189	295	889	6	일본	813	659	643
7	중국	593	675	874	7	네덜란드	244	455	636
8	헝가리	362	498	532	8	이탈리아	536	585	631
9	캐나다	233	498	531	9	폴란드	136	195	571
10	영국	272	409	470	10	벨기에	452	471	506
⋮					⋮				
31	일본	7	9	34	15	한국	85	148	239
37	한국	12	13	14	17	중국	11	16	206

자료: UNcomtrade

34)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

35) 상동

36)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0년 1,156.26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

□ 펫사료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와 반려동물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기능성 제품의 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펫사료는 주식으로 급여하는 사료(건식사료 및 습식사료)와 사료를 제외한 기타 식품인 간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용 간식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반려견용 간식(트릿)은 연 3.8%, 반려묘용 간식(트릿)은 연 6.5%씩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건식사료 및 습식사료와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품목.

○ 고품질의 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사료를 위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건식 및 습식사료는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저가형 이코노미 사료, 중간가격 사료, 고급형 프리미엄 사료로 구분할 수 있음.

- 반려견 및 반려묘용 사료의 경우 모두 프리미엄 사료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코노미 및 중간가격 사료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고가·고품질 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표 II-9>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글로벌 소매시장 판매동향(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반려견용 펫사료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반려묘용 펫사료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간식 및 보충제	7,264	8,396	3.7	간식 및 보충제	1,536	1,975	6.5
사료보충제 (믹서)	94	85	△2.4	사료보충제 (믹서)	0	1	13.6
간식(트릿)	7,170	8,310	3.8	간식(트릿)	1,535	1,975	6.5
건식사료	31,942	33,128	0.9	건식사료	13,018	13,376	0.7
이코노미	6,075	5,667	△1.7	이코노미	2,294	2,161	△1.5
중간가격	11,571	11,042	△1.2	중간가격	5,350	5,275	△0.4
프리미엄	14,297	16,419	3.5	프리미엄	5,374	5,940	2.5
습식사료	7,999	8,389	1.2	습식사료	13,728	13,609	△0.2
이코노미	1,616	1,416	△3.3	이코노미	2,072	1,776	△3.8
중간가격	3,103	2,931	△1.4	중간가격	6,317	5,838	△1.9
프리미엄	3,280	4,042	5.4	프리미엄	5,340	5,994	2.9
합계	47,205	49,913	1.4	합계	28,282	28,960	0.6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캐나다 농업부)



미국의 Spot Farms는 미국 내 반려동물 양육 가족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천연,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펫사료를 생산하며, 원재료 획득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 Spotfarms 제품 홈페이지)

□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기능성 펫사료 및 치유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의 건강 개선 및 노화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의 연령대에 적합한 펫사료, 면역력 증진, 관절,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되는 펫사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강조한 기능성 제품의 출시가 늘고 있음.

- 단순히 기능성 원료를 첨가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성 펫사료의 섭취를 통해 반려동물의 면역력 강화, 두뇌 발달 및 심신안정, 뼈, 관절 및 근육 강화 등 건강상태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을 강조.

-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인 ‘Hill’s Science Diet’는 연령별, 제품 유형별, 기능별로 제품을 세분화해 각각의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통해 치유식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있음을 강조.

<표 II-10> 기능성 및 질병 치유를 강조한 펫사료 출시 사례(2017-2018)

단위: 건

구분	유럽	아시아 태평양	북미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성견용 사료	2,203	516	248	408	188
피부 및 모발 강화	714	613	108	191	105
소화 및 요로 건강	735	642	77	193	74
기능 비 특정	578	667	111	197	105
충치, 치석예방	557	476	137	226	88
면역체계 강화	540	441	45	95	92
관절, 뼈, 근육 강화	425	478	64	106	109
중형견용 사료	263	190	48	105	60
시력 강화	192	188	20	64	46
체중감량	199	132	30	35	17
심장, 심혈관계 강화	155	116	26	46	22
체중증량 및 근육 강화	164	67	47	37	32
노령견용 사료	85	139	6	9	14
뇌 및 신경계건강	74	124	13	26	11

자료: Mintel, 2018 (재인용,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캐나다 농업부)

□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위해 사료, 간식 등의 펫사료 이외에도 비타민, 유산균 등 반려동물용 영양제·건강 보조제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보조제와 같이 주식을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반려동물용 영양보충제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 건강보조제는 파우더형, 오일형 및 알약형 등으로 나뉘며 특히 오일형 건강보조제의 경우 식용뿐만 아니라 피부 및 털에 마사지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탈모, 피부염 예방 및 심신안정 기능이 있다며 판매 중.

-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를 생산하는 Amazing Nutritionals는 오메가3, 항산화제, 비타민 등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보조제로 사료만 사용했을 때에는 놓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 줌을 강조.

[그림 II-8] 반려동물 영양제·건강보조제 판매 사례



야생 알래스카 연어를 원료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로, 강아지의 피부와 모발개선은 물론, 염증완화, 시력개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강조.



글루코사민을 함유하고 있는 관절강화를 위한 영양제로, 소화촉진 및 면역력 강화 등 기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성분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홍보.

자료: amazon.com

2. 국내 펫사료 산업과 시장

(1) 반려동물 양육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가장 많이 기르고 있으며, 반려견에 비해 반려묘 개체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반려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89.3%가 기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반려묘(32.8%)’를 많이 기르고 있음.³⁷⁾

- 그 외의 반려동물로는 ‘어류/열대어(2.2%)’, ‘햄스터(1.2%)’, ‘거북이(0.8%)’ 등을 기르고 있음.

○ 2019년 기준 반려견 개체 수는 약 598만 마리, 반려묘 개체수는 약 258만 마리로 추정.

- 지난 10년간 반려견 개체 수의 증가율은 연 2.9% 수준이나, 반려묘 개체 수의 증가율은 연 17% 수준으로 반려견에 비해 반려묘 개체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표 II-1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 추정치

단위: 마리

구분	2010	2012	2015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0~19)
반려견	4,615,198	4,397,275	5,126,127	6,620,342	5,072,272	5,984,903	2.9%
반려묘	628,989	1,158,932	1,897,137	2,329,693	1,280,400	2,579,186	17.0%

자료: 코리아리서치(2019). 2019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37) 코리아리서치(2019).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2)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동향

- 반려견과 반려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매출기준으로 펫사료 시장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13.8%씩 크게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향후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5.9%씩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억 1,540만 달러(5,430억원)에서 2018년 8억 6,490만 달러(9,520억원)로 연평균 13.8%씩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2019~2023년) 연평균 5.9%씩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시장 규모는 각각 6억 990만 달러(6,710억원), 2억 4,490만 달러(2,690억원)로 전체 펫사료 시장(8억 6,490만 달러, 9,520억원)의 99.8%를 차지.³⁸⁾
 - 2014년 기준 반려견 사료는 전체 펫사료 시장의 79.8%, 반려묘 사료는 18.8%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5년간(2014~2018) 반려묘 사료 판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반려묘 사료시장의 비중이 전체 사료시장의 28.3%까지 확대.
 - 개와 고양이 이외 기타 반려동물 사료 시장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2014년~2018년 조류 사료, 연 15%, 소형포유류 및 파충류 사료 연 10.7%씩 성장) 전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낮음.

<표 II-12> 우리나라 펫사료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8	연평균 증가율 (2014-2018)	2019	2023	연평균 증가율 (2019-2023)
합계	515.4	864.9	13.8	930.3	1,168.9	5.9
반려견 사료	411.4	609.9	10.3	643.5	776.1	4.8
반려묘 사료	97	244.9	26.1	276	378.7	8.2
기타 반려동물사료	7	10.1	9.6	10.9	14.1	6.6
소형 포유류 및 파충류	6.09	9.14	10.7	9.87	12.94	7
관상어	0.90	0.95	1.6	0.98	1.13	3.6
조류	0.01	0.02	15	0.02	0.02	9.2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자료 기반 저자 재구성)

38)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4년 1,052.22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

□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사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급 사료 및 간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매출액 기준 반려견 사료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2014년~2018년)이며, 간식(트릿)(14%), 건식사료(9.7%), 습식사료(8.8%) 순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높음.

- 트릿(간식)의 매출액은 2014년 6,500만 달러(680억원)에서 2018년 1억 97만 달러(1,210억원)로 연평균 14%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식 사료(건식, 습식) 시장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수치.

○ 반려묘 사료시장은 2014년 9,700만 달러(1천억원)에서 2018년 2억 5,000만 달러(2,750억원)로 연 26.1%씩 성장하였으며, 반려견 사료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³⁹⁾

- 건조사료 및 습식사료 매출은 각 연평균 25.4%, 18.7%로 증가하였으나, 반려묘용 간식(트릿) 매출은 380만 달러(40억원)에서 2천만 달러(220억원)로 연평균 51.8%로 성장.

- 반려묘 건조사료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사료(연 9.2%)보다 중저가형 (이코노미 연 21.6%, 중간가격 연 38.1%) 사료를 위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표 II-13> 국내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소매시장 판매동향

단위: 백만달러, %

반려견 사료	2014	2018	연평균 증가율 ('14-'18)	반려묘 사료	2014	2018	연평균 증가율 ('14-'18)
간식 및 보충제	65	109.7	14	간식 및 보충제	3.8	20.2	51.8
간식(트릿)	65	109.7	14	간식(트릿)	3.8	20.2	51.8
사료보충제 (믹서)	-	-	-	사료보충제 (믹서)	-	-	-
건식사료	320	463.2	9.7	건식사료	81	200.4	25.4
이코노미	177.6	269.2	11	이코노미	45.7	99.8	21.6
중간가격	106.7	141.2	7.3	중간가격	22.6	82.3	38.1
프리미엄	35.7	52.8	10.3	프리미엄	12.7	18.2	9.4
습식사료	26.4	37	8.8	습식사료	12.3	24.4	18.7
이코노미	24	35.3	10.1	이코노미	9.7	18.8	18
중간가격	-	-	-	중간가격	-	-	-
프리미엄	2.3	1.7	-7.3	프리미엄	2.6	5.5	20.6
합계	411.4	609.9	10.3	합계	97	244.9	26.1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기반 재구성)

39)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4년 1,052.22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역시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반려동물의 건강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5년(2014년~2018년) 동안 펫사료 제품 신규 출시 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기타 영양 성분 첨가 등을 홍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신규 출시된 펫사료 제품의 경우, ‘첨가물·보존제 없음’ (334건), ‘프리미엄’ (257건), ‘피부 개선’ (210건)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4> 국내 펫사료 신제품 출시 시 제품 특성별 홍보 사례

구분	반려견 간식	반려견 건식사료	반려묘 간식	반려묘 습식사료	반려견 습식사료	합계
첨가물·보존제 없음	182	51	33	8	7	334
프리미엄	154	28	11	15	2	257
피부개선	99	62	21	0	15	210
기타(기능성)	134	38	14	5	10	206
소화 및 배뇨개선	76	55	12	1	21	178
이빨 및 치석관리	144	10	9	1	2	170
고단백, 단백질 첨가	123	26	7	0	0	162
알러지 유발물질 감소 및 제거	68	53	4	12	8	156
저지방, 무지방 등 지방함유량 감소	110	8	10	5	2	148
비타민, 미네랄 강화	48	37	14	1	9	140

자료 : Minte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그림 II-9] 제품 특성(기능성)을 강조한 홍보사례

 <table border="1" data-bbox="256 779 754 1111"> <tr> <td data-bbox="256 779 416 9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 프리미엄 </td> <td data-bbox="416 779 576 9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Grain Free Recipe 그레인프리 레시피 </td> <td data-bbox="576 779 754 9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al Wellbeing Pet Food 리얼 웰빙 펫푸드 </td> </tr> <tr> <td data-bbox="256 920 416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Artificial Colors, Flavor, Preservative 無 인공색소, 향미제, 방부제 </td> <td data-bbox="416 920 576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Balanced Nutrition 균형 영양식 </td> <td data-bbox="576 920 754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High Protein White Fish 고단백 흰살생선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 프리미엄	<input checked="" type="checkbox"/> Grain Free Recipe 그레인프리 레시피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al Wellbeing Pet Food 리얼 웰빙 펫푸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Artificial Colors, Flavor, Preservative 無 인공색소, 향미제, 방부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Balanced Nutrition 균형 영양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High Protein White Fish 고단백 흰살생선	 <table border="1" data-bbox="863 831 1326 1111"> <tr> <td data-bbox="863 831 1018 954">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프리미엄 </td> <td data-bbox="1018 831 1173 954"> <input checked="" type="checkbox"/> Outstanding Preference 뛰어난 기호성 </td> <td data-bbox="1173 831 1326 954">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ult Dog 성견 </td> </tr> <tr> <td data-bbox="863 954 1018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Allergy Skin 알러지 피부개선 </td> <td data-bbox="1018 954 1173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Sensitive Skin 민감성 피부 알러지 </td> <td data-bbox="1173 954 1326 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lmon 순살 연어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프리미엄	<input checked="" type="checkbox"/> Outstanding Preference 뛰어난 기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ult Dog 성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Allergy Skin 알러지 피부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Sensitive Skin 민감성 피부 알러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lmon 순살 연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 프리미엄	<input checked="" type="checkbox"/> Grain Free Recipe 그레인프리 레시피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al Wellbeing Pet Food 리얼 웰빙 펫푸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Artificial Colors, Flavor, Preservative 無 인공색소, 향미제, 방부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Balanced Nutrition 균형 영양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High Protein White Fish 고단백 흰살생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Super Premium 슈퍼프리미엄	<input checked="" type="checkbox"/> Outstanding Preference 뛰어난 기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ult Dog 성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Allergy Skin 알러지 피부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Sensitive Skin 민감성 피부 알러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lmon 순살 연어											
<p>곡물(옥수수, 밀, 대두) 무첨가, 인공색소, 향미제, 방부제 무첨가 펫푸드 프리미엄 제품 홍보 사례</p>	<p>피부, 모질건강등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한 펫푸드 홍보사례</p>												

자료: 퓨리나펫케어 제품 홈페이지

□ 펫사료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주요기업 및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

○ 국내 시장에서 판매액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한국마즈의 ‘로얄캐닌’으로 2013년부터 지속해서 매출 1위(2017년 기준 약 1억 700만 달러, 1,20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브랜드와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⁴⁰⁾

○ 2017년 기준 매출액 2위~5위를 차지하는 브랜드들은 매출 규모가 3,000만 달러 대로 큰 차이가 없어 펫사료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음.

40)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7년 1,130.84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대주의 ‘캣츠랑’, 네추럴펫의 ‘네추럴 코어’, 대한사료의 ‘이즈칸’ 순으로, 과거 매출액이 낮은 제품들의 판매량이 급격히 상승.

<표 II-15>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주요브랜드 별 매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브랜드명	업체명						
로알캐닌	한국마즈	47.6	60.5	70.8	86.4	107.3	22.5
ANF	텍사스 팜 프로젝트	24.9	26.8	29.9	32.5	34.1	8.2
캣츠랑	대주	5.4	9	16.6	24.2	32.5	56.6
네추럴 코어	네추럴펫	9.3	14	20.7	25.7	30.8	34.9
프로베스트	대한사료	20.6	22.7	26	28.2	30.6	10.4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콜게이트-팜올리브	12	15	17.8	22.8	22.8	17.4
네추럴 발런스	JM 스머커			18.4	21.5	22.8	N/A
도그랑	대주	15.2	17.9	19.7	20.6	21.6	9.2
시저	한국마즈	19.5	19.5	18.3	20.3	21.2	2.1
이즈칸	대한사료	7	8.2	11.8	14.6	19.7	29.5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 한편 반려동물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펫사료와 간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제 펫사료 및 수제 간식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 시중에서 규격화되어 판매되는 일반 펫사료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품종, 연령, 체질, 기호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급여할 수 있는 맞춤형 수제 사료 및 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연령을 위주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시판 건식사료와는 달리 수제사료는 제품의 원료 및 성분, 기능에 따라 제품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판매되는 특징이 있음.

[그림 II-10] 수제 펫사료 및 간식 (예시)

 <p>펫픽 키드니삼치살 정기배송 패키... 183,600원 299,000원 8% 1달 정기배송 패키지 안내! 1달 정기배송 패키지 = 키드니삼치살 총 4kg(4kg을 2주로 나눠... 리뷰 7 · 평점 4.9/5</p>	 <p>펫픽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화식 ... 108,900원 112,000원 2% 그레이프리덕 1kg + 로우팻청가루 1kg 정가 12,000원 ▶ 세트할인 108,900원 수분... 리뷰 21 · 평점 4.8/5</p>	 <p>펫픽 스티밍꼬꼬닭 1kg (자연식 업문 ... 27,000원 [스팀꼬꼬닭] 스티밍꼬꼬닭은 신선한 닭가슴살 베이스로 야채후곡을 등등 함께 섞어 짐조리... 리뷰 87 · 평점 4.7/5</p>
 <p>펫픽 키드니삼치살 1kg (신부전 / ... 50,000원 [키드니삼치살] 저단백 식사가 필요한 신부전/노령견에게 필요한 식사입니다. 저단백이... 리뷰 183 · 평점 4.6/5</p>	 <p>펫픽 그레이프리덕1kg (눈물사료 ... 56,000원 [그레이프리덕] 그레이프리덕은 우곡을 저탄수화물 식사로 곡물알러지가 있거나, 증양 치... 리뷰 21 · 평점 4.5/5</p>	 <p>펫픽 강아지 자연식 테스터 (강아지...) 7,400원 사랑하는 반려동물, 왜 이렇게 아플까? 반려동물의 시간은 우리보다 짧고 나이가 들어감... 리뷰 154 · 평점 4.3/5</p>

○ 맞춤형 수제사료와 수제간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구매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에 급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급여할 수 있도록 펫사료 제조 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음.

[그림 II-11] 수제간식 제조 교육제공 사례

커리큘럼

클래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콘텐츠는 배우기 쉽게 영상, 수업노트,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함께 건강한 반려견 수제 간식을 만들어볼까요?

- 1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무료 공개 ▶](#)
- 2 안녕하세요. 평영수피입니다. [무료 공개 ▶](#)
- 3 클래스의 준비물을 살펴봐요. [무료 공개 ▶](#)
- 4 내 반려견에게 필요한 열량, 어떻게 계산할까요? [무료 공개 ▶](#)



01 야채를 안 먹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소고기야채롤

- 1 소고기야채롤에 필요한 재료 & 알리지 대체 재료를 알아봐요.
- 2 야채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손질법이 따로 있어요!
- 3 소고기야채롤 완성하고, 맛있게 급여해요. [무료 공개 ▶](#)



02 전자렌지로 손쉽게 완성하는 과일 케이크와 활용법

- 1 초콜렛이 아니예요! 블루베리점으로 장식한 케이크, 필요한 재료를 알아봐요.
- 2 과일을 이용해 무설탕 과일 잼을 만들어요.
- 3 탄수화물을 줄인 두부케이크로 완성해요.
- 4 과일을 이용한 소고기 케이크로 완성해요.

사랑하는만큼 건강하게, 반려견을 위한 저알러지 수제 간식 만들기

클래스 시작 | 바로 수강 가능

5개월 할부 ② **34% 월 25,900원**

콘텐츠 이용권 준비물 키트

입문자 대상

♡ 1742

[클래스 신청하기](#)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온라인 클래스 [자세히 보기](#)
 클래스101, 서비스 소개

자료 : CLASS101 반려동물 수제간식 클래스 <https://class101.net/products/BLGeSCDUQxUYnu4a9lhA>

□ 펫사료 구매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전문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펫사료의 주요 유통채널은 상점기반 소매채널, 인터넷 소매, 동물병원 등 기타 비 소매채널로 구분되며, 인터넷 소매채널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오프라인 매출비중이 49.7%로 온라인 매출 비중 (37.2%)보다 12.5%p 높았으나, 2018년에는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격차가 0.3%p 수준으로 좁혀져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매장 기반의 소매유통채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복합소매유통, 하이퍼마켓 등의 비중은 성장하고 있으며, 펫용품 전문점을 통한 펫사료 판매도 많아지고 있음.

○ 일반 식료품 판매점에서 펫사료 구매가 감소하는 대신 온라인 채널과 함께 펫사료의 고급화와 프리미엄 구매 증가 경향에 따라 펫용품 전문점과 백화점 등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표 II-16> 유통채널별 펫사료 판매 동향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e]	연평균증가율 (2014-2018)
매장 기반 소매유통채널	49.7	47.5	46.3	44.7	44.2	△2.9
식료품 소매	19.9	17.3	15.5	13.5	17.4	△3.3
현대식 식료품 소매	17.6	15.6	14.2	12.5	16.5	△1.6
하이퍼마켓	15.3	13.6	12.3	11	15	0.5
슈퍼마켓	2.3	2	1.9	1.6	1.5	△10.1
전통적 식료품 소매	2.3	1.7	1.3	1	0.9	△20.9
기타 식료품 소매	2.3	1.7	1.3	1	0.9	△20.9
복합 소매유통	1.2	1.3	1.7	1.9	2.2	16.4
백화점	0.6	0.7	0.9	1	1	13.6
버라이어티스토어	0.4	0.4	0.5	0.7	0.7	15
창고형 매장	0.1	0.2	0.2	0.3	0.4	41.4
비 식료품 전문매장	28.6	28.9	29.1	29.2	24.6	△3.7
펫용품 전문점	6.7	7.9	8.4	8.9	9.2	8.3
펫샵	16.8	16.1	15.8	15.6	15.2	△2.5
기타 비 식료품 전문	5.1	4.9	4.9	4.7	0.3	△50.8
인터넷 소매	37.2	39.4	40.9	42.9	43.9	4.2
비 소매채널	13.2	13.1	12.8	12.5	12	△2.4
동물병원	13.2	13.1	12.8	12.5	12	△2.4

주. 하이퍼마켓은 판매장 면적이 2,500㎡ 이상의 규모로 창고식 점포에 셀프서비스 방식을 채용하고 식품, 비식품, 내구소비재, 건재 등을 취급하는 대형매장을 의미 (농진청 농업용어사전).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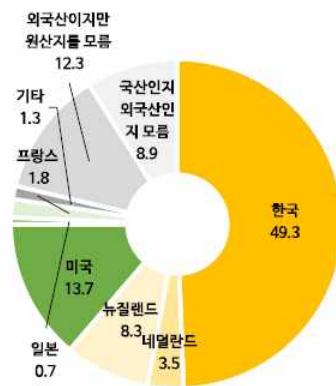
□ 펫사료 브랜드 원산지별로 구매 동향을 살펴보면, 반려견용 펫사료의 경우 반려묘용 펫사료에 비해 국산제품의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펫사료 협회의 조사결과⁴¹⁾에 따르면 반려견에 주로 먹이는 사료 브랜드의 원산지가 ‘국산’이라는 응답이 49.3%, ‘수입산’이라는 응답이 41.6%의 비중을 차지하여 국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제품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1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원산지를 모른다’ 12.3%, ‘뉴질랜드’ 8.3%, ‘네덜란드’ 3.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

[그림 II-12] 브랜드 원산지별 펫사료 구매 동향 (반려견용)

n=818명, 단위 : %



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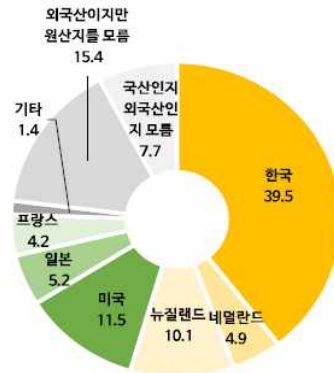
○ 반려묘에 주로 먹이는 사료 브랜드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산’이라는 응답이 39.5% ‘수입산’이 52.7%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산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수입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산 이지만 원산지를 모른다’는 응답이 15.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이 11.5%, ‘뉴질랜드산’이 1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1)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한국 펫사료 협회, 2018)

[그림 II-13] 브랜드 원산지별 펫사료 구매 동향 (반려묘용)

n= 286명, 단위: %



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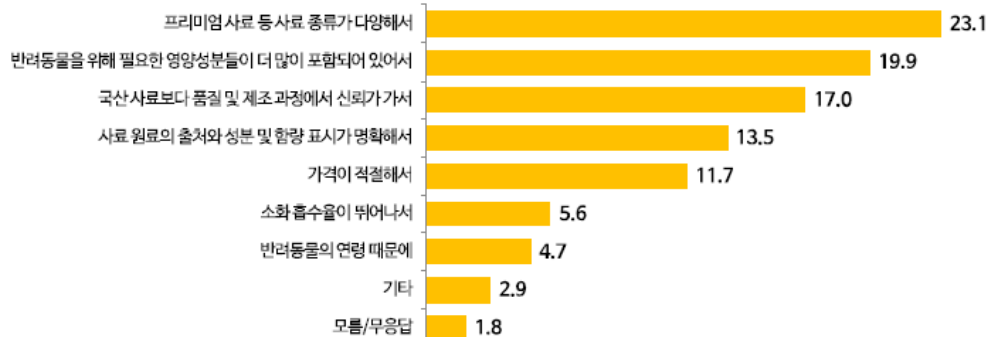
□ 수입산 펫사료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펫사료 종류의 다양함’,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성분이 풍부함’, ‘제품의 품질 및 제조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인 것으로 파악.

○ 반려견용 펫사료의 경우 수입산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프리미엄 사료 등 사료 종류가 다양해서’ 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 그 외에 ‘반려동물을 위해 필요한 성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19.9%)’ 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국산 사료보다 품질 및 제조과정에서 신뢰가 가서 (17.0%)’, ‘사료 원료의 출처와 성분 및 함량표기가 명확해서 (11.7%)’ 등도 수입산을 구매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4] 수입산 펫사료 이용 원인(반려견용)

n=3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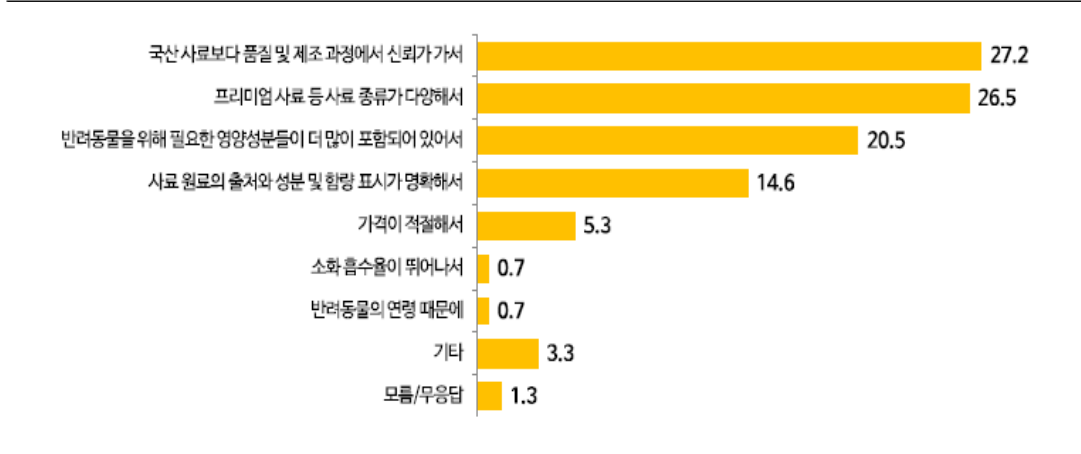


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 반려묘용 펫사료의 경우 수입산을 이용하는 이유가 ‘국산 사료보다 품질 및 제조과정에서 신뢰가 가서’ 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프리미엄 사료 등 사료 종류가 다양해서(26.5%)’ 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반려동물을 위해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20.5%)’, ‘사료 원료의 출처와 성분 및 함량표기가 명확해서 (14.6%)’ 등도 수입산을 구매하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

[그림 II-15] 수입산 펫사료 이용 원인(반려묘용)

n=151, 단위: %



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 반려인들은 펫사료 구매시 ‘제품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제품의 안전성’에 높은 비중치를 두는 것으로 파악.

- 한국 펫사료 협회의 조사결과⁴²⁾에 의하면 반려인들은 펫사료 구매 시 ‘소화율’, ‘체중조절(비만)’, ‘치아/구강 건강’ 등의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
- 반려견용 펫사료 (사료, 간식, 영양보충제 등)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소화율’이 2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체중조절(비만)(22.2%)’, ‘치아/구강건강(17.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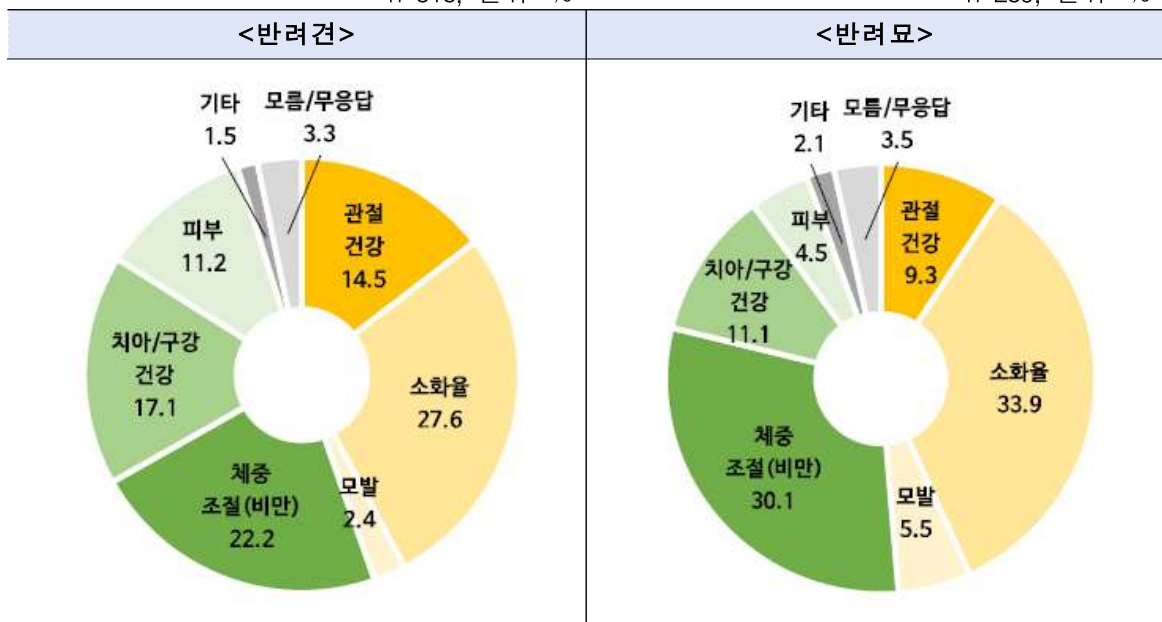
42)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한국 펫사료 협회, 2018)

- 반려묘용 펫사료 (사료, 간식, 영양보충제 등)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 역시 ‘소화율’에 대한 응답이 33.9%로 가장 높으며, ‘체중 조절(비만)(30.1%)’ ‘치아/구강 건강(1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6] 펫사료 구매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

n=818, 단위: %

n=289, 단위: %



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설문결과⁴³⁾에 따르면 펫사료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안전성’인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용 펫사료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안전성 (20.0%)’, ‘맛·기호성(18.5%)’, ‘원재료 종류(15.8%)’, ‘기능·효능 (12.5%)’, ‘가격(10.6%)’ 순으로 파악.

- 반려묘용 펫사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은 ‘안전성 (19.4%)’, ‘맛·기호성(18.8%)’, ‘기능·효능(14.8%)’, ‘가격 (12.3%)’, ‘원재료 종류(9.2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

43)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사료 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또한 반려동물의 삶과 건강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면서 펫사료의 성분 및 첨가물, 제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펫사료 첨가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국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펫사료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⁴⁴⁾

-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명 펫사료에서 BHA(부틸히드록시아니솔), BHT(다이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에톡시퀸, 소르빈산 등의 첨가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⁴⁵⁾ 및 특정 성분에 대한 발암물질 의심 오해로 제품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

-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보존료의 허용치 이하량 검출, 자연상태 원료의 해당성분 함유를 근거로 자사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으며⁴⁶⁾, 한국펫사료협회 차원에서도 펫사료 첨가물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 및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부록 II 참조)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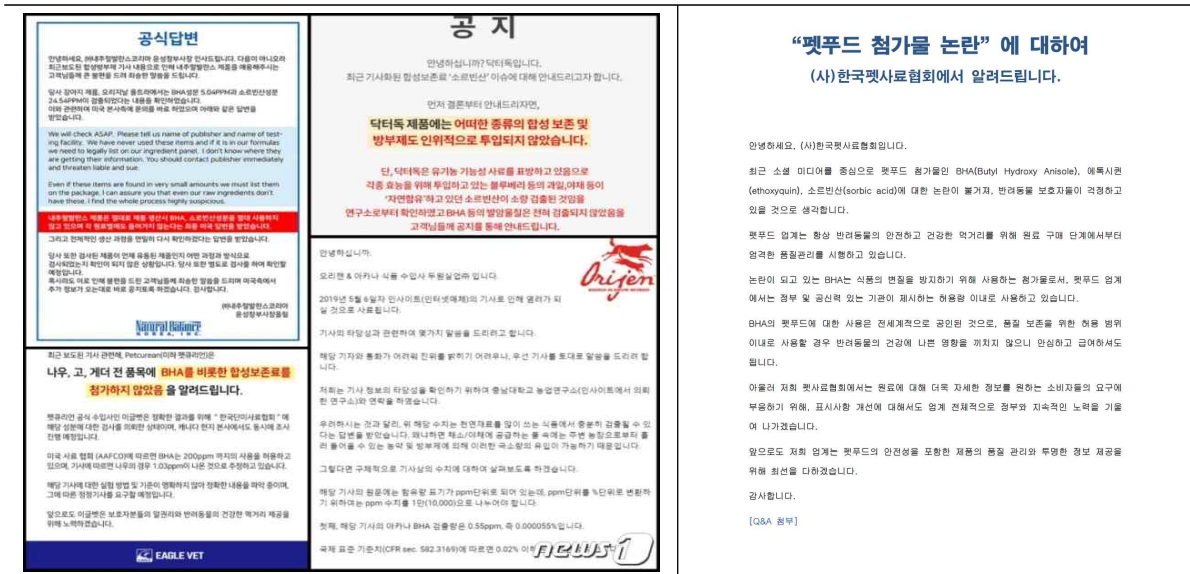
44) 데일리펫, 2019.1.22. ‘근거없는 선동은 그만’ BHA 등 펫사료 첨가물에 대한 Q&A. 2020.2.10. 접속.

45)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9.5.6. 국내서 판매되는 사료 24종 중 22개 방부제 검출...“발암의심 물질도“ 2020.4.8 접속

46) 뉴스원, 2019.5.10. 반려동물 사료업계, 보존제 논란에 정면대응...“불안감 조장“ 과도. 2020.4.11접속

47) 한국펫사료협회. “펫사료 첨가물 논란”에 대하여 (사)한국 펫사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림 II-17] 펫사료 첨가물 논란 사례



자료 : (좌) 뉴스원. 2019.5.10. 반려동물 사료업계, 보존제 논란에 정면대응...“불안감 조장” 과도
(우) 한국펫사료협회

○ 펫사료 구입 시 펫사료의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사료의 성분 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펫사료 제조에 일반적으로 원료로 사용되는 육류 부산물에 대해 사료 관리법상의 정의(육분)와 소비자들의 해당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간의 차이로 인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음.⁴⁸⁾

□ 이렇게 반려동물의 삶과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펫사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임.

○ 펫사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료, 성분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올바른 소비선택을 방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펫사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용어, 표시사항의 개선, 품질인증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48) 해피펫. 2019.12.30. 육분 넣어 만든 사료 “이건 오해입니다”...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2020.4.12 접속.

3. 기타 펫 연관 산업과 시장

- 펫 산업은 전통적인 펫사료의 성장과 함께 수의약품 및 반려동물용품, 펫보험, 펫테크 등의 연관산업으로 범위와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
-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반려동물의 인간화)과 같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보살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펫사료 시장뿐 아니라, 반려동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펫 관련 산업, 서비스가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음.
 - 펫코노미(Petcomony)시장은 전통적 영역인 사료, 간식, 수의 서비스 등을 넘어, 장난감, IT 결합상품 등 관련 용품산업, 보험, 유치원, 호텔, 테마파크, 장례 등 관련 서비스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펫 시터, 반려동물 행동 개선을 위한 행동 상담사, 반려동물을 위한 스타일리스트(미용) 등 펫 관련 전문자격증과 직업도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는 추세.
- ※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의미.

[그림 II-18]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자료 : 지인배 외, 2017 (반려동물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구성

□ 펫사료 이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크게 펫테크, 펫금융, 펫 플레이, 펫리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리를 지원하는 제품,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펫테크(Pet-Tech)는 반려동물(Pet)에 기술(Technology)을 더한 신조어로, ‘훈련용 도구’, ‘건강관리·추적’, ‘자동화 용품’, ‘장난감’, ‘모바일 앱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구분⁴⁹⁾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 출시되고 있음.

<표 II-17> 국내 펫테크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제품·서비스(기업)	주요내용
U+스마트홈 펫케어(LG 유플러스)	CCTV, 전용수면등, 피트니스용 로봇
퓨리케어 펫(LG 전자)	반려동물 전용 공기청정기
고미볼(고미랩스)	인공지능 적용한 로봇 장난감
어헤스(핏핏)	반려동물용 소변검사 키트
강집사(워크브레인)	반려묘 화장실 이용 패턴 분석

자료 : 중앙시사메거진 1511호 (2019.12.02.) [34] [급성장 중인 ‘펫테크’ 산업] 앱으로 고양이 배변 점검하고 건강관리

○ 펫금융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보험, 카드상품, 예·적금 상품 등을 말하며, 펫코노미 시장의 성장에 따라 펫금융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음.

<표 II-18> 국내 펫금융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제품·서비스(기업)	주요내용
펫퍼민트 캣보험 (메리츠화재)	생후 91일부터 만 8세까지 믹스묘를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가 가입 가능. 입원·수술 비용을 연간 1000만원까지 보장함.
솔솔(SolSol) (NH농협)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최대 12% 할인혜택 제공
위드펫 적금 (신한은행)	반려동물 사진을 5장 이상 등록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제공, 제휴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공유하는 QR코드를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
KB 펫 신탁 (KB국민은행)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할 경우 돌봐줄 주인에게 자금을 제공함.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원 이상 가입, 납입최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

자료 : 한국경제. 2019.5.12. 반려동물 1000만 시대...‘펫코노미’ 뛰어드는 금융사. 2020. 4.17 접속

49)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의 분류

- 펫플레이는 펫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역⁵⁰⁾을 의미하며, 여행, 호텔, 액티비티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

<표 II-19> 국내 펫플레이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제품·서비스(기업)	주요내용
펫미업	반려견 및 반려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로 이동용 가 방 없이 반려동물과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함.
레스케이프 (신세계조선호텔)	반려견 웰컴 키트 및 배변 패드 제공, 객실 내 반려동물 전용 제품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용식사공간 마련
21그램	동물장례중계서비스 및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펫티비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취미활동, 스포츠, 교육, 훈련 등 서비스 제공

자료 : 조선에듀. 2019.12.25. 반려동물 가구 네 집 중 한 집 '펫코노미' 시장 커진다 <펫(pet)+경제
(economy)>

- 펫리빙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위해 반려동물에 특화한 인
테리어, 펫 관련 시설을 보유한 주택, 건설시장 트렌드를 의미.

<표 II-20> 국내 펫리빙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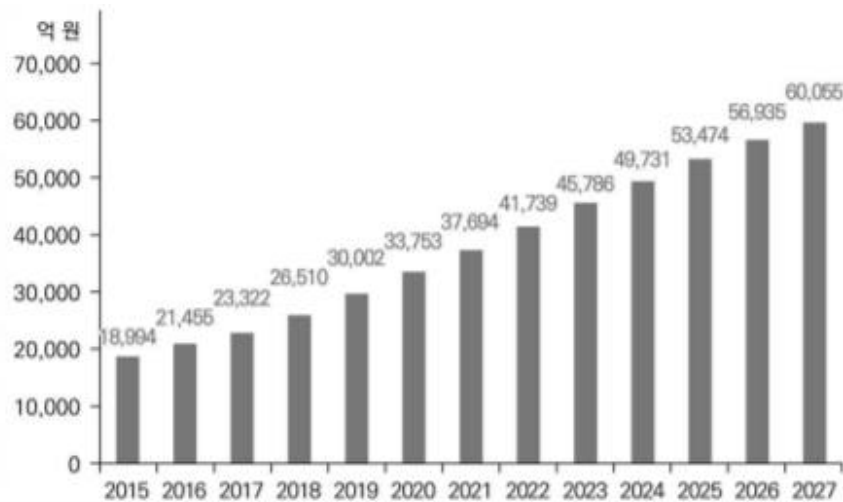
제품·서비스(기업)	주요내용
KT Estate (KT 그룹)	특정 동, 특정 층의 총 40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대상으 로 한 '펫존(Pet Zone)'으로 공급. 반려동물 보유가구를 흡수하는 동 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타 가구를 분리하여 민원을 줄이는 효과를 도모
현대건설	H-클린현관은 현관 및 복도 수납장, 세탁실(보조주방), 욕실을 통합 해 새로운 현관 기능을 제시하는 상품으로 현관 입구에 콤팩트 세 면대가 있어 반려동물을 산책시킨 이후 간단한 세척이 가능. 아울러 반려동물 물품 등을 현관 내 보관 가능하도록 설계
대림산업	반려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커뮤니티 시설 내에 반려동물 호텔을 마련

자료 : 삼정KPMG연구원. 2018. 펫코노미 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

50) 삼정KPMG연구원, 2018, 펫코노미 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

- 반려동물의 건강, 행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펫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펫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17년 기준 2조 3,322억 원이며,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장묘 및 보호서비스(26.4%), 수의 서비스(22.7%), 동물 및 관련 용품(10.2%), 사료(8.7%) 등으로 사료 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 용품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9] 반려동물 관련산업 성장전망



자료 : 지인배 · 김현중 · 김원태 · 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요약 및 시사점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2016년 기준 3억 8천만 마리) 와 고양이가(2016년 기준 2억 8천만 마리)이며, 향후 반려동물 개체 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펫팸족의 등장, 펫휴머니제이션(Pet Huminzation) 등과 같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전통적 영역을 벗어나 펫테크, 펫금융 등 기타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펫사료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산업 분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펫사료 산업(2019년 기준 940억 달러)은 전 세계 펫케어(Pet care)산업(2019년 기준 1,310억 달러)의 71.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이며, 앞으로도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펫사료는 국가 간 교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반려견 및 반려묘용 사료(소매용, HS 2309.10)의 전 세계 수출액은 2000년 34억에서 2019년 143억달러로 연 8.3%씩 증가하였으며, 수출단가가 높은 고가 제품의 수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펫사료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등으로 사람이 먹는 식품과 같이 친환경,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반려동물의 기호에 맞는 제품, 건강상태를 고려한 기능성식품 및 보조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펫사료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우리나라는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가장 많이 기르고 있으며 반려견 개체수는 2010년 462만 마리에서 2019년 598만 마리로, 반려묘 개체수는 2010년 63만마리에서 2019년 258만 마리로 증가.
 - 우리나라의 펫사료 시장은 2014년 5억 1,540만 달러(5,430억원)에서 2018년 8억 6,490만 달러(9,520억원)로 연평균 13.8%씩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2023년까지 연 5.9%씩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⁵¹⁾
 - 반려견 사료시장의 매출액은 연 10.3%(2014년~2018년)씩 성장하였으며, 반려묘 사료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6.1%로 반려견 사료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우리나라의 펫사료 시장도 해외시장과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사료 및 간식,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펫사료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 및 기업의 시장진입이 활발.
 -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신규 출시된 펫사료의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어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영양성분 첨가 등을 홍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한국마즈의 ‘로얄캐닌’ 이나, 대주의 ‘캣츠랑’, 네추럴펫의 ‘네추럴코어’, 대한사료의 ‘이즈칸’ 등의 브랜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펫사료 산업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수입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로 인해 펫사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2014년~ 2018년) 우리나라의 반려견 사료 시장은 연 10.3%, 반려묘 사료 시장은 연 26.1%씩 성장해 왔으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도 급격히 성장하였음.

51)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4년 1,052.22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

- 그러나 지난 20년간 (2000년~2018년) 우리나라의 펫사료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 증가율(연 5.9%)이 수출 증가율(연 0.86%)보다 높아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펫사료 무역 적자는 2010년 7,300만 달러(844억)에서 2018년 2억 2,500만 달러(2,480억원)규모로 약 3배 증가하여 펫사료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국내 펫사료 소비자들의 수입산 제품에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⁵²⁾
 - 국내 펫사료 시장에서 최근 국산 브랜드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및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수입 브랜드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입산 펫사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주로 “수입제품의 다양성”,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신뢰”, “규격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산 펫사료를 구매하는 주요 원인으로 ‘펫사료 종류의 다양함’,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성분이 풍부함’, ‘제품의 품질 및 제조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꼽고 있음.
 - 또한, 시판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성분 및 원료에 대한 인증 등의 측면에서 해외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용 펫사료 소비가 고급화 되면서 펫사료 선택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펫사료 제품의 정보 제공 기준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펫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제조시설의 위생 및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펫사료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음.
 - 고품질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수록, 소비자가 구매하는 펫사료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 공정한 가격, 표준 및 인증 등 정보제공 기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52) 한국은행 원/미국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010년 1,156.26원, 2018년 1,100.30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펫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소비자 지향적 품질 및 안전” 관련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
- 반려동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과학적 증거, 우수한 원료 사용 및 기능성, 안정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Ⅲ. 펫사료 산업 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1. 정부부문 공식 통계
2. 민간부문 작성 통계
3. 수출입 통계 및 관세체계
4. 요약 및 시사점

III. 펫사료 산업 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펫사료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 통계정보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펫사료 산업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정보제공은 시장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등)의 펫사료 산업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정부부문 공식 통계

가. 한국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2017년 개정)⁵³⁾의 동물용 사료 관련 제조업종은 대분류 제조업(C)이하 중분류 ‘식료품제조업(10)’ 이하 소분류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분류 기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0)’ 이하 세세분류에서 ‘배합사료 제조업(10801)’ 과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10802)’로 구분.

<표 III-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사료제조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자료 :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5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국내에서 주로 수행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1963년 3월 제정되었으며,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음, 이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애완동물용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제조업(10801)’ 으로, 애완동물용 기호식품 제조업은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10802)’ 에 포함되어 있음.

<표 III-2>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의 사료제조업 항목별 정의

항목명	정의	예시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동물용 각종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 - 애완동물용, 실험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 사료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단미사료(원료사료)제조 - 비스킷제조(동물용) - 조제 보조사료 제조 - 동물사료용 재료 분쇄물 생산 - 음식폐기물가공 단미사료생산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

□ 애완동물사료(펫사료) 관련 유통업은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G)이하 세세분류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 에 해당되며, 애완동물 사료(펫사료) 관련 서비스업은 대분류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이하 세세분류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으로 분류되고 있음.

- 펫사료 관련 소매업은 세세분류 기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에 해당하며, 서비스업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으로 구분.

- 그 외 세세분류 단위의 ‘육지 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⁵⁴⁾’ 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범주에는 해당하나, 이것은 산동물 매매업으로 펫사료 산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항목에서는 제외.

54)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 이하 [중분류]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분류]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세분류]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표 III-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47] 소매업 (자동차제외)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	[96995]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위와 같은 국가 표준산업분류 기준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조, 유통, 소비 부문에 걸쳐 펫사료 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별 통계정보 제공 현황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표 III-4 참조).

○ 펫사료 제조와 관련한 통계로는 「광업·제조업조사」, 「배합사료 생산 실적 및 원료사용 실적」, 「생산자 물가조사」 등이 있음.

-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표준산업분류의 ‘배합사료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인 수, 출하액 등 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업체별 생산품목⁵⁵⁾을 기준으로 ‘애완동물사료’ 및 ‘동물용 조제식품’을 구분하여 업체 수, 출하액 등을 집계하고 있음.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실적을 조사하며, 펫사료를 ‘애완동물사료’로 구분하고 반려동물의 유형별(개, 고양이, 관상어, 기타)로 세분화하여 생산 및 출하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음.
- 「생산자 물가조사」는 한국은행 주관으로 국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출하단계에서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며, 지수기준년도(2015)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비교년도(조사년도)의 생산자물가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55) 품목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각 세세분류마다 3자리 숫자를 부여함, 임가공품의 경우 ‘sc’로 품목코드가 시작함.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 제조·유통·소비의 영역을 망라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배합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료(펫사료) 사업체를 독립하여 조사하고 있지는 않음.
 - 참고로 「광업·제조업조사」와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동일하게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이 조사대상 업종에 포함되나 「전국 사업체 조사」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펫사료의 유통과 관련한 통계로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서비스업 조사」가 있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 연간급여, 조직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펫사료 관련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조사대상 업종에 포함.
- 펫사료 소비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로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 물가조사」가 있음.
 - 「가계동향 조사」는 가구의 소비동향에 대한 조사로 UN의 목적별 소비지출분류에 근거한 지출항목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의 두 가지 항목이 펫사료와 관련한 지출항목이지만 통합되어 집계되는 관계로 펫사료 지출이 독립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음.
 - 「소비자 물가조사」는 가구에서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지수로 작성한 것으로, 펫사료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작성품목으로는 ‘애완동물용품’과 ‘애완동물 관리비’가 있으나 통합되어 집계되는 관계로 펫사료 소비자물가지수가 독립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음.

<표 III-4> 우리나라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관련 항목구분						
제조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품목	애완동물사료 동물용 조제식품					
	경제총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농림축산 식품부	배합사료제조 업 전수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애완개, 애완고양이, 관상용어류, 기타애완동물)					
	생산자 물가조사	한국은행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제조, 유통, 소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업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소비
소비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 용품 애완동물 관리비					

□ 아래부터는 위에 언급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사료(펫사료) 관련 주요 조사 통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함.

(1) 제조부문 통계

①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개요 및 목적

- 「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며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⁵⁶⁾이며, 광업·제조업 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에 근거하여 작성.

56) 지정통계란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 중 작성기관의 신청에 따라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는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통계법에 따라 응답 의무가 부여됨

□ 조사대상 및 방법

-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B) 광업, (C)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활동실태를 파악.
 -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조사년도에 조업실적이 있으며 연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 전국의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는 약 41만 6천개 정도로 추정되나, 본 조사의 모집단은 9인 이하 사업체(약 34만 6천개)를 제외한 7만개 수준.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주로 사업체 기본정보 및 사업 활동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항목은 아래의 <표 III-5>와 같음.

<표 III-5> 광업·제조업조사 조사항목

① 사업체 명, ② 사업체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창설연월,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 형태, ⑦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영업비용,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 제조) 수입액, ⑫ 재고액, ⑬ 유형자산(사업체)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광업·제조업조사는 1968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발간함.
 - 조사는 매년 6월~7월경 시행하고 조사결과는 조사년 기준 익년 12월에 KOSIS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며, 별도로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를 발간.
 - 가장 최근 통계는 2019년에 실시한(2018년 기준통계) 제42회 조사결과.

(국가통계 이해(통계교육원, 2015)).

○ 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결과는 『전국편』 및 『지역편』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전국편』에서 제공하는 조사결과는 산업편, 품목편, 기업체편 등 세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산업편과 품목편은 집계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의 차이가 있음.⁵⁷⁾

※ 「산업편」에서는 각 사업체의 각 품목별 출하액을 중분류별로 합산하여, 출하액이 가장 큰 업종을 당해 사업체의 중분류로 결정하며, 「품목편」에서는 개개 품목별로 모든 생산업체의 사업체 수와 해당품목 출하액을 모두 집계.⁵⁸⁾

<표 III-6> 전국편 통계 제공 내역(2019)

구분	제공내역
산업편	1. 산업 소분류 및 연도별 주요지표
	2.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주요지표
	3. 산업 세세분류 및 출하액 규모별 주요지표
	4. 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급여액
	5. 산업 세세분류별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및 주요 생산비
	6. 산업 세세분류별 재고액
	7. 산업 세세분류별 유형자산 증가액, 감소액 및 연말잔액
	8. 산업 중분류 및 경영조직별 주요지표
	9. 산업구조 및 연도별 주요지표
	10. 산업 소분류별 성별 종사자 수
	11. 산업 소분류별 성별 대표자 수
품목편	12. 품목별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및 연말 재고액
	13. 임가공품목별 사업체 수 및 수입액
기업체편	14. 산업 중분류 및 연도별 통계표

자료 : 통계청. 2019.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FE>

- 『지역편』 통계는 주요 시, 도별 산업분류(대, 중, 소분류)에 따른 산업활동에 대한 현황정보를 제공.

57)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_통계청_

58) 한 사업체에서 2개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산업편에서는 1개업체로, 품목편에서는 각 제품별 사업체수와 출하액을 집계함.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FE>

<표 III-7> 지역편 통계 제공내역(2019)

구분	제공내역
지역별 통계	산업소분류, 시도 및 연도별 주요지표
	산업중분류, 시도 및 종사자 규모별 주요지표
	산업중분류, 시도 및 출하액 규모별 주요지표
	산업중분류 및 시도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급여액
	산업중분류 및 시도별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및 주요 생산비
	산업중분류 및 시도별 재고액
	산업중분류 및 시도별 유형자산 증가액, 감소액 및 연말잔액
	산업대분류 및 시구군별 주요지표

자료 : 통계청. 2019.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FE>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i) 『전국편』의 산업편 및 기업체편 통계

-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업’ 및 ‘단미사료 제조업’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애완동물용 사료(펫사료) 제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ii) 『전국편』의 품목편 통계

- 광업·제조업조사의 품목편에 펫사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3단위 자릿수를 부여하여 배합사료제조업(10801) 이하 ‘애완동물사료(C10801106)’, 그리고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10802) 이하 ‘동물용 조제식품(C10802200)’을 조사하고 있음.

<표 III-8> 광업·제조업조사의 펫사료관련 업종/품목분류(2018년 조사기준)

업종	품목분류
10801 배합사료제조업	C10801101 배합사료(양우용)
	C10801102 배합사료(양돈용)
	C10801103 배합사료(양계용)
	C10801104 배합사료(기타 동물)
	C10801105 배합사료(양어용)
	C10801106 애완동물사료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C10802101 단미사료
	C10802102 사료 첨가제
	C10802109 기타 사료
	C10802200 동물용 조제식품

○ 이렇게 광업·제조업조사의 품목편 통계에서는 ‘애완동물사료’ 및 ‘동물용 조제식품’에 대해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및 완제품 연말 재고액(10인 이상 기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펫사료 제조관련 기업체 조사는 2003년 ‘애완동물용기호품’에 대한 집계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2004년부터 ‘애완동물사료’로 품목명이 변경되어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및 완제품 연말재고 금액에 대한 조사 통계정보를 제공.⁵⁹⁾

59)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11

<표 III-9> 애완동물사료(배합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3-2018)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완제품 연말재고액
D15330200 애완동물용 기호품	2003	2	-	-	-
D15330102 애완동물사료	2004	8	15,486	15,466	204
	2005	10	17,221	17,066	526
	2006	15	24,062	21,363	3,510
C10800105 애완동물사료	2007	16	271,649	270,505	5,312
	2008	13	294,798	294,952	3,194
	2009	13	88,973	88,966	1,248
	2010*	17	95,311	96,593	3,554
	2011	16	176,349	176,103	3,215
	2012	21	166,841	165,186	5,387
	2013	22	179,464	181,018	3,099
	2014	24	221,297	221,429	2,909
	2015*	24	226,200	225,545	4,028
C10801106 애완동물사료	2016	21	218,953	218,024	3,900
	2017	27	258,439	256,825	6,287
	2018	28	293,352	292,807	6,394

* 별표의 수치는 경제총조사의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 대한 조사자료인데, 이는 5년마다 시행되는 경제총조사 시행년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

주. 2006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2007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이 변경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경제총조사(2010, 2015)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11

<표 III-10> 동물용조제식품(단미 및 기타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7-2018)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완제품 연말재고액
C10800200 동물용 조제식품	2007	3	7,758	7,717	55
	2008	2	-	-	-
	2009	2	-	-	-
	2010*	4	12,452	12,437	267
	2011	4	4,746	4,715	164
	2012	5	4,743	5,057	117
	2013	4	17,768	17,548	959
	2014	8	22,240	22,325	673
	2015*	8	17,471	16,984	1,005
C10802200 동물용 조제식품	2016	7	19,413	19,677	537
	2017	8	31,059	28,526	3,262
	2018	11	46,229	44,336	5,329

* 별표의 수치는 경제총조사의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 대한 조사자료인데, 이는 5년마다 시행되는 경제총조사 시행년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

주. 2006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2007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이 변경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경제총조사(2010, 2015)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11

② 경제총조사

□ 조사개요 및 목적

- 「경제총조사」는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등 국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실태 및 산업 구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지정통계로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71호),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음.

□ 조사대상 및 방법

- 경제총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A) 농림어업중 개인 사업체, (T) 가구 내 고용에 속하는 사업체, (U) 국제·외국기관에 속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전 업종이 조사대상.
 - 조사는 사업체 단위로 실시하며, 조사기준 시점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사업체 기본정보(공통항목)와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III-5>와 같음.

<표 III-1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공통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소재지, ④ 창설연월,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⑨ 영업기간, ⑩ 사업실적, ⑪ 유형자산, ⑫ 무형자산, ⑬ 자산총계* ⑭ 자본금* ⑮ 자본잉여금*, ⑯ 결산마감월

구분	조사항목
산업별 특성항목	[광제조(9인이하)] ① 제품별 출하액, ②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광제조(10인이상)] ① 유형자산(사업체단위), ②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③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④ 재고액, ⑤ 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전기가스수도] ① 연간 생산량
	[건설] ① 매출형태별 수입액
	[도소매]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⑥ 상품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⑦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숙박]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실 수, ⑥ 객실 이용건수, ⑦ 매출형태별 수입액
	[음식점 및 주점]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실 수
	[출판영상]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 ④ 직능별 종사자수
	[전문과학기술]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학교교육] ① 보조금
	[보건]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직종별 종사자수, ③ 보조금,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사회복지]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직종별 종사자수, ④ 직능별 종사자수, ⑤ 보조금, ⑥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협회단체]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② 보조금
[통합서비스업]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⑤ 이용인원(고객) 수	

* 조사표 미반영: 행정자료로 대체 ** 조사표 미반영: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집계
자료 : 통계청. 2019. 경제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경제총조사는 기존에 실시된 산업총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범위 및 조사기준이 상이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실태를 동일 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최초로 도입.
 - 경제총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시행하며, 연도가 1, 6으로 끝나는 해에 조사를 실시.
- 조사의 잠정결과는 당해연도에, 확정결과는 익년에 공표하고 있으며, 작성 기준년도는 0자 및 5자로 끝나는 연도.
 - 조사결과는 KOSIS, 언론보도자료,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며, 별도 보고서를 발간.
- 경제총조사의 결과는 『전국편』, 『지역편』, 『특성편』, 『기업체편』 등의 네 가지로 구성하여 공개되며, 각 항목별 통계제공지역 및 범위에 차이가 존재.

<표 III-12>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및 종사상지위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및 매출액규모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조직형태 및 본·지점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종사자규모 및 정기휴무일수별 사업체수, 연간 영업개월수	
	○ 산업세세분류, 조직형태 및 정기휴무일수별 사업체수, 연간 영업개월수	
지역편	○ 시·도 및 산업세분류별 총괄	
	○ 시·군·구 및 산업소분류별 총괄	
	○ 읍,면,동 및 산업대분류별 총괄	
	○ 시·도, 산업소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 시·도, 산업소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총괄	
	○ 시·도, 산업소분류 및 종사상지위별 총괄	
	○ 시·도, 산업소분류 및 매출액규모별 총괄	
	○ 시·도, 산업소분류, 조직형태 및 본·지점별 총괄	
특성편	광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분류 및 행정구역별 주요지표 ○ 산업중분류 및 조직형태별 주요지표 ○ 산업중분류 및 시·도 주요지표 ○ 산업중분류, 시·도 및 종사자규모별 주요지표 ○ 산업중분류, 시·도 및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 ○ 산업중분류 및 시도별 재고액 ○ 산업소분류별 주요지표(종사자 10인 이상) ○ 산업세세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주요지표 ○ 산업세세분류 및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 ○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급여액 ○ 산업세세분류별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및 주요생산비 ○ 산업세세분류별 재고액 ○ 시도, 품목분류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및 연말재고액 ○ 시도, 임가공품목별 사업체수 및 수입액
	도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상품판매유형별 구성비 ○ 산업세세분류, 조직형태별 정기휴무일수 및 일일평균 영업시간 현황 ○ 산업세세분류, 시도및체인점가입여부별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 산업세세분류별 및 시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매장면적 ○ 산업세세분류, 종사자규모 및 일일평균영업시간별 사업체수 ○ 산업세세분류 및 건물연면적규모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건물점유형태별 사업체수, 건물연면적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매장점유형태별 사업체수, 매장연면적

구분	조사항목	
특성편	숙박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객실현황 및 월평균 객실이용건수 ○ 산업세세분류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현황 ○ 산업세세분류, 종사자규모 및 일일평균 영업시간별 사업체수 ○ 산업세세분류 및 건물연면적규모별 총괄 ○ 산업세세분류, 매출액규모 및 건물점유형태별 사업체수, 건물연면적 ○ 산업세세분류별 객석수별 사업체수
특성편	출판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직능별 종사자 현황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전문과학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직종별 종사자수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직종별 종사자수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직능별 종사자수
	예술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이용인원수 및 사업체수
	협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세세분류별 보조금 여부 현황 ○ 산업세세분류별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기업체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소분류 및 시·도별 총괄 ○ 산업소분류및종사자규모별기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 산업소분류및매출액규모별기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 산업소분류, 시·도별 기업체수 유·무형자산 	

* 조사표 미반영: 행정자료로 대체

** 조사표 미반영: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집계

자료 : 『통계청. 2019. 경제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 관련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항목인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수준에서 조사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이 적용된 통계자료는 특성편에서 광업,제조업 제조품목별 동향이 공표되었으나 10차개정이 적용된 자료는 특성편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제조품목별 통계가 공표되지 않음.

<표 III-13> 경제총조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항목 통계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10년	2015년
사업체수		512	841
종사자수		8,647	10,793
성 별	남	7,152	8,825
	여	1,495	1,968
매출액		8,661,416	11,869,175
영업비용		7,781,062	11,045,245
매출원가		0	0
인건비		347,918	513,330
급여총액		268,436	393,798
임차료		13,632	22,683
세금 과 공과		19,086	19,470
감가·대손상각비		128,277	153,483
경상연구개발비		15,708	19,462
광고선전비*		-	24,013
기타경비		7,256,441	10,292,804
영업이익		880,354	823,930

*광고선전비는 2015년부터 조사항목으로 신설

자료: 통계청. 2019. 경제총조사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2020.3.11. 접속

③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⁶⁰⁾

□ 조사개요 및 목적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작성하며, 배합사료 생산·출하·재고량 및 가격의 월별 실적 및 변동추이를 집계하는 보고(행정)통계.
- 사료수급 생산 및 수급조절에 대한 예측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은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등록된 전국의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
-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시스템(AGRIX)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사료협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조사내용

- 사료품목(축종)별 생산, 출하, 재고, 가격 및 원료종별 재고, 구매, 사용내역 등에 대해 집계하고 있음.⁶¹⁾
-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매월 ‘양축용’, ‘어류, 실험동물용’, ‘대용유’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으며, 축종의 사육단계별로 생산실적을 집계하고 있음. 또한, 생산지역(시, 도)에 따라 구분한 축종 및 사육단계별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제공.
- 배합사료 가격은 양계, 양돈, 낙농, 비육, 오리 및 기타 품목으로 구분하여 공장도 가격(원/Kg)을 조사.

60)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설명자료

6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 작성개요

<표 III-14> 배합사료의 구분

항목명	구분
양축용	사료공정 규격상 사료의 분류체계로 고기소, 젓소, 돼지, 닭, 기타 동물에 대해 축종별·사육단계별로 72종으로 구분
대용유배합사료	축우용대용유, 양돈용대용유, 기타대용유로 구분
기타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실험용동물, 애완용동물, 양식용 어류, 사육하는 동물로 구분

주: 배합사료의 범위(부록)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 작성개요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은 1975년 7월 29일 통계작성 승인에 따라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계속통계로 매월(작성 대상월 익월 1일~10일) 조사를 시행하고 익월 하순경 결과를 공표.
- 조사결과는 KOSIS 국가통계포털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익년 12월)을 통해 공표.

<표 III-15>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 제공내역

구분	제공내역
생산실적	월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시·도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가격	월별 배합사료(공장도)가격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에서는 애완동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조사하고 있음.
- ‘어류·실험동물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의 하위 항목에서 ‘애완동물’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애완개’, ‘애완고양이’, ‘관상용어류’, ‘기타애완’으로 구분하여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집계.

- 애완동물용 배합사료(공장도)가격은 ‘기타’ 항목으로 포함되어 가격 정보의 파악은 어려움.

<표 III-16> 펫사료 관련 배합사료생산실적통계(2019)

단위: 천 톤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애완동물	11.3	8.5	8.9	9.5	7.8	8.1	8.6	8.4	8.0	10.3	10.7	9.8	109.9
애완 개	6.9	5.3	5.8	5.8	4.9	4.8	5.1	4.4	4.4	5.4	5.5	5.7	64.0
애완고양이	4.4	3.1	3.2	3.6	2.9	3.3	3.5	4.0	3.6	4.9	5.2	4.1	45.8
관상용 어류	0.007	0.006	0.004	0.007	0.008	0.006	0.007	0.007	0.026	0.007	0.006	0.007	0.098
기타애완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5	0.009	0.002	0.002	0.003	0.04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19 배합사료 생산실적

<표 III-17> 펫사료 관련 시도별 배합사료 생산실적(2019.12)

단위: 천 톤

구분	전국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애완개	5.7	1.0	0.21	0.52	0.14	2.9	0.89	0.02
애완고양이	4.1	1.1	0.11	0.04		1.1	1.50	0.15
관상용어류	0.01	0.005				0.002		
기타애완	0.003	0.003						
합계	9.8	2.1	0.32	0.56	0.14	4.1	2.39	0.1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19 배합사료 생산실적

④ 생산자물가조사⁶²⁾⁶³⁾

□ 조사개요 및 목적

- 「생산자물가조사」는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출하단계에서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물가통계팀에서 작성하며, 한국은행법 제 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

□ 조사대상 및 방법

-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에 구분하여 사업체 단위로 조사를 시행.
- 총 878개 품목으로 상품은 775개, 서비스는 1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00여 개 규격에 대해 조사.
- ※ 단 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선박, 무기, 염색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국내 사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 금액의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 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중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를 선정.
- 조사대상 품목은 상품의 경우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 수준의 1/10000(1,059억원) 이상, 서비스의 경우 모집단 수준의 1/2000(3,476억원) 이상의 거래 비중을 갖고, 동종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조사규격이 연속성을 지녀 가격 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⁶⁴⁾

62)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 물가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며, 소비자물가조사는 통계청에서 작성.

63) 한국은행. 2019 생산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생산자물가조사 통계설명자료

64) 한국은행. 2019.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 표본들은 품목분야별(농림산품, 수산품, 공산품, 서비스) 통계자료의 사업체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체 중 생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절차법으로 추출(표 III-18 참고).
- 조사된 가격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순위표본으로 3개 이상의 조상대상처를 선정하며, 각 조사대상처별 대표성이 높은 3개 이상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⁶⁵⁾

<표 III-18> 표본추출틀

품목	사업체리스트(표본틀)	작성기관
농림산품	농림통계연보	농림수산부
수산품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공산품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서비스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2019 생산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사업체 정보, 품질규격, 가격현황 조사(가격동향) 및 가격변동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표 III-19 참조).

<표 III-19> 생산자물가 조사항목

-
- ① 사업체개요
 - ② 품질규격(모델/브랜드명, 가격측정단위, 주요사양(기능, 성능 특징), 포함 부대비용 (제세금, 운송비, 설치비 등 제품 출고가에 포함된 부대비용),
 - ③ 최근 가격 현황(조사가격 기준(거래대상업체, 조사가격시점), 가격동향(전전월, 전월, 금월),
 - ④ 가격변동 요인(변동 주기, 변동 요인, 참고사항 및 기타 정보사항 (신제품 출시여부, 주요 경쟁업체, 동종기업의 진퇴출현황 등)
-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생산자물가지수는 매월 조사되는 계속통계로 상품의 경우 매월 15일이 속한 주의 수요일, 서비스는 매월 15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에 조사를 시행.

65) 우리나라의 물가통계(한국은행, 2019)

- 조사결과는 익월 20일 경 언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정보포털, 간행물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익월 말 조사통계월보를 발간⁶⁶⁾.
- 조사결과는 월별 가격조사를 기반으로 연쇄가중로우(Lowe)⁶⁷⁾산식을 활용하여 가격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품목별 가중치는 t-3년도 내수 출하액을 기반으로 1000분비로 작성.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애완동물 사료)관련 생산자지수는 2010년 기준년 지수 개편(2013년)부터 조사작성되고 있으며, 애완동물사료의 거래액 증가로 인해 신규 조사품목으로 추가됨⁶⁸⁾.
- 참고로 현재 생산자물가지수 측정 시 전체 사료품목(30118)의 가중치는 6이며, 애완동물사료(20118104)는 0.2의 가중치를 부여.
- ※ 최근 생산자물가지수 조사품목 분류체계의 변경 과정에서 기존의 비육우용과 낙농용 배합사료가 양우용 배합사료 품목으로 통합되었으며, 사료용 비타민제 및 사료첨가제는 사료첨가제 품목으로 통합.

<표 III-20> 생산자물가지수 측정시 사료유형별 가중치

구분	품목명	가중치
30118	사료	6.0
301181	사료	6.0
30118101	양우용배합사료	2.6
30118102	양돈용배합사료	1.7
30118103	양계용배합사료	1.2
30118104	애완동물사료	0.2
30118105	사료첨가제	0.3

자료 : 한국은행, 2019.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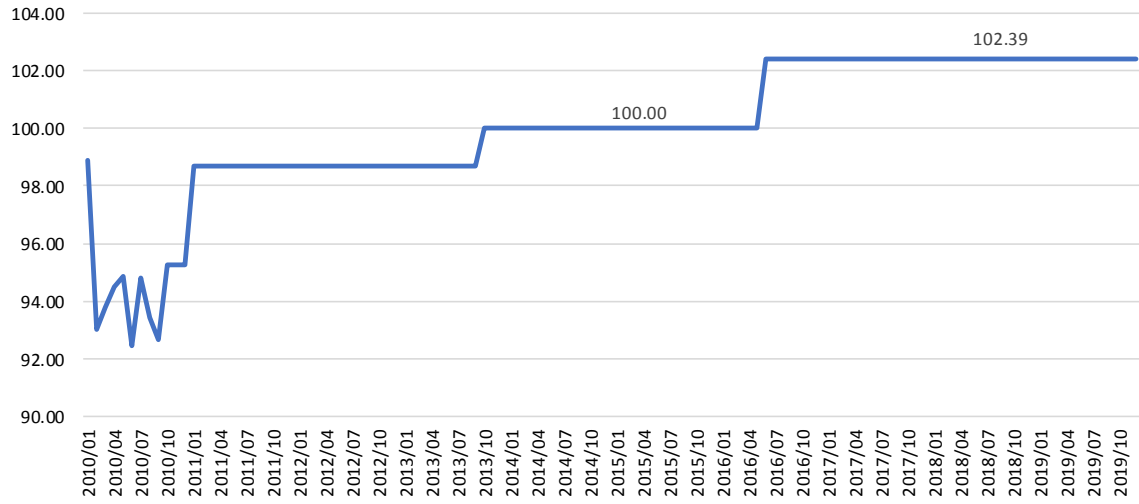
66) 조사된 월별 가격조사 데이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67) 로우산식은 가격 기준시점이 전년도 말월(t-1년 12월)로 설정되고 가중치는 통계 입수시차 등을 고려하여 통상 3년전(t-3년)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산출됨에 따라 가중치 기준시점과 가격 기준시점이 달라 두 시점의 기준년도를 일치시키는 라스파이레스 산식과 차이가 있음 (생산자물가지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9.5)

68) 가장 세부단위인 품목별 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을 수 있음을 강조.

[그림 III-1] 애완동물 사료 생산자 물가지수(2015=100)

단위: 2015=100, 가중치=0.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제조·유통·소비 전체 부문 통계

① 전국사업체조사⁶⁹⁾

□ 조사개요 및 목적

-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단위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에서 시행하며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민국 내 산업활동을 영속중인 모든 사업체를 목표모집단으로 하며,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약 400만개 정도로 추정.
- 사업체 단위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하여 구분.
- 조사모집단에는 사업자 등록은 하였지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 개인 농림어업사업체, 고정시설이 없는 사업체, 국방시설 등은 포함하지 않음.
- ※ 공장, 상점,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 사업소, 광업소, 작업장, 농장 등도 별개의 조사단위로 구분.

69) 통계청. 2018.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업체의 기본 정보 및 사업 활동(주 사업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표 III-21>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항목

① 기본항목 (사업체 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② 대표자 연령, 성별 항목
③ 창설년월 파악 항목
④ 조직형태(개인, 법인 등), 사업체구분(단독, 본·지사)항목
⑤ 산업분류 결정 항목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 매출액 비중)
⑥ 남녀/ 종사상지위 분류, 종사자수
⑦ 매출액 등 (연간매출액, 시·도별 자율항목(채용계획, 사업체 전입 및 창업비용,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 급여수준 등)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199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시초로 하여,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매년 2월~3월 중 시행.
- 조사결과는 조사기준 익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과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며,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음.

<표 III-2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제공 내역

구분	제공내역
시도·산업별	사업체구분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
	종사자 성별 사업체 수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성별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표 목록, 2019.3.2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전국사업체조사는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료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 등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과 지역(특별, 광역, 자치시 및 도 단위)기준 업종분류에 따른 사업체 현황정보를 제공.
- 매출액 정보는 중분류 단위에서 제공하고 있어, 세세분류단위의 업종별 매출액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반려동물사료(펫사료) 관련 사업체를 별도로 구분되어 조사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표 III-23>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체 구분별	2017년		2018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배합 사료 제조업	계	543	8,609	601	8,483
		단독사업체	391	3,426	447	3,450
		본사,본점 등	41	1,537	45	1,570
		공장,지사(점),영업소	111	3,646	109	3,46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계	307	2,174	399	2,485
		단독사업체	268	1,638	348	1,834
		본사,본점 등	13	167	19	201
		공장,지사(점),영업소	26	369	32	450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계	5,475	9,745	5,822	10,574
		단독사업체	5,266	8,891	5,579	9,551
		본사,본점 등	19	208	23	305
		공장,지사(점),영업소	190	646	220	718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계	2,077	3,431	2,831	4,748
		단독사업체	2,059	3,360	2,808	4,656
		본사,본점 등	3	14	4	32
		공장,지사(점),영업소	15	57	19	60
서울	배합 사료 제조업	계	14	38	18	42
		단독사업체	14	38	18	42
		본사,본점 등	-	-	-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계	15	58	26	87
		단독사업체	14	54	24	75
		본사,본점 등	1		1	
		공장,지사(점),영업소	-	-	1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계	973	1,700	1,023	1,845
		단독사업체	928	1,550	968	1,651
		본사,본점 등	7	29	6	41
		공장,지사(점),영업소	38	121	49	15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계	335	588	438	836
		단독사업체	332	576	432	817
		본사,본점 등	1		1	
		공장,지사(점),영업소	2		5	17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3) 유통부문 통계

① 서비스업조사⁷⁰⁾

□ 조사개요 및 목적

- 「서비스업조사」는 도소매를 포함하여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경영 실태 등 동향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시행.
 - 서비스업조사는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작성하며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 2018년부터(2017년 기준 조사) 「도소매업조사」를 서비스업 조사에 통합⁷¹⁾하여 실시.

□ 조사대상 및 방법

- 목표모집단은 국내 도소매업을 포함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1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
 - ※ 조사대상 업종은 도소매업 부문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의 2개 대분류이며, 서비스업 부문은 (E)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9개 대분류를 포함함.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유사통계가 있는 일부 업종⁷²⁾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표본추출틀은 전국사업체조사⁷³⁾ 결과를 기본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전수조사업종과 표본조사업종으로 구분.

70) 통계청. 2019. 서비스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71) 통계청. 2018.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18.12.27

72) 제외되는 업종은 47920(노점및유사이동 소매업), 47999(그외기타무점포 소매업), 56132(이동음식업), 61(우편 및 통신업), 70(연구개발업), 851(초등교육기관), 852(중등교육기관), 853(고등교육기관), 854(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94(협회및단체)이며,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유사통계의 존재로 인함.

73) 매년 사업체 전수조사 시행

- 표본조사업종에 대해서도 모두 표본으로 선택하는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

<표 III-24> 서비스업조사 표본추출구조

구분		내용
전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면세점, 호텔업, 기타 회계관련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대형마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 - 시도*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10개 이하인 경우
표본조사	전수층	전수경계점 이상 중견 규모 이상 사업체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 -전년 고정 전수층: 대규모 사업체(종사자 50인 이상, 연 매출 100억 이상) -전수층 경계점 이상: 중견규모 사업체
	표본층	전수경계점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는 일부 표본으로 선정

자료 : 통계청. 2019. 서비스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내용

- 서비스업 조사항목은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공통항목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특성항목으로 구성되며, 공통항목은 사업체의 기본정보에 대한 질문, 특성항목은 각 사업체의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질문들로 구성.

<표 III-25> 서비스업조사 조사항목

구분	내용
공통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연월 ④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⑨ 연간 영업 개월 수 ⑩ 일평균 영업시간 ⑪ 업체 정기 휴무일수 ⑫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사항 ⑬ 사업실적

구분		내용
특 성 항 목	도매 및 소매업	①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②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③ 상품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숙박업	①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②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③ 편의시설 개수, ④ 객실 수, ⑤ 객실 이용 건수, ⑥ 매출형태별 수입액, ⑦ 공유경제 활동 여부
	음식점 및 주점업	①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②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③ 객석 수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	①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② 직능별 종사자 수
	정보통신업	①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② 직능별 종사자 수, ③ 전산장비 보유 대수, ④ 무형자산 보유 건수, ⑤ 공유경제 활동 여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①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②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③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19. 서비스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서비스업조사는 1988년 이후부터 매년 조사하며, 기준년도 익년 6~7월에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는 매년 조사 기준년도 익년 1월에 공표.
- 조사결과는 언론 보도,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되며 별도 서비스업조사보고서를 발간.

<표 III-26> 서비스업조사 통계제공내역

제공내역	대상 업종
1. 산업별 총괄	E-S. 전 서비스업
2. 산업 및 일일 평균 영업시간별 사업체 수	
3. 산업 및 정기 휴무 일수별 사업체 수	
4. 산업별 연간 급여액	
5.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G. 도매 및 소매업
6. 산업 및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7. 산업별 무형자산 보유현황	J. 정보통신업
8. 산업 및 직별 종사자 현황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2019.2.28.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은 도소매업 부문의 하위에서 정의되고 있는 항목으로 <표 III-27>와 같은 정보가 제공.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세세분류 단위에서 구분되는 항목으로 시도별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전국단위 통계만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사료(펫사료) 관련 도소매 업종을 별도로 구분되어 조사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표 III-27> 도매 및 소매업 주요 통계정보

통계명	제공항목
산업별 총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연간급여액, 건물 연면적
산업 및 일일 평균 영업시간별 사업체 수	사업체 수, 8시간 미만, 8~10시간, 10~12시간, 12~14시간, 14시간 이상
산업 및 정기휴무일수별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없음, 월1일, 월2~3일, 월4~5일, 월6~7일, 월8일 이상, 평균 영업 개월
산업별 연간 급여액	사업체 수, 연간급여액, 상용종사자(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임시 및 일용종사자(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합계, 본지점간 이동, 생산업자, 도매업자, 해외수입, 기타
산업 및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합계, 본지점간 이동,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일반소비자, 해외수출, 기타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20.3.2.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표 III-28> 도소매업 부문: 총괄 통계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단위 : 개, 명, 백만원, m²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 비용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 급여액	건물 연면적
					합계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5,822	10,574	939,294	869,717	576,585	293,132	95,085	56,833	141,214	85,460	598,703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20.3.2.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표 III-29>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단위: %

구분	합계	본지점간 이동	생산업자	도매업자	해외수입	기타
상품 매입처 별 구성비	100	18.3	24.2	52.1	3.5	1.9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20.3.2.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표 III-30> 산업 및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단위: %

구분	합계	본지점간 이동	도매 업자	소매 업자	산업 사용자	일반 소비자	해외 수출	기타
상품 판매처 별 구성비	100	-	0.7	9.9	0.1	89.3	-	-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20.3.2.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4) 소비부문 통계

① 가계동향조사(지출)⁷⁴⁾

□ 조사개요 및 목적

-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특히,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조사결과는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에서 작성을 담당하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에 구분되어 실시.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일반가구이며,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내의 일반가구⁷⁵⁾를 조사 모집단으로 함.
 - 표본추출틀⁷⁶⁾은 일반가구 중 조사구 특성이 보통(1), 아파트(A)를 대상으로 함⁷⁷⁾.
- 가계소득 및 지출구조 파악에 특화된 전용표본 체계를 바탕으로 층화 2단 집락 추출을 시행.
 - 11개 지역별⁷⁸⁾ 인구, 가구특성 등 조사구 특성변수⁷⁹⁾에 따라 층별 추출을 시행.

74) 통계청. 2019.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부문) 통계정보보고서

75)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시설조사구 내 집단가구를 제외.

76) 통계청. 2019.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결과 보도자료. 2019.4.25

77) 인구주택총조사는 매5년마다 갱신되므로 표본추출틀 역시 5년을 주기로 갱신 접근이 어려운 섬 조사구를 제외.

78) 서울, 경인(동부/읍면부), 동북(동부/읍면부), 호남(동부/읍면부), 동남(동부/읍면부), 충청(동부/읍면부)

79) 인구 특성 : 평균 연령, 미취학 아동 비율, 초중고 학생 비율, 340대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대졸 이상 비율, 340대 대졸 이상 비율

- 가구 특성 : 평균 가구원수, 1인 가구 비율, 고령(65세 이상) 가구 비율, 노인 가구 비율, 농가 비율, 자가 비율,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비율, 초중고 학생 포함 가구 비율

- 표본 규모는 연간 1,200개 조사구(월별 100개, 분기별 300개)를 추출하며, 모집단 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표본을 배분.
- 1,200개 조사구를 지역층별로 확률비례계통추출한 후 분기별 표본조사구의 주요 특성이 모집단 및 연간 표본과 유사하도록 표본을 분할.

□ 조사내용

○ 지출부문 조사는 가구실태조사와 가계지출조사로 구분.

- 가계 지출조사는 가계의 일일 지출항목을 조사하는 가계부 조사와 지출 주기가 길고 금액이 큰 항목⁸⁰⁾에 대한 연간 지출조사로 구분되며, 가구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

<표 III-31> 가계동향조사(지출) 조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주기	항목 수	
가구실태조사	(가구원)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취업 현황, 종사 지위 등	연간조사	20여개	
	(가구) 가구원 수, 따로 살고 있는 가족 수, 집의 종류, 입주형태, 임대보증금, 월세, 월세평가액, 자동차 보유대 수 등			
가계지출조사	가계부 조사	1일~15일의 모든 지출, 사전점검 목록	매월 상반기	
		16일~말일의 모든 지출, 의무성 정기지출, 사회적 현물이전	매월 하반기	
	지출 (세분류)	(최근 1년) 가구, 가전, 주택설비교체 및 수리 서비스, 자동차, 항공요금, 단체여행비, 교육비, 숙박비 등	연간조사	380여개
	소득	근로·사업·재산소득, 정부수혜금, 사적이전소득 등	연간조사	69개
			6개	

자료 :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부문) 통계정보보고서(통계청, 2019) 기반 저자 재구성

-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소비지출 항목의 분류는 국제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⁸¹⁾를 활용.

80) 69개항목은 가계동향조사(‘14년1월 ~ ’15년12월, 월간자료) 기반 품목별 건당 평균지출금액, 가구당 월평균 지출건수 등을 기준으로 선택.

81)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ICOP

<표 III-32> 가계동향조사(지출) 지출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부항목
가계 지출	소비 지출	식료품·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및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 수산동물, 염 건 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 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 음료
		주류·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 의복, 의복 관련 서비스, 신발, 신발 서비스
		주거·수도· 광열	실제 주거비, 주택 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 타 주거 관련 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 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 기기, 가전 관련 서비스, 주방용품, 가 정용 공구 및 기타, 가사 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 스, 치과 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매, 기타운송기구구매,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운송기 구 연료비, 기타 개인 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 송, 기타교통 관련 서비스
		통신	우편 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 광학장비, 기록 매체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 관련 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 학원교 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품, 시계 및 장 신구, 기타 개인용품, 복지시설, 보험, 기타 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비용, 가구 간 이 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 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 이전으 로 인한 지출	

자료 : 통계청. 2019.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부문)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가계동향조사는 1950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것을 최초로 간주하며, 2017년부터 지출부문 통계는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되어 매년 언
론보도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

- 가계부 조사는 매월 상반기(1-15일), 하반기(16-말일)로 구분하여 매일의 모든 지출 및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시행.
- 가구실태조사 및 최근 1년간 금액이 큰 일부 지출항목, 전년도 경상소득에 대해서는 연간조사를 실시.

○ 가계동향조사는 분기 및 월별 전국 및 도시별 명목, 실질 가계수지 정보를 제공.

<표 III-33> 가계동향조사(지출) 통계제공 내역

구분	통계제공내역	범위
명목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전국 및 도시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오차 (전국, 2인 이상)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소비 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소득 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가구주 산업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가구주 직업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미혼 자녀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맞벌이 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실질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실질)	전국 및 도시별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실질)	
	소비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실질)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실질)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표 목록. 2019.3.10.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_A_4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 관련 지출에 대한 조사항목은 ‘오락·문화’ 이하 ‘애완동물관련용품’ 과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지출항목으로 이루어짐.

- 펫사료 관련 가계소비 지출은 애완동물관련용품 부문에 통합되어 조사되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지출의 경우에도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분류에서 포함되어 있어, 반려동물 관련 세부적 지출 내역과 동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III-34>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항목분류 내역

대분류	중분류	분류내용
오락·문화	애완동물관련용품	애완동물의 구입, 애완동물 먹이, 사육장(어항) 등 관련용품 구입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화초, 애완동물의 관리, 치료, 미용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자료 : 통계청. 2019.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결과 보도자료. 2019.4.25

<표 III-35> 가구당 월평균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전국, 2인 이상)

단위: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가구	2,029	2,355	2,425	2,674	3,119	3,208
근로자가구	1,992	2,287	2,434	2,715	3,195	3,339
근로자외 가구	2,089	2,468	2,410	2,604	2,987	2,987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표 III-36>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당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

단위: 원

소비지출 계층별	2016 1/4분기			2016 2/4분기			2016 3/4분기			2016 4/4분기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평균	3,190	3,164	3,231	3,102	3,104	3,098	3,271	3,428	3,006	3,283	3,568	2,808
100만원 미만	963	784	1,043	1,170	536	1,533	712	935	575	654	932	486
100-200만원 미만	2,465	2,535	2,367	2,163	2,141	2,197	2,107	2,462	1,598	2,565	2,650	2,452
200-300만원 미만	3,587	3,321	4,110	2,996	3,049	2,884	3,406	3,077	4,086	3,215	3,572	2,435
300-400만원 미만	3,296	2,372	5,324	5,079	4,382	6,656	4,674	4,404	5,289	5,085	4,352	6,832
400만원 이상	5,282	5,418	4,941	5,450	5,387	5,606	6,157	6,024	6,505	5,895	6,226	5,012

주. 전국, 2인 이상 가구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② 소비자물가조사⁸²⁾

□ 조사개요 및 목적

- 「소비자물가조사」는 가구에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조사하여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주요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활용.
- 소비자물가조사는 통계청 물가동향과에서 실시하며,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에 의거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및 방법

- 목표모집단은 소비용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소매점 및 서비스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38개 시도의 460개 대표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서비스업체.
- 표본추출틀로는 전국사업체조사, 도소매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의 소매점 및 서비스업체를 활용.
- 조사 대표품목은 매 5년을 주기로 갱신하며, 2015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제외)의 월평균 소비지출총액의 10,000분의 1(월평균 231원) 이상이고,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조사결과가 조사권역의 가격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대상처를 유의 추출하여 선정하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소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별 구입액 비중에 비례하도록 조사대상처를 선정.
- 조사권역은 조사지역의 지리적 특성(구, 동 경계 등)에 따라 구분하며,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권역을 배정.

82) 통계청. 2019.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내용

- 조사항목으로는 공통항목으로 응답자 기본정보(조사대상처 상호, 유형, 응답자명 및 연락처)와 특성항목으로 품목별 규격과 가격이 있음.
- 품목 및 단위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실제거래가격(세금 포함)을 조사하며, 전월 가격, 금월 가격 및 가격변동 사유를 표시⁸³⁾하도록 함.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소비자물가조사」는 통계청 물가동향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36년을 시초로 매월 조사를 시행하며, 품목의 구분에 따라 조사 횟수와 시기는 상이함.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 석유류는 월 3회 조사(초순, 중순, 하순 주중 1일), 공업제품은 월 1회 조사(중순), 전기·수도·가스는 월 1회 조사(하순), 서비스는 월 1회 조사(하순), 집세는 월 1회 조사(초순)를 실시.
- 소비자물가조사는 기준시점을 고정으로 시, 도 단위를 기준으로 품목 및 분류에 따라 가격지수(라스파이레스 산식)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지출목적분류와 특수목적분류로 구분⁸⁴⁾하여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을 위한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함.
- 조사결과는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월보·연보를 별도로 발간.

<표 III-37> 소비자 물가조사 통계제공 목록

통계명	주기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월, 분기, 년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년
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포함, 2015=100)	월, 분기, 년

83) 조사표 참고

84) 지출목적별지수는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특수분류지수로는 품목성질별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식료품및에너지외지수, 자가주거비용포함지수를 작성하고, 또한 보조지표로서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매년 변경하면서 작성하는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연쇄지수)를 작성

통계명	주기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월, 분기, 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 성질별:2015=100)	월, 분기, 년
생활물가지수(2015=100)	월, 분기, 년
신선식품 지수(2015=100)	월, 분기, 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2015=100)	월, 분기, 년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2015=100)	월, 분기, 년
자가주거비포함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월, 분기, 년
연도별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9개도, 37개사:2015=100)	년
연도별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9개도, 37개사:2015=100)	년
연쇄 방식소비자물가지수(2015=100)	년
연도별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9개도, 37개사:2015=100)	년
연쇄 방식소비자물가지수(2015=100)	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표 목록. 2019.3.5.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C1_15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제공 내역

-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은 ‘기타 오락용품, 조경용품 및 애완동물’ 하위 항목으로 ‘애완동물 용품’ 과 ‘애완동물 관리비’ 로 구분하여 조사.⁸⁵⁾
 - 애완동물용사료(펫사료)는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 측정 시부터 대상품목⁸⁶⁾으로 되었으며, 2015년 기준지수 개편 시 ‘애완동물용품’ 으로 통합되어 조사되고 있음.
 - 또한 2015년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시 애완동물 병원비 및 미용료 항목이 애완동물 관리비 항목으로 통합⁸⁷⁾되었음.
- 2015년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시 기존 ‘애완동물용사료(펫사료)’ 를 반려동물용 다른 상품 소비와 연관되는 ‘애완동물 용품’ 으로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펫사료관련 소비자가격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85)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2019.3.5. 접속.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cp/1/2/index.static

86) 신승우. 2002. 200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통계분석연구」 2002년 봄(제7권 제1호) pp.143-153.

87) 통계청. 2016.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보도자료. 2016.7.1

<표 III-38> 연도별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물가조사 항목 및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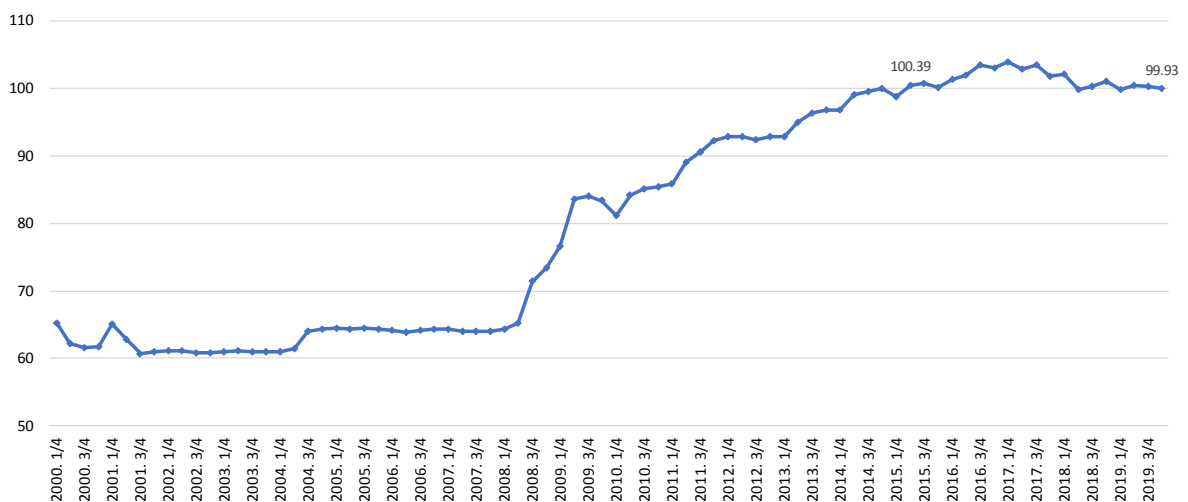
구분	항목		가중치	조사품목
2000년기준 (516개 품목)	H02125	애완동물용사료	0.4	
2005년기준 (489개 품목)	I02109	애완동물용사료	0.6	
	I03115	애완동물병원비	0.4	
2010년기준 (481개 품목)	I031100	애완동물용사료	1	
	I031110	애완동물병원비	0.4	
	I031120	애완동물미용료	0.3	
2012년기준 (481개 품목)	I031100	애완동물용사료	1.2	강아지용, 일반포장 제품, 알갱이, 1.5kg 내외
	I031110	애완동물병원비	0.3	소형 애완견, 종합백신 접종비용
	I031120	애완동물미용료	0.3	소형 애완견, 기본 미용비
2015년 기준 (460개 품목)	I031060	애완동물용품	1.5	
	I031070	애완동물관리비	1	
2017년 기준 (460개 품목)	I031060	애완동물용품	1.9	
	I031070	애완동물관리비	1.2	

자료: 통계청. 각년도(2000~2017). 지출목적별 품목 및 가중치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월별, 분기별, 연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III-2] 애완동물용품 소비자 물가지수(전국,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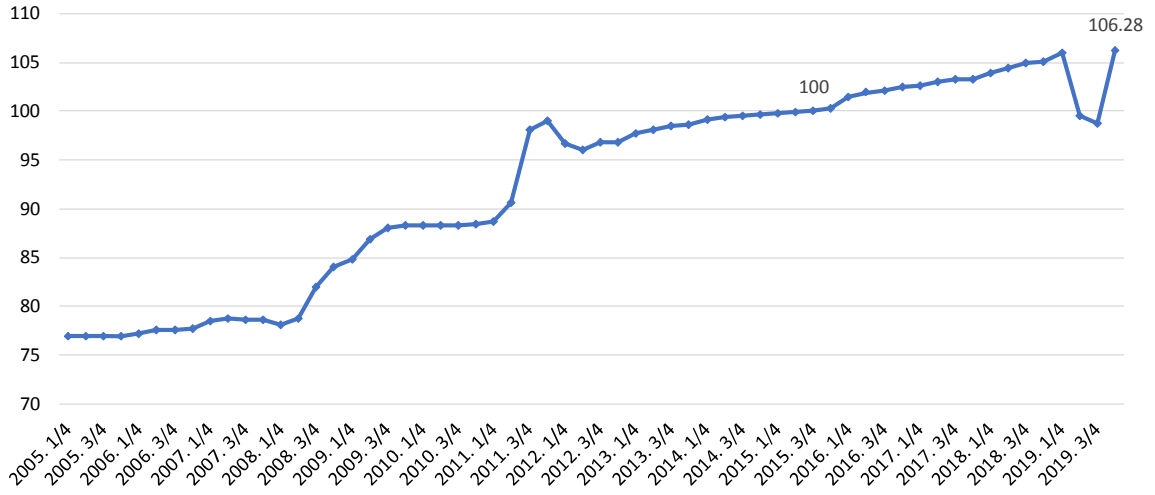
단위: 2015=100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소비자물가지수

[그림 Ⅲ-3] 애완동물 관리비 소비자 물가지수(전국, 분기별)

단위: 2015=100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소비자물가지수

(5) 기타

① 반려동물 양육 가구 통계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

□ 통계청 및 농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규모의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중.

○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의 시범예행조사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본 조사(2020년 11월 예정) 항목으로 포함을 검토 중.

○ 본 조사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규모의 파악에 있어 신뢰도 높은 통계를 제공하며, 현황 및 수요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을 조사하고 있으나, 표본의 규모가 작아 (2019년 5,000개) 현실의 정확한 반영에 한계가 있음.

[그림 Ⅲ-4]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관한 질문

39 반려(애완)동물

이 가구에서 현재 반려(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 키우고 있는 반려(애완)동물 모두 기입합니다.

① 개

② 고양이

③ 기타

④ 반려(애완)동물 안 키움

자료: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조사표(일반)

나. 일본

- 일본의 표준산업분류(JSIC)⁸⁸⁾에서는 사료제조와 관련한 업종을 대분류 제조업(E)이하 중분류 ‘음료, 담배 및 사료제조업(10)’ 이하 소분류 ‘사료·유기질 비료 제조업(106)’에 포함되며, 세분류에서 ‘배합사료제조업(1061)’ 과 ‘단미사료제조업(1062)’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III-39>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사료제조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 제조업	[10] 음료, 담배 및 사료제조업	[106] 사료·유기질 비료 제조업	[1061] 배합사료제조업 [1062] 단미사료제조업

자료 : Statistics Bureau of Japan. Industrial Classification used in the 2012 Economic Census for Business Activity. 2020.3.15.접속.

<https://www.stat.go.jp/english/data/e-census/2012/industry.html#e>

-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정의 및 예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애완동물 사료제조업종은 사료의 원료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업’ 혹은 ‘단미사료 제조업’에 포함.

<표 III-40>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의 사료제조업 관련 구분

항목명	정의	업종예시
[1061] 배합사료제조업	주로 곡류 등을 원료로, 가축, 가금(禽), 애완·관상용 동물 등의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동물성 단백질 혼합 사료 제조업 -식물성 단백질 혼합 사료 제조업 -어류부산물(피시슬루브) 흡착 사료 제조업 -관상어용 사료 제조업 -개 사료 제조업
[1062] 단미사료제조업	주로 동식물 가공 부산물을 원료로 가축, 가금(禽), 애완·관상용 동물 등의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효모 사료 제조업 -어분 사료 제조업 -우모분 사료 제조업 -패분 사료 제조업

자료 : 日本標準産業分類. 日本標準産業分類(平成25年10月改定)(平成26年4月1日施行) -分類項目名. 2020.3.15. 접속.

https://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angyo/02toukatsu01_03000044.html#e

88) 日本標準産業分類. Jap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 13, October 2013)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Classification

- 펫사료 관련 유통업은 대분류 ‘도소매업(I)’ 이하의 중분류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소매업(60)’ 이하의 소분류 ‘그 외 기타 소매업(609)’ 에서 ‘펫 스토어(pet store)(6096)’ 를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III-41>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유통부문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I] 도소매업	[60]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소매업	[609] 그 외 기타 소매업	[6096] 펫 스토어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 Industrial Classification used in the 2012 Economic Census for Business Activity. 2020.3.15.접속. <https://www.stat.go.jp/english/data/e-census/2012/industry.html#e>

- 일본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에서 펫사료의 제조, 유통, 소비부문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부문별 주요 통계정보 제공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I-42 참조).

- 펫사료 제조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공업통계조사」와 매 5년을 주기로 작성하는 「경제센서스」를 통해 산업 동향파악이 가능.
 - 「공업통계조사」는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E)에 속하는 4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경제센서스」는 전산업 부문에 대해 조사하므로 「경제센서스」에서 조사하는 ‘배합사료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업’ 해당 사업체 범위가 더 넓음.
- 펫사료의 유통에 관한 통계로는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있으며, 일본표준산업분류 도소매업(I)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 도소매업 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펫사료 관련 항목은 드럭스토어 및 가정용품전문점의 판매동향에서 집계하고 있으나,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으로 조사하고 있어 펫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펫사료 소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로는 「전국소비실태조사」, 「소매물가통계조사 (동향조사)」 등이 있으며, 펫사료를 가계의 소비지출품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 「전국소비실태조사」는 가구별 특성에 따른 펫사료 지출동향을 조사하며, 「소매물가통계조사 (동향조사)」는 전국의 도소매 상점을 대상으로 개 사료 및 고양이 사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물가지수를 작성.

<표 III-42>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관련 항목구분	
제조	공업통계조사	경제산업성, 총무성	전수조사 (종사자수 4인 이상)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품목	단미사료제조업
제조 ·유통	경제센서스 (기초, 활동)		(기초) 전수	업종	사료·유기질 비료 제조업
			(활동) 전수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품목		애완동물용 사료	
유통	도소매업통태조사	경제산업성	표본조사	품목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
소비	전국소비실태조사	총무성	표본조사	품목	반려동물, 반려동물 용품
	소매물가통계조사 (동향)	총무성	표본조사	품목	펫사료
					반려견용 사료
					반려묘용 사료

(1) 제조부문 통계

① 공업통계조사(Census Manufacture)⁸⁹⁾

□ 조사개요 및 목적

- 「공업통계조사」는 일본 전체의 제조업실태를 파악하고, 5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 시점 간의 경제구조 파악을 위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 공업통계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과 총무성⁹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의 행정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공업통계조사는 일본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E)에 해당하는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
- 3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조사 기간에 사업소 명, 종업원 수 등 사업소의 기본현황에 관해서만 확인.
- 전국의 사업소를 단위로 조사를 시행하며, 모집단은 산업조사준비명단⁹¹⁾을 기반.
- 2018년 조사에서 198,846개 사업소가 조사대상.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각 사업소의 산업활동 현황에 관한 것이며,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4인~29인, 30인 이상) 조사표 양식을 달리함.

89) 日本經濟産業省 . 工業統計調査. 2020.3.12.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

90) 2019년부터 총무성과 공동실시.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gaiyo/enkaku.html>

91)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소모집단 DB (<http://www.stat.go.jp/data/jsdb/gaiyou.html>)는 활용하지 않음.

-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약식의 조사표(을 조사표)를 이용하고 있음.

<표 III-43> 공업통계 조사항목 구분

[갑 조사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본사 또는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다른 사업소 (국내)의 유무, 경영조직,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소비세 포함 및 미포함 작성 여부, 원자재, 연료, 전력사용액, 위탁 생산비, 제조 등 관련 외주비, 재판매한 제품의 구입액, 유형 고정자산, 주요원재료명, 작업공정, 제조품 재고액, 반제품, 장치 품의 가격 및 원재료, 연료의 재고액, 제조품의 출하액, 재고액, 제조품 출하액 중 직접수출액의 비율, 공업용지(면적) 및 공업용수(사용량)
[을 조사표] (종업원 4인 - 29인 사업장)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본사 또는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다른 사업소 (국내)의 유무, 경영조직,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소비세 포함 및 미포함 작성 여부, 원자재, 연료, 전력사용액 위탁 생산비, 제조 등 관련 외주비 및 재판매한 제품의 구입액, 제조품 출하액 등, 제조품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직접수출액의 비율, 주요원재료명 및 작업공정 개요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 工業統計調査. 2020.3.12.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

- 종업원 3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제조품 출하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추정치를 제공.⁹²⁾

- 사업소 수 및 종업원 수는 공업통계의 준비조사명부에 기반하여 확보하며, 제조품 출하액은 종업원 4~9인 사업소의 사업소당 출하액 전년 대비*를 작년 기준 종업원 1~3인 사업소의 사업소당 출하액에 곱하고, 사업소 수를 곱하여 분류체계별(소, 중, 대분류) 추계하여 추정치로 활용.

※ 사업소 당 전년 대비 = 종업원 4-9인 1사업소 당 전년도 제조품 출하액 대비 당해 연도 제조품 출하액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공업통계조사는 1909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경제센서스의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연도(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조사를 시행.
- 조사결과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속보(주요 항목에 대한 잠정치), 개요, 확보(확정치)순으로 공개되며, 추가로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음.

92)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result-4.html#menu07>

- 조사 실시 약 9개월 후 주요 조사항목(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유형 고정자산)를 산업 중분류, 종업원 규모 별, 도시별로 집계하여 속보로 공표.
 - 조사시행 약 1년 이후 조사의 개요를 발표하며, 이후 산업, 품목 및 지역별 개별 통계를 차례대로 집계하여 확보로 공표.
- 산업, 품목 및 지역별 통계 제공목록은 아래와 같음(표 III-44, III-45, III-46 참조).

<표 III-44> 산업별 통계(2018)

1. 산업별 (세분류별)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과 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품별 출하액 등 생산액, 부가가치, 총 부가가치, 재고액 및 유형 고정 자산
	종업원 4-29인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2. 종업원 규모별	종업원 4인 이상	산업 중분류 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등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등 산업 세분류 종류의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등
	종업원 30인 이상	산업 중 분류별 사업체 수, 재고금액, 유형 고정 자산
3. 경영조직별 자본금 규모 별 (세분류별)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부가가치액
4. 산업별 (세분류별)	종업원 30인 이상	부지 면적 및 1일 소비 용수량
5. [참고] 종업원 3인 이하 사업장 추계		(1) 산업 세분류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제조품 출하액 등 (2) 시도부현별 도쿄 특별구 · 정령 지정 도시별 산업 중분류 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및 제조품 출하액 등

<표 III-45> 품목별 통계(2018)

1. 생산품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출하 및 생산 사업소 수 산업 중분류별 품목군에 의한 시도부현별 출하액 품목별, 시도부현별 출하 및 생산 사업장 수 품목별, 종업원 규모 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품목별 출하의 산업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산업별 출하의 품목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품목별 경영 조직형태별, 자본금 규모별 제조품 출하액
	종업원 30인 이상	품목별 재고 및 생산 사업장 수

2. 임가공품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가공비수입 및 생산 사업장 수
3. 기타소득	종업원 4인 이상	(산업중분류별) 기타소득 종류별 산업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수입액 기타 소득 종류별 도도부현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수입액

<표 III-46> 지역별 통계(2018)

1. 도도부현별 도쿄 특별구·정령 지정 도시별 통계	종업원 4인 이상	① 산업 중분류 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부가가치액 ② 종업원 규모 별 사업체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① 산업 중분류 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② 산업 중 분류별 사업체 수, 재고액 및 유형 고정 자산
	종업원 4-29인	산업 중분류 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및 총 부가가치액
2. 도도부현별 산업 세분류별 통계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부가가치액
3. 도시별 산업 중분류 별 통계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총부가가치액
4. 도도부현별 산업 중분류별 통계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소, 사업소 부지 면적, 1일 공업용수량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i) 산업별 통계

- 산업별 통계는 일본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배합사료 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업’을 기준으로 업체 수, 종업원 수, 출하액 등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표 III-47> 산업별 통계(종업원 4인 이상) (2018)

단위: 명, 백만엔

구분	연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현금급여 총액	원자재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부가가치액*
배합사료 제조업	2013	321	8,316	34,465	936,320	1,091,942	138,968
	2014	317	8,296	34,721	958,771	1,124,465	145,870
	2015	374	8,849	36,910	1,093,869	1,403,019	274,997
	2016	311	8,837	36,774	891,066	1,082,884	165,834
	2017	312	9,062	38,199	856,859	1,041,473	160,533
단미사료 제조업	2013	136	2,207	8,948	52,517	83,911	28,118
	2014	128	2,073	8,525	56,240	82,663	23,260
	2015	160	2,604	11,071	77,136	128,276	45,873
	2016	126	2,348	9,388	58,860	97,700	33,991
	2017	121	2,320	9,544	57,813	93,930	31,402

*종업원 29인 이하의 경우 총부가가치액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 工業統計調査. 2020.3.12.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

(ii) 품목별 통계

○ 공업통계조사의 제조품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품목을 기준으로 업체 수, 재고액, 출하액 등을 집계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사료(106112)’에 대해 출하액, 출하사업소 수, 출하율 통계를 제공.

- 반려견, 반려묘 사료 및 관상어 등 기타애완동물용 사료는 ‘애완동물용 사료(106112)’로 정의.

<표 III-48> 공업통계의 품목분류체계

구분	품목명	품목정의
106111	배합사료	동물성·식물성 단백질 혼합사료, 피시슬류블 흡착 사료 등
106112	애완동물용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관상어용 사료, 반려견 사료, 반려묘 사료 등
106191	배합사료(임가공)	-
106211	단미사료	패각분 사료, 효모 사료, 어분 사료, 우모분 사료, 비지(사료용으로 가공한 것), 깻묵사료 등
106291	단미사료(임가공)	-

자료 : 平成30年工業統計調査 商品分類表

<표 III-49>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 (2018)

단위: 백만엔, 개

품목구분	연도	출하액	출하 사업소 수
106112 애완동물용사료	2013	80,502	108
	2014	80,062	107
	2015	92,286	120
	2016	98,229	107
	2017	104,127	112

<표 III-50> 산업 및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 (2018)

단위: 백만엔, %

산업별		품목		연도	출하 사업소 수	출하액	출하율
1061	배합사료 제조업	1061	합계	2017	278	974,523	100
		106111	배합사료	2017	211	860,564	88.31
		106112	애완동물용사료	2017	73	99,660	10.23

② 경제센서스(기초조사, 활동조사)

□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는 사업소 및 기업의 경제활동 동향과 일본 전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단위 각종 통계의 모집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

○ 경제센서스는 조사목적 및 범위에 따라 「경제센서스-기초(基礎)조사」 및 「경제센서스-활동(活動)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함. 기초조사는 총무성에서, 활동조사는 총무성 및 경제산업성이 공동 관할⁹³⁾.

- 과거 각 부처에서 별도로 산업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기준 및 시점이 불일치하고 서비스업 부문 및 총 GDP에 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통계정확도 향상 및 사업체·기업의 모집단 정보에 대한 자료 획득을 위해 2009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를 처음으로 시행.

- 통계법⁹⁴⁾에 근거한 기간통계(경제구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이며, 2009년부터 사업소·기업 관련 모집단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소·기업 통계조사」가 경제센서스에 통합.

(i) 기초조사⁹⁵⁾

□ 조사개요 및 목적

○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사업체, 기업 현황을 조사하여 경제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소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의 모집단 정보를 확보를 위해 실시.

93)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4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2/index.html>

94) 平成19年(2007년) 통계법 제53호

95) 日本総務省統計局. 令和元年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の概要. 2020.3.13.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9/gaiyou.html>

□ 조사대상 및 방법

- 표준산업분류체계의 농림업(대분류 A), 어업(대분류 B) 분야의 자영업, 가사서비스업(소분류 792) 및 외국 공무(중분류 96)에 속하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
- 사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사내용

- 조사대상(사업체, 국가 및 지자체 사업소)에 따라 구분된 통계표를 활용하며,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명, 기업활동 상태, 종업원 수, 주요 사업내용, 매출액 등 기업의 기초정보를 위주로 조사.

<표 III-51>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조사항목

사업체 조사 (갑)	조사내용 1) 기존기업: 기업명, 소재지, 활동상태 2) 신규기업: 기업명 및 전화번호, 소재지, 활동상태, 종업원 수, 주요 사업내용, 업태, 소비세 포함 및 미포함 작성 여부, 연간 총매출액(수입), 개업 시기, 경영조직, 법인등록번호, 단독 사업소·본소·지소의 구별, 본소·본사·본점의 명칭, 본소·본사·본점의 전화번호, 본소·본사·본점의 소재지, 조직 전체의 주요 사업내용, 조직 전체의 연간 총매출(수입)금액, 자본금 등의 금액
국가 및 지자체 사업소 대상 조사 (을)	조사내용 1) 기존기업: 기업명, 소재지, 활동상태 2) 신규기업: 기업명 및 전화번호, 소재지, 활동상태, 직원 수, 주요 사업내용, 사업 위탁처의 명칭, 전화번호 및 위치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令和元年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の概要. 2020.3.13.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9/gaiyou.html>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기초조사는 2009년부터 매 5년을 단위로 실시⁹⁶⁾하며,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
- 사업소와 기업의 산업분류, 경영조직, 종업원 규모 등의 결과를 전국, 시, 도 등의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제공.

96)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실시하였으나, 현재 자료 미 공개 상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제공 내역

- 기초조사에서는 소분류단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소분류인 ‘사료·유기질 비료 제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
 - 세분류인 ‘사료제조업’ 단위의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ii) 활동조사⁹⁷⁾

□ 조사개요 및 목적

- 전국 및 지역의 전 산업 분야에 대해 경제 활동실태를 동일 시점에서 파악하고, 사업소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의 모집단 정보 획득을 위해 실시.
 - 사업소와 기업들의 다변화되는 경제활동을 상세하게 조사하므로, 전 산업영역을 포괄하는 기초 통계정보의 확보 및 산업 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일본 내에 소재하는 전 사업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표 III-52>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제외업종

-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A.농림업, B.어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N.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 중 소분류 기준 792. 가사서비스업 해당 업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R. 기타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중 중분류 기준 96. 외국공무에 해당하는 사업소
-

- 특히, 활동조사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업종뿐 아니라 제조품목을 기준으로도 업체 수, 출하액, 재고액 등에 대해 집계하므로, 산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상세한 현황 확인이 가능.

97)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概要.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 조사내용

-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와 매출액, 수익, 설비투자금액 등 기업의 활동상황 등을 조사하며, 셀프서비스 적용 여부, 매장 면적, 체인 가맹 여부 등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조사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표 III-53>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항목

기업명 및 전화번호, 소재지, 이전 및 사명변경 여부, 개업 시기, 경영조직, 협동조합의 종류, 학교 및 학교 교육 지원 기관의 종류, 정치·경제·문화 단체 및 종교 단체의 단체 종류, 단독사무소·본사·지사의 경우 이름 및 본사 소재지, 지사의 수, 사업내용, 사업소 형태, 관리·보조 업무의 종류, 종업원 수, 전자상거래 유무 및 비율, 설비투자 여부 및 취득액, 자동차 보유 대수, 토지 및 건물 소유 여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기금의 금액 및 외국 자본 비율, 결산 월, 판매액(수입) 혹은 경상수익 혹은 비율, 매출액이 높은 부서와 상품명 및 중개수수료 혹은 수리 보험료 수입 여부, 본점 및 지점 간 이동 비율, 연간 임대 매출 및 리스 계약액 및 자산별 비중, 상대방별 수익 비율, 비용, 임대계약 금액 및 지불, 유형 자산, 생산량 및 생산액, 생산품 및 재고액, 반제품 가격 및 원자재, 원료 재고금액, 생산품 출하횟수·출하액 및 재고액, 임가공품명, 가공비수입 및 제조업 이외 수입, 주류세·담뱃세·유류세, 지방 유류세 합계액, 직접수출액 비율, 주요원재료명, 공업용지 및 용수, 작업 공정, 재고량, 상품군별 소매액 비율, 판매형태별 소매액 비율, 셀프서비스 적용 여부, 매장 면적, 영업시간, 시설 또는 점포의 형태, 체인 가맹 여부, 사업형태별 시공유형, 숙박업 수용인원 및 객실 수, 취급 건수, 공개 건수, 입장자 수, 이용자 수 및 수강생 수, 동업자와의 계약 비율,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 여부, 소비세 포함 및 미포함 작성 여부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概要.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 활동조사는 사업체의 업종분류, 사업체 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III-54>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표 구분

구분	조사표
조사원 시행 조사	[01] 자영업 조사표, [02] 단독 사업소 조사표 (농업, 임업, 어업), [03] 단독 사업소 조사표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04] 단독 사업소 조사표 (제조업) [05] 단독 사업소 조사표 (도매업, 소매업), [06] 단독 사업소 조사표 (의료, 복지), [07] 단독 사업소 조사표 (건설업, 서비스 관련 산업 A 학교 교육), [08] 단독 사업소 조사표 (협동조합), [09] 단독 사업소 조사표 (서비스 관련 산업 B) [10] 단독 사업소 조사표 (정치·경제·문화 단체, 종교), [11] 산업 공통 조사표
기업체 직접조사	[12]기업 조사표, [13]기업 조사표 (건설업, 서비스 관련 산업 A 학교 교육), [14] 단체 조사표 (정치·경제·문화 단체, 종교), [15]사업소 조사표 (농업, 임업, 어업), [16] 사업소 조사표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17] 사업소 조사표 (제조업), [18]사업소 조사표 (도매업, 소매업), [19]사업소 조사표 (의료, 복지), [20] 사업소 조사표 (건설업, 서비스 관련 산업 A 학교 교육), [21] 사업소 조사표 (협동조합), [22] 사업소 조사표 (서비스 관련 산업 B), [23]사업소 조사표 (정치·경제·문화단체, 종교)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概要.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2009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의 시행결과를 활용하여 총무성 및 경제산업성에서 2011년 처음 「경제센서스-활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5년을 주기로 실시.
- 가장 최신자료는 2016년 기준년도 조사결과로, 2017년 5월 31일 속보, 2017년 9월 25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차례대로 확보를 공표.
- 조사결과는 사업장과 기업을 구분하여 산업 전체 및 산업 분류별(광업,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의료복지, 건설 및 서비스, 교육 등) 현황자료를 제공.

<표 III-55> 경제센서스-활동조사 통계제공내역

구분	조사표		
사업장 현황별	산업전체	전국 및 지역별(도도부현별) 통계	
	산업별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제조업	요약, 품목편, 산업편, 용지·용수편, 도시편, 공업지구편
		도매, 소매업	(사업소별) 산업편(총괄, 도도부, 도시별)
			(기업별)
		서비스 B (G2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업, K 부동산업, 물품 임대업, L 학술 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M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N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O2 기타교육, 학습지원업, R2 서비스업 (정치·경제·문화단체, 종교 제외))	
의료복지			
기업별	산업전체	전국 및 지역별(도도부현별) 통계	
	산업별	건설업 및 서비스 A (F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H 운수업, 우편업, G1 정보 통신업)	
		도매, 소매업	
		학교 교육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調査票、オンライン調査利用ガイド、調査票の記入のしかた及び分類表.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ichiran.html>

-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해서는 업종분류별 통계(산업편) 뿐 아니라, 제조 품목을 기준으로 통계(품목편)을 작성하고 있음.

<표 III-56>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 『산업편』 통계(2016)

구분	내용
산업별 통계 (산업세분류 별)	(전 사업소)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부가가치액 및 유형고정자산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상용근로자 연간 월 평균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종업원 30인 이상)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및 총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리스계약에 따른 계약액 및 지급액 (종업원 4~29인)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총부가가치액 (종업원 10~29인) 산업세분류별 재고액 및 유형고정자산
종업원 규모별	(종업원 4인 이상) 산업 세분류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상용 노동자 연간 월 평균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의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산업 중분류별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리스계약에 의한 계약액 및 지급액
도도부현별, 도쿄 특별 구·정령 지 정 도시별	(종업원 4인 이상) 종업원 규모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부가가치액 [산업 중분류별]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에 관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의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에 관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의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종업원 30인 이상)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리스계약에 의한 계약액 및 지급액 (종업원 4~29인)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에 관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의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및 총부가가치액 (종업원 10~29인) 재고액 및 유형고정자산
종업원 3인 이하	(종업원 3인 이하) 산업 세분류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의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총부가가치액 (종업원 3인 이하) 산업 중분류별, 도도부현별, 도쿄 특별 구·정령 지정 도시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파견 수입자와 관련한 인재 파견 회사에 대한 지급액,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등, 제조품 출하액 등 및 총부가가치액
사업소당 및 종업원 1인 당 통계	(종업원 30인 이상) 산업 세분류별 제조품 출하액 등 및 부가가치액 등 (종업원 30인 이상) 산업 중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제조품 출하액 등 및 부가가치액 등 (종업원 4인~29인) 산업 세분류별 제조품 출하액 등 및 총부가가치액 등 (종업원 4인~29인) 산업 중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제조품 출하액 등 및 총부가가치액 등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製造業)「産業編」統計表データ日本標準産業分類.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표 III-57>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품목편』통계(2016)

구분	내용	
종업원 4인 이상	제조품	(전 사업소) 품목별 출하 및 산출 사업소 수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출하 및 산출 사업소 수 (산업 중 분류별, 종업원 4인 이상) 품목군에 따른 도도부현별 출하액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광역자치단체별 출하 및 산출 사업소 수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종업원 규모별 산출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10인 이상) 품목별 출하의 산업 세분류별 산출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10인 이상) 산업별 출하의 품목별 산출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30인 이상) 품목별 재고 및 산출 사업소 수
	임가공품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가공임 수입액 및 산출 사업소 수
	기타수입	(종업원 4명 이상) 산업 중분류별 기타수입의 종류별 산업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수입액 (종업원 4명 이상) 기타수입의 종류별의 도도부현별 산출 사업소 수 및 수입액
종업원 3인 이하	제조품	품목별 출하 및 산출 사업소 수
	임가공품	품목별 가공임 수입액 및 산출 사업소 수
	기타수입	기타수입의 종류별 산출 사업소 수 및 수입액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製造業)「産業編」統計表データ
日本標準産業分類.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경제센서스-활동조사」의 제조업 통계에서는 『산업편』 및 『품목편』 통계를 발간하므로, 업종 및 제조품목을 기준으로 한 펫사료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산업편』에서는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산업동향 정보를 제공.

<표 III-58> 경제센서스-활동조사(제조업)『산업편』통계 (전 사업소 기준)(2016)

단위: 명, 백만엔

구분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인건비	원자재, 연료, 전력사용액	출하액	부가가치액
[1061] 배합사료제조업	451	9,002	37,262	1,097,705	1,409,651	277,586

자료: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製造業) 『産業編』

- 『품목편』 통계에서는 ‘애완동물용 사료’를 기준으로 사업소 규모, 지역별 사업소 수 및 펫사료 출하액의 파악이 가능.

※ 경제센서스-활동조사와 공업통계조사의 품목분류체계가 동일.

<표 III-59> 『품목편』통계의 애완동물용 사료 통계제공항목

구분	내용
생산품 통계	품목별 출하 및 생산 사업소 (전 사업장)
	품목별 출하 및 생산 사업장 수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도도부 현별 출하 및 생산 사업장 수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종업원 규모 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4인 이상)
	품목별 출하의 산업 세분류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10인 이상)
	산업별 출하의 품목별 생산 사업소 수 및 출하액 (종업원 10인 이상)
	품목별 재고 및 생산 사업장 수 (종업원 30인 이상)
품목별 출하 및 생산 사업장 수 (종업원 3인 이하)	

자료 : 平成 28 年 經濟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 (製造業) 「品目編」統計表データ
 総務省統計局, 經濟産業省大臣官房調査統計グループ

<표 III-60> 품목별 출하액(2016)

단위: 백만엔

품목	출하				출하 사업소 수
	수량단위	출하량	수량	금액	
[106112] 애완동물용사료	-	-	-	92,709	146

자료 : 平成 28 年 經濟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 (製造業) 『産業編』(品目編)

<표 III-61> 업종-제조품목별 출하액(2016)

단위: 백만엔, %

업종	품목		출하사업소 수	출하액	출하율
[10611] 배합사료제조업	10611	합계	222	1,257,576	100
	106111	배합사료	165	1,156,826	91.99
	106112	애완동물용사료	59	85,540	6.8

자료 : 平成 28 年 經濟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 (製造業) 『産業編』(品目編)

(2) 유통부문 통계

① 도소매업동태조사⁹⁸⁾

□ 조사개요 및 목적

-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경제산업성에서 실시하며 전국에서 판매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와 기업의 품목별 판매 동향을 조사.
 - 생산품목별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단계에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품목별 소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 전문양판점 판매통계조사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였으나, 이후 도소매업동태조사에 병합.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을 대상으로 편의점, 백화점, 드럭스토어, 가정용품전문점 등 판매업에 해당하는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조사.
 - 일본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의 ‘도매, 소매업(I)’ 중 대리상, 중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전국의 20,000여 개 사업체, 기업들이 조사대상.
- 업종 및 종업원 규모별로 표본 추출단위(cell)를 설정하고, 추출단위별로 표본 수를 결정하며,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조사 유형별(업종 및 고용인 수) 매출액, 판매처별 매출액, 월말 종업원 수, 기말 재고, 매장 면적 등 사업소의 기초정보와 상업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98) 日本經濟産業省. 商業動態統計. 2020.3.12. 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syoudou/gaiyo.html>

<표 III-62> 도소매업동태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갑] 종업원 100인 이상의 도매업 및 종업원 200인 이상의 도매업	상품 매출액, 판매처별 상품 매출액, 월말 종업원 수, 기말 재고 (분기말)
[을] [갑]에 해당하지 않는 도매업 자동차 소매업, 기계 및 장비 소매업, 연료 소매업, 비 점포 소매업 및 기타 소매업 중 종업원 20인 이상인 사업체	상품 매출액, 월말 종업원 수
[병] 종업원 50인 이상인 소매업 중 백화점 및 슈퍼에 해당하는 사업체	상품 매출액, 상품권 판매액, 기말 재고 (분기 말), 월말 종업원 수, 매장 면적, 월간 영업일 수
[정1] 지점이 500개 이상인 편의점 사업체	월간 상품매출, 서비스 매출, 도도부현별 월별 제품 매출액 및 서비스 매출액, 월말 점포 수
[정2] 5931- 전기 기계 기구 소매업 (중고품 제외) 또는 전기 사무 기계 기구 소매업 (중고 제품 제외)에 속하는 사업장 (매장 면적 500㎡ 이상의 가전 대형 전문점) 중 매장이 10개 이상인 사업체	월간 상품 매출액, 도도부현별 월별 제품 매출액, 월말 점포 수, 기말 재고 (분기 말)
[정3] 지점이 50개 이상이거나 연간 판매액이 100억엔 이상인 약국(약국, drugstore) 및 잡화점	월간 상품 매출액, 도도부현별 월별 제품 매출액, 월말 점포 수, 기말 재고 (분기 말)
[정4] 지점이 10개 이상이거나 본사 연 매출이 200억엔 이상인 가정용품 판매점(home improvement store)	월간 상품 매출액, 도도부현별 월별 제품 매출액, 월말 점포 수, 기말 재고 (분기 말)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商業動態統計. 2020.3.12. 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syoudou/gaiyo.html>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1953년 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말일에 조사를 시행하며, 설문유형(업체 규모, 판매점 유형, 특정 세분류)에 따라 조사시행 시기는 상이.
- 조사결과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며, 속보, 확보 및 연보와 시계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는 가계의 일상용품의 하나로 구분되어 가정용품 판매점(home improvement stores) 및 드럭스토어(drugstore)의 판매동향에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펫사료를 단독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관련용품’의 범주에서 조사하고 있음.

- 펫사료는 가정용품 판매점(home improvement stores)의 판매제품 중 ‘반려동물·반려동물용품’으로 분류되어 집계되며, 드럭스토어의 판매 물품에서는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에 포함되어 있음.
- 판매점별 판매액, 전년 대비 판매액 비중 변화를 월별, 연도별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III-63> 가정용품전문점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단위: 백만엔, 개

연도	제품판매액										사업소 수
	합계	D.I.Y. 재료, 도구	전자 제품	인테리어	가정 일상용품	원예용품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	자동차용품, 아웃도어용품	사무용품 및 취미용품	기타	
2016	3,309,046	695,045	227,274	247,467	734,208	487,866	250,526	173,981	176,873	315,806	4,273
2017	3,294,173	693,696	223,051	235,905	726,648	483,689	250,840	169,188	176,397	334,759	4,304
2018	3,285,308	711,288	223,899	232,150	708,974	479,548	250,789	169,943	168,526	340,191	4,346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第 1 表 商品別販売額等及び前年(度、同期、同月)比増減率

<표 III-64> 드럭스토어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단위: 백만엔, 개

연도	제품판매액										사업소 수
	합계	처방 의약품	일반 의약품	건강, 위생, 아기용품	건강 식품	뷰티용품(화장품)	화장실용품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	식품	기타	
2016	5,725,801	375,156	829,612	401,195	197,031	852,185	562,640	881,506	1,491,466	135,010	14,190
2017	6,057,971	387,005	865,848	419,021	206,730	910,175	582,151	926,210	1,620,640	140,191	15,049
2018	6,364,419	389,421	880,698	424,010	217,745	963,666	603,589	967,365	1,806,148	111,777	15,660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第 1 表 商品別販売額等及び前年(度、同期、同月)比増減率

(3) 소비부문 통계

① 전국소비실태조사 99)100)

□ 조사개요 및 목적

- 전국소비실태조사는 가계수지 및 소비동향, 가계자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국 및 지역별 가구의 소비·소득·자산 수준, 구조,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2019년부터 전국가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2020년 11월 공표예정.

□ 조사대상 및 방법

-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가구와 1인 가구로 가구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
- 2인 이상의 가구 조사는 전국 모든 도시(791개 시) 및 929개의 읍면 중 212개를 선정하고 이상에서 4,696개의 조사단위를 선정하며, 조사단위에서 11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51,656가구를 선정.
- 1인 가구는 동일한 조사단위에서 1가구를 추출하여 전국 4,696가구를 선정.
- 2019년 전국가계조사에서는 약 90,000세대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

□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가계의 지출, 소비재 및 내구재 구매 및 구매 지역,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99)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6年全国消費実態調査.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sho/2014/index.html>

100) 日本総務省統計局. 2019年全国家計構造調査の概要.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kokukakei/2019/cgaiyo.html#d>

<표 III-65> 전국 소비실태조사 조사항목

-
- (1)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2) 물품의 구매 지역에 관한 사항
 - (3) 물품 구입처에 관한 사항
 - (4) 주요 내구 소비재 등에 관한 사항
 - (5) 연봉 및 저축·대출 잔액에 관한 사항
 - (6) 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
 - (7) 현 거주지와 현 거주지 이외의 주택·택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점차 다양화되어 가구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가계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개인 가계부 조사를 실시.

- 조사표에 개인이 소비하는 항목과 금액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여 조사.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전국소비실태조사는 1959년부터 매 5년 단위로 2014년까지 조사하였으며, 2019년 전국가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는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소득, 구매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액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가계 수입, 세대 주 연령대 등 가구의 특성에 따른 구매패턴 (구매처 및 구매수단별 펫사료 지출액 등)에 관한 자료¹⁰¹⁾를 확인 가능.

- 펫사료 뿐 아니라, 펫 관련 용품구매 및 수의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금액 통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101)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6年全国消費実態調査関連情報.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sho/2014/index2.html#kekka>

<표 III-66> 일본의 펫사료 관련 소비실태 통계정보 제공 내역

구분	통계목록
전체	가계 연간 수입 구간별 품목의 월간 지출
	세대주 연령대 및 구매유형별 가구당 품목의 월간 지출
	가구 유형별 각 요일 및 기념일의 가구당 품목별 주간 지출
	연간 소득 5분위 계층의 구매처 및 구매수단별 품목의 월간 지출
	가구 유형의 구매처 및 구매유형별 품목의 월간 지출
지역별	지역(시, 군)별 품목에 대한 월간 지출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역(시, 군)의 구매처별 품목에 대한 월간 지출 (2인 이상 가구 기준)
요약	품목별 지출에 대한 소비자지출, 가구수의 회귀계수 및 탄성치(가구유형 구분)
	품목별 지출 금액의 변동계수 및 추정치 표준오차 비율(가구유형 구분)

<표 III-67> 일본의 2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펫 관련 지출(2015년)

단위: 엔

구분	펫사료	기타 애완동물용품	수의서비스
200 만엔 이하	434	181	341
200 - 250	532	178	258
250 - 300	415	184	336
300 - 350	413	174	301
350 - 400	453	190	413
400 - 450	529	261	513
450 - 500	479	261	348
500 - 550	535	270	382
550 - 600	526	333	319
600 - 650	569	341	464
650 - 700	595	364	572
700 - 750	624	424	592
750 - 800	597	388	649
800 - 900	679	416	471
900 - 1,000	758	423	505
1,000 - 1,250	727	469	743
1,250 - 1,500	868	470	704
1,500 - 2,000	868	1,155	1,112
2,000만엔 이상	1,172	761	1,054
해당 품목지출이 있는 세대 비율	27.8	20.2	7.1
반려동물 양육 가구 평균 지출	2,060	1,617	6,741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家計調査(家計収支編) 時系列データ (二人以上の世帯・勤労者世帯)

②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조사)¹⁰²⁾

□ 조사개요 및 목적

- 「소매물가통계조사」는 국민 소비생활의 주요지출항목들(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며, 물가지수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소매물가통계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동향조사 및 구조조사로 구분되며 동향조사는 매월 주요 도시의 물가를 시계열적으로 집계하며, 구조조사는 매년 지역별 가격수준 및 매장형태에 따른 가격 차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
 - 소매물가통계- 동향조사¹⁰³⁾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요한 지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소매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조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CPI) 및 기타 물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 조사대상 및 방법

- 동향조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는 가격조사와 임대료 조사, 숙박요금 조사로 구분.
- 가격조사는 전국의 167개 지자체의 약 27,000여 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품목별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품목은 인구 규모 및 소비자의 구매형태, 판매점별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하여 종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펫사료는 3, S에 해당하는 품목¹⁰⁴⁾

102) 日本総務省統計局. 小売物価統計調査.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index.html>

103) 日本総務省統計局. 小売物価統計調査(動向編).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index.html>

104) 日本総務省統計局. 付録2 調査品目及び基本銘柄.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2018np/pdf>

<표 III-68>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 (인구 규모별)

조사구분	조사 대상 선정
구분없음	모든 조사 시정촌 (도쿄 구 포함)에서 조사하는 품목 종목
①	인구 5 만 이상의 조사시에 조사하는 품목 종목
②	인구 15 만 이상의 조사시에 조사하는 품목 종목
③	도도부 현 청 소재지에서 조사하는 품목 종목
④	도시 전역에서 조사하는 품목 종목
⑤	전국 전역에서 조사하는 품목 종목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 小売物価統計調査 (動向編) について (2020年1月現在).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1.html>

<표 III-69>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 (소비유형 및 가격 차이별)

구분	품목 구분	해당 품목 등
A	주로 소비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구입하는 품목으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있는 품목	음식, 가사용 소모품 등
B	주로 소비자가 각 시정촌의 대표적인 상업 집적지 대형 매장 등에서 구입할 품목으로 점포 간 가격 차이가 보이는 품목	의류, 가전제품 등
C	지역 간 또는 점포 간 가격 차이가 비교적 작은 품목	교양 오락 용품 등
D	도도부 현 또는 시정촌에서 가격 · 요금이 균일 또는 이에 가까운 품목	수도료, 출산 입원료 등
E	전국 또는 지방으로 가격 · 요금이 균일 한 품목	전기 요금, 통신 요금 등
S	조사 지역을 설치하지 시정촌 내 전역에서 조사 품목	가솔린 등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 小売物価統計調査 (動向編) について (2020年1月現在).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1.html>

□ 조사내용

- 가격조사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품목별 대표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 판매 및 세일 가격 등은 조사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음.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1950년 6 월을 최초 시작하였으며, 기간통계¹⁰⁵⁾인 소매물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로 매월 집계결과를 공표하고, 물가의 월별 동향을 제시.

105) 통계법 (헤세이 19 년 법률 제 53 호)에 의한 기간 통계 조사

- A, B, C, S에 해당하는 품목과 임대료(민영 임대)는 매월 중순(12일이 포함된 주의 수, 목, 금요일 중 하루) 조사를 실시하고, 신선식품 및 절화 중 약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순, 중순, 하순별로 각 5일, 12일, 22일이 있는 주의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조사.
- D 및 E의 품목 및 임대료 조사(공공 임대)는 매월 12일이 포함된 주 금요일에 조사.

○ 품목 및 도시 규모별, 가격통계유형별 조사결과의 공표 시기가 상이.

- 주요품목의 현청 소재지 및 인구 15만 이상 주요 도시별 소매가격에 대한 집계결과는 원칙적으로 익월 19일을 포함한 주의 금요일에 공표.
- 도쿄도구 및 전국 가격은 26일을 포함한 주의 금요일에 공표.
- 연평균가격은 전체 조사 시읍면의 가격에 대해 주요품목의 주요 도시별 가격의 3월분 공표 시에 함께 제공.

○ 각 품목별 가격자료는 일본 통계청(e-stat.go.jp) 및 간행물을 통해 월별 및 연도별 데이터를 공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가격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소비지출은 여가용 소비지출 품목 아래 개 사료(9193)와 고양이 사료(9196)로 구분되며,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가격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애견사료의 경우 1.4kg 사료 1 bag 당 가격, 애완묘 사료의 경우 70g 단위 사료 한 봉지당 가격을 기준으로 품목을 지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표 III-70> 펫사료(개사료, 고양이사료) 조사항목 구분

구분	내용
9193 펫사료 (개)	개사료, 일반 영양식품, 7세 이상 성견 및 노령견용, 건식, 1.4kg 포장, 품목: "Science diet 7+ years old or older senior light" or "Science diet 7+years old or older"
9196 펫사료 (고양이)	고양이 사료, 일반 영양 식품, 성묘용, 습식, 파우치 포함 (70g), 일반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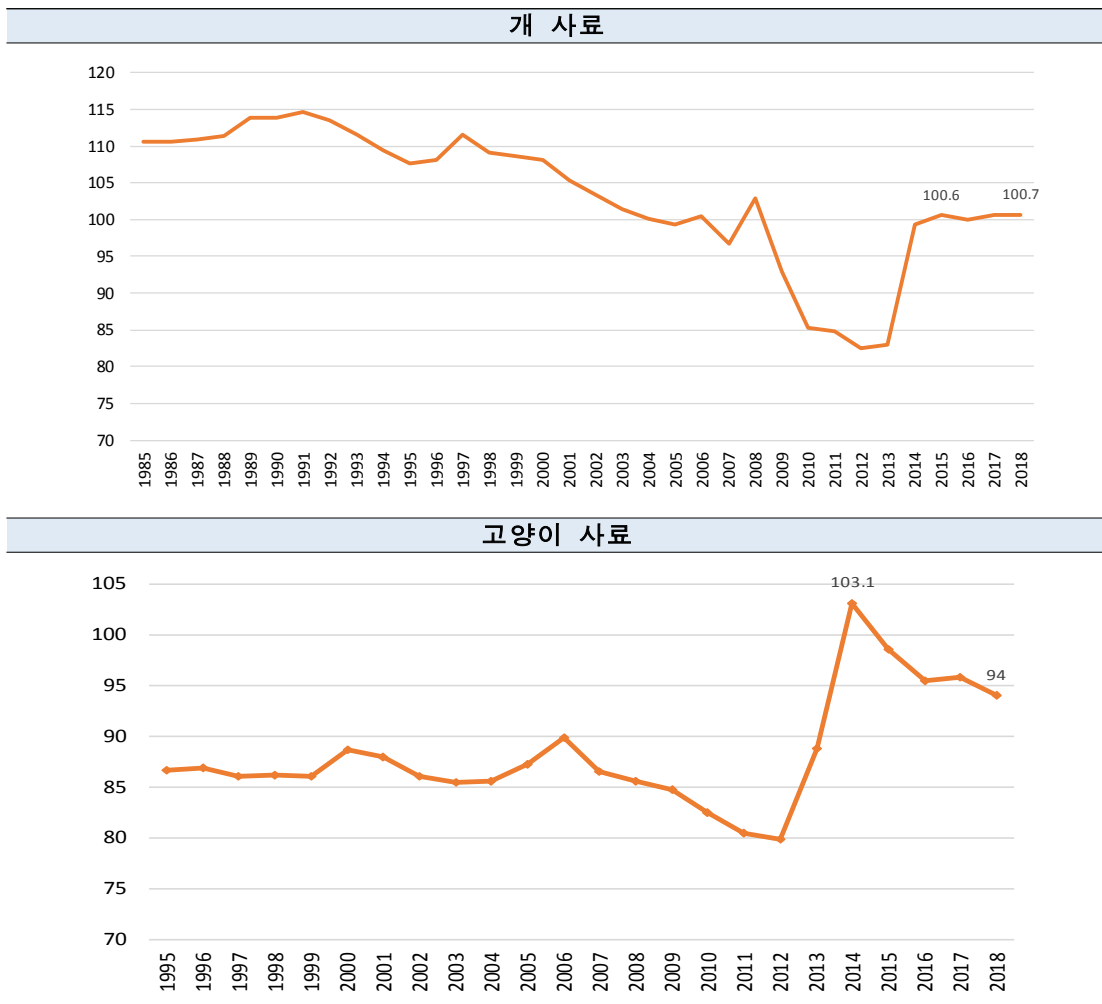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 付録2 調査品目及び基本銘柄.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2018np/pdf>

○ 펫사료는 동향조사에 조사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품목별 도시(인구 15만명 이상)별, 도쿄도 구부(도쿄 23구)의 가격정보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음.

- 개 사료(9193)는 1985년부터, 고양이 사료(9196)는 1995년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¹⁰⁶⁾¹⁰⁷⁾

[그림 Ⅲ-5] 펫사료(개 및 고양이 사료) 연간 물가지수

2015=100



자료: 日本総務省統計局 消費者物価指数 (CPI) 結果時系列データ (1970年度 ~ 最新年度)
.2020.3.16 접속. <https://www.stat.go.jp/data/cpi/historic.html>

106) e-Stat. 2015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 長期時系列データ 品目別価格指数. 2020.3.17. 접속.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73&tstat=000001084976&cycle=0&tclass1=000001085995&tclass2=000001085936&tclass3=000001085996&tclass4=000001085939>

107) e-Stat. 小売物価統計調査 / 小売物価統計調査10年報 / 平成3 ~ 12年平均. 2020.3.14. 접속.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71&tstat=000001012509&cycle=0&tclass1=000001012510&stat_infid=000000681131

다. 미국

- 미국의 산업분류(NAICS)는 동물용 사료제조와 관련한 업종은 세분류 기준 ‘동물용 식품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세분류 단위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개 및 고양이용 식품제조업’으로 별도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의 사료제조업은 중분류 ‘식품제조업’ 항목 이하 소분류·세분류 ‘동물용 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세세분류에서 ‘개 및 고양이용 식품 제조업’과 ‘기타 동물용 식품 제조업’으로 구분.¹⁰⁸⁾
 - ‘개 및 고양이용 식품 제조업’은 주로 곡류, 오일시드 및 동물성 제품의 성분을 바탕으로 하는 개와 고양이용 식품(dog and cat food)의 제조에 종사하는 업체들로 정의.
 - 개 및 고양이용 식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기타 동물용 식품 제조업’으로 구분되며, 동물용 사료와 개 및 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제조업을 포함.

<표 III-71> 미국 산업분류(NAICS)의 사료제조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33] 제조업	[311] 식품제조업	[3111] 동물용 식품 제조업	[31111] 동물용 식품 제조업	[311111] 개 및 고양이용 식품 제조업 (Dog and Cat Food Manufacturing)
				[311119] 기타 동물용 식품 제조업 (Other Animal Food Manufacturing)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반려동물 사료 유통·판매에 관한 업종은 세세분류 단위에서 ‘펫 및 펫용품점’에 해당하며, 기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은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업’으로 분류.

1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펫사료 유통, 판매에 관한 업종은 기타 소매 잡화점 이하의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에 해당.
 - ‘펫 및 펫용품점’은 주로 반려동물, 반려동물 사료, 반려동물용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정의.
- 기타 반려동물 관련 업종으로는 기타서비스 부문의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업’이 있으며, 반려동물 미용, 훈련, 반려동물 돌봄 및 반려동물 수탁관리업(pet boarding) 등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표 III-72> 미국 산업분류(NAICS)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4-45] 소매업	[453] 소매 잡화점	[4539] 기타 소매 잡화점	[45391]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453910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Pet and Pet Supplies Stores)
[81] 기타서비스 (공공행정부문 제외)	[812] 개인 및 세탁서비스	[8129] 기타 개인 서비스	[81291]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수의 서비스 제외)	[812910]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수의 서비스 제외) Pet Care (except Veterinary) Services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미국은 노동통계국, 인구통계국 등에서 펫사료의 제조 및 소비부문에 대한 통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음(표 III-73참조).

- 펫사료 제조업에 관련한 통계는 인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연간제조업 조사」, 「미국기업통계」, 「카운티별 산업 동향」 통계가 있으며, 노동통계국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작성.
 - 연간제조업 조사는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의 3~6단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품목(7단위)을 기준으로 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의 동향에 대한 추정치, 품목(개 사료, 고양이 사료)의 출하액 추정치 등에 대한 동향정보를 제공.
 - 「미국기업통계」, 「카운티별 산업 동향」은 미국의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er)을 기반으로 한 요약통계로, 업종별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생산자물가지수」는 노동통계국에서 업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별도 품목으로 조사.
- 펫사료 소비 동향에 대해서는 노동통계국에서 「소비자지출조사」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소비자지출조사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 및 소비자 특성별 지출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펫사료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출 중 ‘애완동물, 장난감, 취미, 놀이용 장비’ 항목에 포함.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재화구입에 지불한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펫사료를 별도 지출품목으로 구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
- 그 외 유통부문과 관련하여 인구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월간 소매업 통계(Monthly Retail Trade Survey) 및 연간소매업 통계(Annual Retail Trade Survey)등이 있으나 중분류 기준 소매 잡화점(453) 수준에서 자료가 공개되므로 펫사료 관련 업종인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의 동향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III-73>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 관련 항목 구분	
				업종	품목
제조	연간제조업조사 (ASM)	인구통계국	표본조사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품목	개 사료, 고양이 사료
	미국기업통계 (SUSB)	인구통계국	-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카운티별 산업 동향 (CBP)	인구통계국	-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품목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소비	소비자 지출 조사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품목	반려동물
	소비자물가지수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품목	펫사료

(1) 제조부문 통계

① 연간제조업조사(The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ASM)¹⁰⁹⁾

□ 조사개요 및 목적

- 연간제조업조사(ASM)는 인구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부문의 투입, 산출, 활동상태 등 기초적인 동향정보를 제공.
 - 고용, 급여, 재료비, 재고 등 제조업체의 활동과 관련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연구수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데이터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한 명 이상의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이 있는 표준산업분류 31항에서 33항에 해당하는 제조업 분야를 조사대상.
- 약 50,000개의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현재의 샘플은 2012년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제조부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2014년에 선정.
 - 2012년 경제센서스-제조부문의 약 29만 7,000개의 영업 중인 제조시설들을 기반으로 15,600개의 기업은 표본에 특정 집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표본추출을 시행하며, 나머지 제조시설들은 규모에 비례하여 확률적으로 선택.
 - 이와 같이 선정된 15,600개의 업체는 2012년 경제센서스 제조업 출하액의 72%에 상응.

109) US Census Bureau.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ASM)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sm.html>

<표 III-74> 미국의 연간제조업조사의 표본 선택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2012 경제센서스의 제조시설은 반드시 샘플에 포함됨.

1. 2012년 기준 총 고용인 수 1,000명 이상
2. 고용인 수 기준 업계 10위 이내
3. 업계 내 총 20개 미만의 제조업체가 있는 부문.
4. 컴퓨터, 평면 유리 혹은 설탕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업체
5.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기준 20개 미만의 추가 업종이 존재하는 주에 위치하는 업체 혹은
6. 연료비, 전기세, 연말 재고, 연말 자산 또는 후입선출 재고 기준 가장 큰 제조업체

자료 : US Census Bureau.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Methodology.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sm/technical-documentation/methodology.html>

□ 조사내용

- 사업체 기본정보 (이름, 소재지 등), 운영상태, 전년도 가동 기간, 출하액, 분기별 고용자 수, 근로시간, 급여, 기타수당, 재고액, 유형자산, 기타부대지출 등이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¹¹⁰⁾.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2와 7로 끝나는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와 7로 끝나는 연도의 제조업조사는 경제 센서스의 제조업부문에서 조사를 시행.
 - 대부분의 자료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발간물은 아래의 <표 III-75> 과 같음.
-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7년에 발간된 통계임(2016년 기준).

<표 III-75> 미국의 연간 제조업조사 발간물 목록

구분	내용
산업별 및 산업 전체	NAICS 3, 4, 6단위 수준 및 전체 제조업 통계
제조품목별 출하액	NAICS 7단위 제품분류별 통계
지역별 통계	NAICS 3, 4단위 기준 각 주별 통계
	NAICS 2단위 기준 미국 전역 및 각 주별 통계 (보조통계)
산업-제품 분석	업종별(NAICS 6단위) 제품 및 서비스(3단위) 출하액 등

110) US Census Bureau. ASM Surveys, Instructions, and Letters-2019 multiple establishment companies preview survey questions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의 업종별 동향조사 항목별 추정치와 각 추정치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를 제공.
 - 직원 수, 연간 근로급여, 기타수당,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부담, 고용주의 연금지급 비용, 고용주의 잉여금 배당비용, 고용주의 기타수당 지급 비용, 연평균 근로급여, 연간 근무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

<표 III-76> 미국의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통계 추정치 및 상대표준 오차(2016)

고용자 수	연간급여 (\$1,000)	총 부가급여 (\$1,000)	건강보험료 (\$1,000)	확정급여형 연금 (\$1,000)	확정기여 제도비용 (\$1,000)	기타 부가혜택 비용 (\$1,000)
17,933 (4.6)	1,069,735 (1.8)	310,081 (1.9)	129,239 (3.1)	25,153 (1.1)	33,473 (1.5)	122,215 (2.7)
연평균 생산직 직원 수	연간 근로시간 (1,000)	연간급여 (\$1,000)	총재료비 (\$1,000)	재료, 부품, 용기, 포장 등 부대비용 (\$1,000)	재 판매비용 (\$1,000)	연료 소비 (\$1,000)
13,854 (5.2)	31,289 (4.8)	778,969 (2.8)	12,392,144 (2.3)	11,550,561 (2.4)	428,322 (2.9)	72,885 (4.6)
전기세 (\$1,000)	계약 업무비 (\$1,000)	전력사용량 (1,000kWh)	총출하액 (\$1,000)	1차 및 2차 생산품 출하액 (\$1,000)	기타수입 (\$1,000)	재 판매액 (\$1,000)
98,046 (4.8)	242,330 (5.7)	1,222,562 (3.7)	23,410,133 (1.7)	22,843,770 (1.4)	566,363 (18.9)	443,183 (5.8)
부가가치 (\$1,000)	연초 재고액 (\$1,000)	연초 완제품 재고 (\$1,000)	연초 작업중 재고 (\$1,000)	연초 자재 및 소모품 재고 (\$1,000)	연말 재고액 (\$1,000)	연말 완제품 재고 (\$1,000)
11,029,441 (1.5)	1,045,475 (4.0)	582,352 (4.1)	31,783 (16.9)	431,341 (4.0)	1,082,851 (8.0)	595,480 (2.8)
연말 작업 중재고 (\$1,000)	연말 자재 및 소모품 재고 (\$1,000)	총자본지출 (\$1,000)	건물, 구조물 자본지출 (\$1,000)	기계장비 자본지출 (\$1,000)	기타 운송비 자본지출 (\$1,000)	컴퓨터, 데이터 처리장비 자본지출 (\$1,000)
30,105 (15.0)	457,266 (15.4)	764,161 (14.8)	419,460 (7.4)	344,701 (24.1)	7,978 (4.9)	38,912 (2.3)
기타 모든 기계 및 장비 자본지출 (\$1,000)	총 임대료 (혹은 리스) (\$1,000)	건물, 구조물임대료 (\$1,000)	기계 장비 임대료 (\$1,000)	기타운영비 합계 (\$1,000)	임시직 고용비 (\$1,000)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타 장비구매비 (\$1,000)
297,811 (27.8)	40,051 (19.5)	19,667 (32.7)	20,384 (7.7)	921,648 (2.6)	88,212 (5.6)	4,465 (12.5)
소프트웨어 구매비 (\$1,000)	데이터처리 및 기타 컴퓨터서비스 구매비 (\$1,000)	통신서비스 (\$1,000)	건물 및/또는 장비의 수리 및 유지관리 서비스 (\$1,000)	폐기물비용 (\$1,000)	광고 및 홍보서비스 (\$1,000)	전문 기술서비스 구매비 (\$1,000)
3,724 (10.8)	2,546 (15.9)	8,903 (1.9)	152,268 (4.4)	35,270 (8.0)	73,523 (1.8)	51,503 (5.7)
세금 및 면허비용 (\$1,000)	기타 운영비 (\$1,000)					
45,632 (2.9)	455,603 (4.0)					

자료: US Census Bureau.. 2016 Statistics for Industry Groups and Industries

주: 0 수치는 항목별 상대표준 오차를 의미함.

- 연간제조업 조사는 업종뿐 아니라 6자리 및 7자리 단위 코드로 제조품목에(개 사료, 고양이 사료, 기타 분류되지 않는 개와 고양이 사료제조업)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에 출하액 추정치를 아래의 <표 III-77>와 같이 제공하고 있음.

<표 III-77>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품목별 출하액 추정치 (2015-2016)

단위: 천 달러, %

연도	업종 및 품목	출하액	출하액 추정치의 상대표준 오차
2015	311111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22,108,669	1.2
	3111111 개 사료	13,994,102	1.8
	3111114 고양이 사료	5,930,477	0.9
	311111W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 및 고양이 사료 제조업 합계	2,184,089	0.1
2016	311111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22,933,334	1.3
	3111111 개 사료	14,878,718	1.9
	3111114 고양이 사료	6,557,823	1
	311111W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 및 고양이 사료 제조업 합계	1,496,792	0.2

자료: US Census Bureau.. 2016 Statistics for Industry Groups and Industries

② 미국 기업통계 (Statistics of U.S. Businesses, SUSB)¹¹¹⁾

□ 조사개요 및 목적

- 「미국기업통계」는 지역, 산업분야 및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준의 상세한 연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중소기업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연방법 제13편(census) 및 제26편(내국세법)에 의해 승인된 통계로, 인구통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미국 중소기업청 정책홍보실(the Office of Advocacy of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일부 지원으로 작성되고 있음.

111) US Census Bureau. Statistics of U.S. Businesses (SUSB). 2020.3.19.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susb.html>

□ 조사대상 및 방법

- 유급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북미표준 산업분류(NAICS)의 일부 업종은 포함하지 않음.
 - 작물 및 동물생산, 철도운송, 국영우정서비스, 연금, 건강, 복지 및 휴가 기금, 신탁, 부동산업, 가계, 공공행정 및 공공부문 및 정부 부문은 제외.
- 미국 기업통계는 인구조사국이 시행하는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er, BP)에 기반하여 추출, 편집된 자료.
 - 사업자등록(BP)데이터는 인구통계국에서 시행하는 경제총조사 및 각종 사업체 대상 설문 조사, 분기 및 연간 연방세 납부 기록 및 기타 부처 및 연방에서 추진하는 통계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므로 미국 사업체에 대해 가장 최신의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출처.

□ 조사내용

- 지역 및 산업별, 기업 규모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데이터는 기업과 사업체 수, 연간급여, 3월12일이 있는 주의 고용인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입에 관한 데이터는 2, 7로 끝나는 연도에 제공.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1989년부터 매년 미국의 사업체 동향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료는 기준년도의 약 2년 후부터 활용 가능.
 - 미국의 각 주 및 광역도시 통계권(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MSA)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온라인(SUSB 웹사이트) 및 미국중소기업청 정책홍보실(SBA's Office of Advocacy)을 통해 공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의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의 규모별 기업 수, 사업체 수, 고용인 수 및 연간급여, 예상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역(주) 단위 정보는 NAICS 2자리 단위에서 제공하므로, 각 주별 펫사료 제조업 현황 파악은 불가능.

○ 그 외 기타 반려동물 관련 업종(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동향파악이 가능.

<표 III-78> 미국 표준산업분류(NAICS) 6단위 부류별 사업체 동향(미국 전역) (2017)

구분	고용인 규모	기업 수	사업체 수	고용인 수	연간급여 (\$1,000)	예상수입 (\$1,000)
[311111] 개 및 고양이 사료제 조업	합계	310	392	22,492	1,338,039	23,240,477
	5인 미만	128	128	192	8,378	166,575
	5~9인	39	39	268	10,614	191,670
	10~19인	39	39	507	19,689	266,027
	20인 미만	206	206	967	38,681	624,272
	20~99인	45	46	1,841	80,470	676,525
	100~499인	42	66	6,537	292,463	4,945,936
	500인 미만	293	318	9,345	411,614	6,246,733
	500인 이상	17	74	13,147	926,425	16,993,744
[453910]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 매업	합계	5,104	9,997	114,276	2,501,211	17,705,195
	5인 미만	2,696	2,699	5,783	128,481	1,017,671
	5~9인	1,319	1,330	9,194	179,375	1,137,871
	10~19인	684	716	9,636	193,547	1,100,318
	20인 미만	4,699	4,745	24,613	501,403	3,255,860
	20~99인	347	662	10,928	231,161	1,412,150
	100~499인	46	643	6,401	146,441	1,080,391
	500인 미만	5,092	6,050	41,942	879,005	5,748,401
	500인 이상	12	3,947	72,334	1,622,206	11,956,794

구분	고용인 규모	기업 수	사업체 수	고용인 수	연간급여 (\$1,000)	예상수입 (\$1,000)
[812910] 펫케어 (수의 서비스 제외)	합계	18,255	18,577	111,384	2,290,699	5,688,971
	5인 미만	11,362	11,368	18,801	426,105	1,436,378
	5~9인	3,604	3,608	23,750	462,076	1,120,698
	10~19인	2,217	2,254	29,600	571,657	1,288,703
	20인 미만	17,183	17,230	72,151	1,459,838	3,845,779
	20~99인	1,026	1,140	31,185	631,202	1,371,248
	100~499인	40	119	5,118	151,347	356,463
	500인 미만	18,249	18,489	108,454	2,242,387	5,573,490
	500인 이상	6	88	2,930	48,312	115,481

주. 2017년 기준 SUSB는 카운티별 산업 동향 2017 및 경제센서스 2017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
 자료: US Census Bureau. 2017 SUSB Annual Data Tables by Establishment Industry- Number of Firms, Number of Establishments, Employment, Annual Payroll, and Preliminary Estimated Receipts by Enterprise Employment Size for the United States, All Industries: 2017. 2020.3.19 접속.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7/econ/susb/2017-susb-annual.html>

③ 카운티별 산업 동향(County Business Patterns, CBP)¹¹²⁾

□ 조사개요 및 목적

- 지역별 산업 동향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지역별 경제활동,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파악을 위한 기본지표 등으로 활용.
- 미국 전역,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대해 카운티 수준의 사업체 및 산업 동향을 제공하는 유일한 통계자료로 미국 연방법 제13편(census) 및 제26편(내국세법)에 의한 승인통계.

□ 조사대상 및 방법

- 카운티별 산업동향은 인구통계국의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er, BP)데이터에서 기반하여 추출되며, 해당 자료는 경제센서스, 연간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및 기타 국세청, 사회보장국, 노동통계국 등의 다양한 행정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음¹¹³⁾.
- 미국 전역과 카운티, 대도시지역, 우편번호별, 선거구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섬 지역에 대해서는 카운티와 같은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

□ 조사내용

- 작물 및 동물생산, 철도운송, 국영우정서비스, 연금, 건강, 복지 및 휴가 기금, 신탁, 부동산업, 가계, 공공행정 및 공공부문 및 정부 부문을 제외한 NAICS상의 모든 산업분류를 대상.
- 고용인 수, 1분기 급여, 연간급여, 사업체 수, 3월 12일이 있는 주의 고용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업체의 정보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음.

112) 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 (CBP). 2020.3.21.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cbp.html>

113) US Census Bureau. 2017. County Business patterns Data User guide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각 기준년도의 약 16개월 이후에 이용 가능하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의 통계.
- 1964년 이후로 매년을 단위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는 온라인¹¹⁴⁾으로 공개되고 있음.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주 및 카운티별로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의 설립유형, 고용인 규모별, 동향정보를 제공.
 -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정보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표 III-79> 미국의 주 및 카운티별 반려동물 사료제조업 사업체 동향(California)(2017)

지역구분	사업체 수	고용인 수*	1분기 급여 (\$1,000)	연간급여 (\$1,000)
California	45	4,560	33,064	156,294
Alameda County	3	43	344	1644
Contra Costa County	2	a	D	D
Fresno County	2	b	D	D
Los Angeles County	12	3,709	23,396	118,275
Nevada County	1	a	D	D
Orange County	4	26	349	1,238
Riverside County	4	88	614	746
San Benito County	1	a	D	D
San Bernardino County	2	c	D	D
San Diego County	4	10	58	387
San Francisco County	1	a	D	D
San Joaquin County	3	265	3,529	14,512
San Mateo County	1	a	D	D
Sonoma County	1	a	D	D
Stanislaus County	1	a	D	D
Tulare County	1	b	D	D
Ventura County	1	a	D	D
Yolo County	1	a	D	D

*3월12일이 포함된 주의 유급고용자 수
 자료: Geography Area Series: County Business Patterns

114) https://catalog.archives.gov/search?q=*&f.parentNaId=613576&f.level=fileUnit&sort=naldSort%20asc

④ 생산자물가지수¹¹⁵⁾

□ 조사개요 및 목적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들이 수취한 판매가격의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판매자 입장에서의 가격변동을 계측하는 지표.
 -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작성하며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한 가격변화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 통계자료의 디플레이터, 구매계약, 투입산출비용의 비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생산자물가지수는 산업분류기준 PPI, 상품분류기준 PPI, 상품기반 최종수요-중간수요체계 가격지수 등 세 가지로 구분.
 - 산업별 PPI는 생산물이 당해 산업 외부에서 판매될 때의 수취가격 변동을 측정하며, 4,000개 이상의 특정 제품군 및 제품군 하위 지표를 포함한 535개 업종에 대한 지표와 약 500개의 산업군별 지표를 작성.
 - 상품분류기준 PPI는 산업구분과 무관하게 제품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3,700여개 이상의 품목지수와 800여종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지수를 제품, 서비스 및 최종사용자를 기준으로 작성, PPI작성을 위한 별도의 상품분류체계가 존재.
 - 상품기반 최종수요-중간수요(Final Demand- Intermediate Demand, FD-ID)체계 가격지수¹¹⁶⁾는 구매자 유형, 물리적 가공 혹은 조립의 정도에 따라 상품, 서비스 및 건설 부문에 대한 가격지수를 하위수준(6자리 단위)에서 재편한 것으로 600개 이상의 지수를 작성.

11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oducer Price Indexes.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ppi/home.htm>

116) 가공단계별 물가지수가 2014년 1월부터 FD-ID집계 시스템으로 작성방법을 전환
<https://www.bls.gov/ppi/fdidconcordance.htm>

□ 조사내용

- 생산자물가지수 표본에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매월 10만여 개 가격 시세를 제공하는 25,000개의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 생산자 물가조사는 산업계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통해 응답 업체를 선정하며,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
 - 대부분 품목의 경우 매월 13일이 포함된 주의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판매가격을 보고.
- PPI에 포함된 재화와 서비스는 2007년 경제센서스의 출하액 정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¹¹⁷⁾

- 매월 품목 및 제품군별 약 1만 개의 생산자물가지수가 공표되며, 기준월의 다음 달에 기준월의 1차 지수와 4개월 전 발간 지수에 대한 최종 산출지수가 공개.¹¹⁸⁾
- 생산자물가지수는 PPI News Release, The PPI Detailed Report 등의 발간물 및 노동통계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 관련 생산자물가지수는 산업 및 품목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 III-80> 세부 산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월별 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117)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PI FAQs.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ppi/ppifaq.htm>

118) 예를 들어 2013년 8월 14일에 2013년 7월 1차 PPI와 2013년 3월 최종 PPI가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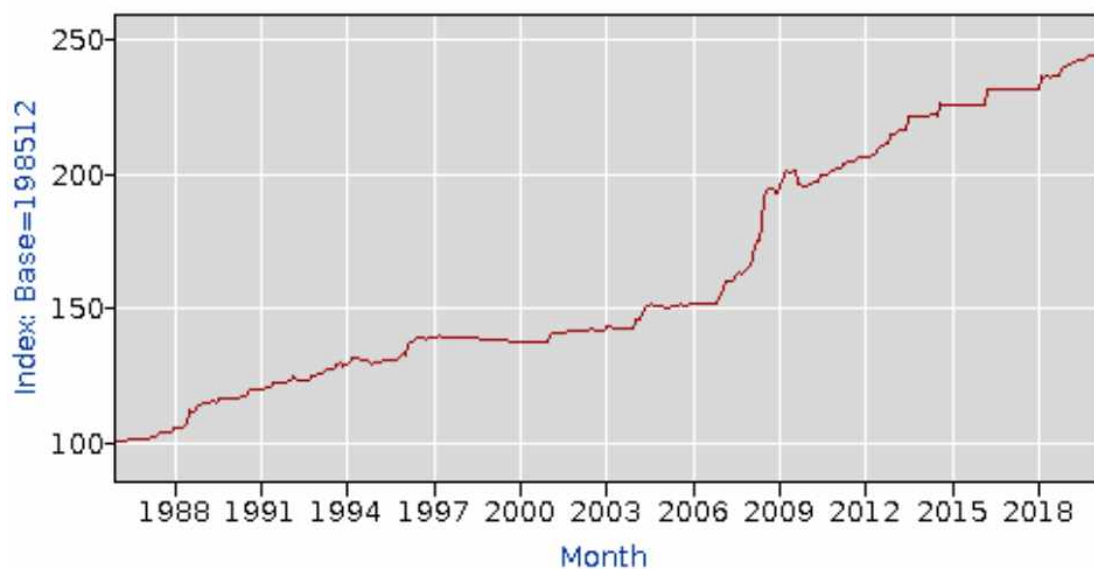
<표 III-80> 미국의 펫사료 관련 생산자물가지수 작성 산업 및 품목 범위

구분	품목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	31111311111	Dog and cat food manufacturing
	311113111111	dog food
	3111131111111	canned dog good
	3111131111114	Dry and semi moist dog good
	311113111114	cat food
	3111131111144	canned cat tood
	3111131111145	Dry and semi moist cat food
	31111311111M1	Micellaneous receipts
	31111311111P	Primary products
	31111311111S	Secondary products
품목별 생산자 물가지수	0294	Miscellaneous feedstuffs
	029402	Pet food
	02940202	Dog and cat food
	029402021	Dog food
	0294020211	Canned dog food
	0294020214	Dry and semi moist dog food
	029402022	Cat food
	0294020224	Canned cat food
	0294020225	Dry and semi moist cat food
	02940203	Pet (excluding dog and cat), laboratory, and fur animal feed

[그림 III-6]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개 사료), 계절미조정

산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품목: 개 사료

1985.12=100



(2) 소비부문 통계

① 소비자 지출 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

□ 조사개요 및 목적

- 「소비자 지출 조사(CE)」는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전국 가구들을 대상으로 매일의 소비지출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가계 소득, 자산 및 부채, 가구원들의 인구통계적, 경제적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소비자 특성에 따른 지출 동향,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시장구조 파악,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 다양한 경제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계산의 품목바구니 및 품목의 중요도, 가중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지출조사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가구들을 단위로 시행하며, 조사 기간 가구원들의 소비세 등을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가격을 주로 대면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있음.¹¹⁹⁾

□ 조사내용

- 분기별 인터뷰 조사는 임대료, 공과금 등 소비자가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할 그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혹은 반복적 지출을 조사.
- 가계부(Diary) 조사는 대부분 음식, 의복 등과 같이 소액이고 지출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119)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 Survey Materials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소비지출조사는 인터뷰조사와 가계부(Diary)조사로 구성되며, 인터뷰조사는 분기별로, 설문조사는 주별로 시행.
 - 인터뷰 조사의 응답가구는 4분기 동안 매 3개월에 한 번 조사를 시행하며, 가계부 조사는 2주간 실시.
- 노동통계국은 연 2회 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12개월간의 소비자 지출 추정치에 대해 발간하며, 조사결과는 보도자료, 발간물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소비지출항목은 식료품, 주택, 의류 및 서비스, 교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기타 지출로 구분되며, 펫사료 관련 지출은 엔터테인먼트 이하의 ‘애완동물, 장난감, 취미, 놀이용 장비’ 항목에 포함.
 - ‘애완동물, 장난감, 취미, 놀이용 장비’ 항목은 애완동물, 애완동물 사료, 애완동물 서비스, 수의서비스, 장난감, 게임, 취미, 삼륜차 및 놀이용 장비를 포함.

<표 III-81> 미국의 연령대별 연간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2018)

단위: US 달러

구분	전체	25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소비자 수 (1,000개)	131,439	7,588	21,298	22,000	23,050	24,480	33,023	19,315	13,707
연평균 지출									
평균	\$61,224	\$32,039	\$56,457	\$71,198	\$75,387	\$66,212	\$50,860	\$56,268	\$43,181
표준편차	775.65	1,242.82	1,078.53	1,522.07	1,700.48	1,632.04	803.84	1,219.81	1,299.27
변이계수(%)	1.27	3.88	1.91	2.14	2.26	2.46	1.58	2.17	3.01
반려동물, 장난감, 취미용 장비									
평균	816	384	704	947	1,036	906	685	893	386
비중	1.3	1.2	1.2	1.3	1.4	1.4	1.3	1.6	0.9
표준편차	42.99	83.06	72.82	74.36	113.99	70.01	91.65	148.69	58.67
변이계수(%)	5.27	21.62	10.35	7.85	11.00	7.73	13.37	16.65	15.21
반려동물									
평균	662	270	536	700	868	756	600	782	339
비중	1.1	0.8	0.9	1.0	1.2	1.1	1.2	1.4	0.8
표준편차	43.19	58.84	66.18	68.21	109.53	64.60	92.60	150.04	57.09
변이계수(%)	6.52	21.76	12.34	9.74	12.61	8.55	15.43	19.20	16.83

② 소비자물가지수¹²⁰⁾

□ 조사개요 및 목적

-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작성하며, 도시지역의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시 지불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척도.
 -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따라 CPI-U (a CPI for All Urban Consumers), CPI-W(CPI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C-CPI-U(Chained CPI for All Urban Consumers)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 도시 평균 CPI-U 지수를 의미.

□ 조사대상 및 방법

- 미국 전국 도시 평균 전 품목 CPI 지수는 모든 품목-지역별 기본지수를 평균하여 산출.¹²¹⁾
 - 미국의 도시 지역은 38개의 지표영역(index areas)로 구분되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211개의 품목계층(item strata)로 구분되어 8,018개의 지역-품목 조합이 구성.
 - 우선 8,018의 지역-품목 조합별 평균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기본지수(basic indexes)를 계산하고 8,018개의 품목-지역 조합의 평균으로 상위 개념인 집합지표(aggregate indexes)를 계산 (예를 들어, 보스턴의 전기 가격지수는 기본지수이며, 보스턴 지역 CPI는 모든 품목의 지수를 평균한 집합지수 형태로 도출).
 - 가중치는 소비자 설문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로부터 도출된 값을 사용.

120)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es Overview.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cpi/overview.htm>

12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8. 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7. The Consumer Price Index (Updated 2-14-2018)

- 지수 작성에 반영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은 매월 75개 도시지역의 약 23,000개의 소매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집.¹²²⁾

□ 조사내용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해 매월 약 8만여 개의 지출품목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불가격을 조사하며, 서비스 및 품목을 특정하여 조사를 실시.

□ 조사주기 및 결과의 공표

- 미국 전역(전국 도시 평균) 지수는 CPI-U, CPI-W, C-CPI-U 형태로 매월 작성하여 발표하며, 권역별(북동부, 중서부, 서부, 남부) 지수는 일반적으로 매월 발표되며, 세분화된 지역별 지수는 격월로 발표.
-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정보는 노동통계국 홈페이지, 발간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표되고 있음.

□ 펫사료(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 펫사료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
 - CPI-U 지수에서는 ‘펫사료’를 품목 단위에서 구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나, CPI-W지수에서는 펫사료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수준에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12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PI FAQs. 2020.3.17.접속.
<https://www.bls.gov/cpi/questions-and-answers.htm>

<표 III-82>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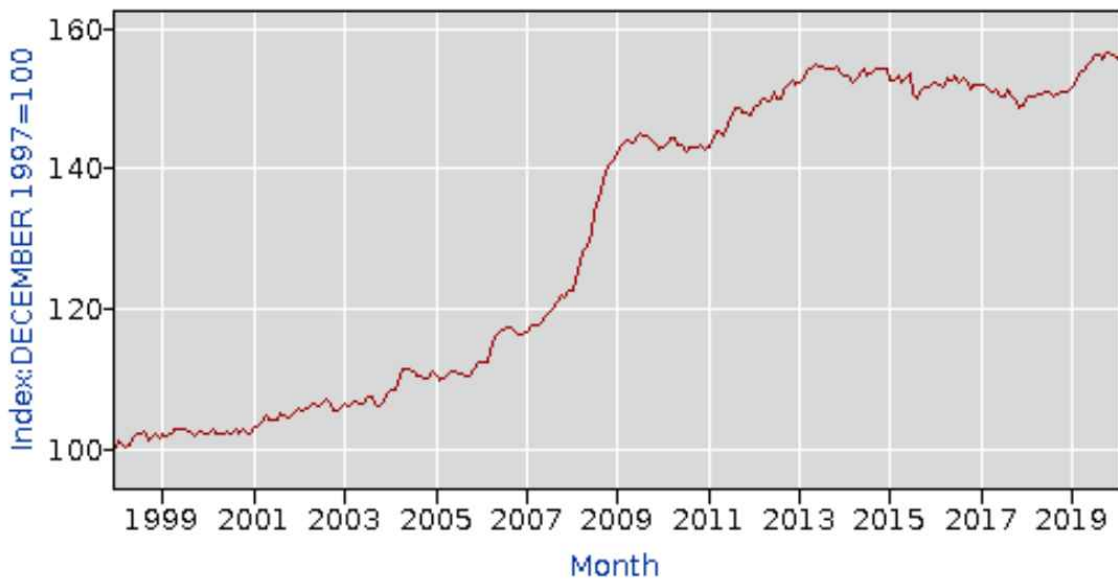
구분	품목
CPI-U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펫사료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 및 액세서리 구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수의서비스 포함)
	펫 관련 서비스
CPI-W	펫, 펫용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수의서비스 포함)

- 펫사료 관련 지출항목의 CPI는 미국 도시지역 전체평균(city average) 지수만 발표되고, 권역 및 지역별 물가지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그림 III-7] 미국의 펫사료 소비자물가지수(CPI-U), 계절미조정

품목: 반려동물 사료

1997=100



2. 민간부문 작성 통계

-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EU)에서는 펫사료 관련 민간부문(펫사료협회, 반려동물 용품협회 등)에서도 펫사료 및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정보가 작성 및 공표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현황, 펫사료 제조 상황 및 소비유통 실태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자료를 작성·발간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주요국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부문의 펫사료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일본 펫사료 협회(Japan Pet Food Association, JPFA)

- 일본 펫사료 협회는 일본 내에서 펫사료를 제조, 수입, 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펫사료 산업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1969년 펫사료산업협회로 설립되어 2009년 펫사료 협회로 명칭을 변경.
- 일본 펫사료 시장의 90%에 육박하는 86개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심포지엄과 자격시험을 주최하여 펫사료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¹²³⁾.
- 일본 펫사료 협회는 펫사료 제조상 품질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펫사료의 안전, 품질향상 및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 JPFA는 미국의 사료협회와 유사하게 ‘Code of Practice for the Manufacturing of Safe Pet Foods’ 라는 가이드라인을 출간하여 펫사료 제조공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과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이는 회원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할 뿐 법적 강제성은 없음.

123) 전상곤 외. 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p116.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매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 「펫사료 산업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협회회원사 및 정부 등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펫사료 협회는 정부 위탁사업으로 매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¹²⁴⁾, 이를 통해 일본의 반려동물 양육실태 및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있음.

○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 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해마다 세부적인 조사항목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양육현황, 반려동물의 양육환경,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지출 결정요인 등을 조사하고 있음.

<표 III-83>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주요 조사항목

반려동물 양육 규모 예측	반려견·반려묘 현재 양육현황, 향후 양육 의향,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반려견·반려묘 양육 두수 추계 반려견·반려묘 양육 시작 시기
반려동물 양육인구 조사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정보(종류, 양육장소, 체중, 나이) 펫사료 급여 실태(주식, 펫사료 유형별 이용 비율, 간식 급여 현황) 펫사료 구매 실태(구매 채널), 월평균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여부, 연간 동물병원 방문 횟수 반려동물 입양 경로, 길고양이 돌봄 여부 산책의 여부와 빈도·시간, 마이크로칩에 대한 인지 및 장착 여부, 이유 반려동물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반려동물 양육 계기 및 이유 유기견, 유기묘 입양 검토 여부, 동물 애호법에 대한 인지 여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 주인의 책임에 관한 인지 여부 반려동물에 대한 지진 및 재해 대책 실시 현황 반려동물 소유 명시(이름표 착용 등) 여부
반려동물 미양육인구 조사	반려견 및 반려묘를 현재 양육하지 않는 이유

- 응답자는 20~79세 사이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본 내 반려동물 양육 규모를 예측하고, 기타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양육 의사에 대한 설문은 표본 내 조사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을 시행.

124)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2019. 5월호. 농촌경제연구원

<표 III-84>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조사개요

구분	반려동물 양육 규모 예측 조사	반려동물 양육인구 조사	반려동물 미양육인구 조사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범위	전국		
조사 집단	20~79세 사이의 인구 본인 또는 동거인이 시장 조사, 언론광고, 신문방송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 우는 대상에서 제외	20~79세 사이의 인구 -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기르며, 펫사료 구매에 관 여하는 사람. -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기르며, 펫사료 구매에 관 여하지 않는 사람. -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20~79세 사이의 인구 - 현재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기르지 않지 만 앞으로 기를 의향이 있는 사람
표본	총무성 통계국 인구추계 기반 지역별 인구구성비 를 반영하여 성별, 지역 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양육 규모 예측 조사의 샘플에서 적격자를 추출하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조사와 반려동물 미양육인구 조사에 중복 표본선택 불가	
	50,000개 표본	2012개 표본	1,409개 표본
조사 기간	2019.10.4.~10.7	2019.10.11.~10.14	2019.10.11.~10.14

○ 위와 같이 일본 펫사료 협회는 매년 「펫사료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성에 연간 조사결과 데이터를 제공.

- 이를 기반으로 펫사료 산업의 시장 규모를 추산할 만큼 펫사료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공신력이 있음.
- 조사결과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포함한 출하액 및 출하량, 반려동물 유형 및(개, 고양이 및 기타) 사료 유형별(건식, 건식(소프트), 세미 모이스트, 습식, 기타) 출하액과 주요 수입국별 수입물량 등에 대한 것으로, 농림수산성 홈페이지¹²⁵⁾를 통해서도 공표되고 있음.

125) 日本農林水産省. 畜産部ホームページ- 飼料. 2020.3.15. 접속.
https://www.maff.go.jp/j/chikusan/sinko/lin/l_siryu/#chousa

<표 III-85> 일본의 반려동물 및 펫사료 유형별 출하동향 (2018년)

(단위: 톤·백만 엔·%)

구분		건식사료	건식 (소프트)	세미 모이스트	습식	기타	계
반려견용	출하액	71,398	6,699	2,706	20,063	36,614	137,480
	(전년 대비)	100.10%	117.70%	95.60%	112.60%	106.30%	104.00%
	출하량	186,112	22,291	5,153	32,681	24,975	271,212
	(전년 대비)	94.80%	95.90%	100.20%	105.60%	97.90%	96.50%
반려묘용	출하액	79,200	24	1	70,108	5,138	154,470
	(전년 대비)	104.00%	17.90%	33.30%	107.60%	132.00%	106.30%
	출하량	190,030	5	7	104,261	2,230	296,533
	(전년 대비)	100.40%	7.80%	63.60%	110.80%	97.80%	103.80%

기타 반려동물용	구분	관상어용	조류용	기타	계
	출하액	3,150	1,778	5,484	10,413
	(전년 대비)	85.70%	97.40%	116.10%	101.90%
	출하량	7,132	10,689	8,159	25,980
(전년 대비)	93.40%	89.10%	83.60%	88.40%	

자료: 一般社団法人ペットフード協会. 平成 30 年度ペットフード産業実態調査の結果

(2)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

-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용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195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용품 제조, 수입판매업자, 분양업체 등을 대표하는 단체.
 - 반려동물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펫산업 시장조사, 입법과 규제에 감시 및 대응하며,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매년 반려동물 양육인구 설문(National Pet Owners Survey)을 통해 양육 동향, 관련 지출 규모, 산업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988년부터 반려동물용품협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현황, 관리, 관련 용품 및 서비스의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격년(2년 주기)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 설문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개체 수 및 보유가 구비 중, 세대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반려동물 분양 경로, 관련 용품 및 펫사료 관련 지출 동향, 유통 경로(온/오프라인)별 물품 구매 동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9~2020년 조사기준,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선별을 위한 질문(screening)과 반려동물 양육인구에 대한 심층 조사로 구분되며, 심층 조사에서는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반려견, 반려묘, 담수어, 해수어, 조류, 소형포유류, 파충류, 말)에 따라 다른 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함.
 - 조사의 표본은 U.S. Census의 성별, 연령, 지역, 인종/민족성, 소득 및 가구 크기별 통계에 기반하여 균형적으로 선택되었으며, 15,000명의 응답자 중 10,090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음.

- 조사보고서는 전반적인 반려동물 보유현황, 보유 가구 비중뿐 아니라, 반려동물 유형별 소비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패턴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합리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 동향 파악 및 미래 전망 예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표 III-86> 펫사료 유형별 구매경험(2017-2018)

구분	반려견			반려묘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응답자 수	527	521	505	461	457	451
제품 유형별 구매경험 (%)						
비타민, 미네랄 첨가 펫사료	19	16	12	17	18	18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첨가 펫사료	8	5	6	2	4	3
허브류 첨가 펫사료	3	3	3	5	6	5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첨가된 펫사료	5	5	6	5	7	4
유기농 펫사료	7	7	8	4	6	7
자연식 펫사료	18	19	22	14	19	18
고급 펫사료(시중에서 고급으로 여겨지는 제품)	8	6	5	15	19	17
프리미엄 펫사료(영양소풍부, 방부제 함량 감소, 신진대사 원활)	45	47	41	40	42	39
그레인, 글루텐 프리	7	11	19	4	9	15
생식 펫사료	-	-	3	-	-	4
스페셜티 펫사료(코셔, 베테리언 등 냉동 및 신선)	3	5	5	4	7	2
엄선된 원재료로 만든 펫사료 (민감성 반려동물용)	-	-	12	-	-	10
기타	20	16	16	31	23	23
사람이 먹는 음식	19	17	17	10	9	9
반려동물용 물	3	4	4	2	3	4

자료: Julie Springer. The 2017-2018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Debut 발표자료

(3)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The European Pet Food Industry, FEDIAF)

□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은 유럽의 반려동물 사료(펫사료)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15개 회원국 내 협회와 5개 기업회원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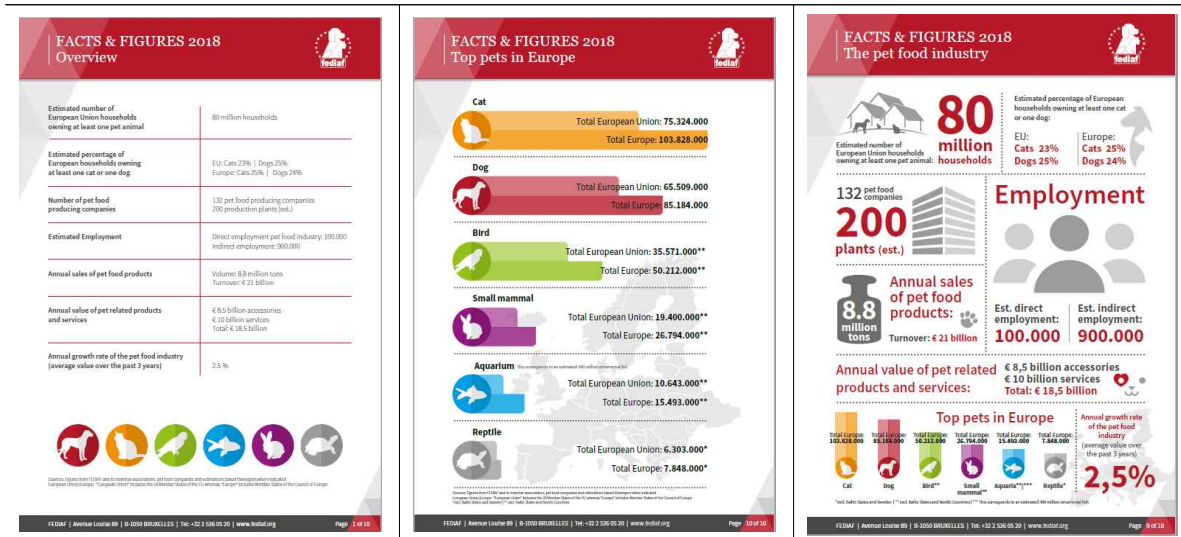
○ 안전한 펫사료의 공급을 위해 회원국 및 회원사는 물론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원료이용, 제조, 유통·관리와 관련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위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반려동물(개 및 고양이) 사료의 성분에 대한 정보, 영양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양육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자료 개발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유럽 펫사료 산업의 동향, 협회의 활동성과 등에 대하여 알리고 있으며,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Facts and Figures’ 를 통해 매년 각 회원국의 반려동물 양육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매년 펫사료 시장 및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에 대해 각 회원국 화합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유럽의 반려동물 양육 동향 및 산업 동향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

[그림 III-8]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이 제공하는 통계정보



3. 수출입 통계 및 관세체계

□ 관세세번(HS코드)은 국제적으로 수출입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분류로 6단 위까지는 전 세계에서 공통된 세번을 활용하나 그 이하의 분류는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HS세번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HS는 1983년 6월 14일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 C)¹²⁶가 관세부과 및 통계·운송·보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품목분류표로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1) 한국

□ HS세번 분류체계상 펫사료는 HS 4단위 사료조제품 (HS 2309호)에 해당하며, 이하 HS 6단위에서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로 구분.

○ 우리나라는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를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개 사료(HS 2309.10.1000)’와 ‘고양이 사료(HS 2309.10.2000)’의 두 가지로 구분.

-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관세율은 동일하게 5%를 적용하고 있으며, 축종 이외 사료 성분이나 가격 등 기타 세부 분류조건은 없음.

○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가 아닌 기타 조제사료는 축종 혹은 성분에 따라 품목을 구분.

- 예를 들어, 배합사료는 축종에 따라 HS 10단위에서 양돈용, 양계용, 어류용, 축우용, 대용유, 기타로 구분하나, 사료첨가제와 보조 사료의 경우에는 성분에 따라 품목을 구분.

126) 관세협력이사회는 관세행정의 조화·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범세계적인 협력기구로서 각국의 통관절차·감시활동·관세평가·품목분류 등 기술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협의를 통하여 표준화를 촉진하고 관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성분함량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음.

<표 III-87> 우리나라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품목번호		품명	기본세율
6단위	10단위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소매용 한정)	1000	개 사료	5.0%
	2000	고양이 사료	5.0%
2309.90 기타	10	배합사료	
	1010	양돈용	4.2%
	1020	양계용	4.2%
	1030	어류용	5.0%
	1040	축우용	4.2%
	1091	대용유(代用乳)	5.0%
	1099	기타	71%(저율 4.2%) 5.0%
	20	보조사료	
	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0.6%(저율 5%)
	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저율 5%)
	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0%
	2099	기타	50.6%(저율 5%)
	30	사료 첨가제	
	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0%
	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0%
	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0%
	3090	기타	5.0%
	90	기타	
	9010	닭시용 떡밥	5.0%
	9090	기타	50.6%(저율 5%)

주: 관세율이 두 개인 것은 UR 농업협상 결과 관세할당제도(TRQ)가 운영중인 품목임.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편람(2020년 기준)

(2) 일본

□ 일본의 경우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 를 성분과 제품 포장 규격에 따라 HS 9단위에서 5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 는 유당 함량, 조단백질 함량, 전분함량, 쌀가루·밀가루 함량 및 포장규격에 따라 다섯 가지 세번으로 구분하며, 유당이 함유된 품목의 경우 유당 함량에 따라 추가관세를 부과.

- 유당 함량이 전 중량의 10% 이상인 품목은 HS 2309.10.010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1kg당 70엔의 관세가 부과되고, 유당 함량이 1%씩 증가할 때마다 1kg당 7엔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 10kg 이하의 진공포장된 제품은 HS 2309.10.091로, 과세가격이 1킬로그램 당 70엔을 넘는 품목은 HS 2309.10.092로, 당, 전분, 조단백질 및 쌀가루와 밀가루 함량에 따라 HS 2390.10.09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기타 세 번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행과 달리 ‘기타 개 또는 고양이 사료(HS 2309.10.099)’ 품목에는 60엔/kg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반려동물 사료를 제외한 기타 조제사료 (HS 2309.90)는 사료용 첨가제 여부, 포장규격 및 성분 함량(유당, 당, 조단백질, 쌀가루 및 밀가루)에 따라 12개 세번으로 분류하며, 특히, 성분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함.
- 기타 조제사료 품목에 당, 전분, 조단백질, 쌀가루·밀가루 함량을 기준으로 품목(HS 2309.90.297-298)을 구분하고, 축종에 따라 반려동물용(297)과 반려동물용을 제외한 사료(298)을 구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용 사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당, 전분, 유제품등 주요 성분에 따라 조제사료의 품목을 구분하며, 성분함량이 높은 품목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도록 중량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표 III-88> 일본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HS Code		품명	관세율
6단위	9단위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소매용 한정)	010	유당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 이상인 것	(70+7/1%)yen/kg
	091	진공 포장된 것으로 중량이 10kg 이하인 것	Free
	092	과세 가격이 1 킬로그램 당 70엔을 넘는 것 (조단백질 함량이 전 중량의 35% 미만인 것에 한함)	Free
	093	수크로오스 기준으로 평가한 당 함량이 전 중량의 5% 미만, 전분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 조 단백질 함량이 전 중량의 35% 미만이고, 쌀가루와 밀가루가 10% 미만으로 함유된 것	Free
	099	기타	60yen/kg

HS Code		품명	관세율
6단위	9단위		
2309.90 기타		사료용 조제품 (사료 첨가제에 한함)	
	110	사료용 비타민 조제품	5%
	190	기타 첨가제	5%
	211	유당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 이상인 것으로 송아지고기 (white veal)용 소 사료	Free
	219	유당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 이상인 것으로 기타 사료	(70+7/1%)yen/kg
	291	알팔파 잎 단백질 농축물 및 어류, 해양포유류 부산물	Free
	292	1214호, 2303호의 품목에 기반한 사료	Free
	295	진공 포장된 것으로 중량이 10kg 이하인 것	Free
	296	조단백질 함량이 35% 미만인 것	Free
	297	수크로오스 기준으로 평가한 당 함량이 전 중량의 5% 미만, 전분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 조 단백질 함량이 전 중량의 35% 미만이고, 쌀가루와 밀가루가 10% 미만으로 함유된 반려동물용 사료	Free
	298	수크로오스 기준으로 평가한 당 함량이 전 중량의 5% 미만, 전분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 조 단백질 함량이 전 중량의 35% 미만이고, 쌀가루와 밀가루가 10% 미만으로 함유되고 반려동물용이 아닌 사료	15%
299	그 외 기타 조제사료	60yen/kg	

자료: 日本税関. 輸入統計品目表(実行関税率表) 実行関税率表(2020年1月1日版)

(3) 미국

□ 미국은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 를 포장의 규격에 따라 HS 10단위에서 ‘진공포장한 것’ 과 ‘기타’ 로 구분하고 있음.

○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의 경우 포장 규격외 기타 사료의 성분 등에 대한 조건은 없으며, 펫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반려동물용 습식사료, 간식은 진공포장이 되어 판매되므로, 포장규격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할 경우 펫사료의 유형에 따른 수출입 동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펫사료가 아닌 기타 조제사료(HS 2309.90) 이하의 세번에 대해서는 대부분 축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원재료 및 성분 함유 여부 (유제품, 계란, 비타민) 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관세를 부과.

- 새 모이 및 기타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음.

- 유제품, 계란 비타민B12 등 특정 성분을 함유한 품목의 경우 종가관세 (%)를 부과하나, 해당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축종(조류, 기타 반려동물, 가금류, 젖소, 소, 돼지, 기타동물)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는 품목은 무관세.

<표 III-89> 미국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HS Code		품명	적용 관세율
6단위	10단위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소매용 한정)	0010	진공포장한 것	Free
	0090	기타	Free
2309.90 기타	1005	새 모이	Free
	1015	기타 반려동물사료	Free
	1020	가금류 조제사료	Free
	1030	착유용 젖소 조제사료	Free
	1032	기타 소 조제사료	Free
	1035	양돈용 조제사료	Free
	1045	기타 동물용 조제사료	Free
	1050	기타	Free
	2210 ~4890 (국별쿼터,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에 따른 15개 세번)	유제품 함유 사료 또는, 대용유(代用乳)로 유제품이 건물중량기준 10%이상 함유	7.5%
	6000	계란 함유 사료	1.9%
7000	비타민 B12 기반 조제사료	1.4%	
9500	기타	1.4%	

자료: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20) Revision 6 Chapter 23

(4)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 (HS 2309.10)’ 를 사료 성분함량에 따라 12개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음.
- EU는 ‘HS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 이하 HS10 단위에서 당류(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전분, 유제품 함량 비율에 따라 12개 세번으로 구분하여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제품 및 전분 함량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HS 6단위 2309.10(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의 경우 2309.10.11.(유제품 10% 미만) 품목은 무세이나 2309.10.13.(유제품 10%에서 50% 미만)은 498 EUR/1000kg, 2309.10.15. (유제품 50%에서 75% 미만)는 730 EUR/1000kg, 2309.10.17.(유제품 75% 이상의 경우)는 948 EUR/1000kg로 유제품 함량이 높을수록 점진적으로 1000kg당 부과되는 관세율이 상승.
- 개, 고양이용 사료가 아닌 기타 조제사료(HS 2309.90)의 경우에도 당(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전분, 유제품 및 단백질 함량, 첨가제 여부, 반려동물 대상 여부에 따라 47개 세부품목으로 구분.
- EU의 경우 사료 성분함량과 반려동물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 가능한 경우의 수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품목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매우 많은 품목 수가 나타남.
- EU의 조제사료 제품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당, 전분, 유제품 등 원료 성분을 위주로 세분화하고, 유제품 및 전분 등 함량이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나 고부가가치 사료의 경우 종가관세보다는 종량관세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

<표 III-90> 유럽연합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HS Code			품명	적용 관세율
6단위	8단위	10단위		
2309.10 개 또는 고양이 용 사료 (소매용 한정)	11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 미만, 유제품을 10% 미만으로 함유한 사료	Free
	13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	498.00 EUR / 1000 kg
	15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50%이상 75%미만 함유한 사료	730.00 EUR / 1000 kg
	19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75%이상 함유한 사료	948.00 EUR / 1000 kg
	31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 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미만 함유한 사료	Free
	33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	530.00 EUR / 1000 kg
	39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	888.00 EUR / 1000 kg
	51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미만 함유한 사료	102.00 EUR / 1000 kg
	53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	577.00 EUR / 1000 kg
	59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	730.00 EUR / 1000 kg
70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지 않고 유제품을 함유한 사료	948.00 EUR / 1000 kg	

HS Code			품명	적용 관세율
6단위	8단위	10단위		
	90	-	포도당, 말토덱스트린시럽,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사료	9.60 %
2309.90 기타	10	어류 또는 해양포유류 부산물		3.80%
		21	어류 부산물로 물고기사료	
		31	어류 부산물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 제외)	
		39	어류 부산물로 기타사료	
		81	해양포유류 부산물로 물고기사료	
		91	해양포유류 부산물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 제외)	
	99	해양포유류 부산물로 기타사료		
	20	-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과 유제품을 함유하되 전분을 10% 미만으로 함유한 사료	Free
	31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 미만으로 함유하고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는 사료		23.00 EUR/ 1000 kg
		11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단백질을 15.5% 이상으로 함유하였으며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14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단백질을 15.5% 이상으로 함유하였으며 기타사료	
		17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단백질을 15.5% 미만으로 함유하였으며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19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단백질을 15.5% 미만으로 함유하였으며 기타사료	
		30	어류사료	
		81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87	콩단백질 농축액	
	88	기타		
	33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제외)	498.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35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50%이상 75%미만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제외)	730.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50%이상 75%미만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39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75%이상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948.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전분을 10%미만, 유제품을 75%이상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41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미만 함유한 사료		55.00 EUR / 1000 kg
		20	어류사료	
		41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전분함량 23% 이상이거나 단백질을 15.5% 이상으로 함유하였으며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49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전분함량 23% 이상이거나 단백질을 15.5% 이상으로 함유하였으며 기타사료	
		51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전분함량 23% 미만이며 단백질을 15.5% 미만으로 함유하였으며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59		양조 부산물이 포함되어있고 전분함량 23% 미만이며 단백질을 15.5% 미만으로 함유하였으며 기타사료		
81		기타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89	기타사료			
43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530.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HS Code			품명	적용 관세율
6단위	8단위	10단위		
49	49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888.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10%초과 30%이하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51	51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미만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102.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미만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53	53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577.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10%이상 50%미만 함유한 사료	
59	59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730.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되 30%초과의 전분을 함유하고 유제품을 50%이상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70	70	1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지 않고 유제품을 함유한 사료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948.00 EUR / 1000 kg
		90	포도당 또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지 않고 유제품을 함유한 사료로 기타사료	
91	91	10	사료용으로써, 당밀이 첨가된 비트펄프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12.00 %
		90	사료용으로써, 당밀이 첨가된 비트펄프로 기타사료	
96 기타	96 기타	31	미네랄 또는 비타민 첨가제로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9.60 %
		39	미네랄 또는 비타민 첨가제로 기타사료	
		91	기타 개 또는 고양이사료(소매용 제외)	
		97	기타 콩단백 농축액	
		98	기타	

자료: EU. TARI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5) HS세번 및 관세체계의 국가간 비교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 및 고양이 사료(HS 2309.10) 세번 분류체계는 ‘HS 6단위 이하 세부 품목분류 기준’, 명확한 성분함량기준 존재 여부’, ‘누진 관세체계 및 종량세 부과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종류(개 및 고양이)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EU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 포장규격, 가격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

- 일본의 경우 성분, 가격 및 포장규격(진공)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포장규격(진공)을 기준으로, EU는 사료의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

- 일본, EU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의 세번분류를 위해 유당 및 유제품 등 특정 성분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체계가 부재.
 - 일본의 경우에는 유당 함량, 당, 전분, 조단백질, 쌀·밀가루 함량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EU는 경우에는 유제품 함량 및 전분함량에 따라 분류.
- 우리나라의 펫사료는 개사료 및 고양이사료 두 개 품목에 대해 모두 5%의 동일한 세율을 부과.
 - EU 및 일본은 유당, 유제품 등 성분함유량을 기준으로 함량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표 III-91>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EU
펫사료 품목 수 (HS 6단위 이하)		2개	5개	2개	12개 세번
구분방식		반려동물 종류 (개, 고양이)	성분, 가격, 포장규격	포장규격	성분
성분함량 가이드라인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관세 유형별 세 번 수	계	2	5	2	12
	종가세	2	0	0	1
	종량세	0	2	0	9
	무관세	0	3	2	2

4.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경우 펫사료 산업이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표준산업분류체계에 펫사료 산업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미국), 펫사료 관련 민간협회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및 펫사료 산업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미국, 일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펫사료 관련 업체나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펫사료 관련 통계정보 제공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 우리나라는 표준산업분류상 펫사료 제조업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사료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유형의 기준으로만 펫사료 생산액, 출하액 등을 집계하고 있으므로 펫사료 제조업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미국은 국가표준산업분류에서 ‘개 및 고양이용 식품 제조업’을 별도 업종으로 정의하여 타 산업과 일관된 기준으로 업체 수, 고용인 수, 매출현황 등 펫사료 제조업에 대한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있음.
- ※ 다만 일본 역시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펫사료 제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품목을 기준으로 펫사료 제조업의 동향을 파악함.
- 펫사료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펫사료의 도소매 유통현황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펫사료 소비동향은 ‘가계소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지수조사’ 등에서 애완동물 관련 용품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어, 펫사료에 대한 소비자가격 동향 및 물가지수 변동 상황, 가구별 펫사료 지출 동향 등 정확한 소비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펫사료를 독립적 조사품목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려견용 사료와 반려묘용 사료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

- 특히, 일본에서는 전국소비실태조사에서 펫사료를 별도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가구특성별 펫사료 소비지출 동향에 대한 파악이 가능.

<표 III-92> 주요국 애완동물사료(펫사료) 통계 기반 및 정보제공내역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표준산업분류의 펫사료제조업 별도구분 여부	X - 배합사료제조업, 단미 사료제조업으로 구분	X - 배합사료제조업, 단미 사료제조업으로 구분	○ - 개 및 고양이용 식품 - 제조업으로 구분
제조(생산)부문 통계	△ - 제조품목기준(애완동물 사료 및 동물용조제식품) 생산, 출하액 등 - 배합사료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 생산실적 - 애완동물사료 생산자물가지수 등	△ - 제조품목기준(애완동물 용사료) 생산, 출하액 등	◎ -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종 동향 - 개사료, 고양이사료 품목별 출하액 - 펫사료 유형별 생산자물가지수 등
유통(도소매)부문 통계	△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 매입처, 판매처별 구성비 등	△ - 펫사료를 포함한 반려동물용품의 판매액 등	△ -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의 상위 분류인 소매 잡화점업 수준에서 통계 작성
소비부문 통계	△ - 인구특성별 애완동물용품 관련 지출 동향 - 애완동물용품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 - 인구특성별 펫사료 관련 지출 조사 (애완동물용품 및 수의서비스에 대해서도 집계) - 개사료, 고양이사료에 대한 물가지수	◎ - 인구특성별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 펫사료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반려동물용품, 펫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수 작성)
수출입 통계	△ - 개사료 및 고양이사료의 2개 세번으로 구분	◎ - 유당함량, 진공포장, 과세가격, 당·전분·조단백질·쌀가루·밀가루 함량, 기타 등 5개 세번으로 구분	○ - 포장의 규격에 따라 2개 세번으로 구분
민간부문 작성통계	△ -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반려동물 양육 행태, 관련 인식 파악)	◎ -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 - 펫사료 산업 실태조사 등	◎ - 반려동물 양육 인구 설문을 통해 양육동향, 지출규모, 산업규모 등 조사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의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한국) 우리나라는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조, 유통, 소비 부문에 걸쳐 펫사료 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음.

- (제조) 펫사료 제조와 관련한 통계로는 「광업·제조업조사」,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 실적」, 「생산자 물가조사」 등이 있음.

-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표준산업분류의 ‘배합사료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인 수, 출하액 등 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업체별 생산품목¹²⁷⁾을 기준으로 ‘애완동물사료’ 및 ‘동물용 조제식품’을 구분하여 업체 수, 출하액 등을 집계하고 있음.

-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실적을 조사하며, 펫사료를 ‘애완동물사료’로 구분하고 반려동물의 유형별(개, 고양이, 관상어, 기타)로 세분화하여 생산 및 출하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음.

- 「생산자 물가조사」는 한국은행 주관으로 국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들의 출하단계에서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며, 지수기준년도(2015)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비교년도(조사년도)의 생산자물가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제조·유통·소비) 제조·유통·소비의 영역을 망라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는 ‘배합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

- 참고로 「광업·제조업조사」와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동일하게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이 조사대상 업종에 포함되나 「전국 사업체 조사」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27) 품목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각 세세분류마다 3자리 숫자를 부여함, 임가공품의 경우 ‘sc’로 품목코드가 시작함.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 (유통) 펫사료의 유통과 관련한 통계로는 「서비스업 조사」에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 연간급여, 조직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소비) 펫사료 소비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로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 물가조사」가 있음.
- 「가계동향 조사」는 가구의 소비동향에 대한 조사로 UN의 목적별 소비지출분류에 근거한 지출항목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의 두 가지 항목이 펫사료와 관련한 지출항목이지만 통합되어 집계되는 관계로 펫사료 지출이 독립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음.
- 「소비자 물가조사」는 가구에서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지수로 작성한 것으로, 펫사료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작성품목으로는 ‘애완동물용품’과 ‘애완동물 관리비’가 있으나 통합되어 집계되는 관계로 펫사료 소비자물가지수가 독립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음.

<표 III-93>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관련 항목구분						
제조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품목	애완동물사료 동물용 조제식품					
	경제총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배합사료제조업 전수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애완개, 애완고양이, 관상용어류, 기타애완동물)					
	생산자 물가조사	한국은행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사료					
제조, 유통, 소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전수조사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업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소비	가계동향조사 (지출편)	통계청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 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품목	애완동물 용품 애완동물 관리비						

- (일본) 일본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에서 펫사료의 제조, 유통, 소비부문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펫사료 관련 소비행태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음.

- (제조) 펫사료 제조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공업통계조사」와 매 5년을 주기로 작성하는 「경제센서스」를 통해 산업동향을 파악.
- 「공업통계조사」는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속하는 4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경제센서스」는 전산업 부문에 대해 조사하므로 「경제센서스」에서 조사하는 ‘배합사료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업’ 해당 사업체 범위가 더 넓음.
- (유통) 펫사료의 유통에 관한 통계로는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있으며, 일본표준산업분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 도소매업 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펫사료 관련 항목은 드럭스토어 및 가정용품전문점의 판매동향에서 집계하고 있으나,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반려동물용품’으로 조사하고 있어 펫사료를 구분하여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소비) 펫사료 소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로는 「전국소비실태조사」, 「소매물가통계조사 (동향조사)」 등이 있으며, 펫사료를 가계의 소비지출품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 「전국소비실태조사」는 가구별 특성에 따른 펫사료 지출동향을 조사하며, 「소매물가통계조사 (동향조사)」는 전국의 도소매 상점을 대상으로 개 사료 및 고양이 사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물가지수를 작성.

<표 III-94>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 관련 항목구분	
제조	공업통계조사	경제산업성, 총무성	전수조사 (종사자수 4인 이상)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품목	단미사료제조업
제조 ·유통	경제센서스 (기초, 활동)		(기초) 전수	업종	사료·유기질 비료 제조업
				업종	배합사료제조업
유통	도소매업동태조사	경제산업성	표본조사	품목	단미사료제조업
				품목	애완동물용 사료
소비	전국소비실태조사	총무성	표본조사	품목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
				품목	반려동물, 반려동물 용품
소비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	총무성	표본조사	품목	펫사료
				품목	반려견용 사료
				품목	반려묘용 사료

- (미국) 미국은 노동통계국, 인구통계국 등에서 펫사료의 제조(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전반에 걸쳐 상세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개 및 고양이 사료 제조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함으로써 펫사료 산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함.
 - (제조) 펫사료 제조업에 관련한 통계는 인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연간제조업 조사」, 「미국기업통계」, 「카운티별 산업 동향」 통계가 있으며, 노동통계국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작성함.
 - 연간제조업 조사는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의 3~6단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품목(7단위)을 기준으로 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의 동향에 대한 추정치, 품목(개 사료, 고양이 사료)의 출하액 추정치 등에 대한 동향정보를 제공.
 - 「미국기업통계」, 「카운티별 산업 동향」은 미국의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er)을 기반으로 한 요약통계로, 업종별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생산자물가지수」는 노동통계국에서 업종 및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별도 품목으로 조사.
 - (소비) 펫사료 소비 동향에 대해서는 노동통계국에서 「소비자지출조사」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소비자지출조사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 및 소비자 특성별 지출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펫사료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출 중 ‘애완동물, 장난감, 취미, 놀이용 장비’ 항목에 포함.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재화구입에 지불한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펫사료를 별도 지출품목으로 구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
 - (유통) 그 외 유통부문과 관련하여 인구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월간 소매업 통계(Monthly Retail Trade Survey) 및 연간소매업 통계(Annual Retail Trade Survey)등이 있으나 중분류 기준 소매 잡화점(453) 수준에서 자료가 공개되므로 펫사료 관련 업종인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의 동향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III-95>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구분	통계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펫사료 관련 항목 구분	
제조	연간제조조사 (ASM)	인구통계국	표본조사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품목	개 사료, 고양이 사료
	미국기업통계 (SUSB)	인구통계국	-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카운티별 산업 동향 (CBP)	인구통계국	-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업종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품목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소비	소비자 지출 조사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품목	반려동물
	소비자물가지수	노동통계국	표본조사	품목	펫사료

□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펫사료 관련 민간 협회(펫사료협회, 반려동물용품협회 등)에서 반려동물 양육 현황 실태조사 및 펫사료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동향 파악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 정보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펫사료 통계정보 생성관련 역할과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자체적인 통계조사·정보 제공 역량 강화가 요청.

- 일본 펫사료 협회는 매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 「펫사료 산업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협회회원사 및 정부 등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펫사료 산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매년 반려동물 양육인구 설문(National Pet Owners Survey)을 통해 양육 동향, 관련 지출 규모, 산업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글로벌화 시대에서 국내 펫사료 산업의 육성과 효과적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세세번(HS) 체계 구축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HS 체계가 너무 단순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수출입되는 펫사료 무역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펫사료의 수출입 동향은 관세세번(HS코드)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HS 6단위 이하 세부 품목의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국가별 수출입 동향의 집계 및 관세 부과 체계에 차이가 있음.

- 국제적으로 펫사료는 ‘개 및 고양이사료 (소매용, HS 2309.10)’에 해당하며, 국가별관세세번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 세부 품목분류 기준’, 명확한 성분함량기준 존재 여부’, ‘누진 관세체계 및 종량세 부과 여부’에 따라 살펴볼 수 있음.
- **(품목분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종류(개 및 고양이)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성분, 포장 등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일본, 미국, EU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 포장규격, 가격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
 - 일본의 경우 성분, 가격 및 포장규격(진공)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포장규격(진공)을 기준으로, EU는 사료의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
- **(성분함량 기준 존재여부)** 일본, EU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의 세번분류를 위해 유당 및 유제품 등 특정 성분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체계가 부재.
 - 일본의 경우에는 유당 함량, 당, 전분, 조단백질, 쌀·밀가루 함량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EU는 경우에는 유제품 함량 및 전분함량에 따라 분류.
- **(관세체계)** 우리나라의 펫사료는 개사료 및 고양이사료 두 개 품목에 대해 모두 5%의 동일한 세율을 부과.
 - EU 및 일본은 유당, 유제품 등 성분함유량을 기준으로 함량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표 III-96>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EU	
펫사료 품목 수 (HS 6단위 이하)	2개	5개	2개	12개 세번	
구분방식	반려동물 종류 (개, 고양이)	성분, 가격, 포장규격	포장규격	성분	
성분함량 가이드라인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관세유형별 세 번 수	계	2	5	2	12
	종가세	2	0	0	1
	종량세	0	2	0	9
	무관세	0	3	2	2

□ 결론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펫사료 산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통계정보 제공체계의 보완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계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초 정보를 가공 및 분석한 형태의 정보제공 체계 구축 노력이 요청.

-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펫사료 산업관련 생산, 유통, 소비부문 통계에 있어 최대한 별도의 독립적 항목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식부문에 의한 통계정보와 함께 보완적으로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인 반려동물 산업체 혹은 펫사료 제조업체의 모임인 협회나 단체 등의 조사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할만한 통계정보가 작성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미국, EU)의 사례와 같이 산업분류 체계상에서 반려동물사료(펫사료) 업종을 국가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가축용 사료 제조업종과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통계작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펫사료 산업관련 주요 통계정보 항목별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1) 펫사료 제조부문 통계개선(안)

□ 우리나라의 펫사료 제조업 부문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산업 부문의 동향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공식 제조업 관련 조사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펫사료 제조부문에 대한 통계는 유통 및 소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나마 통계정보가 일정수준 제공되는 측면이 있음.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반려동물사료(펫사료) 제조업은 동물용 사료제조업의 하위 항목으로 ‘배합 사료제조업’ 및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에 통합되어 업종별 사업체 기본현황, 종사자 규모, 출하액, 매출액 등이 조사되고 있음.

- ‘펫사료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업종분류 체계는 부재하나, 「광업·제조업 조사」의 업종별 제조품목에 대한 조사에서 ‘애완동물사료’, ‘동물용 조제 식품’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수, 출하액 등이 조사되어 펫사료 산업의 전반적인 출하액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

□ 하지만 국가표준산업 분류상 펫사료(반려동물사료) 제조업이 독립적인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계정보가 수집되는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조사대상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어 있어 다른 주요 산업 업종에 비해 통계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업종이 아니라 제조품목을 기준으로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완제품 연말 재고액에 대한 정보만이 조사되고 있음.

- 표준산업분류 상 독립된 업종으로 편제될 경우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상기의 항목뿐 아니라,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종사자 규모 등 산업의 투입-산출 전반에 대해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계속 업종이 아닌 품목 기준인 ‘애완동물사료’의 형태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이 조사될 경우 업종으로 분류된 다른 산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통계자료의 활용성에 제한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최근 급성장 중인 펫사료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펫사료 제조업’의 독립 업종으로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주요 업종과 마찬가지로 국가통계조사에서 동일한 기준의 일관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EU 등과 같이 ‘펫사료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상의 별도 업종으로 분리, 신설하여,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산업분류 및 통계작성체계를 구축.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하에서 펫사료 제조업은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통합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펫사료 제조업의 상세한 현황과 동향에 대한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 시 반려동물용(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요청하여, 보다 다양한 펫사료 산업 관련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표 III-97>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현행(기준)		개정(개선) (안)	
세분류	세세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 타 사료 제조업
			[10803]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 또는 국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단위에서 펫사료 산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큰 틀에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세세분류에서 사료의 유형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는 방향으로 통계수집체계를 개선하고, 통계조사시 그 하위 단위에서 반려동물용 사료가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세세분류를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 유형에 따라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수입사료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료업종별 세세분류 단위의 통계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축우, 양돈, 가금용, 애완동물용,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세분화된 통계수집체계를 구축.

<표 III-98>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세분류	세세분류	하위구분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사료제조업 (배합)	축우용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사료제조업 (단미)
사료제조업 (보조)			가금용(닭, 오리 등)	
	사료제조업 (수입)		애완동물용(개, 고양이, 기타)	
				기타(곤충 등)
				산업동물용(소, 돼지, 닭 등)
				애완동물용(개, 고양이, 기타)
				기타(곤충 등)
				축우용
				양돈용
				가금용(닭, 오리 등)
				애완동물용(개, 고양이, 기타)
				기타(곤충 등)

□ 한편 국가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을 통한 펫사료 산업에 대한 통계 조사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조사에서 펫사료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사료 유형별로 통계조사를 구체화하여 펫사료산업 관련자들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펫사료 생산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통계자료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조사가 있으며, 반려동물 유형별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통계는 조사대상을 배합사료 제조업체로 한정하므로, 단미사료와 기타 사료 제조업종 내에 포함된 펫사료의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으로 등록된 펫사료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통계로서 집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미사료 및 혼합성 단미사료로 구분되는 품목의 펫사료 생산 동향 파악이 어려운 실정.
- 따라서 ‘펫사료 생산실적조사(가칭)’ 와 같은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재 승인통계로서 집계되지 않는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체의 펫사료 생산실적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펫사료 생산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III-99> 펫사료 생산부문 통계 개선(안)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조사명	조사항목	조사명	조사항목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개, 고양이, 관상어, 기타)	펫사료 생산실적 조사(가칭)	반려동물용 배합사료 생 산실적(현재 조사 중) 반려동물용 단미, 기타 사료 생산실적(신규추가)

(2) 펫사료 유통부문 통계개선(안)

- 펫사료의 유통부문 조사는 「서비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통해 일부 파악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펫사료 산업이 독립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펫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유통실태 정보를 파악하는데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 펫사료 업종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펫사료 유통·소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움.
- 또한, 다른 부문에서도 현재 펫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펫사료의 유통,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건식, 습식, 간식, 보조제 등), 원산지(국산품, 수입품), 성분(유기농, 일반사료 등), 유통채널(온/오프라인) 등 실제 지출패턴, 지출 결정요인에 따른 유통, 소비시장분석 등이 필요함.
 - 특히, 펫사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시장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따라서 펫사료의 유통 및 소비지출 부문 조사는 우선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펫사료 관련 협회들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민간부문의 조사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정부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 펫사료 유통 및 소비지출과 관련한 세부실태조사는 정부, 회원사 및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펫사료 관련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펫사료 협회에서는 매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규모,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양육환경 등 펫사료 산업의 기초자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매년 「펫사료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종류 및 펫사료 유형별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 및 정부에 제공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일반적으로 산업 전체의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펫사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 및 소비실태 연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펫사료는 가격, 기능, 원재료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어 일반 산업동물용 사료산업과 다른 패턴을 보이며, 펫사료의 유통·소비에 있어서도 식품과 같이 원료, 품질, 기능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됨.
- 따라서 펫사료 산업 동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계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기호, 구매 결정요인 등에 대해 파악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표 III-100> 펫사료 유통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조사명	조사항목	구분	조사명	조사항목
전국사업체 조사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정부부문 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펫사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펫사료)
			서비스업 조사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펫사료)
서비스업 조사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민간부문 조사	펫사료 산업 실태 조사(가칭)	펫사료(개사료, 고양이사료) 유통채널별·품목별 소비규모,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소비동향 등

(3) 펫사료 소비부문 통계개선(안)

- 펫사료의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 등에서 일부 통합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펫사료를 별도의 독립적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상세한 소비실태 통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는 각각 ‘애완동물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펫사료를 별도 품목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소비자물가조사의 경우 과거 ‘애완동물용 사료’가 독립된 조사 품목이었으나, 2015년 기준 지수부터 ‘애완동물용품’으로 품목 범위가 오히려 확대 통합함으로써 펫사료 관련 소비자가격 및 물가지수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 중 펫사료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펫사료를 독립적 소비통계 작성항목으로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애완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지출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항목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품목의 애완동물관련 지출 중 비중치가 가장 큰 품목.
- 일본 및 미국의 경우 펫사료를 주요 소비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개 사료, 고양이 사료 등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비자 가격조사 등을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펫사료와 기타 애완동물 관련 용품을 구분하여 소비자가격 및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본의 소매물가통계조사는 반려견용 사료, 반려묘용 사료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III-101> 펫사료 소비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현행(기준)		개정(개선) (안)	
조사명	조사항목	조사명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가계동향조사	펫사료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소비자물가조사	애완동물용품	소비자물가조사	펫사료 (반려견사료, 반려묘사료) 애완동물용품

(4) 펫사료 무역통계(HS 세 번분류) 개선(안)

- 우리나라의 경우 펫사료에 대한 무역 동향을 파악하는 HS세번이 반려동물 유형(개와 고양이)을 기준으로 매우 단순하게 분류되고 있어 펫사료의 특성(원료, 성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어떤 유형의 펫사료가 정확히 수출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펫사료는 원재료 및 첨가성분에 따라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분 및 원재료에 따라 HS 세번 품목분류를 통해 어떤 유형의 제품이 수출입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우리나라 펫사료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HS 2309.10(개/고양이 반려동물사료)의 하위 세번들을 반려동물 유형보다는 일본, 미국, EU 등과 같이 당, 전분함량, 조단백질 함량, 포장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사료를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히 대상 축종(개 또는 고양이)으로 HS 세번을 분류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음.
- 반려동물의 경우 성분함량과 포장규격에 따라 구분하면 원료와 성분, 그리고 수출입 되는 규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상 축종에 따른 직접적인 구분은 불필요할 수 있음.

<표 III-102>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HS세번 분류체계 개선안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4단위	6단위	10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	
2309 조제 사료	10 소매용 개 또는 고양 이사료	1000	개 사료	2309 조제 사료	10 소매용 개 또는 고양 이사료	1000	당, 전분 함량, 단백질 함량, 포장규격에 따 라 구분
		2000	고양이 사료			~1099	

IV.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현황 분석

1.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 일본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3. 미국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4. 유럽연합(EU)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5. 요약 및 시사점

IV.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현황 분석

1.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및 펫사료 산업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이 있으며, 특히 애완동물의 먹이인 펫사료를 포함한 사료는 모두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사료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 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등의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여, 산업 동물용 사료와 펫사료 모두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
 - 사료관리법상의 펫사료는 일반적으로 혼합성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로 구분.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과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법령체계는 아래와 같음(표 IV-1 참조).

<표 IV-1> 사료관리법 법령체계

-
- 1. 법률: 사료관리법 2020.2.11.
 - 2.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2019.7.2.
 - 3.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2019.11.14.
 - 4. 행정규칙
 - 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2019.10.24
 - 2) 사료검사기준 2019.10.24
 - 3)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019.10.24.
 - 4) (산림청)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2020.1.1.
 - 5)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2019.10.24
-

(1)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배우 B. Bardot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과 잔인한 도축과정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1991년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의 규정들로 최초 제정되었다가, 2007년도에 전면 개정을 통해 틀을 갖추게 됨.¹²⁸⁾
-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와 방법도 다양해지고,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의 문제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1년 전면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음.

<표 IV-2> 동물보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1.5.31.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법률 제16977호 2020.2.11.(시행 2021.2.12.)까지 수차례에 걸쳐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됨.

128) 동물보호법제 개선 추진위원회, 2013,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제안서, 22p.

-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학대·유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 맹견 소유자에 대한 관리 의무 등 동물의 생명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판매, 수입, 생산, 장묘 등의 영업기준도 규정.
- 제2조 1항의 3에서 “반려동물”을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
-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로 정의.

(2) 사료관리법

□ 제정 배경

-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규모화된 경영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과 같이 조사료나 농가의 부산물만으로 필요한 사료를 충당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료의 공업적 생산을 위해 1963년 제정되었음.¹²⁹⁾

□ 목적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3년 8월 제정 [법률 제1393호]되어 196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 제정 이후 사료 관련 산업과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3차례의 전면개정(1981, 2001, 2009년), 10차례의 일부 개정 등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 내용

- 사료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129) 김승래, 2018, 축산업 위생관리 발전방향 연구, 충남대학교, 3p.

(i) 사료의 수급 안정

-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사료 원료의 수급 및 가격과 산업 동물을 위한 배합사료의 생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ii) 사료의 품질 및 품질관리 등

- 사료제조업자의 등록, 제조시설 기준, 사료의 성분 등록에 대해 명시.
- 안전한 배합사료 생산을 위하여,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준수를 명함.

(iii) 사료 검사 등

-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준과 방법, 그리고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 및 벌칙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

(3) 사료관리법 시행령

□ 제정 배경

- 1963년 8월 「사료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년 11월 각령(閣令)¹³⁰⁾ 제1659호로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사료관리법, 사료 관련 산업 및 정책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

□ 내용

-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료 검사에 대한 업무 등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정지원, 사료안전관리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담당 기관 지정,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액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대한 것임.

130) 각령(閣令)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이에 해당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정 배경

- 1963년 12월 농림부령¹³¹⁾ 제14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사료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대적 흐름, 제반 산업의 상황 및 정부의 시책변화,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 친환경 사료 생산, 사료 산업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

□ 목적

- 「사료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내용

- 사료의 공정설정과 성분 등록에 관한 사항
-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별표4]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 사료의 폐기 및 행정처분 기준

(5)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 공정서)

□ 목적

- 「사료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¹³¹⁾ 부령(部令)은 행정부처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의미함.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것을 위임명령, 직권으로 발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함.

□ 내용

- 사료 공정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펫사료 역시 이에 준함(표 IV-3 참조).

<표 IV-3> 사료공정서의 주요 내용

-
1.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서§3-7)
 2. 사료공정(사료공정서§8)
 3. 성분 등록 및 표시사항(사료공정서§9-10)
 4.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사료공정서§11)
 5. 함량·혼합제한(사료공정서§12)
 6. 표준분석방법(사료공정서§13-14)
-

(i)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서 § 3-7)

- ‘애완용 동물’은 사료공정서 제3조(그 밖에 동물의 범위)에 의거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로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함.
- 펫사료는 혼합성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로 분류.

* 소량의 보조 사료(보존제와 향미제에 한함)를 첨가한 애완동물의 간식용 또는 영양보충용

** 펫사료는 사료공정서 배합사료의 범위에서 ① 개(어린 개, 육성개, 큰 개)용 산업동물용 배합사료와 ② 그 밖의 동물(애완용 동물)용 배합사료로 분류됨.

(ii) 사료공정(사료공정서 § 8)

-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을 말하며, 품목별 기준 및 규격과 BSE 예방 기준 그리고 멸균 및 살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산업동물과 구분된 펫사료의 원료 및 제조공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 원료 및 공정은 「국립축산과학원 원료사료 인정 심의규정」에 따라 원료사료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개정·반영 가능.

(iii) 성분 등록 및 표시사항(사료공정서 § 9-10)

- (성분등록) 축종별 등록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펫사료의 경우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의 최소량, 조섬유, 조회분의 최대량을 등록하고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임.
- (표시사항) 사료에 대한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으며(표 IV-4참조), 사료 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표 IV-4> 한국의 사료 표시사항 관련 규정

표시면	항목	비고
주 표시면 또는 일괄 표시면	① 성분등록번호	-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성장단계+동물명(혹은 동물종류)”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성장단계에 모두 사용할 경우 “성장단계”의 생략이 가능함.
	③ 등록성분량	백분율(%)로 표시하며 최저량 “이상”, 최대량 “이하”를 표시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모든 원료의 명칭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나, 2%미만인 경우는 예외
	⑤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 “성장단계+동물명” 등으로 표기
	⑥ 실제 중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개수로 표시
	⑦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간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
	②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보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③ 재포장 내용(생략가능)	재포장할 경우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
	④ 기타사항	

(iv)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사료공정서 § 11 및 [별표16])

- 사료 내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

<표 IV-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항목	비고
1.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7종: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주석
2. 관리대상 주요 곰팡이독소	2종: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 G ₂), 오크라톡신 A
2의2.관리를 추천하는 곰팡이독소	4종: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퓨모니신(B ₁ , B ₂), T-2/HT-2
3. 관리대상 주요 잔류농약	117종: 2,4-D 등
4. 관리대상 주요 방사능	2종: 세슘(Cs ¹³⁴ +Cs ¹³⁷), 요오드(I ¹³¹)
5. 관리대상 주요 기타성분	4종: 유리고시폴, 청산, 살모넬라(D그룹), 세균 및 대장균군

(v) 사료 사용 제한·금지물질(사료공정서 § 12)[별표18, 19]

- 생배설물, 가축의 사체, 멜라민, 이물, 타법(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 물질 등.
- BSE와 관련하여 소등 반추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vi) 표준분석방법(사료공정서 § 13 및 [별표]36)

-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0조(검정방법)의 2항에 따라 국제적인 공인된 방법, 국내 사료 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검정할 수 있음.

※ 국제적 기준이란 사료공정서 [별표4] 36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먹는물관리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과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 기준 등을 말함.

② 사료검사기준

□ 사료검사기준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사료검사는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물, 서류 또는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검정은 품질관련 성분과 안전성 관련 성분 검정을 통해 사료로서의 적합 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의미.

- 주요 검사항목으로 수입 시 관련 서류,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설검사, 사료의 중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성분 등이 있음.

<표 IV-6> 사료검사기준의 주요 검사항목

품질 관련 성분	등록성분, 수분, 셀레늄, 첨가혼합제한물질, 휘발성염기태질소
안전성 관련 성분	중금속(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A), 살모넬라 D그룹, BSE 관련 검정, 멜라민 관련 검정, 동물용 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기타

③ 사료공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 축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되면서 사료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료공장에 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정부는 HACCP 인증제를 도입,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 제2004-81호:2004.12.31)에 의거한 배합사료공장 HACCP 인증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HACCP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별지1] 호(배합사료공장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와 [별지2] 호(반추동물용 섬유질사료공장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의 기준에 의해 점수화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
- HACCP 인증을 받은 배합사료 업체는 총 219곳(2020.1.2. 기준)이며, 그 중 애완 동물사료(단미, 배합사료) 제조업체 21개사가 인증을 받음.
- 펫사료 전용 HACCP 실시상황표는 부재하여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소규모 공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건사료 공장용(주식)과 소규모 공장용(간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5)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 현행 사료관리법령(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하위고시)에서 규정하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와의 차이점은 대상 동물이 가축(산업동물용 사료)과 반려동물(펫사료)이라는 점과 제조시설기준, 공정설정 및 안전성 관리에 있어 펫사료에 대한 예외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
- 이러한 차이점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2014년 4월 29일 사료관리법 하위고시를 전부개정한 이후이며, 당시 소비자 민원 및 반려동물 산업계 요구에 따른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표 IV-7> 산업동물용 사료 및 펫사료 법령·제도 비교

구분	산업동물용 사료	펫사료	비 고	
대상 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소·돼지·닭 등 : 양축용) 수산동물(어류·갑각류 등) 실험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제조시설기준 (배합사료 형태)	공통시설(건물·저장·분쇄·배 합·계량·정선·포장) 추가시설(먼지제거·수송·작 업)	공통 시설(건물·저장·분 쇄·배합·계량·정선·포장)		
공정 설정	배합·단미 사료의 범위	보조사료 혼합시(혼합성) 단미사료로 불인정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 향미제에 한함) 혼합시 (혼합성)단미사료로 인정	배합사료 : 단미사 료+보조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 단미사료+단미사료
	사료명칭	성장단계(자돈사료, 비육돈 사료 등)별로 명칭 법제화 (양축용 사료만 해당)	동물명에 따른 성장단계 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 가 자율로 정함	산업동물 중 수산· 실험동물은 제조업자 가 자율로 정함
	성분등록	성분(단백질, 지방 등)비율 (%) 등록 의무	성분(단백질, 지방 등)이 아닌 원료명으로 등록 가능	
안전성 관리	동물성 단백질 평균·살균 기준	열처리(121℃ 15분 이상 등) 의무화	열처리 예외(익스트루전 형태, 소독제 처리 후 동 결건조, 조사처리 등) 인 정	일부 수산동물(뱀장 어)사료도 예외 인 정
	배합사료 수분제한 (14%)	수분 14% 초과 불인정 원 칙(단, 통조림, 레토르트 등 밀봉형태만 인정)	수분 14% 초과 인정(단, 유통기한 18개월 이내)	
	BSE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사료는 수입시 마다 BSE 정밀검정 실시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 는 동물성 펫사료는 1년 에 한번 BSE 정밀검정 실시	
	HACCP	공통관리(시설·제조공정·위 생·방역 등) 평가	공통관리 평가 외에 원 료육에 대한 온도·해동· 건조공정 등에 대한 평 가 추가	

(6)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반려동물 (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하고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의 유기기준 적합여부에 따라 유기사료로 인증하고 있음.

○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 70% 이상인 제품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며, 이와같이 인증을 받은 사료에 한해 ‘유기사료’ 로 판매가 가능.

□ 시행배경

○ 유기사료에 대한 일관된 표시기준이 부재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펫사료 산업 및 유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시행.

-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사료에 대한 인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기농 원료의 사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광고하므로 소비자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시행 전 대부분의 펫사료는 미국 유기사료 인증인 USDA-ORGANIC을 취득하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음을 자의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정부는 유기사료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사료 인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는 2017년 6월부터 도입.¹³²⁾

- 유기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시작(2001.7~)으로 유기 가공식품인증(2008.6~), 가축 유기사료 인증(2014.1~)에 이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2017.6~)을 도입.

- 유기사료 인증제는 인증 준비 기간을 고려 2018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부터 전면시행.

1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2018년부터 반려동물 유기사료인증제도가 전면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유기사료 홍보책자)

□ 주요내용

-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의미.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95% 유기사료와, 70% 유기사료로 구분.¹³³⁾
 - 95% 유기사료는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
 - 70% 유기사료는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
 -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사료의 겉 포장에 ‘유기’ 문자 표시, 유기인증 로고, 유기 제품명 표기 허용 여부가 상이하며,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은 아래의 <표 VI-2>와 같음.
 - 95% 유기사료의 경우 유기인증 로고(표시도형),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하며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
- ※ 주 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의미.
- 70% 유기사료는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문자 표시는 가능하나, 유기인증 로고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70% 유기 제품임(70% 유기, 70% organic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1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자료

<표 IV-8>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 함량 95% 이상	유기농 함량 70% 이상 (애완용동물 사료)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농 함량 70% 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유기사 료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	×	×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	×	×	×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	○	×	×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 기농 표시	○	○	○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	○	○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애완동물 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설명

2. 일본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 일본의 애완동물 및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이 있음.

(1)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배경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관련 법 부재로 인해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부상 사고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을 제정.

- 1970년대의 일본 사회는 핵가족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개체 수 및 보유가구가 증가하였으나,¹³⁴⁾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이슈화.

134)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2019. 5월호. 농촌경제연구원

- 이에 따라, 1973년 9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관리법)을 제정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
- 이후 개정을 거치며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애호관리법)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반려동물 관련 법 제정의 기초법이 됨.
- 「동물사료안전법」, 「광견병 예방법」 등 동물 관련 법은 모두 동물애호관리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시행령 등으로 내용이 구체화.
- 동물애호관리법은 환경성의 자연환경국 산하 동물애호관리실이 담당함.¹³⁵⁾
 - 「동물애호 관리법」 법률 제정 당시에는 총리부 소관이었으나, 개정 직후 내각부로, 현재는 환경성으로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음.

□ 동물애호관리법의 개정

- 동물애호 관리법은 동물 취급업자 및 소유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동물애호관리법은 동물 복지 및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 1999년의 개정에서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 ‘애호’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함.
 - 동물애호는 인간의 측면에서 동물의 습성을 충분히 배려한 적절한 사육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며, 동물과 보다 좋은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¹³⁶⁾
 - 1973년 제정된 동물보호관리법은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법률의 실효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물 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동물 학대, 유기, 살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135) 전상곤 외. 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p105. 농림축산식품부

136)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2019. 5월호. 농촌경제연구원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명칭 개정, 동물 취급업자 및 소유자의 의무 강화,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IV-9>와 같음.
- 동물애호관리법은 개정 전의 법률에 비해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부칙으로 개정안 시행 5년 후 시행상황을 검토해 법률을 재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표 IV-9> 1999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
- ① 법률명칭의 개정 및 목적, 기본원칙의 개정
 -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을 강화
 - ③ 동물판매업자의 책무를 규정
 - ④ 동물취급업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
 - ⑤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권고 조치의 도입
 - ⑥ 지방공공단체에서의 동물애호담당직원의 배치 및 동물애호추진원(動物愛護推進員)의 촉탁 등을 규정
 - ⑦ 개와 고양이의 번식 제한에 관한 노력 의무 등을 규정
 - ⑧ 학대 및 유기에 대한 벌칙의 강화
-

자료: 강영기.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일본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및 관련 법제.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동물애호관리법은 2005년 재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제 및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험동물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추가.
- 2005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애호에 관한 기본지침과 추진계획의 설정, 동물취급업자 등록제 도입, 개체 식별조치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 규제의 전국 일원화, 실험동물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추가, 법률의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¹³⁷⁾.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물애호에 관한 기본지침과 추진계획을 설정함. 환경성 장관이 기본지침(2006년 10월 31일 공표)을 정하고, 도도부현은 이 기본지침에 맞게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을 결정.

137)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2019. 5월호. 농촌경제연구원

- 동물 취급업의 적정화 대책으로서,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함. 동물취급업자에 대한 현행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도덕한 업자에 대해서 등록 및 갱신의 거부·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명령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개체 식별조치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에 대해 전국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함. 사람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등의 개체 식별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동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환경성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함. 또한, 특정 동물에 의한 위해방지에 더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사육 또는 보관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
-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애호 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에 대한 벌금이 30만엔 이하에서 50만 엔 이하로 상승하였음.
- 실험동물이 이슈화되면서 3R(refinement, replacement, reduction)을 중심으로 한 실험동물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추가하였음. 기본적으로 실험동물 개체 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되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그 외에도 특정 동물의 사육 허가제나 학교·지역·가정에서의 동물 애호 관리의 교육 및 홍보 추진 등도 포함.

<표 IV-10> 2005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 ① 기본지침 및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의 책정
- ② 동물취급업의 적정화(신고제에서 등록제로)
- ③ 개체식별조치의 추진
- ④ 특정동물의 사육 등 규제의 전국통일
- ⑤ 동물을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의 배려
- ⑥ 학교 등에서의 동물애호의 보급과 계발
- ⑦ 동물에서 유래하는 감염증상의 예방
- ⑧ 개나 고양이 인계업무의 위탁자의 명기
- ⑨ 학대 및 유기에 대한 벌칙의 강화

자료: 강영기.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일본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및 관련 법제.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2012년에는 동물애호관리법을 대폭 개정하여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물의 애호 및 관리 강화 및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확대¹³⁸⁾.

138) ALIVE. Key Points of The Revised Animal Welfare Act. 2020.2.4. 접속.

- 2012년 8월 29일 동물애호관리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특히 목적에 “사람과 동물의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 하고 “유기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구문을 새로 삽입.
- 이는 유기행위를 하나의 독립적인 금지행위로 인정함으로써 그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그림 IV-1]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자료: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2014. 3.

자료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일본환경성, 2012),
(전상곤 외. 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재인용)

- 또한, 동물 취급업자를 유형에 따라 제1종 동물취급업과 제2종 동물취급업으로 구분하고 책무를 강화.

<표 IV-11> 동물 취급업자의 구분

구분	정의
제1종 동물취급업	애완동물 가게나 애완동물호텔 등 영리성이 있는 업종
제2종 동물취급업	동물보호시설 등 영리성이 없는 업종으로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마릿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 개 및 고양이 분양, 교배업 및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물의 소유자 및 판매업자의 책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함.

<http://www.alive-net.net/english/en-law/201208awactpoint.html>

<표 IV-12> 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에 관한 책무

-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물이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해당 동물이 생명을 마칠 때까지 적절하게 사육하기 위해(이하 “평생사육”이라 한다) 노력해야 한다.
- ③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이 무분별하게 번식하여 적정하게 사육하는 것이 곤란 해지지 않도록 번식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 강영기.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일본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및 관련 법제.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 일본에서 2008년도에 제정된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은 법률, 정령, 성령으로 구성되며, 정령 및 성령은 우리나라 법제의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법령 하위의 규정.

<표 IV-13> 「애완동물 사료안전법」법률 체계

1. 법률: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사료안전법) 2008.06.18
2. 정령:
 - 1)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03 (날짜 및 정의)
 - 2)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3. 성령:
 - 1)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과 규격 등에 관한 성령 2009.04.28 농림수산 성령/환경 성령 제1호
 - 2)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5.18. 농림수산 성령/환경 성령 제2호
 - 3)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5.18 농림수산 성령/환경 성령 제3호
 - 4)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 및 보고에 관한 성령 2009.05.18 농림수산부령 제31호
 - 5)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농정 국장에 위임 권한을 정하는 성령 2009.05.18 농림수산 부령 제32호
 - 6)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환경 사무소장에게 위임 권한을 정하는 성령 2009.05.18 환경성령 제5호

□ 제정 배경

-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사료안전법)은 2007년 미국에서 펫사료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애완동물 사료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회”의 결성과 그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펫사료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및 반려동물 건강의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7년 멜라민 첨가 수입 사료의 섭취로 인해 다수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펫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료안전법을 제정하게 됨.
-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 측면에서 펫사료 안전의 보장, 사료 제조, 수입 및 판매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의 필요, 이를 위한 법 제정 및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펫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를 분리하여 관리.

□ 주요 내용

- 사료안전법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의하며, 펫사료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사료안전법 제1조제1항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펫사료의 제조공정 등을 규제함으로써 펫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에 기여함” 이라고 명시.
 - 제1조 제2항에서는 애완동물(pet)을 강아지와 고양이로 정의하여 반려견 및 반려묘를 중점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
-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사업자 스스로 지게 하여 항상 안전성 확보에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였음.¹³⁹⁾
 - 사료안전법 제2조제3항이 말하는 제조업자는 펫사료의 생산(배합 및 가공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며, 생산이란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의 가공 및 판매를 위한 용기(통조림, 레토르트 파우치 등)에 내용물을 넣는 공정을 말함.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된 펫사료를 개봉하여 소용량 제품 등으로 재포장(소분 등)하는 것도 포함.

139)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해.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attach/pdf/index-3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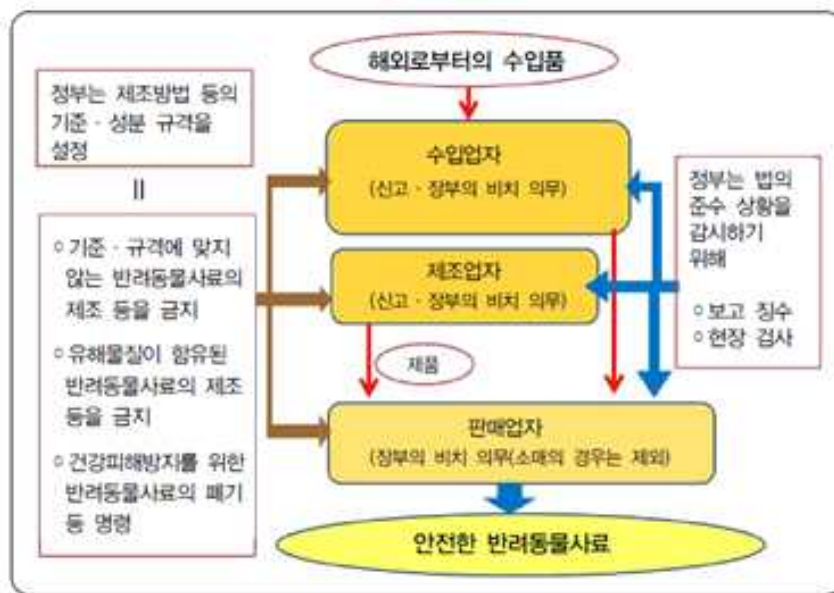
- 수입은 펫사료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며, 수입은 관세법(제 1954년 법률제61호)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을 말함.
 - 판매업자는 펫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사업자로 정의되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 판매하여 대가를 얻고 타인의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무료 샘플 배포와 같은 행위만을 하는 업자는 포함하지 않음.
 - 또한 업으로 하는 것이란 어떤 사람이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반복하여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및 법인을 구별하지 않음.
- 사료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제조, 유통, 판매 각 단계에서의 규제에 관한 것이며 크게 아래의 6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i)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및 제조의 금지 (제2장 5, 6조)
 - 사료안전법은 성령에서 사료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료는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ii)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펫사료의 제조를 금지 (제2장 7조)
 -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펫사료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 (iii) 펫사료의 폐기 등의 명령 (제2장 8조)
 -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위의 6, 7조에 따라 유해하다고 판명되는 사료는 폐기 또는 회수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iv) 제조업자의 신고(제2장 9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성명,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함.
 - (v) 장부의 비치 (제2장 10조)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소매의 경우는 제외)는 판매한 펫사료의 명칭, 수량을 장부에 기재해야 함.

(vi) 보고징수, 현장검사 (제2장 11-14조)

- 농림수산물대신 또는 환경대신에 의한 펫사료의 제조업자로부터의 보고징수, 제조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관해서 규정함. 이 때 환경성과 농림수산물성 소속 검사원 혹은 농림수산물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이 검사를 시행하며 이 때 창고, 기계, 운송장비 등을 모두 검사할 수 있음. 검사 후에는 검사기록지가 제출되어야 함.

※ 농림수산물소비안전기술센터 (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 FAMIC)는 펫사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과 라벨링 등을 검역하는 국가기관이며 1개 본부 및 5개의 지역 센터로 구성.

[그림 IV-2]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2015. 2. 1.).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자료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정령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정령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있음.

-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4)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행규칙」, 「현장검사 등 보고에 관한 성령」 등이 있음.

(i) 펫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 일본의 라벨링 규정은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제조국, 제조사 및 수입업자의 주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표기하도록 함.

<표 IV-14> 일본 펫사료 라벨링 규정

항목	비고
제품명	반려견용인지 반려묘용인지 구분 가능하도록 표시
유통기한	영양가와 맛을 보증할수 있는 기간 표시
원료명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 표시. 착색료, 보존제 등의 첨가물은 사용목적과 첨가물명을 모두 표기
제조국가	제품을 확연히 바꾸는 제조공정이 마지막으로 완료된 국가 표기
제조사, 수입업자 등의 주소	사업자의 종별과 명칭, 주소

-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상한치를 명시하고 있음(표 IV-15 참조).

<표 IV-15> 일본 펫사료의 성분규격

구분	성분 등	상한치
첨가물 (2항목)	에톡시퀸(Ethoxyquin),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150(합계량), 반려견용은 에톡시퀸 75이하
	아잘산나트륨(Sodium nitrite)(2015.2.20부터 적용)	100

구분	성분 등	상한치	
농약 (5항목)	Chlorpyrifos Methyl	10	
	Pirimiphos-methyl	2	
	Malathion	10	
	Methamidophos	0.2	
	Roundup	15	
오염 물질	곰팡이 (2항목)	Aflatoxin B1	0.02
		Deoxynivalenol	2(반려견), 1(반려묘)
	중금속등 (3항목)	카드뮴(Cadmium)	1
		납	3
		비소	15
	유기 염소계 화합물 (5항목)	BHC(α -BHC, β -BHC, γ -BHC 및 BHC의 합계량)	0.01
		DDT(DDD 및 DDE를 포함)	0.1
		알드린(Aldrin)·딜드린(dieldrin)(합계량)	0.01
		엔드린(Endrin)	0.01
		헵타클로르(Heptachlor)·헵타클로르 에폭시드(Heptachlor Epoxide) (합계량)	0.01
기타(1항목)	멜라민(Melamine)(2015년 2월 20일부터 적용)	2.5	

자료 : 日本環境省自然環境局 総務課 動物愛護管理室 ペットフード安全法 >基準規格等

(ii)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조업자 등의 신고) 펫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신고서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이때의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함.

<표 IV-16> 펫사료 제조업자 신고 내용

-
-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자의 경우 당해 펫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판매사업장 및 해당 펫사료 사료 보관 시설의 소재지
 - 제조 및 수입 시작 날짜
-

- (장부의 기록) 펫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을 한 날부터 2년간 장부를 보존하여야 함. 장부의 기록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IV-17참조).

<표 IV-17> 펫사료 제조 장부 기록 내용

-
- 펫사료 대상 동물
 - 제조, 수입 및 판매 시작날짜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포함)
 - 펫사료 제조 및 수입날짜
 - 제조자의 경우: 원재료의 명칭 및 수량, 원재료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 원 제조자명 및 원재료를 받은 날짜
 - 수입업자의 경우: 펫사료를 수출한 국가명 및 제조업자 명, 펫사료의 포장형태, 펫사료의 제조국 및 그 원재료명과 원재료 제조국
-

○ (책임자의 신분증 서류) 현장검사 시 펫사료 업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검사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신분증명서는 성령에 규제된 양식을 따라 직원의 사진, 직위, 생년월일, 소속업체명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함.

(iii) 사료안전법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펫사료 제조 기록 장부는 펫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가 서면 혹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형태는 디스크, CD롬, 그 외 컴퓨터로 지원되는 형식이어야 함.

- 원본 문서를 스캔한 형태도 가능하며, 보존된 장부는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양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iv) 사료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 및 보고에 관한 성령

○ 사료안전법 제 13조의 현장검사 시에 대한 성령으로, 매달 FAMIC 홈페이지 검사보고서가 업로드 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료시험검사기관 15곳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 그러나 검사시설의 구축이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료시험검사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으로, 사료의 일반조성분 분석, 유해물질 분석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5) 기존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의 차이점

○ 사료안전법의 경우 축산물 생산용 사료의 안전과 품질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은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률이며 품질의 범주가 되는 영양 기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일본펫사료공정거래협회의회는 종합영양식의 영양 기준에 정함에 있어 AAFCO의 영양 기준 및 사료시험프로토콜을 준용하고 있음.¹⁴⁰⁾

※일본펫사료공정거래협회(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는 「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펫사료를 ①종합영양식(總合營養食), ②간식(間食), ③요법식(療法食), ④기타 목적식(その他の目的食)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반면 요법식의 영양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일본 수의처방사료 평가센터의 ‘요법식 지침’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논문, 전문 서적, 학술 단체의 지침, 특히, 사내 연구소 연구 등 업계 자원에 맡겨져 있음.¹⁴¹⁾

<표 IV-18>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비교

구분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사료안전법)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애완동물사료안전법)
목적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사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이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공공안전 확보와 축산물 등의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펫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펫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애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가축 등”이라 함은 가축, 가금 다른 동물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 돼지, 양, 염소, 닭 및 메추라기, 꿀벌, 참돔, 연어 등	이 법에서 “애완동물”이란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개, 고양이

140) <https://pffta.org/hyouji/about.html>

141) 일본 수의처방사료 평가센터(VDEC). 2016. 요법식 지침(療法食ガイドライン - 獣医療法食評価センター). 3p.

3. 미국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 미국의 펫사료 관련 주요 법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있음.
-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은 사료를 포함한 미국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포함)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1938년에 제정.
 - FDCA는 온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의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거래, 그리고 소비를 위한 입법 및 관리 체제를 말함.
 - 핵심 내용으로는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식품의 안전규제, 기준 설정, 업체 검사 등 규제 권한을 부여.
 - 2007년 멜라민 사료 사태 이후, 펫사료의 원료 및 제조의 표준을 정함에 있어 미국사료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도에 제정.
 - FSMA는 지금까지의 사후대응 관리체계를 벗어나, 리스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하위 규정인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Final Rule for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HARPCAF)을 통해 동물용 식품에 대해서도 cGMP 및 예방관리 준수 사항을 이행하게 되었음.

(1)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제정 배경

- 1906년 순수 식품의약품 법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그 사용에 따른 유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미 연방 정부가 제정한 법률.
 - 미국 내 주(州) 간 상거래와 관련된 식품, 약품 및 주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상표의 올바른 표시 규정과 부정한(adulterated) 식품의약품에 대한 금지가 주된 사항이었음.¹⁴²⁾
 - 또한, 취약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업계의 열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¹⁴³⁾
-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항생제에 의해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37년 ‘Elixir 사태’로 말미암아 1938년 FDCA 개정이 이루어졌음.¹⁴⁴⁾
 - FDCA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 규제 및 공장 조사에 대한 권한 부여는 물론, 식품에 대한 표준 및 사용될 수 있는 성분 목록이 개발되게 되었음.
 - 또한, 이 법을 통해 동물사료가 식품의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수의약품 역시 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됨.

□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개정

- 1906년의 순수식품의약품법은 ①불법 식품 및 의약품의 이동금지 ②잘못된 표시사항 및 불량식품에 대한 최초 문제 인식 등의 내용을 담음.
 - 하지만 이 법은 FDA에 공장 감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범위 역시 제품의 표시기준에 편중되어 있었음.

142) 오상석. 2014. 미국 식품법의 변화, 세계농업 제164호.

143) 식품의약품안전처. 2007.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재인용.

144) FDA Sulfanilamide Disaster.

<https://www.fda.gov/files/about%20fda/published/The-Sulfanilamide-Disaster.pdf>

- 이때, 펫사료를 포함한 동물사료는 식품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았음.
- 1938년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은 ①FDA의 공장 검사 권한 부여, ②식품 독성물질 첨가 금지, ③압류, 형사처벌 외 연방법원의 강제 명령 가능, ④식품 규격 설정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음.
 - 식품 규격이 설정되고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이 실시되는 등 기존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었음.
 - 이때부터 식품의 범주에 동물사료가, 의약품의 범주에 수의약품이 포함되었음. 하지만 동물사료는 PMA가 요구되지 않음.

□ 주요내용

- FDCA는 식품 및 사료가 안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표시사항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음.
 - 21 CFR(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FDCA법령 하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위한 연방 규정집으로 아래 <표 IV-19>과 같은 항목에서 사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IV-19> 21CFR Volume6 목차(발췌)

Parts	Headings
501	사료의 표시사항(ANIMAL FOOD LABELLING)
507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cGMP 기준 (FSMA 이후 신설)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515	약품첨가사료의 제조 시설에 대한 사항 (MADICATED FEED MILL LICENSE)
558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의약품(신규) (NEW ANIMAL DRUG FOR USE IN ANIMAL FEEDS)
573	사료 및 식수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EED AND DRINKING WATER OF ANIMALS)
579	사료 및 펫사료의 생산, 가공 및 취급에 대한 취급 방법 (IRRADI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HANDLING OF ANIMAL FEED AND PET FOOD)
582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584	사료 및 펫사료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첨가물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IN FEED AND DRINKING WATER OF ANIMALS)
589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OR FEED)

○ 표시사항

- 펫사료 표시사항은 크게 두 단계의 범주에서 관리되고 있음.
- 먼저, 연방규정 21CFR501에 따라, 모든 동물사료에 대하여 제품의 용도, 순 중량, 제조업자 정보, 성분 정보 등을 명시할 것을 FDA는 모든 연방에 강제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각 주(州)는 자체 규정을 통해 펫사료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때 AAFCO Labelling Guide가 대다수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음.¹⁴⁵⁾

145) FDA. Pet Food Labels - General. 2020.6.2. 접속.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pet-food-labels-general>

<표 IV-20> 미국의 일반적 펫사료 표시사항

<p>제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법칙: 제품명에 성분명이 드러난 제품인 경우(예: Beef for dogs), 그 성분은 물과 조미료(Condiments)를 제외한 총중량의 95% 이상을 함유해야 함. 그 외의 경우는 성분 함량에 따라 ① 25-95%일 경우, ②3% 이하일 경우, 혹은 ③맛(flavor)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p>순중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중량을 기입함.
<p>제조사 혹은 유통사 주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명, 도시, 주, 우편번호를 기재함. 제조된 해당 도시의 주소록(City directory) 혹은 전화번호부(Telephone directory)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로명까지 기재할 필요 없음. 다수의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문의처 번호를 기입하는 경향이 있음.
<p>성분 리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된 원료는 중량 순으로 기입하며, 성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포함함. 허가되는 원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로 승인되거나 식품첨가물 규정(FAP)을 통과한 성분이어야 함.
<p>성분 분석표 (Guaranteed Analy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조(Crude)단백질과 조지방, 그리고 최대 조식이섬유와 조수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여기서 “조”(Crude)란 영양소 자체의 영양성분(종류 혹은 품질)이 아닌 제품 맛을 내기 위해 제작된 특정 제조 방식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단어임. 이는 건식과 습식에서 “수분”과 같은 함량의 차이로 인해 성분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p>영양적합성 문구 (Nutritional Adequacy Statement) (필요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lete”, “Balanced”, “100% Nutritious” 등의 명칭을 입증하는 문구임. 영양적합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는 AAFCO의 ‘사료시험프로토콜’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방법으로 입증된 제품은 “이 제품은 AAFCO의 검증 절차를 통해,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입증되었습니다.”(Animal feeding tests using AAFCO procedures substantiate that (name of product) provides complete and balanced nutrition).”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반려동물 스낵, 간식, 보충용(Supplement)의 경우 영양적합성 문구를 생략할 수 있음.
<p>섭취 방법 (Feeding directions) (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적합성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섭취방법 또한 표기해야 함 “Feed ___ cups per ___ pound of body weight daily”와 같은 문구를 기재함
<p>칼로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g당 칼로리(kcal)를 표기함 제조사 “per cup”, “per can” 단위로 칼로리를 표기해야 함 칼로리 문구는 1식(as fed)를 기초로 작성함.
<p>기타 라벨 문구 (Other label clai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mium, Super Premium, Gourmet, Natural 등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의 정의는 현재 없음.

자료 : FDA

○ 안전성

- FDCA는 안전성을 위하여 위생적 생산 시설, 안전한 재료의 사용, 그리고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등의 기준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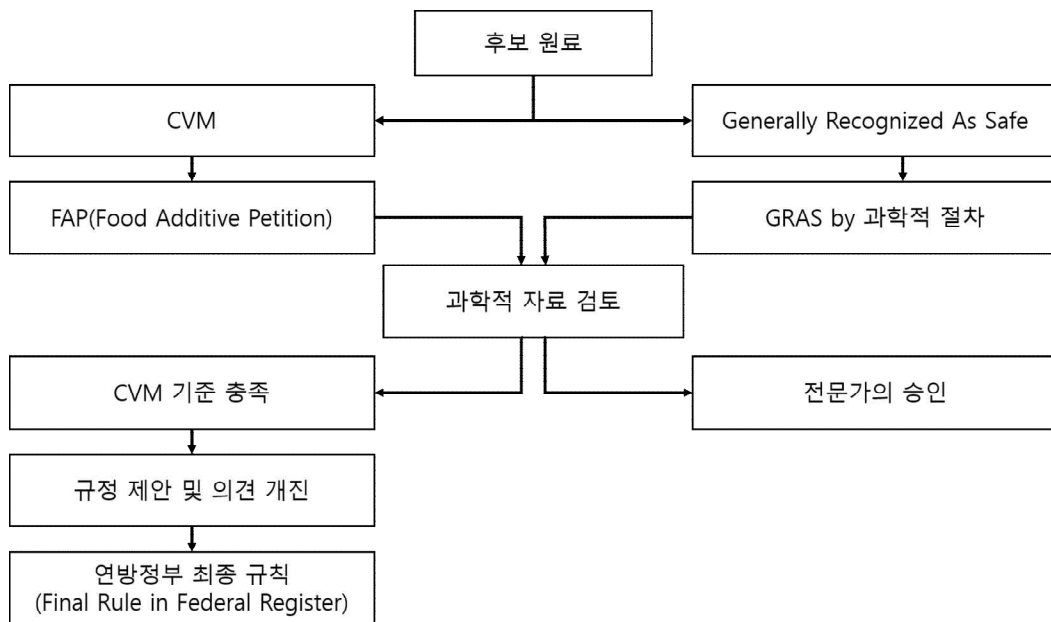
- 이때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 (GRAS, 21CFR582 및 584) 성분 및 FAP를 통과한 식품첨가물(21CFR573)을 사용해야 함.

□ 특징

- 2007년 멜라민 사료 사태 이후, ① 펫사료의 원료 및 제조 기준 ②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안전성 규정이 강화됨.

(i) 원료 및 제조 기준

[그림 IV-3] 미국 사료원료 승인 과정



자료: Matulka 2017(펫푸드포럼 발표자료 “FDA GRAS Final Rule: Impacts on Getting Safe Feed Ingredients into Pet food”)

- 펫사료의 원료로 승인받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는 ① FAP(식품 첨가물 신청), ② GRAS(안전원료 인증제), ③AAFCO(미국사료협회 등재 원료)가 있으며, 현재 공식적인 절차로는 FAP와 GRAS만 인정되고 있음.
- 이때, FAP는 서류작업이 복잡하고 비싸며, 1958년부터 시행된 이후 62개의 첨가물만 허가가 인정될 정도로 쉽지 않으며, GRAS 인증 과정

에도 다소 시간이 걸리며(인간용 식품원료 180일, 펫사료 원료 약 270일) 현재 승인률이 39%로 다소 낮은 편.¹⁴⁶⁾

- 반면, AAFCO 등재원료는 FDA와 AAFCO간의 원료의 정의 및 기준 설정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¹⁴⁷⁾으로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AAFCO는 OP(Official Publication)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¹⁴⁸⁾ 또한, AAFCO는 2019년 이후부터는 ODI(Online Database of Ingredients)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및 실시간 개정이 가능하게 함.
- FDA와 AAFCO간의 MOU 체결의 배경에는 미(美) 보건복지부 장관¹⁴⁹⁾이 ①원료 기준 및 정의(ingredient standards and definitions), ②제조 기준 (processing standards), ③영양 및 원료 정보가 포함된 표시기준의 신설 등에 관련된 사항(updated standards for the labelling of pet food that include nutritional and ingredient information) 과 관련된 규정을 정할 시, AAFCO 등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거법령¹⁵⁰⁾이 있음.

(ii)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urveillance systems)

- 2007년 FDA 수정법안(FDA Amendments Act, FDAAA)는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 및 펫사료와 관련된 오염사고의 식별과 추적 및 보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요구.
- 이에 따라 개발된 PETNet은 FDA와 AAFCO회원 간의 펫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 정보 교류를 통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하였음.¹⁵¹⁾

146)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2017. 국외출장복명서(미국 캔자스시티 17.4.2-4.8). 7p.

147) MOU 225-07-7001 및 CPG Sec. 665.100

148) AAFCO. 2019. The AAFCO Ingredient Definition Process.

https://www.aafco.org/Portals/0/SiteContent/Industry/IDC_Flow_Chart_Process.pdf?v20190412

149)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50)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2102. Ensuring the safety of pet food

151) FDA. PETNet: An Information Exchange For Pet Food Related Incidents. 2020.7.5. 접속.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et-food/petnet-information-exchange-pet-food-related-incidents>

(2)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 제정 배경

-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며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로 더욱 강력한 안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미국에서 한 해 약 4,800만 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128,000명이 입원하며 매년 3,000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한다 보고.
 - 이때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매개 감염을 발생시키는 31가지 균주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사전에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2011년 1월 4일, 미국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은 자국의 식량 공급과 국민 건강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적 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할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서명.

□ 주요내용

- FSMA는 인간 및 동물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자국 내 식량공급과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
 -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위하여, FDA는 AAFCO와 협력하여 사료표준(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FRPS)를 수립하고 있으며 제도, 교육, 검사, 감사, 질병 대응 등 11개의 표준을 정하여 미국 전역의 사료 공급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¹⁵²⁾(현재 23개 주에서 시행 중에 있음)
 - 식품안전 체계는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 및 사료에도 적용됨. 또한 수입식품 안전 향상을 위하여 FSMA

152)

<https://www.fda.gov/federal-state-local-tribal-and-territorial-officials/regulatory-program-standards/animal-feed-regulatory-program-standards-afrrps>

Title3. Sec. 301.-309까지의 항목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 공급업자 인증 프로그램(FSVP), 외국 식품 시설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IV-4] FSMA의 Title과 세부 조항(Section)

Title 1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향상	Title 2 식품안전 문제 감지 및 대응능력 향상
Sec. 101. 기록검사 Sec. 102. 식품시설의 등록 Sec. 103. 위해 분석 및 위험 기반의 예방적 통제 Sec. 104. 시행기준 Sec. 105. 농산물 안전을 위한 기준 Sec. 106. 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혼입방지 Sec. 107. 수수료 징수 권한 Sec. 108. 국가 농업 및 식품 방어 전략 Sec. 109. 식품 및 농업 조정협의회 Sec. 110. 국내 역량 강화 Sec. 111. 위생적 식품 운송 Sec. 112. 식품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관리 Sec. 113. 새로운 식품 성분 관리 Sec. 114. 생 굴 수확 후 처리 관리 지침 Sec. 115. port shopping Sec. 116. 알코올 관련 시설	Sec. 201. 국내외 시설 및 항만유입의 검사자원의 선정;연간보고서 Sec. 202. 식품 분석을 위한 시험기관 승인 Sec. 203. 시험기관 네트워크의 통합적 컨소시엄 Sec. 204. 식품 및 기록의 추적강화 Sec. 205. 감시 Sec. 206. 강제적 회수 권한 Sec. 207. 식품의 행정상 억류조치 Sec. 208. 오염 제거, 처분 기준 및 계획 Sec. 209. 주 정부 및 이하 조직 식품 안전 담당자 교육 향상 Sec. 210. 식품안전 강화 Sec. 211. 신고 의무식품 등록의 향상
Title 3 수입식품 안전 향상	Title 4 기타조항
Sec. 301. 외국 공급업자 인증 프로그램 Sec. 302. 수입업자 자율 참여제도 Sec. 303. 식품 수입 증명 요구 권한 Sec. 304. 수입식품 선적에 대한 사전 통보 Sec. 305. 식품 안전에 대한 타국 정부의 역량 구축 Sec. 306. 외국 식품 시설 검사 Sec. 307.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 Sec. 308. FDA 외국 사무소 Sec. 309. 밀수입 식품 관리	Sec. 401. 식품안전을 위한 자금 Sec. 402. 직원 보호 Sec. 403. 관할권; 권한 Sec. 404. 국제 협약 준수 Sec. 405. 예산 효과의 결정

한국식품연구원. 2017,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가이드북 식품예방관리, 4p

- 직원의 교육부터 시설 설계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사료 제조업체에 까지 포함시킴.¹⁵³⁾
 - FSMA는 동물식품 및 원료 생산업자들에게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에 cGMP를 적용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동물 및 사람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위해 분석(Hazard analysis) 및 위험 기반 예방 관리(Preventive Controls)의 적용을 명시.

153) 21CFR507 신설

<표 IV-21> 수입업자의 FSVP 수행을 위한 필요요건 및 내용

필요요건	주요내용
<p>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위해요소 고려: 생물학적, 화학적(방사능 포함), 물리적 위해요소 • 평가대상: 위해요소가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해요인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피해 또는 질병의 심각성 • 평가 시 고려해야할 점: 식품의 성질, 해외공급업자 시설 및 기구의 상태, 원재료 및 성분, 운송관행, 수확·사육·제조·가공 및 포장 절차, 포장 및 라벨링, 저장 및 유통, 위생관리, 기타 관련사항
<p>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평가 후, 식품의 위험성 및 공급업체의 준수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요소 분석항목에 따라 위해요소를 분석하는지 ▶위해요소 분석항목에 따라 위해요소 관리를 적용하는 업체인지 ▶식품안전과 관련한 해외공급업자의 절차, 과정 및 규범 ▶FDA 식품안전규정의 준수여부와 해외공급자의 식품안전 규정 준수와 관련한 항목 ▶해외공급업자의 식품안전 수행 이력 ▶그 외 저장 및 운송과 같은 필요요소
<p>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승인된 해외공급업체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서면 상의 절차를 수립 • 공급업체의 특성과 식품의 위험성에 따라 적합한 검증활동을 실시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 시설에 대한 연례 현지감사 ▶검체(샘플) 채취 및 시험 ▶공급업체의 관련 식품안전기록 검토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17)

○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험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식별(hazard analysis)할 수 있어야 하고, 식별된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 ‘예방관리(risk-based Preventive Controls)’를 실시하여야 함.

- 위해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위험 요소에 점수를 매기고 동물의 종류 및 주식 등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며, 해당 기준은 ‘동물식품 위험 분석 데이터베이스(Animal Food Risk Evaluation Database, aFRED)’에 등록되어 관리.¹⁵⁴⁾

154) FDA. 2019. Overview of FDA’s Animal Feed Safety System (AFSS). <https://www.fda.gov/media/81751/download>

- 예방관리는 수확, 제조, 저장 및 운송 등 일련의 생산 과정 모두를 검토하며, 관행 혹은 의도적 위험까지의 예방을 고려.
- 식품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푸드체인을 통한 원료의 취급 (Supply-Chain Program)부터 리콜까지 전 과정에서 제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펫사료 생산공장은 식품안전·위생관련 관리에 대한 내역(식품안전계획, 품질관리 교육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¹⁵⁵⁾

(3)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 산업동물용 사료와 달리, 펫사료 기준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사료협회(AAFCO)를 포함한 기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 펫사료 성분에 대한 기준 및 정의
 - 펫사료 제조 기준
 - 영양 및 성분 정보를 포함한 표시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
- 펫사료 조기경보시스템(PetNet) 운영
 -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 FoodNet(Foodborne Diseases Active Surveillance Network)와 같이, 펫사료와 관련된 질병 발생을 식별하기 위한 조기 경보 및 감시 시스템 운영.
 - 위 시스템의 운영 시, 관련 협회 및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고 있음.

155)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2017. 국외출장복명서(미국 캔자스시티 17.4.2-4.8). 8p.

4. 유럽연합(EU)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 EU의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일반식품법」, 「사료위생법」,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R.178/2002)」은 EU의 식품 및 사료에 있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임.
 -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을 다룸.
 - 일반 법률을 통해, 펫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사료를 포괄하고 있음.
- 「사료위생법(Feed Hygiene Regulation, R.183/2005)」은 사료 및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원칙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다룸.
 - 사료와 식품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원칙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다루고 있음.
 - 공동체 규범의 정립을 통해 국가 간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 FEDIAF의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사례 안내서’를 채택.
-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은 마케팅 및 사료의 표시사항의 체계가 되는 법률임.
 - 사료의 유형별 시판 조건 및 표시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표시사항에 대한 공동체 규범을 작성할 것을 말하며, 펫사료에 대한 안내서를 산업동물용 사료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함.
 -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EDIAF)의 ‘펫사료를 위한 우수 표시사항 실습’을 채택.

(1)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GFL, R.178/2002)

□ 제정 배경

- 세계적으로 확산된 광우병 파동(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은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개혁을 야기.
 - 사건 직후 작성된 메디나 오르테가 보고서(Medina Ortega Report)는¹⁵⁶⁾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수의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1997년 식품안전녹서(Green Paper on Food Law)¹⁵⁷⁾의 기초를 다짐.
 -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¹⁵⁸⁾란 슬로건 아래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및 일반식품법의 제정까지 이르게 됨.

□ 일반식품법의 개정

- 1970년, 유럽연합의 초창기 식품규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국의 규범들을 수직적, 상품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지침(directive)의 형식을 통하여 특정 식품들에 대한 표준적인 규제안을 제시¹⁵⁹⁾하였음.
 - 하지만 당시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각국의 문화, 시장성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
-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각국 시장 간 수평적 조화를 추구.¹⁶⁰⁾

156) 메디나 오르테가 보고서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수의과위원회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하였다.

①산업의 경제적 이익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견해, ②편중된 과학적 해석, ③ 투명성의 부족

157) 녹서는 특정의 정책영역에 관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공표하는 검토자료를 말하고, 주로 협의·검토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백서는 특정의 정책영역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행동제안을 포함한 문서이다. 따라서 녹서에서 제시된 정책은 매우 넓은 정책안이지만, 백서에서 제시된 정책은 특정의 정책영역에 관한 유럽연합 당국의 공적인 정책방침이다.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and white papers, http://https://europa.eu/european-union/index_en

158) 최근에는 더 나아가 ‘농장에서 포크까지(from the Farm to the Fork)’를 식품안전의 모토로 삼고 있음.

159) AAlemanno.2006. Food Safety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in What’s The Beef? The Contested Governance Of European Food Safety, p.240.

160) Bernd M.J. van der Meulen, 2013, The Structure of European Food Law, European Institute for Food Law, 73p.

- 카시스 드 디종 판례(Cassis de Dijon Case)를 통해 형성된 상호인증원칙¹⁶¹⁾을 통하여, 광범위한 식품에 대한 공통적 측면을 다루는 일반 규칙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
- 이때, 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규정의 통합보다는 식품 원료와 제조방법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 함.
- 1990년대 중반, 영국의 광우병 과동(BSE)은 기존의 제도가 지닌 한계를 드러냈고,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를 통하여 식품법 분야의 관점을 공동시장의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 보장으로 변화시킴.
 - 백서를 기초로 하여 일반식품법(Regulation(EC) 178/2002)이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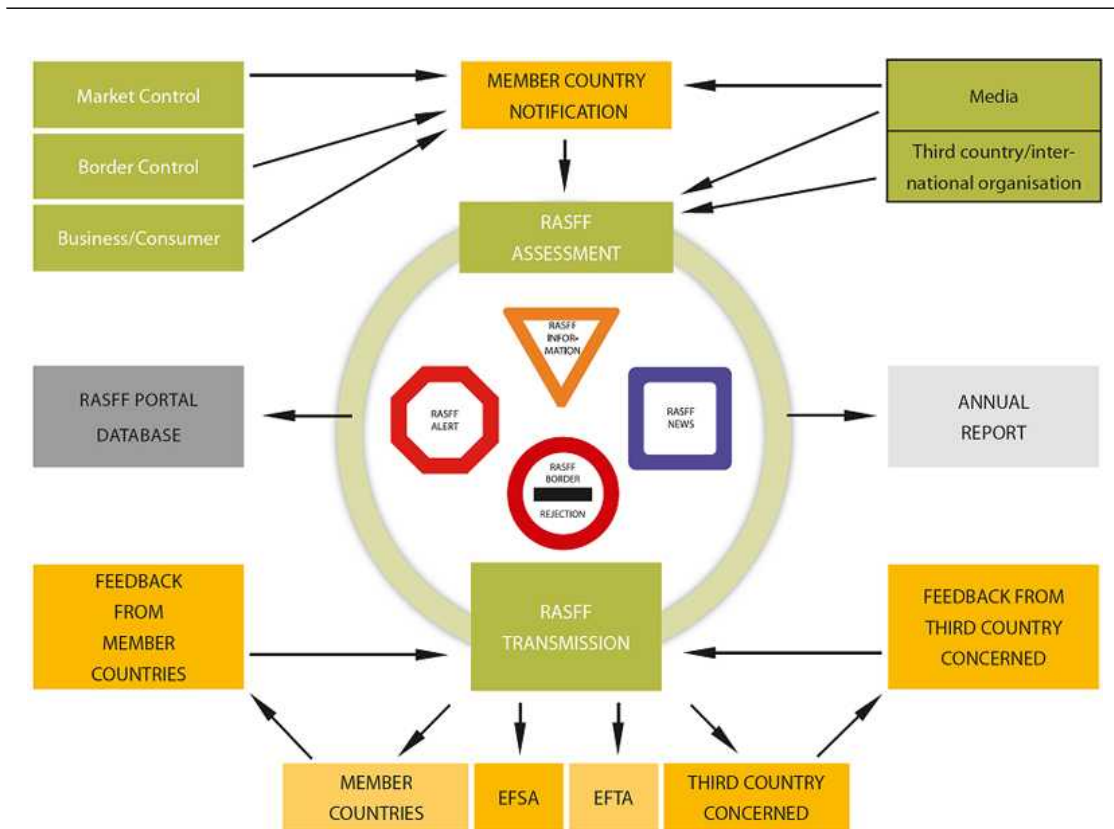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칙(Regulation)으로서, 회원국과 회원국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지님.
 - 이 법을 사료의 생산, 가공 및 분배 등 모든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사료를 식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반원칙으로써 사전예방원칙·투명성 원칙 등을 명시.
 - 일반원칙의 목적으로서, 동·식물의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단계는 검증되어야 하고 그 이력은 추적 가능(traceability)하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를 통하여 사료 안전에 관한 사고 혹은 직간접적인 위험 요인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를 확립.
 - 사료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¹⁶¹⁾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에서 국내법에 준해 생산한 상품은 여타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원칙

- 신속경보시스템 하에서 회원국은 ① 인간의 건강을 보고하고 빠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철수를 강요하거나, 식품과 사료의 회수를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채택하는 조치, ② 자발적, 의무적으로 재빠른 조치를 요구하며, 인간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주는 식품과 사료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특정 상황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권고 혹은 합의 ③ EU 내 국경 지역에서 담당 당국의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리스크와 관련한 식품과 사료의 기계, 용기, 화물의 거부 등이 발생한다면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지해야 함.¹⁶²⁾

[그림 IV-5] RASFF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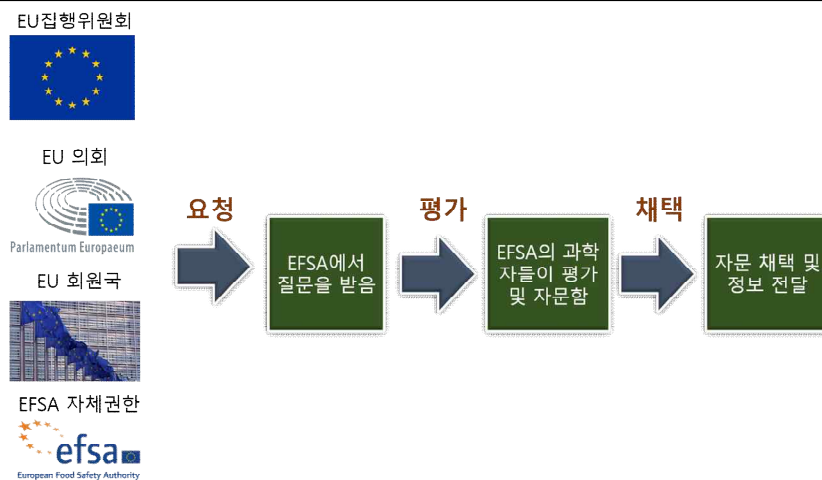


자료: How does RASFF work

162) 이주형 외, 201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148p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설립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다룸.
- EFSA는 식품 및 사료안전 시스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와 신뢰 증진을 위해 EU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식품·사료 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개발.
- 사료의 생산과 가공처리, 저장, 유통 및 표시사항뿐 아니라, 영양적 문제도 포함하여 관찰하고 있음.
- 유럽식품안전청은 독립된 행정기관이며, 과학적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¹⁶³⁾

[그림 IV-6] EFSA의 운영체계



자료: 이주형 외, 201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 회원국 간의 중재절차로서 식품, 동물, 식품·사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 PAFF 위원회)를 운영함.
- 법적 행위를 이행하기 전,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법률의 세부적 이행 조치를 협의.

163) EFSA's Policy on independence https://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corporate_publications/files/policy_independence.pdf

-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체인(Food Chain) 일련의 단계에서 유럽연합이 안전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사료 위생법(Feed Hygiene Regulation, R.183/2005)

□ 사료, 사료첨가제 및 프리믹스 사료 등 모든 사료의 공급망(Food chain)이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

○ ① 사료 공급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수립, ② 의무적인 자체점검 프로그램 시행, ③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의 도입, ④ 소규모 펫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적용 예외 등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 HACCP 적용을 위한 공동체 규범(Community Guide)으로서, FEDIAF(유럽 반려동물 식품산업연맹, Fédération européenne des industries des aliments pour animaux familiers)의 안내서를 채택.

- 동법 제22조는 위생 또는 HACCP 적용을 위한 모범 사례(Good practice)를 개발 및 배포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동법 제31조에 따라 PAFF 위원회는 모범사례에 대한 커뮤니티로서 FEDIAF의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사례 안내서(Guide to good practice for the manufacture of safe pet foods)’¹⁶⁴⁾를 채택하였음.¹⁶⁵⁾

- 위 안내서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관상어 및 파충류에 이르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펫사료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제조시설 허가조건 및 HACCP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

※위원회 고지(Commission notice)로서 제정된 위 공동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들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¹⁶⁶⁾

164) FDEIAF. 2018. Guide to Good Practice for the Manufacture of Safe Pet Foods

165)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mmission notice on Community guides to good practic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7196041784&uri=CELEX:52018XC0411\(01\)](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7196041784&uri=CELEX:52018XC0411(01))

166) 고지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설명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함. 공정거래위원회.2008.EU의 경쟁법 판례분석. 9p

<표 IV-22> 커뮤니티 가이드 작성을 위한 권장사항

유해물 관리조치¹⁶⁷⁾

- ① 곰팡이,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오염 제어
- ② 물, 유기 폐기물 및 비료의 사용
- ③ 농약에 대한 적절한 사용 및 추적성(traceability)
- ④ 동물의약품 및 사료첨가제의 적절한 사용 및 추적성
- ⑤ 폐기물 등에 대한 적절한 처분
- ⑥ 사료 원료의 준비(preparation), 저장 및 추적성
- ⑦ 사료를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통지의무
- ⑧ 사료의 생산, 포장, 저장 및 운송 시 위생을 보장하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
- ⑨ 기록 보관을 위한 세부사항

(3)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

-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사료의 원료에 관해 규정하고, 사료를 유형에 따라 ‘복합사료’, ‘완전배합사료’, ‘보충사료’, ‘특수목적식’ 등으로 구분.
 - 사료 원료(feed materials)란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신선한 제품으로서, 동물의 영양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
 - 복합사료(Compound feed)란 동물에 급여를 목적으로 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사료 원료가 혼합된 사료를 말함.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 또는 보조사료(Complementary feed)로 구분.
 -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란 동물에게 주식(主食)으로 급여하여도 충분할 정도의 구성을 갖춘 사료를 말함.
 - 보조사료(Complementary feed)란 특성 물질의 함량이 높지만, 그 구성으로 인하여, 주식(主食)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사료를 말함.
 - 특수목적식(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이란 특별한 사료 구성 및 제조방법으로서, 특별한 영양적 목적을 안전하게 달성

167) R.183/2005, Annex I (B)

할 수 있는 사료를 말함. 단, Directive 90/167¹⁶⁸⁾이 말하고 있는 의약품 사료와는 구분됨.

※약품사료란 사료와 수의학 의약품의 혼합물을 말하며,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이때 수의학 의약품은 사료첨가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Regulation 2019/6에서 정의된 약리학적 작용으로 질병을 치료 혹은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의약품을 말함.

□ 또한 사료에 대한 표시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표시사항의 일반적 요건으로는 ‘사료의 종류’, ‘제조업자 정보’, ‘배치 번호’, ‘순중량’, ‘사료첨가제사항’, ‘구성성분’ 등이 있음.

① 사료의 종류(The type of feed)

- 사료 원료, 완전배합사료, 보조사료 등을 말함.
- 펫사료의 완전배합사료와 보조사료는 보통 복합사료로 통칭.

② 제조업자 정보(The name or business name and the address)

- 사업자명 및 주소 등에 대한 사항

③ 제조의 배치번호(The batch or lot reference number)

④ 순중량(The net quantity)

- 고체는 질량을 표시하며, 액체의 경우 질량 또는 부피로 표기.

⑤ 사료 첨가제 사항(Feed additives)

- R.767/2009 부속서 VI 및 VII 참고.

⑥ 구성성분>Analytical constituents)

168) Council Directive 90/167/EEC of 26 March 1990 laying down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preparation,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medicated feedingstuffs in the Communit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84668890864&uri=CELEX:31990L0167>

<표 IV-23> 구성성분의 표기 항목

사료의 종류	구성성분	대상 종
완전 배합사료	조단백질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섬유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지방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회분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미네랄 보조사료	칼슘	모든 종
	나트륨	모든 종
	인	모든 종
기타 보조사료	조단백질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섬유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지방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조회분	고양이, 개 및 모피동물

○ 사료의 유형(사료 원료, 복합사료, 특수목적식)에 따라 표시사항의 요건 (Specific mandatory Labelling Requirements)이 상이.

① 사료 원료(Feed materials)

- 사료 원료의 특정 명칭(공동체 규정에 따름)
- 부속서 V 및 VII(Chapter II)에 명시된 범주는 이에 따름(공동체 규정을 따를 수 있음)

② 복합사료(Compound feed)

- 대상으로 하는 동물의 종 또는 범주, 올바른 급여방법,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DD/MM/YY), 재료의 중량에 따라 내림차순되어 있는 원료 목록
- 만약 그림 혹은 단어로 강조된 원료의 표기가 있을경우, 그 성분에 대한 정확한 함유량(무게에 따른 백분율)이 명시되어야 함.

③ 특수목적식(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 사료의 종류 표기 옆에 ‘식이요법’(The Qualifying expression ‘dietetic’)이란 표기를 해야 함.
- 급여목적은 표기해야 함.
- ‘동물에게 급여 전, 영양전문가 혹은 수의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표기를 해야 함.

④ 클레임(Claim)

- 사료의 표기에 특정 물질 혹은 특정한 영양특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사료의 재료 및 복합 사료가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음.

⑤ 펫사료에 대한 추가 표기 사항

- 소비자가 필수표기사항 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번호 혹은 기타 적절한 통신 수단이 표기되어야 함.

○ 사료원료에 대한 공동체 안내서(Community Catalog)¹⁶⁹⁾를 정립.

- 동법 제24조는 사료 원료 및 복합사료의 표시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사료 원료에 대한 공동체 안내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원료의 이름, 식별번호,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설명(선택)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FEDIAF(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édération européenne des industries des aliments pour animaux familiers)를 통하여, 표시기준에 대한 공동체 코드(Community Code)를 정립.

- 동법 제25조는 펫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를 구분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두 개의 공동체 규범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동법 제27조에 따라, 2011년 8월 12일 FEDIAF의 ‘펫사료에 대한 모범 표시사항 안내서(Code of Good Labeling Practice for Pet Food, Layman’s Guide)¹⁷⁰⁾를 채택하였음.¹⁷¹⁾

※ FEDIAF는 유럽펫사료산업을 대표하는 무역기구로서, 18개국의 국가들과 5개의 회원사(Affinity Petcare, Hill’s Pet Nutrition, Mars PetCare, Nestlé Purina

169) Commission Regulation 68/201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7R1017>

170) http://www.fediaf.org/images/FEDIAF_Labeling_Code_October_2018_online_final.pdf

171) Notice on the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t food(2011/C 358/0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52011XC1208\(02\)](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52011XC1208(02))

Petcare and Wellpet)가 속해있음. 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먹이사슬 및 동식물건 강자문 그룹과 EFSA 이해관계자 포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¹⁷²⁾

(4)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 「사료의 시판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은 펫사료의 표시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산업동물용 사료와 구분을 두고 있음.
- 펫사료 원료의 정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의 공동체규범을 사용함(제17조제2항제c호).
- 필수 표시 사항에 있어, 펫사료는 사료 첨가제 및 전술된 공동체규범에서 지정된 사료 원료를 기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필수 표시 사항 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락처 및 기타 통신수단이 표시되어야 함(제19조).
- 사료의 안전성 기준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펫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 간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음.

5.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펫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를 「사료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펫사료의 제조/유통/소비관련 법령체계가 미흡.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에서는 사료의 범위를 ‘산업동물용 배합사료(개)’와 ‘애완용 동물’ 등으로 구분하여, 사료의 공정, 성분등록 및 표시 등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을 정의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제도가 미흡.

172) <http://www.fediaf.org/>

- 일본은 「애완동물 사료 안전법」 및 동 법 정령, 성령을 통해 산업동물용 사료와는 별도로 펫사료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해 관리.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은 펫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의하여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
 -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행규칙’ 등이 등이 있으며, 펫사료의 라벨링, 성분 규격, 유해물질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을 통해 사료를 포함한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포함)의 제조, 유통 및 소비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은 식품 및 사료가 안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방규정집(21 CFR)에서 각 항(part)별로 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시설, 허용되는 첨가물 기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및 사용이 금지된 물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EU는 「일반식품법」을 통해 사료의 제조, 유통 등을 식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위생법」,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전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
 - 「일반식품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칙(Regulation)으로 식품 및 사료의 안전확보를 위한 일반원칙으로써, 사전예방원칙·투명성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사료위생법」은 사료, 사료첨가제 및 프리믹스 사료 등 모든 사료의 공급망(Food chain)이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사료의 원료에 관해 규정하고, 사료를 유형에 따라 구분 및 사료의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은 ‘생산’ 이 목적인 산업동물용 사료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양육’ 을 목적으로 하는 펫사료에 적용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펫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주로 산업용 동물을 위한 산업동물용 사료의 관리를 위해 제정.
- 따라서 「사료관리법」은 ‘양육’ 에 초점을 두고 있는 펫사료를 관리하는 법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음.
- 현재 「사료관리법」에서는 펫사료와 산업동물용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1 조 목적에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펫사료관리의 주 목적인 반려동물의 건강한 양육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표 IV-24> 사료관리법 제정목적

사료관리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23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펫사료는 반려동물의 성장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호성 및 기능성의 충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산업 동물용 사료는 생산성 증진을 위한 효율화(성장률/산란율 등)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IV-25>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구분	산업동물용 사료	펫사료
목적	생산성(증체량/산란율, 육질)	성장과정 중 영양공급과 기호성을 위함
유통과정	농장직매 및 대리점	소셜커머스, 펫사료 전용매장, 식품매장
소비자	축산농가	반려인
품목	축종별, 성장단계별	식품과 유사(주식, 간식, 음료 등)
소비자 성향	생산성 추구	기호성, 품질 및 안전성 추구
표기사항	필요정보 이외 무관심	원료, 가공, 기능성 등 식품의 수준 요구

○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의 가축 중심의 기준 적용으로 인해 펫 사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펫사료의 품질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펫사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

□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국 등은 2007년 ‘멜라민 사료 사태’를 계기로 펫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펫사료 관련 법령을 강화해 왔음.

○ 일본은 「애완동물사료 안전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산업동물용 사료와 구분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 펫사료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 체계 등을 마련.

○ 미국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내에 펫사료의 원료 및 제조 기준, 조기 경보시스템 등 안전성 규정의 강화하고, 2011년 「식품의약품현대화법」 제정 이후 펫사료 제조 시설에도 cGMP 적용을 의무화 함.

- 펫사료 관련 오염사고의 식별 및 추적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 유럽은 「일반식품법」 및 「사료위생법」을 통해 펫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HACCP 적용, 신속경보시스템(RASFF) 구축, 산업동물용 사료와 구분된 표시기준 마련 등을 마련.

- 사료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의무화.

□ 펫사료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료의 영양 가치 및 생산성을 위해 제조되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달리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원료 종류 및 품질, 기능성 등을 강조하며 일반 식품과 같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소비자가 신중히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

○ 현행 「사료관리법」은 산업동물용 사료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화·고급화된 펫사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동물용 사료와 차별화(구분)된 펫사료 업체 및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펫사료 법령(기준·규격) 정비 및 개선이 필요.

- 펫사료는 식품과 유사하게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용 사료와 유사한 원료·가공·표시 기준 하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유통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

- 펫사료의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보상 및 배상 등) 제도의 강화가 요청.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펫사료의 원료,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용어의 정리가 필요.

○ 펫사료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사료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정한 거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계육분(鷄肉粉), 육골분(肉骨粉) 등 원료 명칭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실제로 펫사료의 원료로 활용되는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양화·세분화되는 펫사료의 표시사항을 「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펫사료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 펫사료는 혼합성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로 분류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기능성에 따라 세분화되는 추세이며, 건사료(수분함량 10%

미만), 습식사료(캔 및 페이스트 등 수분함량 75% 이상), 간식류(육포, 트릿 등) 등 종류 및 조리법에 따라 관리 기준이 상이하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펫사료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일본과 같이 펫사료 관련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미국, EU와 같이 기존 법령에 애완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하부항목 신설이 요청.

□ 또한 펫사료 산업의 육성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제조·유통·소비관련 기준 및 제도 마련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표시·광고 및 원료 인증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
- 그러나, 일본·유럽·미국 등의 국가는 제도 구축 시에 전문화된 협의체(산·학·관·연)를 통해 상시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
-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펫사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펫사료 공정설정에 관한 산·학·관·연 정기적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펫사료 생산,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유도,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합리적 소비를 통해 신성장 동력원으로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함.

□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펫사료에 적합한 별도 법률 「(가칭)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펫사료 제조 및 유통공정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는 물론 반려동물의 특성에 적합한 펫사료가 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현행 「사료관리법」은 산업동물용 사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펫사료에 적용할 경우, 다양·고급화되는 펫사료의 ‘성분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펫사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애완동물 사료 안전법」이 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에 따라 첨가물, 오염물질 등에 대한 허용치에 차이가 있는 등 반려동물의 유형에 따라 펫사료 성분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펫사료 관리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에 적합한 펫사료를 제조, 판매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펫사료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펫사료의 유통/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관련 규정 제정과 ②사업자의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위생·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며 ③제품이상 시 폐기, 회수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V. 펫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펫사료 관리 조직·체계 개선
2. 펫사료 추적(Traceability) 관리체계 제도개선
3. 국내산 원료수급을 위한 제도개선
4.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 구축
5. 요약 및 시사점

V. 펫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펫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품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펫사료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원재료 선택, 제조에서부터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펫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등) 펫사료 산업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1. 펫사료 관리 조직·체계 개선

(1) 한국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산업의 육성, 안전,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시·도,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에서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펫사료 제조, 유통, 안전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공정, 표시, 함량 및 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료공정 설정 및 보급 업무를 수행.

-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은 사료수급관리, 사료수출관리, HACCP관리, 사료검사관리,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V-1>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사료수급관리	사료수출관리	HACCP관리	사료검사관리	사후관리
사료생산실적	영문증명서관리	HACCP 교육실적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적 관리	자체검사 결과보고
사료수입실적	수출실적관리			검정업무자 교육실적 결과보고
할당관세 추천				
할당관세 사후관리				

자료: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사료관리정보시스템

- 사료 수급안정을 위하여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수립을 통해 사료 제조시설자금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
- 펫사료와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명정책관 이하 동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업무를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표 V-2>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장

1.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0. 2.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1호, 2020. 2. 25., 일부개정]

○ 시·도지사

- 사료 제조업 등록과 관련하여, 사료제조업등록과 해당 시설 검사 및 적 합 여부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증 발행 업무를 수행.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에 대한 성분등록 및 취소 업무를 담당.
- 제조단계에서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① 사료공정에 적합 여부, ②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③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

○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 및 유해물질의 범위, 기준과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의 사료공정을 설정.
-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 축종별 사양표준은 2017년 개정판 기준 한우, 젓소, 돼지, 가금에 대하여만 다뤄지고 있음.

- 사료의 검정 업무를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료검정기관의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사료의 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며, 검정기관의 검정능력을 관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담당기관으로서,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

○ 농협중앙회 및 한국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 수입의 추천업무를 대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입신고 시의 사료검정(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서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사료검사기관이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현물검사가 곤란한 검정성분이 있을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서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으로서, 사료생산실적 및 사료사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고.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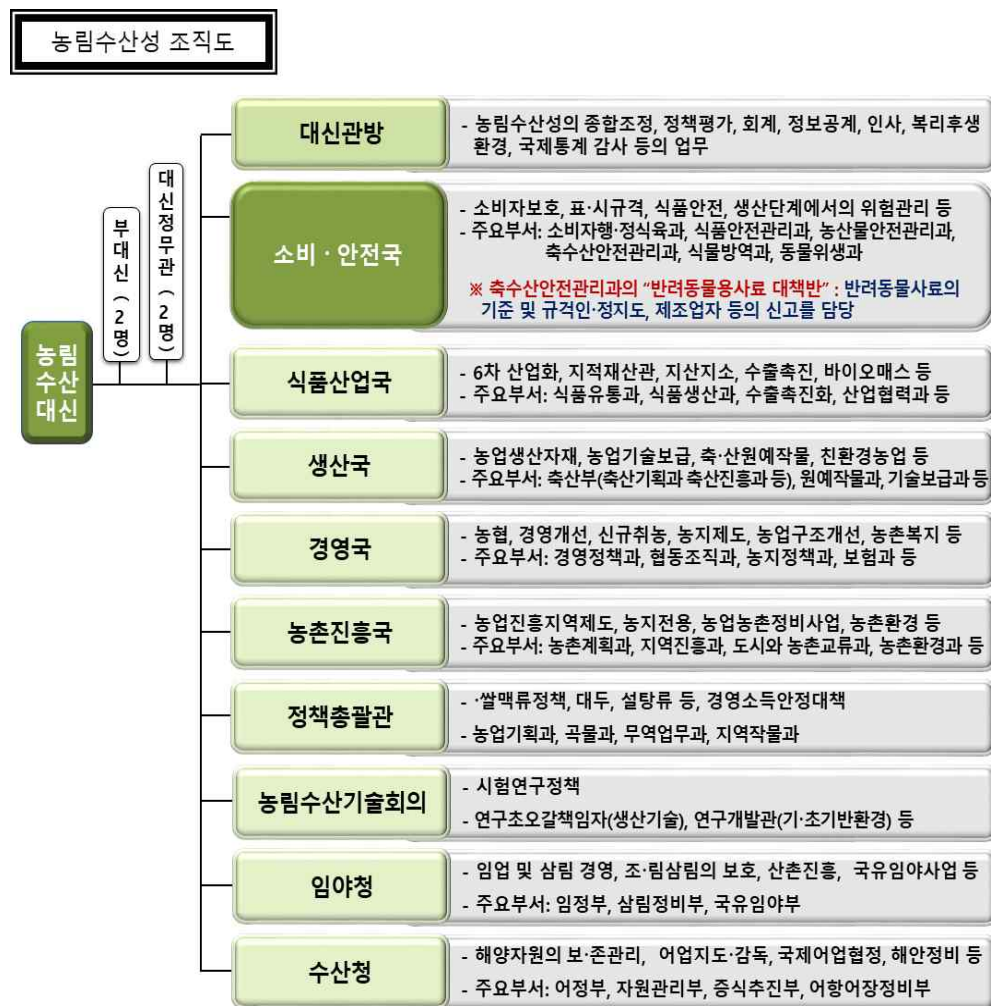
- 일본의 펫사료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며,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에서 규제업무를 관할, 기타 관련 단체들 차원에서 펫사료 안전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농림수산성

- 「소비·안전국」 내의 축수산안전관리과는 '반려동물용사료 대책반'을 별도로 두고 펫사료를 산업동물용 사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펫사료의 기준 및 규격 인정·지도, 제조업자 등의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축수산안전관리과에서는 펫사료 우수 제조 설명서(ペットフードの適正製造マニュアル)를 제작 및 배포하여 펫사료 제조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반 사료에 관한 업무는 「소비·안전국」내 축수산안전관리과의 ‘사료안전기준반’에서 사료의 안전성 및 사료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설정, 조사 등의 업무를, ‘사료검사지도반’에서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제조업자 등의 신고, 검정 및 검사에 관한지도 등, ‘조사료대책반’에서 조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지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V-1]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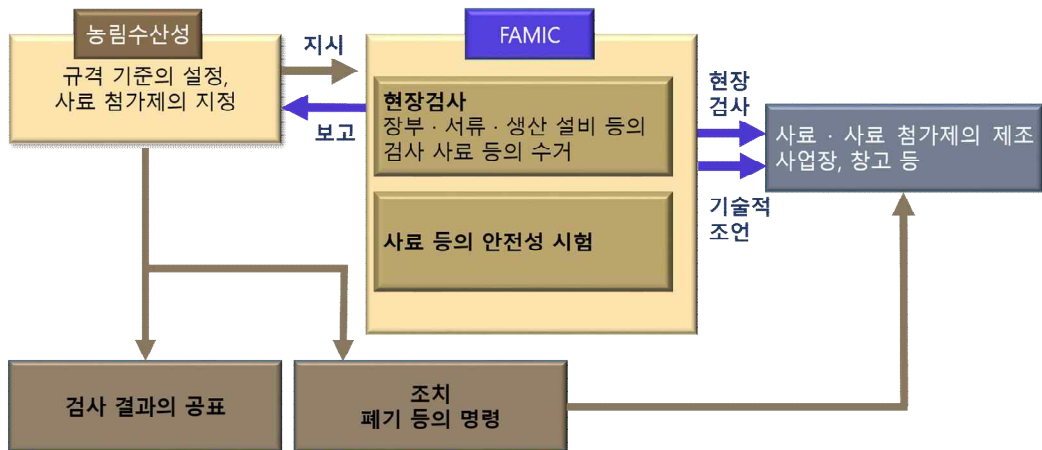
자료 : 전상곤 외. 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에서 함께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을 관할하고 있으나,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조, 판매 및 안전 등과 같은 사안은 주로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 (Food and Agriculture Materials Inspection Center)

-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FAMIC)는 식품, 펫사료 및 축산사료, 비료, 농약 및 첨가제 등의 품질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펫사료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 사료 및 사료 첨가제가 규격대로 제조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조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조 및 수입장부 등 서류의 검사와 분석·감정에 필요한 사료 등의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거한 사료 등에 대해 사료 첨가제 및 유해 물질 등에 관한 검사(분석·감정)를 실시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된 검사 결과가 법령 등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물성의 지시에 따른 과학적 조언을 실시.

[그림 V-2]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FAMIC)의 업무개요



○ 지방농정국

- 지방농정국에서는 펫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소매점 현장검사를 통한 표시기준 적합 여부 확인, 농림수산물성에서 위임된 펫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의 신고 업무를 담당.

○ 중앙환경심의회 및 농업자재심의회

- 중앙환경심의회 동물애호모임 애완동물분과위원회(12명) 및 농업자재심의회 사료분과회 애완동물사료위원회(7명) 합동회의는 농림수산성의 자문기구로 펫사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펫사료의 안전 확보 현황 조사(외국의 상황 포함)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일본펫사료협회(Japan Pet Food Association)

-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실시 기준」을 제정하여, ① 제품의 안전관리 시스템, 추적성(traceability) 확보 등 업계의 자주 기준을 세우고, ② 펫사료 표시에 대한 첨가물 편람을 발행하여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명칭이나 용도를 정리.
-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펫사료 안전관리 인증제를 실시하여 펫사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도모하며, 펫사료 판매사를 대상으로도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판매원에 대한 펫사료의 영양 및 취급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
- 안전 관련 정보 수집체제에 기여하기 위해, 회원사에서 수집한 펫사료 관련 정보가 정부에 전달되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
- 반려인의 올바른 자세 등을 교육하여, 반려인이 반려동물 및 펫사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반려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자주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일본펫사료공정거래협의회 (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¹⁷³⁾

- 「애완동물사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¹⁷⁴⁾」 및 「애완동물사료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¹⁷⁵⁾」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협의회로 1974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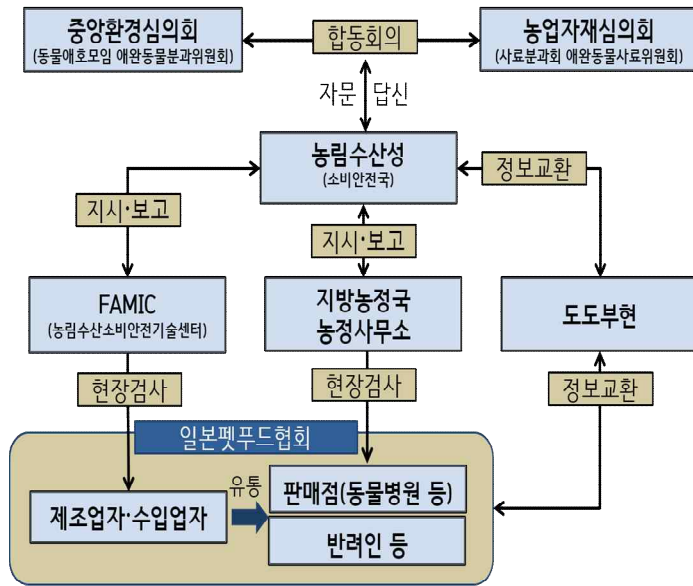
173) <https://pffta.org/kiyaku.html>

174) 日本 ペットフード公正取引協議会. 2016. ペットフード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175) 日本 ペットフード公正取引協議会. 2015. ペットフードにおける景品類の提供の制限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 공정경쟁규약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¹⁷⁶⁾」을 토대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펫사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이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본 소비자청에 의해 인정된 규칙.

[그림 V-3] 일본의 펫사료 검정 체계



□ 일본은 요법식평가센터와 애완동물영양학회에서 일반 펫사료가 아닌 요법식의 규칙을 확립하고 요법식을 등록, 관리하고 있음.

○ 일본 요법식평가센터 (Japan Veterinary Diet Evaluation Center)¹⁷⁷⁾

- 2008년 「동물약품의 범위 표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요법식의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제3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요법식이란 「펫사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분류된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아닌 특정 질병의 치료 후 이에 대응한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한 사료를 말하며,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医薬品の範囲に関する基準」)」에서 정의된 의약품을 뜻하지 않음.

176) 日本 消費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177) <http://www.vdec.or.jp/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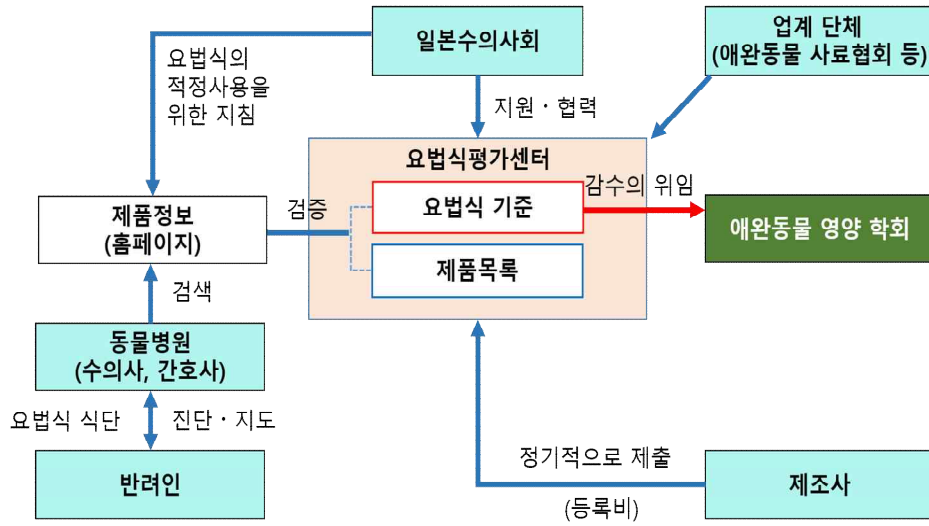
- 2011년 일본수의사회(JVMA)는 요법식의 정의, 라벨링, 승인 과정, 배포 정책과 등의 논의를 위해 일본수의사회 내에 공식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 제3의 기구로 일본요법식평가센터를 설립.
- 일본요법식평가센터는 수의사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요법식의 기준 정비를 정비하고 해외 여러 제도(특히, 유럽 FEDIAF 영양 표준을 인용) 및 학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요법식의 영양 표준을 정의.
- 제조사에서 제출된 제품 정보와 요법식의 기준을 비교하여 기준에 적합한 요법식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요법식의 평가 및 보급을 실시.
- 일본요법식평가센터는 요법식이 수의사의 진단 후에 동물병원 등에서 판매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님.

○ 일본애완동물영양학회 (Japanese Society of Pet Animal Nutrition)¹⁷⁸⁾

- 일본애완동물영양학회(JSPAN)는 애완 동물의 영양, 건강 증진 및 애완 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 등에 관한 회원 상호간의 지식, 기술의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 학계, 업계, 임상수의사 등이 주요 이사로 참여하여 활동하며, 애완동물의 영양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유럽의 PARTNUTs를 기반으로 수의 처방사료의 기준을 제시.
- 그 외에 애완동물 영양 관리사 자격시험의 주최 및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178) <https://www.jsfan.net/>

[그림 V-4] 요법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평가과정



자료: 日本獣医師会, 2013. 療法食の適正使用に向けた課題と対応

- 일본은 펫사료 안전확보 및 산업 진흥, 동물애호, 수의사, 애완동물 간호사, 광견병 등 세분화된 조직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달성하였음.

<표 V-3> 일본의 반려동물사료 관련 조직별 담당업무 및 인원

	담당부서	주요업무	인원수
애완동물사료 안전확보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반려동물용 사료대책반	총괄, 기획조정 애완동물식품규격 기준의 설정, 변경 등	2 ~ 3 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 산안전관리과	판매업자 등의 현장검사 제조, 수입신고 수리 등	2 ~ 3 인 × 9 개소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제조업자 등의 현장검사 현장검사 시 채취한 애완동물 사료 분석 검사 등	3 ~ 4 인 × 6 개소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 물애호관리실	애완동물소유자에 대한 보급 계발 등	-
	환경성 지방환경사무소		-
애완동물사료 산업 진흥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사료과 유통사료대책실 가격 반	애완동물사료산업 실태조사 등	3 인
동물애호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물애호관리실	동물애호관리법 관련 업무 전 반	-
수의사 관련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 산안전관리과 수의사반	수의사법, 수의학적 치료 관련 업무 전반	5 인
애완동물 간호사 관련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 산안전관리과 소동물수의료담 당	애완동물 간호사법 관련 업무 전반	1 ~ 2인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 물애호관리실		-
광견병 관련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감염 증과	광견병 예방법 관련 업무 전반	-

자료: 농림수산성 애완동물사료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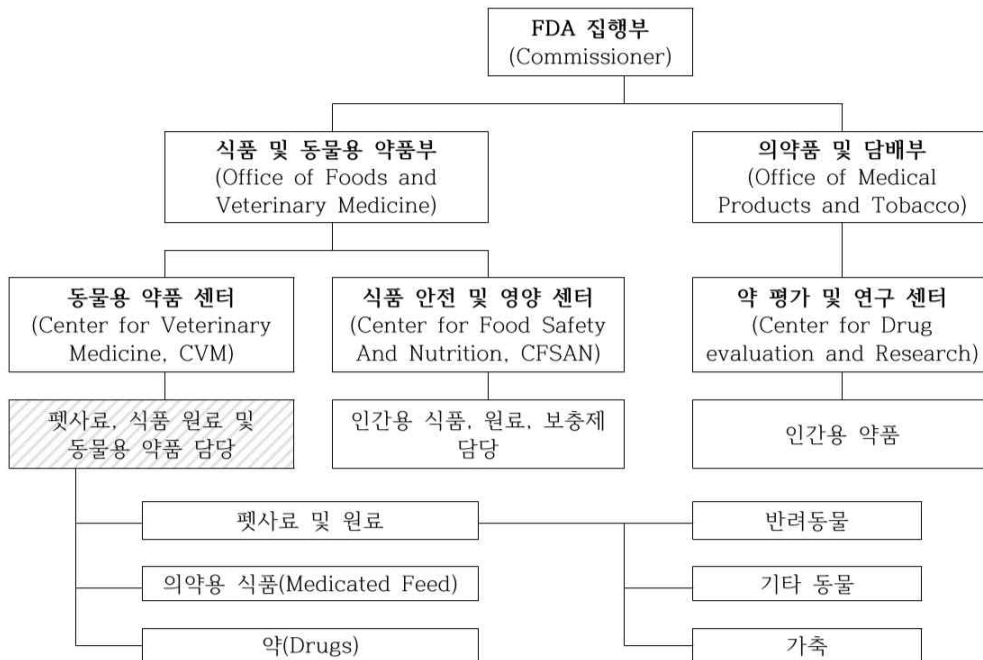
(3) 미국

- 미국의 펫사료 안전관리는 FDA와 각 주의 농업부를 위주로 이루어지며,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규정은 FDA와 미국사료협회(AAFCO)와의 협업을 통해 제정.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는 미국의 펫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관리기관으로, 안전성 검사, 제조 원료에 대한 승인 및 위생 등 펫사료 안전의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펫사료 원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의 승인, 펫사료 성분과 관련한 민원 처리 및 조사(샘플 채취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제조사 및 원료 공급사에 대한 검사(안전성 검사)를 실시.
- AAFCO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연방 및 주) 법령 개정 및 펫사료의 원료에 대한 정의, 펫사료의 영양 기준치를 설정.

[그림 V-5] FDA 조직도



자료: Matulka 2017(펫푸드포럼 발표자료 “FDA GRAS Final Rule: Impacts on Getting Safe Feed Ingredients into Pet food”); 장홍석 외(2017) 재인용

○ 수의학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

- FDA의 6센터 중 하나로서, 펫사료, 반려동물용 간식 및 산업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및 제조 과정의 위생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에 관한 정책 개발, 권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반면, 수의학적 조언 등 반려동물의 건강 등에 관한 업무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¹⁷⁹⁾.

○ 주(州) 농업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 미국의 각 주별 농업부는 펫사료 관련 2차 관리기관으로, 펫사료의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의 허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 세부적으로는 펫사료(사료 및 간식) 제조업장 인허가, 시판 중인 펫사료의 라벨링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박테리아 등 위험물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
- 또한, 단독 혹은 FDA와 협력하여 펫사료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에 대해 조사하며, 일부 주에서는 AAFCO와 협력하여 주(州) 법 개발, 펫사료 영양 기준치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주(州) 별 업무의 영역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음.

○ 미국사료협회 (The Association of American Control Officials, AAFCO)

- 미국 사료협회 (AAFCO)는 규제에 대한 집행 기능이 없는 독립 주체로 (주 농업부 혹은 FDA와 구분), 대다수 주에서 받아들여지는 입법지침 (Model Bill)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개·고양이에 대한 영양 요구량, 펫사료 라벨링 규정의 설정하고 펫사료를 포함한 사료원료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을 확립·배포.

○ 농업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 미국 농업부의 경우 펫사료의 규제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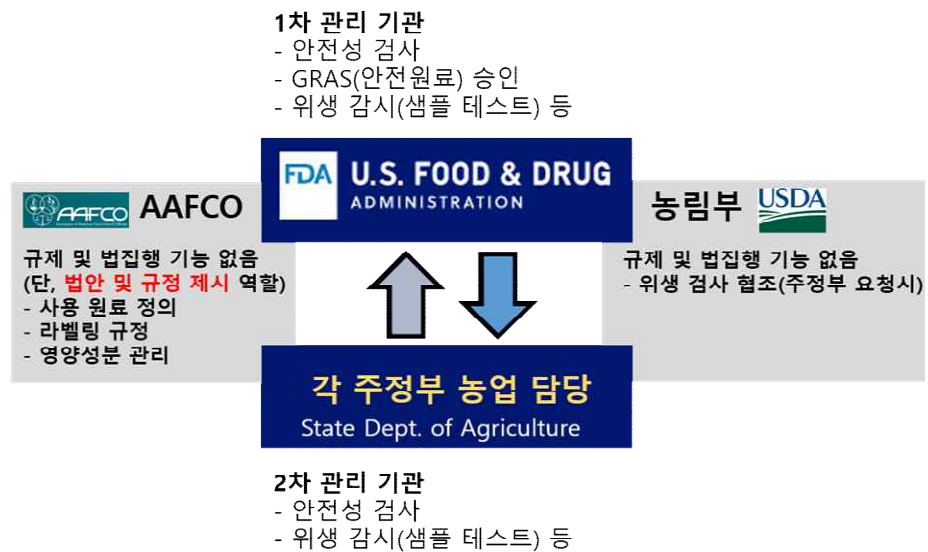
179) <https://www.fda.gov/about-fda/fda-organization/center-veterinary-medicine>

자발적으로 펫사료 인증프로그램(Certified Pet food Program)을 운영하나, FDA나 주(州)정부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은 프로그램.

※펫사료 인증프로그램은 펫사료의 검사, 인증 및 식별을 제공하는 식품안전검사국(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의 자발적 검사 서비스(9 CFR Part355)를 말함.

- USDA의 APHIS(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해외로 수출되는 펫사료에 한하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수출품이 수입국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 및 가이드라인¹⁸⁰⁾을 제공.

[그림 V-6] 미국의 펫사료 정책 거버넌스



자료: 장홍석·문석란·백진화·홍혜수. 201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EU

- 유럽연합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 보호 총국에서 펫사료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 관리하며,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위해성에 대한 평가, 유럽식품 수의청에서 EU규정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

180) https://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apm.pdf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 EC는 유럽연합 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보건·소비자 보호 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G SANTE)
 - 보건·소비자 보호 총국은 유럽 집행위원회 내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행정조직으로, 식품 및 사료 (사료 및 펫사료)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담당.
 - 식품안전정책에는 표시 및 영양(Labelling and nutrition), 생물학적 안전(Biological safety),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 동물 부산물(Animal by-products), 식품 개선제(Food improvement agents), 혁신 식품(Novel foods), 동물 사료(Animal feed), 식품 폐기물(Food waste), 식품 사기(Food fraud), 신속 경보 시스템(RASFF, Food&feed Safety Alerts)이 속함¹⁸¹⁾
- 식물·동물·식품·사료상설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Plants, Animal, Food, Feed, PAFF)
 - 농장의 동물건강 문제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 전체를 다루며 EU가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
 - 유럽집행위원회(EC)가 채택하고자하는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 EU 식품·사료안전시스템의 과학적 평가 및 연구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
 - 식품·사료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험의 식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일관된 방법론 개발 및 일반 대중들에게 과학적 결과 및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81) 이주형·권소영·김원용·권미진·최웅재·van der Meulen. 2018.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p48. 식품안전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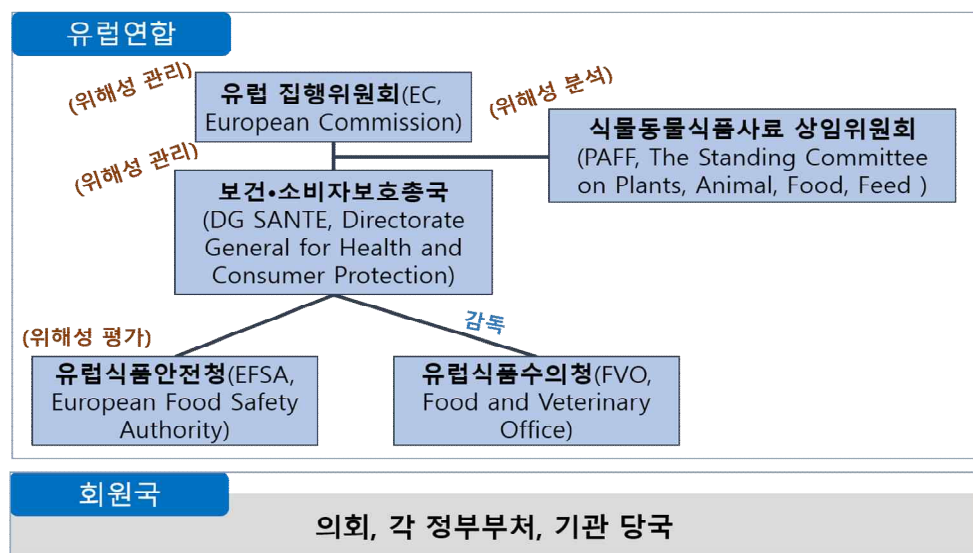
○ 유럽 식품 수의청(FVO, Food and Veterinary Office)

- EU법이 제대로 시행 또는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의 기능 수행.
- 세부적으로, ① 회원국이 EU법을 국내법으로 전환(transposition)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② EU법 적용에 관한 회원국 및 제3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분석, ③ 회원국의 기관이 EU법을 적용하는 상황 및 집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on-the-spot inspections)함.

○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édération européenne des industries des aliments pour animaux familiers, FEDIAF)

- FEDIAF는 법규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는 독립주체이나, 펫사료 산업계의 공동체 규범 정립을 통해 국가 간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 FEDIAF는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 사례 안내서’와 ‘펫사료를 위한 좋은 표시사항 실습’과 같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발간을 통해 업계가 펫사료 제조,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위생, 안전 등 EU의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V-7] EU의 식품·사료 안전 체계 - 위해성 분석·평가·관리



2. 펫사료 추적(Traceability) 관리체계 제도개선

(1) 한국

□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사료검사기준」 제16조

-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사기관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

※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적합하게 임명된 자 및 신고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 주요 특징

- 사료검사원은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대한 장부(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 배합비율표 등) 및 자가품질검사대장에 한하여 연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

- 반면,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의 장부비치 의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사료의 형태, 제조번호, 수량 등 구체적 의무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세부사항

○ 장부 비치의 적용대상

-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사기관

○ 장부의 기재사항

<표 V-4>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제품성분표·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3. 수입업자	가. 제품수불대장 나. 제품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4. 판매업자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5. 사료시험검사기관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증명서
6. 사료검정기관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기록서

○ 기재방법 및 보존기간 등

- 기재방법: 종이 및 전자문서
- 보존기간: 8년(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

(2) 일본

□ 근거법령

○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 만일의 경우 제품의 폐기·회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동 법 제10조(장부의 비치)는 관련 업계에 사업자 신고 및 장부 비치의 의무를 부여.

- 동 법 제11조(보고의 징수) 및 12조(현장검사 등), 제13조(센터에 의한 현장검사 등)는 농림수산대신, 환경대신 및 FAMIC에게 해당 업체의 장부 비치 유무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주요 특징

- 사업자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회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장부의 비치 여부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한 현장검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되며, 이때 검사를 위해 채취된 사료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으로 산정한 대가를 지불.
- 현장검사 시 채취된 사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제품의 명칭 및 시험 결과 법령 위반의 유무 등과 함께 공표.

□ 세부사항

○ 장부 비치의 적용대상

- ① 판매목적의 펫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
- ②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 이때 ‘양도’는 다른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원료사료의 판매 또는 포장의 위탁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판매업자’란 펫사료를 판매하는 도매상, 마트, 동물병원 등을 말함. 단, 소매업의 경우는 장부 기재의 의무가 예외.

○ 장부의 기재사항

- ① 제조업체의 경우
 - 사료의 명칭·수량(로트 당 수량)·제조일자
 - 제품별 원료의 명칭·수량 및 원료의 구입일자 및 매입처(원료 제조사 및 원산지는 선택)

② 수입업체의 경우

- 수입 사료의 명칭 · 수량 · 수입연월일 · 포장형태
- 수입 사료의 수입국 및 매입처
- 수입 사료의 제조국가 및 원재료의 명칭 · 생산국

③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된 사료의 명칭 · 수량
- 양도하는 상대방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연월일 · 포장형태
- (무료 샘플 배포 시) 관련 사항 또는 해당 샘플 보존

○ 기재방법 및 보존기간 등

- 기재방법: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이 원칙. 단, 특성상 불가한 경우 송장 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존기간: 2년

(3) 미국¹⁸²⁾

□ 근거법령

- 식품의약화장품법(FDCA) 제414조(기록관리와 점검) 및 21CFR Part1(일반 집행규정), Subpart J(기록의 구축, 유지 및 접근가능성)

□ 주요 특징

- 식품 및 사료의 제조, 가공, 포장, 수송, 분배, 수령, 보관 또는 수입하는 경우 최소 2년간 관련 기록 작성 유지 의무
- FDA에게 기록검사권 부여

18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a. 미국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 19p.

□ 세부사항

○ 이력추적제의 적용대상

- 미국 내 제조 가공, 포장, 운송, 유통, 수령, 보관 또는 수입자
-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외국 시설

※ 제외대상: 농장, 음식점, 비영리급식업체, 비가공용 어선, USDA 관리대상인, 수출용 제조·가공 원료 외국시설, 소매점

○ 장부의 기재사항

- 모든 식품 및 사료의 직접 공급원에 대한 정보: 비운송인인 직전 공급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수령한 식품 및 사료의 종류, 수령일, 식품 및 사료의 제조번호 또는 여타 식별번호, 수량, 운송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 운송 과정 기록: 기록보관의무자 직전 식품 및 사료보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령일, 운송인 다음 수령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인도일, 식품 및 사료의 종류, 제조번호 또는 여타 식별번호, 수량, 최초 수령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수단

○ 기재방법 및 보존기한

- 기재방법: 종이 및 전자형식
- 보존기한: 2년

(4) EU(유럽연합)¹⁸³⁾

□ 근거법령

- 「일반식품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
 - EU 내의 모든 농식품 및 사료업계에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 일반식품법의 시행으로, 해당 업계는 투입재와 생산물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담당기관에는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부여.
 - 큰 특징으로는 작업 단계별로 바로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업종간의 연계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이력추적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 결정을 인정

□ 주요 특징

- 첫째, 식품, 사료 및 식품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 등에 대한 이력 추적제도는 생산, 가공, 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큰 틀 안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 둘째, 식품 및 사료업체는 제품 생산 원재료인 식품, 사료 및 식품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과 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식품과 사료업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공급받는 다른 사업자나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넷째, EU 시장 내의 식품과 사료는 이력추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라벨이 부착 등 확인 가능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8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b. 해외 주요국 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 현황. 15-25p.

□ 세부사항

○ 이력추적제의 적용대상

- 식품 및 사료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그 어떤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 활동(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운송업체 및 창고업체도 포함됨)
- 슈퍼마켓 및 외식업체와 같은 소매상 간의 교역에서도 이력추적은 적용되며, 냉장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단, 수의의약품이나 씨앗처럼 농업생산투입(input)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은 예외
- EU 역외의 제3국에 대하여는 이력추적이 적용되지 않으나, EU 역내의 수입업자부터 소매업자까지는 포함됨 (EU수입국은 제3국에서 수출한 제품의 출처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장부의 기재사항

- 공급 업체명 및 주소와 공급된 제품 정보
- 고객명 및 주소와 배달된 제품 정보
- 날짜와 필요 시 거래 및 배달 시간
- 제품의 부피 또는 양

○ 기재방법 및 보존기한

- 기재방법: 기재방법과 관련된 별도 기재사항은 없음.
- 보존기한: 최소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 산업체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세무관리를 목적으로 통상 5년동안 기록).

3. 국내산 원료수급을 위한 제도개선

□ 해외 수입이 많은 펫사료는 고용유발 효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펫사료 원료 기준은 식품과 가깝게 고품질화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에 한계를 가져옴.

○ 펫사료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9,568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중 수입이 6,235억 원 규모로 65.2% 차지

※ 고가의 프리미엄 사료 중심으로 수입브랜드(네추럴발런스 등)가 펫사료 시장 점유

○ 반려인 1,000만 명 시대와 더불어서 펫사료는 식품과 가깝게 품질이 고급화 되고 있는 반면, 펫사료를 관리하는 「사료관리법」은 산업동물용 사료의 제조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방향과는 거리감이 있음.

- 현행 「사료관리법」의 기준 및 규격은 산업동물용 사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고품질화 되고 있는 펫사료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펫사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사용가능한 원료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국내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4종의 품목이 사용 가능하나, 미국 AAFCO OP(Official Publication)의 경우에는 56종을 사용할 수 있어 국내에 비해 다양한 제품개발의 가능성을 시사.

<표 V-5>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펫사료의 주된 원료

구분	주원료
주식	육분, 가금부산물건조분, 계란분말, 유도단백질 등
간식	고기류(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부산물), 고구마, 치즈, 곡물류(쌀가루,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8호) [별표1] 단미사료의 범위 및 [별표 3의2]의 식품 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의 범위에 따라 사용

- 펫사료 원료 중 계육분, 도축부산물 등의 경우 95%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으로 국내산 제품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미국산 등의 수입산의 사용이 늘고 있음.
 - 국내 펫사료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펫사료 고품질화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경우, 다양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수입산 원료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뿐만 아니라, 국내 도축부산물에 대한 낮은 소비자 신뢰는 고품질을 향해 가는 제조사들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펫사료 제조 원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국내산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곤충 등 대체 동물성단백질을 펫사료의 원재료로 활용토록 하여, 기능성, 고품질 펫사료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곤충은 번식이 매우 빠르고, 유기물의 순환에 기여하여 대사 과정에서 식물체의 단백질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물성단백질으로 변화하여 축적하는 등 영양소 이용효율이 매우 높은 단백질원.¹⁸⁴⁾
 - 뿐만 아니라 사육기간이 2~4개월로 타 가축에 비해 짧아서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한 영양학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도축부산물의 고품질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도축부산물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축산부산물에 대한 안전 규격 강화 등을 통한 투명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도축부산물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 높은 영양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펫사료에 사용되는 국내산 도축부산물은 낮은 소비자 신뢰로 인하여 많은 제조사들이 사용함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도축부산물이 펫사료의 중요한 단백질원으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도축부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시설 개선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제품 원료에 대한 사용 관리 등 체계적 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임.

184) 농사로, 작목기술정보, 사료용 곤충

□ ‘곤충 등의 대체 동물성단백질 활용’ 을 통한 국내산 원료 공급체계 구축

- 곤충이 사료원료로 각광 받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에서 곤충을 원료로 펫사료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국내기업으로는 ‘엔토모’, ‘푸디웜’ 등의 업체가 동애등애를 원료로 하여 펫사료(사료 및 영양보조제, 간식 등)를 제조하며, 해외에서는 ‘인섹트도그(Insectdog)’, ‘엔토마펫푸드(Entomapetfood)’, ‘요라(Yora)’ 등의 업체에서 곤충단백질을 원료로 펫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 곤충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안전성은 펫사료의 부족한 단백질 원료에 대한 요구에 적합한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영양학적으로도 곤충은 40~80%의 단백질과 풍부한 필수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10~40%, 기타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대체 단백질 원료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

[그림 V-8] 동애등애의 활용



자료 :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제159호. 농촌경제연구원

□ 국내산 도축부산물의 펫사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신뢰 구축 체계 마련¹⁸⁵⁾

- 위생적인 도축부산물 생산을 위하여 도축부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등의 자원을 통한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산 도축부산물에 대한 규격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차등화를 돕으로서 품질과 위생 상태에 따라 차등 가격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185)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7. 육류 부산물 유통 실태 및 위생 안전성 제고. 187p.

○ 도축부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할 수 있는 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개선하여야 함.

□ 국제적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산 펫사료 제조원료 및 완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수입되는 다양한 펫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AAFCO 및 FEDIAF 등 해외 사료 분류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원료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원재료에 대한 허가를 통해 펫사료 재료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곤충 9종*을 식용곤충으로 인정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번데기 등을 사료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동물성 원료로 명시하고 있음.

* 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한시인정원료), 수별번데기 (한시인정원료)등¹⁸⁶⁾

- 미국의 경우 곤충 기반 식품은 「식의약화장품법」에 따라 GMP 시설에서 제조하고 곤충사료는 일반적 안전기준(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에 의해 승인되도록 하며, 「식품안전현대화법」 식용곤충 역시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시장의 확대를 도모.¹⁸⁷⁾

○ 해외 선진국은 펫사료 원료의 기준 및 정의에 있어, 민간 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펫사료 트렌드에 발맞춘 유기적 변화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미국 AAFCO는 ODI(Online database Ingredients)를 운영하며, 사료 원료의 정의 및 명칭 등에 관한 공공의 접근성의 확대하고 실시간 변화를 가능케 하는 등 원료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펫사료 원료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개선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186)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수별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보도자료, 2020.7.9

187) 류정표. 2017.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세계농업」 제 20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를 위하여 첫 째, 국내외 원료사료 품목별 기준·규격 정보를 수집 및 DB화하고 영양기준을 평가하는 등 원료에 관한 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시군구의 새울 행정정보시스템, 관세분류코드(HS-code)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펫사료 원료의 수급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III장에서 전술한 펫사료 생산실적조사(가칭)와 같은 별도의 통계로 배합사료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 단미사료에 대한 생산실적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4.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 구축

- 펫사료 산업의 발전과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유기적인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현안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펫사료 소비자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청.
- 펫사료 산업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제품의 품질, 표시, 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산업계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차원에서는 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펫사료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소비의 목적 및 제품선택의 기준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 제도와 통계기반을 정비하고 펫사료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함.
 - 현재 산업동물용 사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료관리법의 개정 혹은 펫사료를 위한 별도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펫사료에 적합한 원료 기준, 표시기준의 설정 등 관리기반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통계기반 구축이 필요.
- 국내산 펫사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표시·인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
 - 펫사료의 원료 및 성분에 대한 높은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펫사료의 원료 및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펫사료 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및 정보수집, 더 나아가 심층시장분석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펫사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사료제조업 관련 민간협회를 활용하여 연간 반려동물 양육실태와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실태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분류체계를 개정하여 펫사료 산업의 제조, 유통, 소비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 산업계는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산업실태와 소비자 수요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일본 펫사료협회 및 미국 사료협회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조,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계 자체의 안전관리기반 구축이 필요.
-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품질, 안전관리 규정 및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체적인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
-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세한 유통, 소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펫 관련 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합리적 정책 방향 설정과 해당 산업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민관합동의 공동 노력을 통해 펫사료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이 국내 농업부문의 신수요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적 농업과 펫사료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펫사료 산업은 식품산업과 유사하게 농축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신수요처이므로 펫사료 산업과 시장의 성장이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이 요청.
- 펫사료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신선농축산물이나 부산물을 주 원료로 활용하는 자연식, 동결건조제품, 수제간식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식품과 유사하게 펫사료 원료의 성분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산 펫사료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을 증진시켜 수입산 펫사료를 대체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산 펫사료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친환경 농축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이와 같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원료의 성분과 주 원료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권장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산 농축산물 원료의 사용 확대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펫사료 제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원료 농축산물을 개발하도록 R&D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프리미엄 펫 사료 제품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국내외 시장에 시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펫사료를 포함한 사료산업의 육성, 관리 등을 관할하고 각 시·도,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에서는 펫사료 제조, 유통, 안전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료공정 설정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제조업 등록 및 제조 관련 규정 충족 여부의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는 각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음.
 - 국립축산과학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료공정의 설정, 검정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농협중앙회 및 한국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등 관련 민간 협회는 사료의 수입 및 검사, 사료생산 통계 등을 작성.
- 일본의 경우 펫사료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며,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에서 규제업무를 관할, 기타 관련 단체들 차원에서도 펫사료 안전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의 「소비·안전국」 내의 축수산안전관리과는 '반려동물용사료 대책반'을 별도로 두고 펫사료를 산업동물용 사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농림수산성은 중앙환경심의회 및 농업자재심의회 등 펫사료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를 두고 있으며, 지방농정국에서 실제 행정적 집행(신고 및 검사)을 실시.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펫사료 및 사료의 품질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펫사료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담당.
 - 일본 펫사료 협회는 제품의 안전관리, 추적성확보 등 업계의 자주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에서 수집된 안전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는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펫사료 안전에 대한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일반 사료가 아닌 처방식사료에 대해 수의처방사료 평가센터에서 애완동물 영양 학회와 함께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처방사료의 평가, 검증, 보급 등을 실시.

- 미국의 펫사료 안전관리는 FDA와 각 주의 농업부를 위주로 이루어지며,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규정은 FDA와 AAFCO와의 협업을 통해 제정.
 - FDA는 미국의 펫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관리기관으로, 안전성검사, 제조 원료에 대한 승인 및 위생 등 펫사료 안전의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각 주별 농업부는 펫사료 관련 2차 관리기관으로, 펫사료의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의 허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 미국 사료협회 (AAFCO)는 규제에 대한 집행 기능이 없는 독립 주체로 FDA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연방 및 주) 법령 개정 및 펫사료의 원료에 대한 정의, 펫사료의 영양 기준치를 설정하며, 대다수 주에서 받아들여지는 입법지침(Model Bill)을 마련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 보호 총국에서 펫사료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 관리하며,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위해성에 대한 평가, 유럽식품 수의청에서 EU규정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
 - EU 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 보호 총국은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행정조직으로, 식품 및 사료 (사료 및 펫사료)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담당.
 - 유럽식품안전청은 EU 식품·사료안전시스템의 과학적 평가를, 유럽 식품 수의청에서는 각국이 EU의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 유럽 펫사료 산업연합은 법규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는 독립주체이나, 펫사료 산업계의 공동체 규범 정립을 통해 국가 간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펫사료 제조업계 차원에서 펫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주적인 책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은 민간협의체가 정한 자주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일본은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3조(사업자의 책무)에 따라, 일본 펫사료업계는 다양한 자주 노력을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그 예로는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실시기준’, ‘펫사료 표시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FDA와 AAFCO간의 협의를 통해 펫사료의 원료 및 제조표준, 표시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제조기준 및 표시사항에 관한 FEDIAF의 기준을 연합국 내의 공동체 규범으로 설정하여 국가 간 합목적성을 확보.
-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우리 역시, 민간 업계에 ‘책임’ 과 ‘자율’ 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및 국내 사료 시장의 성장을 모색할 필요.

□ 또한, 펫사료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

- 우리나라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내의 축수산안전관리과에 ‘반려동물용사료 대책반’을 별도로 두고 펫사료를 산업동물용 사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반려동물용사료대책반에서는 펫사료의 기준 및 규격 인정·지도, 제조업자 등의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반려동물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관찰하고 있음.
- 펫사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현안대응 및 제도개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이 필요.

□ 또한, 펫사료의 제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채널의 구축이 필요.

○ 해외 선진국은 RASFF 등 펫사료 관련 사고 및 위험을 통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일본펫사료협회는, 업계 및 단체에서 수집한 펫사료 안전 관련 정보가 협회를 통하여 즉각 정부에 제공되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

-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반려동물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파악된 경우에 즉각 긴급정보를 발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 우리 역시, 다양한 주체가 수집하는 사료 안전정보를 전국에 즉각 전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해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장부의 비치와 관련하여, 제조·판매·유통 단계에서의 장부 기재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 기재사항의 마련이 필요

○ 해외 선진국은 장부 기재사항에 관한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여, 펫사료의 위험상황을 대비하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이 사료의 종류, 제조번호, 전화번호, 수량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적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으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사업주체별 구분된 기재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전자문서 형태의 장부비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펫사료 안전 문제의 발생 시에 보다 빠른 협조를 가능케 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명확한 장부의 기재사항을 마련하여, 펫사료 안전 문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펫사료 제조 원료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펫사료 시장의 확대에 유연한 접근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외 선진국은 펫사료 원료의 기준 및 정의에 있어, 민간 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펫사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유기적 변화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미국 AAFCO는 ODI(Online database Ingredients)를 운영하며, 사료 원료의 정의 및 명칭 등에 관한 공공의 접근성의 확대하고 실시간 변화를 가능케 하는 등 원료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펫사료 원료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개선이 가능토록 하는 상설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또한 펫사료 원료의 성분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연계된 펫사료 제품의 개발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펫사료 산업의 발전이 국내 농업부문의 성장과 고부가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요청.

○ 펫 사료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펫사료의 성분과 원료개발은 수입산 펫사료를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국내산 펫사료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농업부문과 펫 사료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펫 사료 제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내산 원료 농축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충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 보강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국내 자료>

- 강영기.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일본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및 관련 법제.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애완동물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설명
_____. 2018. 반려동물 유기사료 Q&A자료
_____. 2018. 2018년부터 반려동물 유기사료인증제도가 전면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유기사료 홍보책자)
- 김승래, 2018, 축산업 위생관리 발전방향 연구, 충남대학교, 3p.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 작성개요
_____.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설명자료
_____. 2019.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2.1
_____. 2020. 2019 배합사료 생산실적
_____. 2020.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4.29.
- 동물보호법제 개선 추진위원회, 2013,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제안서, 22p.
- 류정표. 2017.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세계농업」 제 20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석란, 2017, 국외출장복명서(미국 캔자스시티 17.4.2-4.8). 7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삼성KPMG연구원. 펫코노미시대, 펫비즈니스트렌드. 「Issue Monitor」 제 9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07.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재인용
_____. 2016a. 미국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 19p
_____. 2016b. 해외 주요국 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 현황. 15-25p
_____. 2020. ‘수벌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보도자료, 2020.7.9
- 신동철. 2019.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현황. 「세계농업」 제15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 펫코노미시대,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다. 2020.3.8. 접속.
<https://www.shinhancardblog.com/974>
- 신승우. 2002. 200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통계분석연구」 2002년 봄(제7권 제1호) pp.143-153,
- 오상석, 2014, 미국식품법의 변화, 「세계농업」 제16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임 · 이수진 · 동그라미. 2015.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
- 이주형 · 권소영 · 김원용 · 권미진 · 최웅재 · van der Meulen. 2018.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 장홍석 · 문석란 · 백진화 · 홍혜수. 201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전상곤 외. 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조선에듀. 2019.12.25. 반려동물 가구 네 집 중 한 집 '펫코노미' 시장 커진다 <펫(pet)+경제(economy)>
- 중앙시사매거진. 2019.12.02. [34] [급성장 중인 ‘펫테크’ 산업] 앱으로 고양이 배변 점검하고 건강관리 (1511호)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영철. 2013.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세계농업」 2019. 5월호. 농촌경제연구원
- 코리아리서치. 2019.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교육원. 2015. 국가통계 이해
-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_____. 각년도. 광업제조업조사
 _____. 각년도. 경제총조사
 _____. 각년도. 소비자물가지수
 _____.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_____. 각년도. 지출목적별 품목 및 가중치
 _____. 2016.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보도자료. 2016.7.1
 _____.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
 _____. 2018.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18.12.27
 _____. 2019.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결과 보도자료. 2019.4.25
 _____. 2018.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19.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결과 보도자료. 2019.4.25
 _____. 2019.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부문)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19. 경제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19. 서비스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19. 소비자물가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조사표(일반)
 _____.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설명자료
 _____. 생산자물가지조사 통계설명자료
 _____.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한국사회경제연구원. 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한국식품연구원. 2017.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가이드북 식품예방관리, 4p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7. 육류 부산물 유통 실태 및 위생 안전성 제고. 187p.
- 한국은행. 2019 생산자물가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19.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 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_____. “펫푸드 첨가물 논란”에 대하여 (사)한국 펫사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황원경·정귀수·김도연. 2018. 2018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뉴스원. 2019.5.10. 반려동물 사료업계, 보존제 논란에 정면대응…“불안감 조장” 과도.
 2020.4.11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3617221>
- 데일리벳. 2015.9.21. 반려동물 사료 선택 시 유의사항. 2019.12.27 접속.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49547>
 _____. 2019.1.22. ‘근거없는 선동은 그만’ BHA 등 펫푸드 첨가물에 대한 Q&A. 2020.2.10.
 접속.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06863>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9.5.6. 국내서 판매되는 사료 24종 중 22개 방부제 검출...“발암의심 물질도“ 2020.4.8 접속. <https://biz.insight.co.kr/news/226147>

이코노미조선. 2018. “반려동물 입맛 잡아라” …1조원 한국 펫푸드 시장. 2020. 4.17 접속.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477#

중앙일보. 2017.6.25. 반려인이 맹신하는 사료등급의 비밀 <https://news.joins.com/article/21696925>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20.3.2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_____. 가계동향조사 통계표 목록. 2019.3.10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_A_4

_____. 2019.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019.2.28.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FE>

_____. 서비스업조사보고서. 2019.2.28 접속.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OV>

_____. 소비자물가지수 통계표 목록. 2019.3.5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C1_15

_____.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2019.3.5 접속.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cp/1/2/index.static

_____. 전국사업체조사 통계표 목록. 2019.3.2 접속.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

_____. 2019. 경제총조사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2020.3.11. 접속.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I1001

푸드투데이. 2019.12.18. [이슈점검] 펫푸드 키우겠다는 정부, “이미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 2019.12.27 접속. <https://foodtoday.or.kr/mobile/article.html?no=161042>

한국경제. 2019.5.12. 반려동물 1000만 시대...’펫코노미’ 뛰어드는 금융사. 2020. 4.17 접속.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029106>

해피펫. 2019.12.30. 육분 넣어 만든 사료 “이건 오해입니다“...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2020.4.12 접속. <http://www.happy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6>

_____. 2020.5.3. 잘먹는 명냥이들...“펫케어 시장 2조 예상...70%는 펫푸드“. 2020.8.12. 접속. <http://www.happy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편람(2020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외 자료>

- Alemanno. 2006. Food Safety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in What' s The Beef? The Contested Governance Of European Food Safety, p.240.
- AAFCO. 2019. The AAFCO Ingredient Definition Process.
https://www.aafco.org/Portals/0/SiteContent/Industry/IDC_Flow_Chart_Process.pdf?v20190412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APPA). 각년도. National Pet Owners Survey
_____. 2020 Pet Industry Market Size & Ownership Statistics.
2020.8.12. 접속 https://www.americanpetproducts.org/press_industrytrends.asp
- ALIVE. Key Points of The Revised Animal Welfare Act. 2020.2.4 접속.
<http://www.alive-net.net/english/en-law/201208awactpoint.html>
- Bernd M.J. van der Meulen, 2013, The Structure of European Food Law, European Institute for Food Law, 73p.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Pet ownership, Market size of Pet Care, Expenditure per Pet, Number of Vets. Retrieved from <https://www.portal.euromonitor.com/> 재인용, Pet Care Industry: Business Overview and Opportunities, Wing Chi NG (2017), 석사학위 논문
_____.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European Unio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2020.1.18 접속.
<https://www.agr.gc.ca/eng/international-trade/market-intelligence/reports/sector-trend-analysis-pet-food-trends-in-the-european-union/?id=1543006235752>.
- _____. 2018.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2018.1.20 접속.
<https://www.agr.gc.ca/eng/international-trade/market-intelligence/reports/pathfinder-global-dog-and-cat-food-trends/?id=1535032183174>
- _____.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Japa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2020.1.18 접속.
<https://www.agr.gc.ca/eng/international-trade/market-intelligence/reports/sector-trend-analysis-pet-food-in-japan/?id=1537539744794>
- _____. 2018. China Pet population and ownership 2019 update(China pet market) 재인용. 2020.1.18 접속.
<https://www.chinapetmarket.com/china-pet-population-and-ownership-2019/>
- _____.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재인용. 2020.1.20. 접속.
<https://www.agr.gc.ca/eng/international-trade/market-intelligence/reports/sector-trend-analysis-pet-food-trends-in-south-korea/?id=1554301190928>
- _____, 2019a. The Changing Face of Global Pet Care 발표자료
- _____, 2019b. The world market for pet care
-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and white papers
_____. How does RASFF work
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how_does_rasff_work/notifications_process_e
- EU. TARI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_____. 2019. Overview of FDA’s Animal Feed Safety System (AFSS).
<https://www.fda.gov/media/81751/download>

_____. Pet Food Labels – General. 2020.6.2 접속.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pet-food-labels-general>

_____. PETNet: An Information Exchange For Pet Food Related Incidents. 2020.7.5 접속.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et-food/petnet-information-exchange-pet-food-related-incidents>

_____. Sulfanilamide Disaster.
<https://www.fda.gov/files/about%20fda/published/The-Sulfanilamide-Disaster.pdf>

FEDIAF. <http://www.fediaf.org/>

FEDIAF. European Facts & Figures 2018

FEDIAF. 2018. Guide to Good Practice for the Manufacture of Safe Pet Foods

Julie Springer. The 2017-2018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Debut 발표자료

Market and Markets. Pet Food Ingredients Market by Ingredient, Source, Pet, Form, and Region. 2020.8.12. 접속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global-pet-food-and-care-products-market-147.html>

Mintel, 2018 Pathfinder – Global dog and cat food trend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2018.1.20 접속.
<https://www.agr.gc.ca/eng/international-trade/market-intelligence/reports/pathfinder-global-dog-and-cat-food-trends/?id=1535032183174>

National Archives catalog. County Business Patterns.

Statista. 2019.5. Number of dogs and cats kept as pets worldwide in 2018. 2020.4.1 접속.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44386/dog-and-cat-pet-population-worldwide/>

The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The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 Survey Materials

_____. Consumer Price Indexes Overview.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cpi/overview.htm>

_____. 2018. 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7. The Consumer Price Index (Updated 2-14-2018)

_____. CPI FAQs.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cpi/questions-and-answers.htm>

_____. Producer Price Indexes.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ppi/home.htm>

_____. PPI Stage-of-Processing to FD-ID Aggregation System Index
 Concordance Table

_____. PPI FAQs. 2020.3.17 접속. <https://www.bls.gov/ppi/ppifaq.htm>

US Census Bureau. Monthly Retail Trade.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retail/index.html>

_____. Annual Retail Trade Survey (ARTS)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rts.html>

_____.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ASM)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sm.html>

_____.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Methodology. 2020.3.20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sm/technical-documentation/methodology.html>

_____. ASM Surveys, Instructions, and Letters-2019 multiple establishment companies preview survey questions

_____. 2016 Statistics for Industry Groups and Industries

_____. Statistics of U.S. Businesses (SUSB). 2020.3.19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susb.html>

_____. 2017 SUSB Annual Data Tables by Establishment Industry- Number of Firms, Number of Establishments, Employment, Annual Payroll, and Preliminary Estimated Receipts by Enterprise Employment Size for the United States, All Industries: 2017. 2020.3.19 접속.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7/econ/susb/2017-susb-annual.html>

_____. County Business Patterns (CBP). 2020.3.21 접속.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cbp.html>

_____. 2017. County Business patterns Data User guide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20) Revision 6 Chapter 23

UN Comtrade

日本農林水産省. 畜産部ホームページ- 飼料. 2020.3.15 접속.

https://www.maff.go.jp/j/chikusan/sinko/lin/l_siryu/#chousa

一般社団法人ペットフード協会. 平成 30 年度ペットフード産業実態調査の結果

日本標準産業分類. 日本標準産業分類(平成25年10月改定)(平成26年4月1日施行)-分類項目名.
2020.3.15. 접속.

https://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angyo/02toukatsu01_03000044.html#e

_____. Jap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 13, October 2013)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Classification

日本経済産業省. 工業統計調査. 2020.3.12. 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

_____. 商業動態統計. 2020.3.12 접속.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syoudou/gaiyo.html>

_____. 平成30年工業統計調査 商品分類表

_____. 第1表 商品別販売額等及び前年(度、同期、同月)比増減率

日本総務省統計局. Industrial Classification used in the 2012 Economic Census for Business

Activity. 2020.3.15. 접속. <https://www.stat.go.jp/english/data/e-census/2012/industry.html#e>

_____. 平成24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2/index.html>

_____. 令和元年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の概要. 2020.3.13.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9/gaiyou.html>

_____.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概要.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_____.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の調査票、オンライン調査利用ガイド、調査票の記入のしかた及び分類表.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ichiran.html>

日本総務省統計局.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製造業)「産業編」統計表データ日本標準産業分類. 2020.3.14 접속.

<https://www.stat.go.jp/data/e-census/2016/gaiyo.html>

_____. 平成28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産業別集計(製造業)「産業編」

_____. 平成26年全国消費実態調査.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sho/2014/index.html>

_____. 平成26年全国消費実態調査関連情報.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sho/2014/index2.html#kekka>

_____. 2019年全国家計構造調査の概要.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zenkokukakei/2019/cgaiyo.html#d>

_____. 家計調査(家計収支編) 時系列データ(二人以上の世帯・勤労者世帯)

_____. 小売物価統計調査.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index.html>

_____. 小売物価統計調査(動向編).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index.html>

_____. 付録2 調査品目及び基本銘柄.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2018np/pdf>

_____. 小売物価統計調査(動向編)について(2020年1月現在). 2020.3.16 접속.

<http://www.stat.go.jp/data/kouri/doukou/1.html>

_____. 消費者物価指数(CPI)結果時系列データ. 2020.3.16 접속.

<https://www.stat.go.jp/data/cpi/historic.html>

日本税関. 輸入統計品目表(実行関税率表)実行関税率表(2020年1月1日版)

日本環境省. 自然環境局 総務課 動物愛護管理室 ペットフード安全法 > 基準規格等.

2020.7.21 접속. <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petfood/standard.html>

日本 ペットフード公正取引協議会. 2015. ペットフードにおける景品類の提

供の制限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_____. 2016. ペットフード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日本 消費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e-Stat. 2015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 長期時系列データ 品目別価格指数. 2020.3.17 접속.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73&tstat=000001084976&cycle=0&tclass1=000001085995&tclass2=000001085936&tclass3=000001085996&tclass4=000001085939>

e-Stat. 小売物価統計調査 / 小売物価統計調査10年報 / 平成3~12年平均. 2020.3.14 접속.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71&tstat=000001012509&cycle=0&tclass1=000001012510&stat_infid=000000681131

日本ペット栄養学会 (Japanese Society of Pet Animal Nutrition)

日本 ペットフード公正取引協議会

日本獣医師会 (Japan Veterinary Diet Evaluation Center). <http://www.vdec.or.jp/about/>

_____. 2013. 療法食の適正使用に向けた課題と対応

Japan Pet Food Association. <https://petfood.or.jp/English/profile/index.html>

일본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미국 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FRPS)

EU 일반식품법 (General Food Law Regulation, R.178/2002)

EU 사료위생법 (Feed Hygiene Regulation, R.183/2005)

EU 사료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

Notice on community guides to good practice (2007/C 64/04)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17 of 15 June 2017 amending Regulation (EU) No 68/2013 on the Catalogue of feed materials

Commission Notice on the EU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compound feed for food producing animals (2016/C 275/04)

Council Directive 90/167/EEC of 26 March 1990 laying down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preparation,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medicated feedingstuffs in the Community (90/167/EEC)

Amazon <https://www.amazon.com/>

ACANA 제품 홈페이지 <https://intl.acana.com/ko/>

Spotfarms 제품 홈페이지 <https://spotfarmspet.com/>

Purina PEt care 제품 홈페이지 <https://purinapetcare.co.kr/>

부록 I 국가별 펫사료 관련 규정 현황 (요약)

■ 일반 현황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의회 및 회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MAFF)과 환경성 (Ministry of the Environment, M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사료관리법」 제3조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5조	21CFR1.4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및 하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일반 식품법 및 사료위생법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애완동물사료안전법」 및 하위 규정(성령, 정령 등) 펫사료 공정거래협회의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AAFCO의 원료기준(OP)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사료의 시판과 사용에 관한 조화적 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사료 안전성 및 공중보건을 달성하며,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은 물론, 내수시장의 효과적 기능 수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애호에 기여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식품(adulterated and misbranded food), 의약품 및 기구, 화장품 등의 주(州)간 이동을 금지.
	「사료관리법」 제1조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1조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전문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소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식품 생산동물(nonfood producing animals) 일체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 고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 범주에 동물을 위한 사료를 포함하고 있음. 동물은 개, 고양이, 영장류,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및 온혈동물 등을 말함.
	「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의 시판및사용에관한법률」 제3조2.의 (f)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시행령」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USC321 & 9CFR§1.1
사 료 의 종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배합사료, ②단미사료, ③ 혼합성 단미사료(소량의 보존제 및 향미제 첨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료원료(feed materials) ②혼합사료(compound feed) ③완전배합사료(complete-) ④보충사료(complementary-) ⑤특수목적식(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종합영양식(總合榮養食) ②간식(間食) ③요법식(療法食) ④기타 목적식(その他の目的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은 식품의 정의를 ‘사람이나 동물이 먹거나 마시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 정하고 있음. AAFCO의 Labelling Guide는 유기농·Human Grade·수의사 처방에 의한 식(Veterinary Medical Diets) 등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함.
	「사료등의기준및규격」 [별표1,3]	「사료의 시판및사용에관한법률」 제3조2.의 (g)-(o)	「펫사료표시에 관한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제3조2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AAFCO Labelling Guide

■ 주요 쟁점 사항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표시사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펫사료 표시에 대한 공정 경쟁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식품의약화장품법 표시사항 규정 (21CFR501)
	비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름,	FEDIAF(유럽 반려동물 식품산업연맹) ‘펫사료에 대한 모범 표시사항 안내서(Code of Good Labeling Practice for Pet Food)를 공동체 규범으로 채택하여 시행.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계로 이뤄진 펫사료 공정거래협회의 「공정경쟁규약」으로 정해짐(협회 소속 회원사에 한함).	AAFCO(미국사료협회)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표시기준을 ‘Labelling Guide’에 기술하고 있으며, 미국 내 대다수의 주(州)가 이를 채택.
원료구분 및 표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7조의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gulation(EC) 68/2013 Part C Regulation(EC) 429/2008 Regulation(EC) 767/200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펫사료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 별표2의 (1) 「펫사료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기관인 FDA와 AAFCO의 양해각서(MOU) 체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1]에서 [별표3]의 구분 및 표기에 따름(Positive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68/2013 규정에 따른 사료 원료의 정의 설립(Positive list) 429/2008 규정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승인한 첨가제 목록(88)(Positive list) 767/2005 규정에 따른 FEDIAF의 펫사료 원료의 표시사항 공동체 규범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의 포함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의심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Negative list) 펫사료에 첨가, 혼합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은 성령 별표1에 따름.(Positive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의 합의에 따라 원료 정의 및 기준 설정이 이뤄지며, AAFCO는 OP(Official Publication)을 주기적으로 편간하여 전국에 배포. (공통 사항은 GRAS에 의함) 최근 ODI(Online Database of Ingredients)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및 실시간 개정이 가능케 됨.(Positive list)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특 수 목 적 식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ission Directive 200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및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G Sec. 690.150(FDA 지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 신부전, 소화불량, 피부질환 등 35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FEDIAF의 영양기준에 따름. ▪ 목록은 목적, 특성, 대상 종, 표시사항, 권장기간, 기타로 구성. ▪ 수의사 의견을 구하는 것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서에 AAFCO의 영양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명시됨.¹⁸⁹⁾ ▪ ‘처방식’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식은 일반적으로 ‘요법식’이라 명명됨. ▪ 수의사의 처방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CA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약품’으로 정의함.¹⁹⁰⁾ ▪ 때문에 동물용 신약승인절차(ANADA)¹⁹¹⁾에 등록되어야만 함. ▪ 하지만 FDA는 특수목적식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수의사 처방 및 사료 안전기준 등 지침에 나열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위 원 회 조 직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등의기준및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위생법(R.183/2005)」 §22 ▪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R.767/200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31조 1항 ▪ 「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ペットフード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225-07-7001 및 CPG Sec. 665.100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②/사료 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8&§14/축산과학원공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의 설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DIAF(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는 근거 법률에 따라, ①표시사항 및 ②제조 규범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하고 있음.¹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 사료 공정 경쟁 위원회 (Pet Food Fair Trade Association, PFFTA)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목적으로 설립. ▪ 규약을 통해 원료 및 사료의 정의에 대한 개정이 이뤄짐. ▪ PFFTA는 펫사료의 영양 및 시험 기준에 관하여, AAFCO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함.¹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는 AAFCO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으로, 원료의 정의 및 기준 설정에 있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 FDA 공식 홈페이지에는 많은 주(州)에서 AAFCO의 '표시사항 안내서'(Labelling Guide)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표시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¹⁹⁴⁾
산 업 통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를 통해 펫사료 생산액, 출하액, 연말재고액(10인 이상) 등을 집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출하 실적 등을 파악함. ▪ 한국은행은 국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들의 생산자물가 변화를 파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DIAF는 EU 회원국들의 반려동물 사육현황 및 산업조사를 수행함.¹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펫사료협회(ペットフード協會)는 일본 내 애완동물 사육 실태조사 및 산업조사를 수행함.¹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반려동물 제품협회(APPA,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188)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animal-feed-eu-reg-comm_register_feed_additives_1831-03.pdf

189) 藤井立哉, 2014, 療食の適正使用の現状と課題 安全で効果的な犬猫の食事療法のために, ペット栄養学会誌, 87p.

190) 21USC321 (g)(1)(B)

191) 21USC360(a)(1)

192) https://ec.europa.eu/food/safety/animal-feed/feed-marketing_en

193) <https://pffta.org/hyouji/about.html>

194)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pet-food-labels-general>

195) <http://www.fediaf.org/who-we-are/european-statistics.html>

196) <https://petfood.or.jp/data/circulation/index.html>

“펫푸드 첨가물 논란” 에 대하여

(사)한국펫사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한국펫사료협회입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펫푸드 첨가물인 BHA(Butyl Hydroxy Anisole), 에톡시퀸(ethoxyquin), 소르빈산(sorbic acid)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펫푸드 업계는 항상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BHA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펫푸드 업계에서는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허용량 이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HA의 펫푸드에 대한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품질 보존을 위한 허용 범위 이내로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급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저희 펫사료협회에서는 원료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표시사항 개선에 대해서도 업계 전체적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계는 펫푸드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첨부]

[첨부] Q&A

Q. BHA(Butyl Hydroxy Anisole)는 어떤 물질인가요?

-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이하 BHA)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다. 식품 변질 방지 역할을 하는 산화 방지제로서, 주로 유지의 산화방지에 이용된다.
- 버터류, 어패냉동품, 추잉검, 마요네즈 등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이다.
- 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보존제는 국내외 국가 기관 및 연구소가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정부가 허가한 물질이다.

Q. BHA 함유량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예를 들어 AAFCO 권장량 등)이 있나요? (사료기준)

- 미국 사료 협회(AAFCO)는 유지 기준으로 BHA는 200 ppm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 일본은 BHA, BHT, 에톡시킨을 합한 보존제 총량이 총 150 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 BHA, BHT, 에톡시킨을 합해 150 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료관리법 기준)
- 미국 FDA 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BHA, BHT 사용을 허가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식품에 따라 다르다)
- **관련 참고자료(아래)**

참고자료 1

국내 사료관리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종류 및 허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및 별표 22」

[별표 2]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7.1., 개정 2016.12.01., 개정 2017.4.1. >
보조사료의 범위(제5조 관련)

사료종류	명칭
3. 보존제	
가. 산미제	DL-사과산, DL-주석산, L-주석산, कै미산, कै미산칼슘, 구연산, 글루콘산, 글루콘산칼슘, 낙산(부티르산), 낙산나트륨, 낙산칼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인산, 젖산, 초산, 푸말산(푸마르산), 호박산
나. 향응고제	실리카(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칼슘, 열화주석, 화이트카본, 활성탄
다. 향산화제	레스베라트롤, 물식자산, 물식자산프로필,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에톡시킨, 케르세틴
라. 향공팡이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마. 합제	산미제 합제, 향응고제 합제, 향산화제 합제, 향공팡이제 합제, 보존제 합제(산미제부터 향공팡이제의 합제를 말함)

※ 영문약어 :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 BHA,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 BHT
(위 보존제 이외는 사용금지)

[별표 22]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7.4.1.>

첨가,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사료명	허용기준
가.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배합, 단미, 보조사료(비단백태질소화합물 제외)	혼합금지. 다만, 6개월령 이상 고기소용-젖소용 배합사료에 요소는 2%, 기타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은 1.5% 이내에서 각각 혼합이 가능함. * 6개월령 이상 고기소용-젖소용 배합사료 이외의 사료 내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의 함량이 0.09% 이내이면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염산불용물질 (토사 등)	배합, 단미, 보조사료	혼합금지. 다만, 양계용-양돈용-축우용 배합사료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첨가 가능함. * 염산불용물질의 함량이 다음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골분, 골회, 가금부산물건조분, 서류, 수지박, 어즙축착사료, 우모분, 육골분, 육분, 육즙축착사료 : 3% 미만 (2) 어분 : 2% 미만 (3) 기타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1.5% 미만(다만, 광물성 사료, 규산염계, 향응고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및 부형제(광물성과 규산염계, 향응고제에 한함)를 포함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다. 향산화제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제외)	150g 이하(유효성분량 기준)/배합사료 1톤 다만, 수산동물용은 300g이하(유효성분량 기준)/배합사료 1톤

※ 향산화제의 배합사료 허용기준, 150g/배합사료 1톤 = 150mg/kg = 150ppm
(향산화제는 위 별표2에 등재된 BHA, BHT, 에톡시킨 등이 해당 됨).

참고자료 2

일본,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중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 등 관련 성령

보존제 사용기준(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平成30年11月30日 農林水産省令・環境省令 第3号)

▶ 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平成21年 4月28日 農林水産省令・環境省令 第1号
 改正 平成23年 9月 1日 農林水産省令・環境省令 第3号
 平成26年 8月20日 農林水産省令・環境省令 第3号
 平成30年11月30日 農林水産省令・環境省令 第3号

愛玩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5条第1項に規定する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並びに製造の方法及び表示の基準については、別表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愛玩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5条第1項に規定する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並びに製造の方法及び表示の基準については、別表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附 則
 (施行期日)
 第1条 この省令は、法の施行の日(平成21年6月1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2条 法第5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行為であって、平成21年12月1日以前に製造された愛玩動物用飼料に係るもの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法第5条第三号に掲げる行為であって、平成22年12月1日以前に製造された愛玩動物用飼料に係るもの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3 製造業者、輸入業者又は販売業者が、平成21年12月1日以前に製造された愛玩動物用飼料であって、法第5条第二号及び第四号に規定する愛玩動物用飼料に該当するものを販売した場合又は販売の用に供するために保管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愛玩動物用飼料については、法第5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製造業者、輸入業者又は販売業者が、平成22年12月1日以前に製造された愛玩動物用飼料であって、法第5条第三号に規定する愛玩動物用飼料に該当するものを販売した場合又は販売の用に供するために保管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愛玩動物用飼料については、法第5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適用しない。

別表
 1 販売用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
 (1) 次の表の第1欄に掲げる添加物(販売(法第5条第1号に規定する販売をいう。)の用に供される愛玩動物用飼料(当該愛玩動物用飼料を製造する事業場において愛玩動物に使用されるものを除く。以下「販売用愛玩動物用飼料」という。)の製造の過程において又は販売用愛玩動物用飼料の加工若しくは保存の目的で、販売用愛玩動物用飼料に添加、混和、濃縮その他の方法によって使用する物をいう。)の販売用愛玩動物用飼料中の含有量は、それぞれ同表の第2欄に定める量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1欄	第2欄
亜硝酸ナリウム	100 g/t
エトキシキン	75 g/t(未満)
エトキシキン、ジブチルジクロキシルエーテル及びナチルジクロキシアニール(保和をいう。)	150 g/t

※ 일본은 2008.6.18.일에 "애완동물용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애완동물사료안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에서 첨가제(보존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보존제 중 아질산나트륨은 100g/ton(100ppm), 에톡시킨(개사료에 한하여) 75g/ton(75ppm), 에톡시킨, BHA, BHT는 합하여 150g/ton(150ppm)으로 규정되어 있다.

FDA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

① BHA(Butyl Hydroxy Anisole)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BHA(Butyl Hydroxy Anisole)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필수(취발성) 오일 함량을 포함하여 총 함량이 지방 또는 오일 함량의 0.02%를 초과하지 않을 때 식품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소르빈산 (Sorbic ac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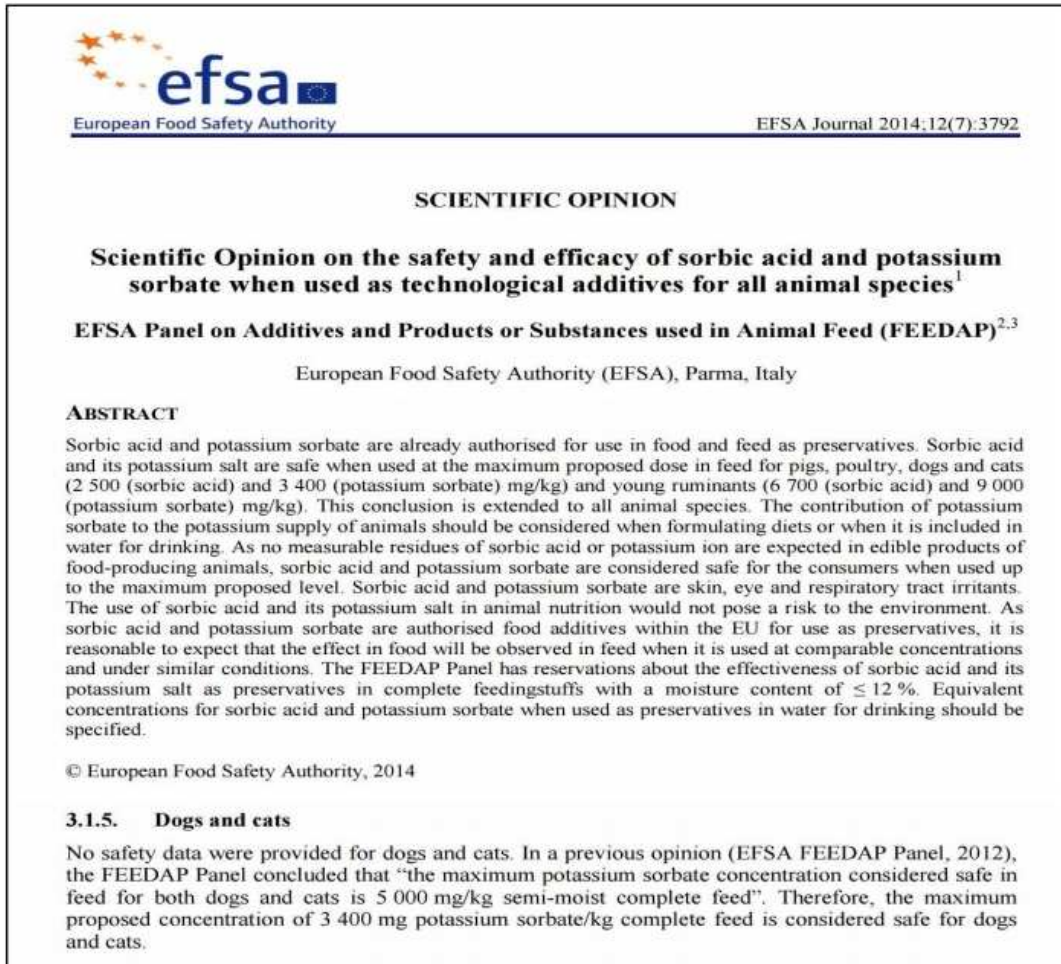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소르빈산(Sorbic acid)은 사용이 허용된 안전한 첨가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식품마다 다릅니다.

③ 에톡시퀸 (ethoxyquin)

The screenshot shows the FD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FDA logo and the text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Below this is a search bar with a "SEARCH" button. A menu bar contains links for Home, Food, Drugs, Medical Devices, Radiation Emitting Products, Vaccines, Blood & Biologics, Animal & Veterinary, Cosmetics, and Tobacco Products. The main heading is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Below this, there is a warning icon and the text: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is current as of April 1 2018. For the most up-to-date version of CFR Title 21, go to the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A "New Search" box is visible, containing the following text: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Volume 6] [Revised as of April 1, 2018] [CITE: 21CFR573.380]". The search results display the following text: "TITLE 21--FOOD AND DRUGS CHAPTER I--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BCHAPTER E--ANIMAL DRUGS, FEEDS, AND RELATED PRODUCTS PART 573 --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EED AND DRINKING WATER OF ANIMALS Subpart E--Food Additive Listing Sec. 573.380 Ethoxyquin in animal feeds. Ethoxyquin (1,2-dihydro-6-ethoxy-3,2,4-trimethylquinoline) may be safely used in animal feeds, when incorporated therei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escribed conditions. (a) It is intended for use only: (1) As a chemical preservative for retarding oxidation of carotene, xanthophylls, and vitamins A and E in animal feed and fish food and, (2) as an aid in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organic peroxides in canned pet food. (b) The maximum quantity of the additive permitted to be used and to remain in or on the treated article shall not exceed 150 parts per million. (c) To assure safe use of the additive, the label and labeling of the food additive container and that of any intermediate premixes prepared therefrom shall contain, in addition to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act: (1) The name of the additive, ethoxyquin. (2) A statement of the concentration or strength contained therein. (3) Adequate use directions to provide for a finished article with the proper concentration of the additive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hether or not intermediate premixes are to be used. (d) The label of any animal feed containing the additive shall, in addition to the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act, bear the statement "Ethoxyquin, a preservative" or "Ethoxyquin added to retard the oxidative destruction of carotene, xanthophylls, and vitamins A and E."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에톡시퀸(ethoxyquin)은 사용이 허용된 안전한 첨가물로서 제품에 남아 있거나 허용되는 최대량은 150ppm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FSA(유럽식품안전청)는 보존제 중 소르빈산에 대하여 돼지, 가금류 축종과 강아지 및 고양이 등 모든 종류의 동물에 안전한 수준의 최대 사용기준을 승인했으며,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항목 기준에서 강아지 고양이 반건조사료(semi-moisture complete food)의 소르빈산칼륨 최대 사용기준을 5,000mg/kg(ppm)으로 정하고 있다.

[PPM :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1g의 시료 중에 100만분의 1g, 물 1t 중의 1g, 공기 1㎥ 중의 1cc가 1PPM이다.]

Q. BHA를 '방부제'라고 통칭해도 되나요?

- BHA는 항산화제로서,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의 일종이다.

Q. 모든 수입 펫사료에는 해외 제조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존제가 사용되나요?

- 대부분의 수입 펫사료는 법적, 종교적 차이가 없는 한 내수용, 수출용 제품의 배합 차이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펫사료는 대부분 제조국가 내수용과 동일한 제품이다.
- 제품의 특징 또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나, 통상 유통기한까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산패 방지 목적으로 천연 또는 인공 보존제를 사용한다. 이는 사람이 섭취하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Q. 수입 펫사료의 경우, 소비 지역에 따라 운송 과정의 부패 위험성을 고려해 방부제가 선택적으로 첨가되나요? (예를 들어 유럽에 공장이 있는 경우 유럽에서 소비될 제품에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소비될 제품에는 방부제를 첨가하나요?)

- 그렇지 않다. 특별한 법적, 종교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배합비로 제조, 유통된다.

Q. 장기간의 운송 과정에 적도를 지나게 되면, 방부제/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이 부패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인가요?

- 펫사료는 크게 건사료(수분 8-11%), 습사료(수분 70% 이상, 캔 또는 레토르트 형태)로 나뉘며 습사료는 멸균 포장되기 때문에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건사료의 경우는 제조에 사용된 유지의 산패 방지가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즉, 진공포장, 탈산소제, 냉장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는, 안전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보존제를 사용한다.
- 펫사료 회사가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 유지에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체적으로 배합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Q. 건식 펫사료의 경우도 부패 가능성이 있나요?

- 건사료는 수분이 8~11%이고 적절하게 포장 보관되면 안전하나, 개봉된 후에 고온 다습한 상태로 있게 되면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Q. 비타민 E군인 토코페롤 등 천연 항산화제도 있는데, 왜 천연 항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 항산화제를 사용하는가?

- 업체의 선택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천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공 항산화제를 사용한다. 둘다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Q. 제품의 산화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산패가 진행되면 지방의 산화로 기름 찌든 냄새가 나서 제품의 기호성이 떨어지고 또한 산패된 제품에는 면역기능 저하 및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

Q. 사료 원료에 표기하지 않고 합성 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표기해야 한다. 다만, 원료로부터 전이된 보존제를 포함한 첨가제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표시기준이 다르다.

(사)한국펫사료협회

자료: 펫푸드 첨가물 논란 관련 안내 (한국펫사료협회)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애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애완동물” 이란 애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애완동물용 사료”란 애완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제조업자”란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배합 및 가공을 포함함, 이하 동일)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수입업자”란 애완동물용 사료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판매업자”란 애완동물용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사업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스스로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애완동물용 사료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애완동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애완동물용 사료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제5조 (기준 및 규격) ①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애완동물용 사료의 사용이 원인이 되어 애완동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방법 혹은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을 설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자재심의회 및 중앙환경심의회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제조 등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때에는 누구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에 의해 애완동물용 사료를 판매용(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수여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수여를 포함함. 이하 동일)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행위
2.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애완동물용 사료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행위
3. 해당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애완동물용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
4.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애완동물용 사료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 혹은 수입하는 행위

제7조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사용이 원인이 되어 애완동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자재심의회 및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1.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의심되는 애완동물용 사료
 2. 병원(病原)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렇다고 의심되는 애완동물용 사료
- ②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 등을 금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 (폐기 등의 명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애완동물용 사료를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의 사용이 원인이 되어 애완동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의 폐기 또는 회수 도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애완동물용 사료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와 관련된 애완동물용 사료

제9조 (제조업자 등의 신고)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다)는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판매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를 보관하는 시설의 소재지
4. 기타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사항

② 새롭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서 전 항에서 규정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된 자는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을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제4항 및 제5항에서 “신고 사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도 동일하다.

④ 신고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신고 사업자에 있어서 상속, 합병 혹은 분할(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사업을 승계해야 할 상속인을 선정 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 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신고 사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 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명칭, 수량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명칭, 수량,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잡칙

제11조 (보고의 정수) ① 농림수산대신 또는 환경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운송업자 혹은 창고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대신에게 통지한다.

1. 농림수산대신: 환경대신

2. 환경대신: 농림수산대신

제12조 (입회검사 등) ① 농림수산대신 또는 환경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수입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운송업자 혹은 창고업자의 사업장, 창고, 선박, 차량 및 기타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수송 또는 보관의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 입회하여 애완동물용 사료, 그 원재료 혹은 업무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하거나 또는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애완동물용 사료 혹은 그 원재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그 원재료를 채취하게 할 때에는 시가에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 질문 또는 채취(이하 “입회검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등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④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대신에게 통지한다.

1. 농림수산대신: 환경대신
2. 환경대신: 농림수산대신

⑤ 농림수산대신 또는 환경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그 원재료를 채취하게 한 때에는 해당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그 원재료 검사 결과의 개요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센터에 의한 입회검사 등) ① 농림수산대신은 전조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

소비안전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동항에서 규정한 자의 사업장, 창고, 선박, 차량 및 기타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수송 또는 보관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 입회하여 애완동물용 사료, 그 원재료 혹은 업무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또는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애완동물용 사료 혹은 그 원재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그 원재료를 채취하게 할 때에는 시가에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농림수산부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센터로 하여금 입회검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입회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일,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실시해야 할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그 내용을 환경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등에 대해서,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에 대해서 각 준용한다.

제14조 (센터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등의 업무에 있어서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 (수출용 애완동물용 사료에 관한 특례) 수출용 애완동물용 사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고 정령으로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률에서 규정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대신의 권한은 환경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 환경사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改廢)할 경우에,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별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4장 별칙

제18조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19조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혹은 채취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

제2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다음의 각 호에 열거 하는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8조: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전조: 동조의 벌금형 제21조 제9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센터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 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 농림수산 대신 및 환경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이라도 농업자재 심의회 및 중앙환경심의회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정령에의 위임) 전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5조 (「환경기본법」의 일부 개정)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 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 항제3 호 중 “및 「생물다양성기본법」(2008년 법률 제58호)”을 “, 「생물다양성기본법」(2008년 법률 제58 호) 및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3호)”로 개정한다.

제6조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 소비안전기술센터법」의 일부 개정)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 소비안전 기술센터법」(1999년 법률 제183 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에 이어서 다음의 1호를 추가 한다.

5.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3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질문 및 채취

제7조 (「농림수산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8 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및 「종묘법」(1998년 법률 제 83호)”을 “, 「종묘법」(1998 년 법률 제83호) 및 「애완동물 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3호)”로 개정한다.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 상황

2014년 10월 30일

환경성

농림수산성

출처: <https://www.maff.go.jp/j/council/sizai/siryu/36/index.html>

- 목 차 -

1. 개요
2.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개요
 - (1) 법률의 목적
 - (2) 정의
 - (3) 법률의 개요
3. 기준 및 규격 설정
 - (1)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기본 개념
 - (2) 성분 규격 및 제조 방법의 기준
 - (3) 표시기준
4.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안내
 - (1) 관계자에 안내하는 기간 설정
 - (2) 설명회 개최
 - (3) 사업자와 반려인에게 안내
 - ① 사업자 설명서 등의 작성
 - ② 반려인을 위한 전단지 등의 작성
5. 지도 및 현장검사
 - (1)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 및 현장검사
 - (2) 소매점에 대한 지도 및 조사
 - (3) 동물용 사료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6.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1) 정보 수집 체제
 - ① 사업자 정보 수집
 - ② 동물병원에서의 정보 수집
 - ③ 반려인의 정보 수집
 - ④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
 - (2) 긴급정보(경보) 등의 발신

7. 반려인 인식 개선

- (1) 브로셔
- (2) 포스터
- (3) DVD
- (4) 홈페이지
- (5) 기타

8.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

- (1) 제조 및 표시에 관한 자주기준 등의 제정
 - ① 『안전한 애완동물사료제조에 대한 실시 기준』 제정
 - ② 애완동물사료표시에 대한 첨가물 편람의 발행
- (2) 자격 제도 등의 창설
 - ① 애완동물사료안전 관리 인증제도
 - ② 애완동물사료판매사 인증제도
 - ③ 애완동물 사료/펫매너 검정
- (3) 애완동물사료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보급
- (4) 반려인의 보급 계발

9. 향후 대응 방향

[참고자료]

1. 판매 반려 동물 용 사료의 성분 규격 등
2. 반려 동물의 범위 검토
3. 전문가 의견
4. 애완동물사료 안전 관리 인증제도의 개요

1. 개요

최근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미국에서 화학 물질 멜라닌이 혼입된 애완동물 사료가 원인이 되어 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 천 마리 규모의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2007년 8월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공동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애완동물사료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했다. 이 연구모임에서는 애완동물사료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같은 해 11월 ‘애완동물사료안전 확보 과제와 대응의 본연의 자세’가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이 정리는 동물애호의 관점에서 애완동물사료안전 확보에 임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는 한편, 자발적 노력은 구속력이 없어 모든 사업자들의 활동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제언을 받아 서로 협력하여 급속도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2014년 3월에 국회에 법률안이 제안되어 전원 찬성으로 같은 해 6월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그 때,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때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이 문서는 2014년 6월 법 시행 후 5년을 맞이함에 있어 부칙 제4조를 근거로 법의 시행상황을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향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개요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의 목적

애완동물사료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여 애완동물사료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애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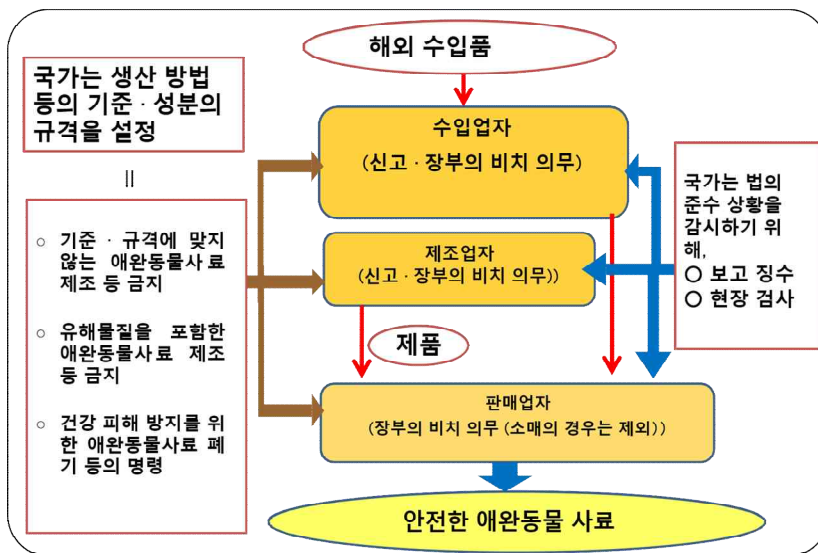
“애완동물”이라 함은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이것은

- ① 애완동물사료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동물 종의 비율을 보면 애견이 약 60%, 고양이가 약 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2006년도 애완동물사료산업 조사)
- ② “애완동물사료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2007년 10월 농림수산성·환경부 조사)”에서는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이상의 규제가 필요한 애완동물로 개(약 89%)와 고양이(약 80%)가 응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애완동물 사료”는 “애완동물의 영양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애완동물용 생수, 생고기 간식, 껌 등도 애완동물용 사료에 포함된다.

(3) 법률의 개요

[일본 펫사료 관리 체계]



① 기준, 규격의 설정 및 제조 등의 금지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 장관은 애완동물 사료의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기준 또는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며, 해당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애완동물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② 유해 물질을 포함한 애완동물사료제조 등의 금지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 장관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애완동물사료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애완동물 사료의 폐기 등의 명령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 장관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업체에 대해 폐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등의 신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 장관에게 이름, 사업장소의 명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소매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판매 등을 한 애완동물 사료의 명칭,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보고, 징수, 현장검사 등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 장관은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보고, 징수,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다.

3. 기준 및 규격 설정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5조에 따라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방법의 기준 및 표시기준, 성분 규격을 정하고 있다. 기준 및 규격 설정 시에는 과학적 지식 보고에 따라 농업자재심의회·중앙환경심의회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 있다.

(1)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기본 개념

애완동물사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완동물 반려인에게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는 개·고양이 사료에 대하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제조 방법의 기준, 표시 기준 및 성분 규격을 정하였다. 그 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애완동물에 대한 건강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애완동물 사료에 의한 피해 사례의 유무
 - 애완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오염 상황
 - 애완동물에 대한 건강 영향의 강도
 - 외국의 규제 상황
- ② 애완동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학적 원리에 기반
 - 국제적인 규칙에 따름
- ③ 관련 과학 지식을 수집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특정
- ④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5가지 범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
- 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다르지만, 기준치의 수분 함량은 가장 일반적인 건식 사료의 값을 참고하여 10%로 설정
- ⑥ 국내에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특히 미국, EU)에서 설정 및 운용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점성적인 기준 설정 등을 통해 대응
- ⑦ 기준 및 규격 설정 후에도 과학적 지식의 수집에 노력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재검토

(2) 성분 및 규격, 제조 방법의 기준

전술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 조사 데이터와 과학적 데이터 등의 과학적 보고를 전문가 등에 의해 검토하고, 애완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음 성분 규격 및 제조 방법 기준을 설정하였다.

[성분규격]

<일본 펫사료의 성분 규격>

분류	물질	기준
유해 미생물	유해 미생물 일반	가열하거나 건조할 경우, 원재료 등에서 유래하고 또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행할 것
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고양이에 사용해서는 안됨
원재료	기타 유해물질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의심되는 원재료 사용 금지

<일본 펫사료의 첨가물 등 상한치>

		물질	상한치
첨가물		에톡시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150(총량) 애견에는 에톡시킨 75 μ g/g이하
		아질산나트륨	100
농약		크로르피리포스메틸	10
		피리미포스메틸	2
		말라치온	10
		메타미드포스	0.2
		글리포시스	15
유해물질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B1	0.02
		데옥시니발레논	2(애견), 1(고양이)
중금속 등		카드뮴	1
		납	3
		비소	15
유기 염소계 화합물		BHC α BHC, β BHC, γ BHC 및 δ BHC)의 총합	0.01
		DDT (DDD 및 DDE를 함유)	0.1
		알드린 · 디엘드린(총합)	0.01
		엔드린	0.01
		헵타클로 · 헵크로르옉폭시드 (총합)	0.01
기타		멜라닌	2.5

(3) 표시기준

반려인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애완동물 사료의 사용을 방지, 또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원인 규명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함.

[표시항목]

- ① 사료의 명칭
- ② 원재료명
- ③ 유통기한
- ④ 제조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⑤ 원산지명

4.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안내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에 앞서 적절한 안내 기간을 마련하고, 설명회 개최 및 사업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하거나 「애완동물사료안전법」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관계자에 안내하는 기간 설정

사업자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기간을 마련하였다. 성분 규격 및 제조 방법의 기준은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의 최소한인 6개월로 설정했다. 표시기준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1년 6개월의 기간을 마련했다.

(2) 설명회의 개최

「애완동물사료안전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자 및 반려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전국 9개),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개최했다.

(3) 사업자와 반려인에게의 안내

① 사업자 설명서 등의 작성

「애완동물사료안전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자의 책무나 애완동물사료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 사례 등을 정리한 사업자 설명서, 전단지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http://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

② 반려인을 위한 전단지 등의 작성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성립을 받아 법의 개요를 안내하고, 적절한 급이 방법 등을 보급, 계발하기 위해 반려인을 위한 리플렛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pamph.html)

5. 지도 및 현장 검사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장부의 비치 의무, 기준 및 규격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그리고 법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지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 및 현장검사

설명회 매뉴얼 배포 등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책무, 신고 및 장부 비치 등의 안내 및 기준 및 규격의 내용 안내를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애완동물 식품 안전법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해 독립 행정법인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이하 FAMIC) 및 지방 농정국 등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검사는 장부의 비치 및 제조방법, 표시사항 준수 현황의 확인과, 성분 규

(3) 동물용 사료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활동

FAMIC 및 지방 농정국 등은 지도 및 검사 외에 애완동물사료공정위원회의 표시기준에 대해 회원사 지도를 진행해왔다. 애완동물사료공정위원회는 부당 경쟁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완동물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다. 본 약관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 애완동물사료공정 거래위원회의 법률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국의 판매점에서 연 2회, 약 130제품을 구입해 표시사항 확인 및 지도를 하는 「선별검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다.

6.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정 후 사업자 및 동물병원 등에서 애완동물 사료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를 정비했다. 수집한 정보를 감시하고 애완동물 사료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업계 및 단체 등에 긴급 정보를 발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 정보 수집 체제

① 사업자 정보 수집

사단법인 애완동물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는 회원이 수집한 애완동물 사료 관련 정보가 국가에 제공되는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기관 연락 창구가 되는 지방 농정국, 지방 환경사무소 등의 연락처를 전단지 등으로 알렸다.

② 동물병원에서의 정보 수집

사단법인 수의사협회에 애완동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료위해 사례를 국가에 즉각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수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코너를 설치함과 동시에 보고 양식 등을 게재하였다.

③ 반려인의 정보 수집

일반적으로 반려인의 연락 창구가 되는 지방 환경사무소 등의 연락처를 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각 지역 단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반려인의 피해사례 등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④ 해외에서의 정보수집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과 각 국의 정부 홈페이지(EU의 RASFF Portal) 등으로 꾸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2) 긴급 정보(경보) 등의 발신

수집한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정보(경보)를 사업자나 도도부현 등에 발신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리콜 정보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사료가 수입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7. 반려인 인식 개선

「애완동물사료안전법」에 적합한 사료의 선택 방법 등의 배포를 위하여, 무료 신문, 홈페이지, 강연회 등을 통해 전국에 안내하고 있다.

8.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1) 제조 및 표시에 관한 자주 기준 등의 설정

① 「안전한 애완동물 사료 제조에 대한 실시 기준」 제정

사료협회는 제품 안전 관리 시스템, 추적성 확보 등 업계의 자주 기준을 제정했다.

② 애완동물사료 표시에 대한 첨가물 편람의 발행

사료협회는 애완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명칭이나 용도를 정리하고 원료명을 통일한 첨가물 편람을 발행했다.

(2) 자격 제도 등의 창설

① 애완동물사료 안전 관리 인증제도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료협회 자격 인증제도는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제3조(사업자의 책무)로서, 애완동물사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자격 보유 인원은 약 250명이다.

② 애완동물사료 판매사 인증제도

사료협회 자격 인정 제도에서, 애완동물사료 판매원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사료의 영양 및 취급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약 370여 명이 인증을 받았다.

③ 애완동물사료/애완동물 매너 감정

일반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사료협회 시험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반려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긴급 정보(경보) 등의 발신

애완동물사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완동물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분쟁 규약을 정하고 있다. 이 약관은 업계의 정상적 상관습이 명문화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본 약관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도도부현 애완동물사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 모니터링은 전국 판매점에서 연 2회, 약 130제품을 구입하여 표시사항의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애완동물사료 표시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표시기준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4) 반려인의 인식 개선

애완동물의 올바른 사육을 위하여 반려인을 위한 팜플렛 등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9. 향후 대응 방안

(1)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① 기준 및 규격 설정

② 애완동물사료 안전법의 안내

- ③ 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현장 검사
- ④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⑤ 반려인의 인식 개선
- ⑥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 활동 추진

(2)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애완동물사료안전법에 의한 감시가 이뤄짐으로서 안전이 더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의 시행에 관한 향후 과제로서 다음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①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② 반려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더욱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
- ③ 특히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률의 보급 활동이 필요하다.
- ④ 향후 애완동물사료에서도 HACCP(제조 공정관리의 고도화)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시켜 나간다.

- ① 정보수집 및 필요에 따른 위험 관리 조치의 검토
 -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원료의 오염 상황, 외국의 규제상황을 포함한 과학적 지식을 계속 수집하고, 일본수의사협회 등을 통해 애완동물 사료에 의한 피해발생 상황 등에 대해 꾸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해나간다. 또한 애완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위험이 인지되는 경우, 기준 및 규격 설정을 포함한 적절한 위험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한다.
- ②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 활동 지원
 - 물동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에 대한 법의 준수 여부를 계속해 나간다. 또한, 애완동물 사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한다.

- ③ 사업자에 의한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안내 철저 및 안전관련 정보 제공
 - 소규모 사업자 및 업계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안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단위 설명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시켜 나간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 ④ 제조 공정 지침의 정비
 - 제조 단계에서 애완동물사료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 관리에 관한 지침을 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진행시켜 나간다.
- ⑤ 반려인의 인식 개선 및 애완동물사료안전법 관련 정보 제공
 - 애완동물사료의 선택방법,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적절한 사육 방법 등에 대해, 반려인들이 사료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브로셔, 포스터 배포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을 계속해 나간다. 또한, 애완동물 사료 판매점 등에서 전단지 배포, 잡지 제공, 동물애호주간행사 등 각종 이벤트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한다.

참 고 자 료

1. 판매 반려 동물 용 사료의 성분 규격 등
2. 반려 동물의 범위 검토
3. 전문가 의견
4. 애완동물사료 안전 관리 인증제도의 개요

[참고자료 1]

1. 성분규격

		물질	상한치
첨가물		에톡시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150(총량) 애견에는 에톡시킨 75 μ g/g이하
		아질산나트륨	100
농약		크로르피리포스메틸	10
		피리미포스메틸	2
		말라치온	10
		메타미드포스	0.2
		글리포시스	15
유해물질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B1	0.02
		데옥시니발레논	2(애견), 1(고양이)
	중금속 등	카드뮴	1
		납	3
		비소	15
	유기 염소계 화합물	BHC α BHC, β BHC, γ BHC 및 δ BHC)의 총합	0.01
		DDT (DDD 및 DDE를 함유)	0.1
		알드린 · 디엘드린(총합)	0.01
		엔드린	0.01
		헵타크롤 · 헵크롤르옉폭시드 (총합)	0.01
기타	멜라닌	2.5	

2. 제조방법 기준

분류	물질	기준
유해 미생물	유해 미생물 일반	가열하거나 건조할 경우, 원재료 등에서 유래하고 또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행할 것
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고양이에 사용해서는 안됨
원재료	기타 유해물질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의심되는 원재료 사용 금지

3. 표시기준

1. 판매를 위한 애완동물사료의 명칭
2. 원재료 명
3. 유통기한
4. 제조, 수입 및 판매업체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생산국

[참고자료2]

애완동물의 범위 검토

1. 경위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사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와 고양이가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1)애완동물 사료의 출하량에서 개, 고양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및 2) 국민 의식조사에서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한 애완동물으로 개, 고양이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고려하였다.

한편, 법제 심의에서는 ‘애완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이외에도 확대하는 것에 검토를 실시하였다.

2. 검토 결과

(1) 개,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

- 개,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 사료는 유통량도 적고, 유해 물질이나

유해 미생물 등의 ‘안전’ 문제의 피해 사례가 거의 없다. 발생사례는 주로 애완동물사료의 선택과 취급 방법 등의 문제였다. 또한, 개, 고양이 외의 동물을 규제의 판단이 되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현재 법에 의한 개,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2) 적정 관리의 보급 추진

- 애완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려인이 애완동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있고, 제대로 사료를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 애호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관리법** 보급 계발을 계속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3]

전문가 의견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은 잘 작동하고 있어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법 준수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물병원A)

업계 내의 부담은 증가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제조사 A)

반려동물 사료에 안전이 보장되게 되었다.
(동물병원B)

반려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안전 정보의 전달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사 B)

특히 중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동물병원C)

향후 반려동물 사료에서도 HACCP(제조 공정과정 관리의 고도화)의 도입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학 관계자)

[참고자료4]

애완동물사료 안전관리 인증제도의 개요

1. 개요

- 애완동물사료 안전법을 추진하기 위해, 수입·제조·판매 현장 등에 사료협회 인정의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고 애완동물 사료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일반 사단법인 사료협회 주최의 강습회를 수강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소정의 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애완동물 사료 안전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자격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갱신은 강습회를 수강함으로써 자격이 유지된다.
- 애완동물 사료의 제조, 품질관리, 연구개발, 상품기획, 마케팅, 영업, 수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까지의 자격증 소지자는 약 250명

2. 강습회의 내용

- 애완동물 사료 안전 및 관련 법규
- 성분 규격 및 위험 평가
- 안전한 애완동물사료 제조에 대한 실시 기준 개론
- 안전한 애완동물사료 제조에 대한 실시 기준 각론
- 위생관리
- 표시 기준
- 행정예 의한 입회 검사
- 위험 관리

부록 V **국가별 펫사료 관련 조직 구분**

■ 정부

일본	미국	유럽(EU)
<p>(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반려동물용사료대책반) 펫사료의 기준 및 규격 인정·지도, 제조업자의 신고 등 펫사료 관련 기획조정 및 총괄 업무</p> <p>(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판매업자 등의 현장검사, 제조, 수입신고 수리 등</p>	<p>(FDA) 펫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관리기관으로서, 안전성 검사, 제조 원료에 대한 승인 및 위생 등 펫사료 안전에 관한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p>	<p>(보건·소비자 보호 총국, DG SANTE)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내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행정조직으로서, 펫사료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담당</p>
<p>(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제조업자 등의 현장검사, 현장검사 시 채취한 사료의 분석 검사</p>	<p>(수의학센터, CVM) 펫사료 안전성 및 제조과정의 위생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에 관한 정책 개발, 권고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p>	<p>(유럽식품안전청, EFSA) 펫사료 안전과 관련한 위험의 식별 및 안전관리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하여 EU 펫사료 안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수행함</p>
<p>(지방농정국) 농림수산성 산하 기관으로서, 소매점 현장검사를 통한 표시기준 적합여부 확인, 펫사료 제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신고 업무를 수행</p>	<p>(주 농업부) 펫사료 관련 2차 관리기관으로, 펫사료의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 인허가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p>	<p>(유럽 회원국) 유럽연합의 공통적 법률 및 역할을 협력하여 이행함과 동시에, 회원국 각 국의 사정에 따른 법률을 수립하여 이행함</p>

■ 민간

	일본	미국	유럽(EU)
제조기준	(일본펫사료협회) 「안전한펫사료제조를 위한실시기준」을 정하여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제조 공정 관리, HACCP 실시를 위한 지침, 원료로 사용하는 육골분 등의 취급 등을 다룸(197).	(미국사료협회, AAFCO) 펫사료 원료에 관해 AAFCO 등재원료는 FDA와의 MOU 체결을 통한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또한, AAFCO는 FDA가 제조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의돼야 하는 주 체임.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EDIAF) 「안전한 펫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 사례 안내서」를 통해 HACCP 적용을 위한 공동체 규범을 정함.
표시사항	(펫사료공정거래협의회) 「부당경품류및 부당표시방지법」을 토대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확보를 위해 펫사료 표시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인 「펫사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전국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표시사항 모니터링을 실시.	(미국사료협회, AAFCO) 미국사료협회의 'Labelling Guide'는 사료의 표시 및 기준에 관하여 기술된 문서로서, 식품의약화장품법에서 명명된 표시기준(21CFR501)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주(州)에서 채택되고 있는 표시기준에 대한 일반적 지침임.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EDIAF) 「펫사료를 위한 모범 표시사항 실습」은 산업동물용 사료와 구분된 표시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정보공유	(일본펫사료협회 외) 법적의무인 장부비치 외, 일본펫사료협회 및 수의사협회의 각 회원사에서 수집된 사료 안전 정보가 지방농정국, 지방환경사무소 등을 통해 중앙정부로 공유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음.	(미국사료협회, AAFCO) 미국사료협회 및 민간동물병원 등은 FDA CVM의 지도 하에 펫사료 관련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기반의 실시간 시스템인 PETNet에 참여함.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EDIAF) EU 회원국들의 반려동물 사육현황 및 산업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일본	미국	유럽(EU)
	또한 일본펫사료협회는 일본 내 반려동물 사육 실태조사 및 산업조사를 수행함.		
특 수 목 적 식	(일본수의처방사료 평가센터) 수의사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수의처방사료의 기준 등을 정비하고 FEDIAF 등의 해외 사례 및 각종 학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의처방사료의 영양표준을 정의함.	(미국사료협회, AAFCO) CVM GFI #55(지침-구속력 없음)는 요로PH감소에 대한 주장(claim)에 대하여 AAFCO 프로토콜을 통과하여 그 효능을 입증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음 ¹⁹⁸ . 그 외 특수목적식(Complete Pet Food Diets Intended to Treat or Prevent Disease)에 대한 사항은 FDA 지침(CPG690 -150-구속력 없음)으로서 수의사의 처방 하에 판매되는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 FEDIAF) FEDIAF의 「제조를 위한 모범사례」를 보완하는 목적의 영양지침(Nutritional guidelines)은 PARNUT(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2020/354)의 기준점(완전배합사료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비 고	위 기준 및 규약 등은 「애완동물용사료의 안전성확보에관한법률」 제3조(사업자의 책무)에 따라 작성된 자율규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농림수산성은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AAFCO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AAFCO의 Labelling Guide 및 원료 기준 등은 FDA와의 MOU 체결 등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위원회 고지(Commission notice)로서 제시된 위 공동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조항들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¹⁹⁹ .

197) <https://petfood.or.jp/statistics/manufacture/index.html>

198)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cvm-gfi-55-supportive-data-cat-food-labels-bearing-reduces-urinary-ph-claims-protocol-development>

199) Commission notice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2008. EU의 경쟁법 판례분석. 9p.

부록 VI

국가별 특수목적사료의 유통 관련 제도 비교

(1) 일본

□ 「애완동물사료의안전성확보를위한법률」은 특수목적사료(이하 요법식)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펫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 요법식이란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이 조정되고 특정 질병 또는 건강 상태에 있는 애완동물의 영양학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의사의 지도하에 식사 관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조4목)

□ 반면, 「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제3조2항은 사료를 종합영양식, 간식, 요법식, 기타목적식 등으로 구분하며 요법식을 따로 구분하고 있음.

□ 이처럼 요법식은 「펫사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수의사의 지도하에 사용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일반 펫사료와 동일하게 취급됨.

- 수의사에 의한 지도하에 주로 동물병원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마트 등의 유통채널을 통하여도 구매 가능

(2) 미국

□ 미국 「식품의약화장품법(FDCA)」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특수목적사료(Nutritional Products Intended for Use to Diagnose, Cure, Mitigate, Treat, or Prevent Disease in Dogs and Cats)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하지만 FDA의 지침²⁰⁰⁾(CGP Sec.690.150)을 통하여 특정 요건을 준수한 경우 행정적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특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음

(i)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수의사를 통한 직접 판매 혹은 수의사의 지

200) FDA의 집행 재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표명한 지침일 뿐이며, 법적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

시(direction)에 따른 개별 유통(소매 혹은 인터넷)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 제조업체는 새롭게 승인된 동물용의약품의 대안으로 해당 제품이 판매하여서는 안됨.

(iii) 제조업체는 FDCA Section415(식품시설의 등록, 21USC350(d))에 따라 등록되어야 함.

(iv)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식품 표시사항(21CFR Part501)을 준수하여야 함.

(v)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표기를 함에 있어 질병에 대한 표시(예: 비만, 신부전 등)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vi)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질병 자료(material with any disease claims)를 의사에게만 배포하여야 함.

(vii) 제조업체는 표시정보 및 홍보자료의 배포를 위해 의사만이 접근 가능한 전자매체를 지원해야 함.

(viii)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원료 사용에 있어,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AP(Food Additive Petition), AAFCO OP(Official Publication) 등재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음.

(ix) 또한,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 작성에 있어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즉, FDA는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통해서만 특수목적사료가 유통되는 것을 권고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음.

(3) 유럽연합(EU)

□ Regulation(2008/38) 및 2020/354²⁰¹⁾는 특수목적식(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을 다루고 있으며, 동법 Part B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영양적 특성을 구분하고 있음.

201) 2020년 12월 25일 이후 적용

- 위 법에서는 ‘수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표기를 적시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는 선택 구매할 수 있음.